

金融實名制 實施 1年의 評價와 政策課題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金融實名制가 실시된 지 벌써 1년여가 경과했다. 金融實名制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논란을 거듭했고 실시가 유보될 때마다 국민들은 불신과 분열을 겪어 왔다. 우여곡절 끝에 金融實名制는 文民政府 최대의 經濟改革으로써 단행되었고 그 후 심각한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난 1월 발생한 제2의 장영자 사건은 金融實名制에 대해 강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과연 무엇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실명제를 통해 얻은 成果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주목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推進狀況과 金融慣行, 納稅風土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調査·分析함으로써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向後 補完對策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발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함과 동시에 事業者, 一般貯蓄者 그리고 金融機關 從事者를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의 실명제 실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金融實名制 實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때이른 느낌이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는 미비점에 대한 점검과 원인 분석을 통한 향후 보완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金融實名制 실시의 내용과 실시 후 1년간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金融實名制 實施 前後의 각종 巨視指標 등을 분석

하여 금융실명제가 국민경제 발전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국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각종 자료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실명제가 課標陽性化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제Ⅴ장에서는 課標陽性化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를 稅制와 稅政의 相互補完性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金融慣行의 變化를 분석하였다. 제Ⅶ장에서는 제Ⅵ장에서 나타난 金融慣行上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政策課題를 논의하였으며 끝으로 제Ⅷ장에서는 金融實名制 實施의 당면 목표라 할 수 있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관련된 政策課題와 事前準備對策을 논의하였다.

本 研究은 弘益大學校 貿易學科의 朴元巖 교수와 高大經濟研究所의 金相達 박사에게 주어진 財務部 金融實名制實施團의 研究費支援用役(1994. 5. 29~1994. 7. 29)에 本 研究院의 安鍾範 연구위원과 鄭暎憲 연구위원이 참여함으로써 共同研究 형태로 이루어졌다. 本 報告書는 安鍾範 專門研究委員(제Ⅰ장, 제Ⅳ장, 제Ⅴ장, 제Ⅷ장), 鄭暎憲 專門研究委員(제Ⅲ장, 제Ⅳ장), 朴元巖 教授(제Ⅱ장, 제Ⅶ장), 金相達 博士(제Ⅵ장, 제Ⅶ장), 李禎悅 研究員(제Ⅲ장), 金正絃 研究員(제Ⅲ장), 申基銑 研究員(제Ⅰ장)의 共同執筆로 완성되었다.

筆者들은 金融實名制 관련 資料提供에 협조해 주신 財務部 金融實名制實施團 李正煥 總括班長 이하 여러분들과 設問調查 對象者 選定에 필요한 納稅者 관련 資料를 제공해 주신 國稅廳에도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設問調查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제일마케팅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本 研究를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었던 設問調查의 企劃, 調查結果資料의 處理 및 原稿作成에 큰 도움을 준 本 研究院의 李禎悅 研究員, 金正絃 研究員, 申基銑 研究員 그리고 韓國經濟豫測研究院의 李起虎 研究員에게도 감사드린다. 아

올러 原稿整理 및 校訂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本 研究院의 南美愛, 申壽美 두 研究助員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本 論文의 研究結果는 韓國租稅研究院 혹은 高麗大學校 經濟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 宗 淇

目 次

序 言	1
I. 金融實名制 實施의 內容과 推進狀況	21
1. 金融實名制 實施의 意義와 推進經緯	21
2. 金融實名制 實施의 內容	28
3.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後續措置	34
II. 金融實名制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分析	43
1.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實績	44
2. 金融市場에 미친 影響	52
3. 實物經濟에 미친 影響	65
4. 過去事例와의 比較	69
5. 評價	72
III. 金融實名制에 대한 國民意識 設問調查 結果分析	75
1. 調查設計 및 標本特性	75
2. 金融實名制에 대한 評價	84
3. 金融實名制의 影響	98
4. 實名制의 補完對策	105
IV. 金融實名制가 課標陽性化에 미치는 影響分析	110
1. 所得稅 및 法人稅에 미친 影響	110
2. 附加價值稅에 미친 影響	117
3. 綜合的 評價	137

V.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租稅關聯 政策課題	140
1.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租稅政策의 方向	146
2.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稅務行政의 刷新	150
VI. 金融慣行 正常化의 實態分析	155
1. 設問調查 目的 및 內容	155
2. 實名制 實施前의 非實名計座	158
3. 實名制 實施後의 意識變化	164
4. 實名制의 金融慣行에 대한 影響	174
5. 政府政策에 대한 信賴感	193
6. 要約 및 評價	197
VII. 金融慣行 正常化를 위한 向後 政策課題	201
1. 借名去來의 實名去來 誘導	203
2. 對顧客 金融去來 通報制度 導入	204
3.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強化	205
4. 代替支給手段의 多樣化	206
5. 金融實名去來의 法制化	209
6. 新金融商品開發과 金融서비스 改善	211
VIII.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主要 檢討課題	213
1. 基準金額의 決定과 源泉徵收稅率의 調整	214
2. 綜合課稅對象 金融資産의 範圍와 課稅方法	218
3. 稅金優待貯蓄制度 改編方案	223
4. 課稅單位 問題	225
5. 國稅廳과 金融機關의 事前準備事項	228
IX. 結論	234

參考文獻	238
附錄 I	243
附錄 II	373

表 目 次

〈表 I - 1〉 緊急命令과 既存法律과의 主要差異點	33
〈表 I - 2〉 金融實名制 關聯 中小企業 資金支援實績(1993.12.31) ·	38
〈表 II - 1〉 各 金融機關別 實名 및 非實名預金 現況 (1989년 6월 현재)	46
〈表 II - 2〉 巨額 假 · 借名計座 所有與否 (한국개발조사연구소 조사)	46
〈表 II - 3〉 金融資産 實名化 程度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조사)	47
〈表 II - 4〉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1993년 10월 12일 현재)	48
〈表 II - 5〉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1994년 6월 30일 현재)	49
〈表 II - 6〉 金融實名制 實施後 株式市場 推移	54
〈表 II - 7〉 金融實名制 實施後 債券市場 推移	55
〈表 II - 8〉 預金銀行 預金回轉率	59
〈表 II - 9〉 主要 通貨指標 推移	60
〈表 II - 10〉 企業의 資金事情 推移	62
〈表 II - 11〉 企業部門의 資金調達	63
〈表 II - 12〉 金融貯蓄動向	65
〈表 II - 13〉 實名制 實施 後 實物經濟動向	67
〈表 II - 14〉 實名制 實施 後 實物資産價格과 消費	68
〈表 II - 15〉 金融實名制 事例의 金融衝擊 比較	70
〈表 III - 1〉 調查對象者別 調查內容	78
〈表 III - 2〉 有效標本 크기 및 標本誤差	79
〈表 III - 3〉 業態別 構成比 比較	80
〈表 III - 4〉 事業者 標本의 特性	81

〈表 Ⅲ- 5〉 一般貯蓄者 標本의 特性	83
〈表 Ⅲ- 6〉 金融機關從事者 標本의 特性	84
〈表 Ⅲ- 7〉 實名制에 대한 贊反意見	85
〈表 Ⅲ- 8〉 實名制는 必要한 措置였는가	86
〈表 Ⅲ- 9〉 實名制가 必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理由	88
〈表 Ⅲ-10〉 金融實名制의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	89
〈表 Ⅲ-11〉 金融實名制의 租稅衡平性의 提高	90
〈表 Ⅲ-12〉 金融實名制의 社會不條理 除去	91
〈表 Ⅲ-13〉 非實名去來가 社會的으로 큰 問題다	92
〈表 Ⅲ-14〉 實名制에 따른 經濟的 衝擊이 크다	92
〈表 Ⅲ-15〉 實名制下에서도 陰性的 去來는 如前하다	93
〈表 Ⅲ-16〉 實名制로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95
〈表 Ⅲ-17〉 金融實名制의 推進狀況	96
〈表 Ⅲ-18〉 補完措置의 適切性	97
〈表 Ⅲ-19〉 實名制의 우리나라 政治에 대한 影響	99
〈表 Ⅲ-20〉 實名制의 우리나라 經濟에 대한 影響	100
〈表 Ⅲ-21〉 實名制의 우리나라 社會에 대한 影響	100
〈表 Ⅲ-22〉 實名制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階層	101
〈表 Ⅲ-23〉 實名制를 가장 反對하는 階層	102
〈表 Ⅲ-24〉 實名制로 인한 不便이나 不利益	103
〈表 Ⅲ-25〉 實名制의 定着이 改革의 前提	105
〈表 Ⅲ-26〉 金融實名制의 成功的인 定着을 위한 補完對策	106
〈表 Ⅲ-27〉 透明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107
〈表 Ⅲ-28〉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補完措置	107
〈表 Ⅲ-29〉 社會不條理 除去를 위한 補完措置	108
〈表 Ⅳ- 1〉 所得稅 및 法人稅 變化程度	111
〈表 Ⅳ- 2〉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113

<表 IV-3>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要因 (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114
<表 IV-4>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要因(稅務行政 強化)	115
<表 IV-5>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要因 (一般課稅者로의 轉換)	116
<表 IV-6> 1993年 下半期 附加價值稅 申告實績(豫定+確定)	117
<表 IV-7> 其他 巨視經濟指標에 의한 推定 (過去 10年間 平均增加率 基準)	118
<表 IV-8> 業種別 平均 附加價值率	120
<表 IV-9> 附價稅 課標現實化率	123
<表 IV-10> 附價稅 稅負擔 變化	124
<表 IV-11> 調整된 附價稅 增減率(限界稅額控除 適用前)	125
<表 IV-12>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126
<表 IV-13>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	127
<表 IV-14>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稅務行政 強化)	127
<表 IV-15>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一般課稅者로의 轉換)	128
<表 IV-16> 無資料去來 規模	129
<表 IV-17> 購入代金에 대한 領收證 收取程度	131
<表 IV-18> 販賣貸金에 대한 領收證 發給程度	132
<表 IV-19> 無資料去來 規模의 變化	133
<表 IV-20> 100% 資料去來를 하기 위한 附價稅率 引下程度 (전체응답자 자료)	135
<表 IV-21> 100% 資料去來를 하기 위한 附價稅率 引下程度 (免稅事業者, 零稅率對象者, 非登錄事業者 除外)	136
<表 IV-22> 平均附價率, 課標現實化率, 適正附價稅率의 關係 ..	137
<表 VI-1> 金融資産 規模別 非實名 計座 保有	159

〈表 VI-2〉 非實名計座의 類型	160
〈表 VI-3〉 非實名計座 保有動機	161
〈表 VI-4〉 從前 非實名計座에 대한 差等課稅 認識	163
〈表 VI-5〉 非實名計座 開設 理由	163
〈表 VI-6〉 實名制에 대한 理解程度	166
〈表 VI-7〉 實名轉換 義務期間 違反에 대한 課徵金	167
〈表 VI-8〉 未成年者의 限度超過 保有 金融資産에 대한 調査	167
〈表 VI-9〉 金融實名制의 不當한 部分	169
〈表 VI-10〉 貯蓄者들의 不便(金融從事者의 意見)	169
〈表 VI-11〉 高所得層의 負擔 增加에 대한 意見	170
〈表 VI-12〉 非實名計座 開設 問議에 대한 反應	171
〈表 VI-13〉 上司의 非實名去來 要求에 대한 職員의 反應	172
〈表 VI-14〉 上司의 要求에 따르는 理由	172
〈表 VI-15〉 實名確認의 節次	173
〈表 VI-16〉 實名制以後 市中資金의 흐름	175
〈表 VI-17〉 實名制以後 市中資金의 흐름	175
〈表 VI-18〉 實名制以後 財産構成을 變化시킬 必要가 있는가	177
〈表 VI-19〉 有望 投資資産	178
〈表 VI-20〉 美國 不動産에 대한 投資用意	178
〈表 VI-21〉 家計의 貯蓄率의 變化	182
〈表 VI-22〉 顧客의 常時使用 計座數의 變化	182
〈表 VI-23〉 綜合所得稅의 貯蓄率에 대한 影響	183
〈表 VI-24〉 株式의 讓渡差益課稅에 대한 意見	185
〈表 VI-25〉 事業體의 手票利用頻度 變化	188
〈表 VI-26〉 事業體의 決濟方式	188
〈表 VI-27〉 事業體의 銀行利用 頻度變化	189
〈表 VI-28〉 자기앞手票 忌避 理由	190
〈表 VI-29〉 中小製造業體의 私債資金 調達比率	191

〈表 VI-30〉 零細事業體의 私債調達 計劃	191
〈表 VI-31〉 査定機關의 非合法的 金融情報 要求를 拒否할 것인가	193
〈表 VI-32〉 査定機關의 要求를 拒否하지 않는 理由	194
〈表 VI-33〉 一定額 以上の 去來者에 대한 政府의 調査 與否	195
〈表 VI-34〉 調査가 施行되지 않는 理由	196
〈表 VII- 1〉 現金通貨/經常 GNP 比率	207
〈表 VII- 2〉 非現金 支給決濟手段의 利用現況	208
〈表 VIII- 1〉 各案의 長短點 比較	220
〈表 VIII- 2〉 稅金優待 貯蓄現況	226
〈表 VIII- 3〉 金融機關의 電算化率 現況	229

圖目次

[圖 II-1] 株式市場	54
[圖 II-2] 主要金利	56
[圖 II-3] 現金通貨 增加率	57
[圖 II-4] 現金通貨/總通貨 比率	57
[圖 II-5] 經濟成長	66
[圖 II-6] 物價	66

附 表 目 次

〈附表 1- 1〉 母集團의 定義 및 調査方法	245
〈附表 1- 2〉 母集團 規模 및 標本抽出 規模	246
〈附表 1- 3〉 標本抽出 規模 및 加重值	247
〈附表 1- 4〉 實查進行 狀況表	248
〈附表 1- 5〉 檢證結果表	249
〈附表 1- 6〉 首都圈 金融機關 從事者 現況(1993年末) 및 標本構成	251
〈附表 2- 1〉 推計調査決定者 比率	253
〈附表 2- 2〉 標準所得率에 대한 意見	254
〈附表 2- 3〉 稅務調査에 대한 經驗	255
〈附表 2- 4〉 稅務處理用役 利用料	256
〈附表 2- 5〉 限界稅額控除 申請 比率(一般課稅者)	257
〈附表 2- 6〉 月平均 賣出額	258
〈附表 2- 7〉 93年 2期 附加價值稅額	259
〈附表 2- 8〉 金融實名制 實施 前後의 金融實名制에 대한 見解	260
〈附表 2- 9〉 金融實名制가 必要한 措置인가	261
〈附表 2-10〉 金融實名制가 必要한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理由	262
〈附表 2-11〉 金融實名制가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를 통한 金融秩序의 正常化에 미친 영향	263
〈附表 2-12〉 金融實名制가 金融資産 綜合課稅를 통한 租稅衡平性 提高에 미친 影響	264

〈附表 2-13〉 金融實名制가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에 미친 影響	265
〈附表 2-14〉 非實名去來가 社會的으로 큰 問題이다	266
〈附表 2-15〉 實名制 實施에 따른 經濟的 衝擊이 크다	267
〈附表 2-16〉 實名制를 실시해도 陰性的 去來는 여전히 存在한다	268
〈附表 2-17〉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269
〈附表 2-18〉 現在 推進中인 金融實名制에 대한 見解	270
〈附表 2-19〉 後續補完措置에 대한 意見	271
〈附表 2-20〉 金融實名制 實施로 인한 不便이나 不利益	272
〈附表 2-21〉 金融實名制가 政治에 미친 影響	273
〈附表 2-22〉 金融實名制가 經濟에 미친 影響	274
〈附表 2-23〉 金融實名制가 社會에 미친 影響	275
〈附表 2-24〉 金融實名制로 어려움을 겪는 階層(複數應答 2個)	276
〈附表 2-25〉 金融實名制 實施를 반대하는 階層(複數應答 2個)	277
〈附表 2-26〉 金融實名制와 改革과의 關係	278
〈附表 2-27〉 金融實名制가 成功的으로 定着되기 위해 필요한 事項	279
〈附表 2-28〉 販賣代金 決濟方法	280
〈附表 2-29〉 購入代金 支拂方式	281
〈附表 2-30〉 去來計座數의 變化	282
〈附表 2-31〉 入出金 頻度의 變化	283
〈附表 2-32〉 자기앞수표 利用 頻度의 變化	284
〈附表 2-33〉 手票利用이 減少한 理由	285
〈附表 2-34〉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제1金融圈)	286
〈附表 2-35〉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相互信用金庫)	287

<附表 2-36>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保險會社)	288
<附表 2-37>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새마을金庫(信協))	289
<附表 2-38>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私債市場)	290
<附表 2-39>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親知)	291
<附表 2-40> 實名制 以後 所得稅 및 法人稅 納付額의 變化有無	292
<附表 2-41> 實名制 이후 所得稅 및 法人稅 增減率	293
<附表 2-42> 所得稅 및 法人稅 負擔變化의 原因	294
<附表 2-43>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295
<附表 2-44>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296
<附表 2-45>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稅務行政強化)	297
<附表 2-46>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課特者에서 一般課稅者로의 전환)	298
<附表 2-47> 實名制 이후 附加價值稅 納付額 變化有無	299
<附表 2-48> 實名制 이후 附加價值稅 納付額 增減率	300
<附表 2-49>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原因	301
<附表 2-50>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302
<附表 2-51>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303
<附表 2-52>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稅務行政強化)	304
<附表 2-53>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 (課特者에서 一般課稅者로의 轉換)	305

〈附表 2-54〉 稅金을 節減하기 위한 無資料去來 經驗	306
〈附表 2-55〉 實名制 이후 無資料 去來比重 增減率	307
〈附表 2-56〉 100% 資料去來를 할 수 있는 附加價值稅率 規模 ..	308
〈附表 2-57〉 限界稅額控除制度에 대한 認知度	309
〈附表 2-58〉 限界稅額控除制度가 課標陽性化에 寄與한 程度 ..	310
〈附表 2-59〉 限界稅額控除制度의 向後 施行 與否	311
〈附表 2-60〉 購入代金에 대한 領收證 受取比率 (總購入金額 對比)	312
〈附表 2-61〉 販賣代金에 대한 領收證 受取比率 (總販賣金額 對比)	314
〈附表 2-62〉 貯蓄總額	316
〈附表 2-63〉 課標現實化率	317
〈附表 2-64〉 課標現實化率로 調整된 附加價值稅 增減率	319
〈附表 3- 1〉 金融實名制에 대한 贊反	321
〈附表 3- 2〉 金融實名制의 必要性	322
〈附表 3- 3〉 金融實名制가 꼭 必要한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理由	322
〈附表 3- 4〉 實名制가 金融去來 透明性 提高에 미친 影響	323
〈附表 3- 5〉 實名制가 金融資産 綜合課稅를 통한 租稅衡平性 提高에 미친 影響	324
〈附表 3- 6〉 實名制가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에 미친 影響	325
〈附表 3- 7〉 非實名去來는 社會的으로 큰 問題이다	326
〈附表 3- 8〉 實名制에 따른 經濟的 衝擊이 크다	327
〈附表 3- 9〉 陰性的 去來는 여전할 것이다	328
〈附表 3-10〉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329
〈附表 3-11〉 實名制가 政治에 미치는 影響	330
〈附表 3-12〉 實名制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	330

〈附表 3-13〉 實名制가 社會에 미치는 影響	331
〈附表 3-14〉 金融實名制의 推進狀況	332
〈附表 3-15〉 後續補完措置에 대한 意見	332
〈附表 3-16〉 實名制로 어려움을 겪는 階層(複數應答 2個)	333
〈附表 3-17〉 實名制를 가장 反對하는 階層(複數應答 2個)	334
〈附表 3-18〉 金融實名制와 改革과의 關係	335
〈附表 3-19〉 透明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335
〈附表 3-20〉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336
〈附表 3-21〉 社會不條理 除去를 위한 補完對策	336
〈附表 3-22〉 金融實名制의 實施로 인한 不便이나 不利益의 經驗	337
〈附表 3-23〉 資產構成 變化의 必要性	338
〈附表 3-24〉 有望 投資資產	338
〈附表 3-25〉 美國不動產 投資用意	339
〈附表 3-26〉 金融實名制의 經濟에 대한 影響	339
〈附表 3-27〉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가 貯蓄率에 미칠 影響	340
〈附表 3-28〉 證券의 讓渡差益稅에 대한 意見	340
〈附表 3-29〉 자기앞수표 忌避 理由	341
〈附表 3-30〉 非實名計座 保有與否	341
〈附表 3-31〉 非實名計座 保有動機	342
〈附表 3-32〉 非實名計座 開設 原因	342
〈附表 3-33〉 金融實名制 理解程度	343
〈附表 3-34〉 從前 差等課稅에 대한 認識	344
〈附表 3-35〉 非正常的 金融情報 要求에 대한 金融機關의 態度	345
〈附表 3-36〉 實名確認의 節次	345
〈附表 3-37〉 課徵金에 대한 見解	346
〈附表 3-38〉 限度超過에 대한 出處調查	346

〈附表 3-39〉 金融實名制의 不當한 部分	347
〈附表 3-40〉 高所得層 負擔增加에 대한 意見	347
〈附表 4- 1〉 金融實名制 實施 前後의 金融實名制에 대한 見解	348
〈附表 4- 2〉 金融實名制의 必要性	348
〈附表 4- 3〉 金融實名制가 必要한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理由	349
〈附表 4- 4〉 實名制가 金融去來 透明性 提高에 미친 影響	350
〈附表 4- 5〉 實名制의 租稅衡平性 提高 效果	351
〈附表 4- 6〉 實名制의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 效果	352
〈附表 4- 7〉 非實名去來는 社會的으로 큰 問題이다	353
〈附表 4- 8〉 實名制의 經濟的 衝擊이 크다	354
〈附表 4- 9〉 陰性的 去來는 여전할 것이다	354
〈附表 4-10〉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355
〈附表 4-11〉 實名制의 政治에 대한 影響	356
〈附表 4-12〉 實名制의 經濟에 대한 影響	356
〈附表 4-13〉 實名制의 社會에 대한 影響	357
〈附表 4-14〉 實名制의 推進 狀況	358
〈附表 4-15〉 後續補完措置의 適切性에 대한 見解	359
〈附表 4-16〉 實名制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階層	360
〈附表 4-17〉 實名制를 가장 反對하는 階層	361
〈附表 4-18〉 實名制의 成功이 改革의 前提條件인가	362
〈附表 4-19〉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를 위한 가장 時急한 補完對策	362
〈附表 4-20〉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363
〈附表 4-21〉 實名制의 社會不條理 除去機能 強化 事項	363
〈附表 4-22〉 顧客들의 不便	364
〈附表 4-23〉 市中資金의 흐름	364

〈附表 4-24〉 顧客의 常時使用 計座數의 變化	365
〈附表 4-25〉 家計의 貯蓄率 變化	365
〈附表 4-26〉 現金需要의 變化	365
〈附表 4-27〉 자기앞수표 回轉速度의 變化	366
〈附表 4-28〉 자기앞수표 忌避理由	366
〈附表 4-29〉 差等課稅에 대한 認識	367
〈附表 4-30〉 非實名計座의 開設原因	367
〈附表 4-31〉 非實名計座의 類型	368
〈附表 4-32〉 非實名計座 開設問議에 대한 反應	368
〈附表 4-33〉 上司가 非實名 去來를 指示할 경우의 反應	369
〈附表 4-34〉 上司의 指示에 따르는 理由	369
〈附表 4-35〉 非正常的 金融情報 要求에 대한 態度	370
〈附表 4-36〉 非正常的 金融情報 要求를 拒否하지 않는 理由	370
〈附表 4-37〉 一定額 以上の 去來者에 대한 政府의 調査 與否	371
〈附表 4-38〉 調査가 施行되지 않는 理由	371

I. 金融實名制 實施의 內容과 推進狀況

1. 金融實名制 實施의 意義와 推進經緯

가. 金融實名制의 意義

金融實名制는 금융거래를 행할 때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금융자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를 포함한다. 1993년 8월 12일 발표된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關한 緊急命令」(이하 「緊急命令」으로 略함)은 금융거래시 實地名義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金融實名制의 實施를 선포하고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일정도 제시하였다. 「緊急命令」에 의해 實施된 金融實名制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金融實名制의 당면목적은 변칙적 금융거래를 방지하여 金融去來 秩序를 正常化하는 것이다. 金融去來秩序를 정상화하는 것은 陰性不勞所得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金融實名制는 陰性資金이 稅務隱匿처로서 金融機關을 이용하거나 사채 등이 金融機關을 經營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변칙적 예금유치를 차단하여 金融機關의 경쟁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金融産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 實名去來慣行을 정착시키는 것은 또한 영수증 처리 등이 미흡한 一般商去來의 정상화를 선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與件을 造成하는 것이다. 金融實名

제의 궁극적 목적은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綜合課稅를 통해 租稅負擔의 衡平性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는 조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용과 발전을 유도하고 경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는 1996년 이후 實施될 예정이지만, 金融實名制는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밝힘으로써 종합과세가 가능한 여건을 창출하는 제도개혁이다. 즉, 실명거래의 의무화는 금융자산소득의 人別合算을 가능하게 하여 누진·종합과세를 통해 조세형평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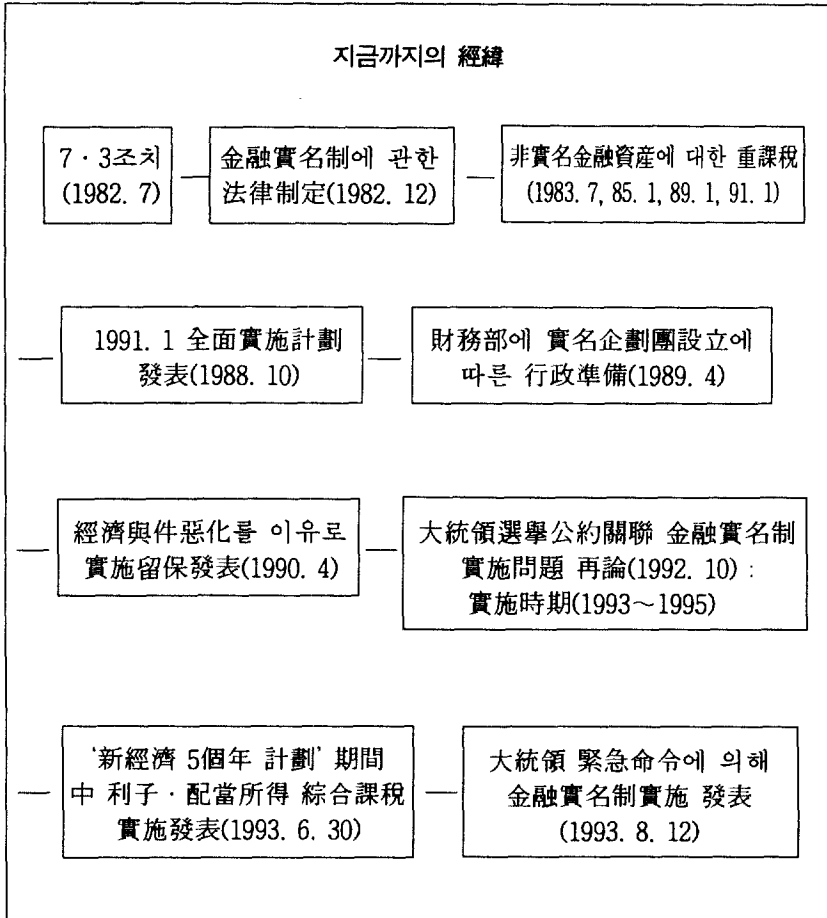
金融實名制는 金融去來의 實名化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衡平性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金融去來時 의무적으로 實地名義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금융자산의 이동과 소득의 발생을 세무당국이 파악하는 과정이 한층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稅源管理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金融所得資料를 이용한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세원관리가 효율화될 뿐 아니라 위 사실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 효과는 자발적인 과표양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를 除去하는 경제외적 의의를 갖는다. 그 동안 비실명제는 탈세 이외에도 뇌물수수·부동산 투기·탈법적 정치자금의 운용 등에 윤향유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과 비리는 경제적 낭비를 초래했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협했다. 金融實名制는 음성적 자금거래 소지를 줄임으로써 마약, 밀수 등 地下經濟를 척결 또는 축소하며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不勞所得의 기회를 봉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金融實名制가 단지 경제개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政治改革, 社會改革을 촉진하고 앞당기는 포괄적, 근원적 개혁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融實名制는 이와 같은 기대효과와 함께 관행의 강제적 교정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金融資産의 익명성이 사라짐에

따라 실물자산으로 금융자산이 급속히 이동하거나 자금의 海外流出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물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金融實名制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평가는 기대효과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작용의 억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金融實名制의 推進經緯



1) '7·3조치'와 1차유보

우리나라는 1960년대 經濟開發過程에서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非實名去來를 허용해왔다. 비실명거래를 허용한 것은 국내 저축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금을 制度金融圈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非實名에 의한 金融去來는 음성적인 자금거래의 확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82년 5월 '李·張 어음사기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金融實名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1982년 7월 政府는 實名去來制와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綜合課稅制의 實施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소위 '7·3조치'이다. 이에 따라 당시 國會는 1982년 12월 '金融實名去來에 關한 法律'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實施與件의 미비로 인해 '金融實名去來에 關한 法律' 중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제3조와 관련조항의 實施를 유보하였다. 1982년 당시 金融實名化率은 약 60%에 불과할 정도로 非實名金融慣行의 뿌리는 깊었고 전산 및 세무행정 처리능력도 실명제 實施에 대처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더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가 잔존하여 경제성장률은 1980년 -3.7%, 1981년 5.9%, 1982년에는 7.2%를 기록하고 있었다. 국제수지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어 1980년 경상수지적자는 53억 2천만달러, 1981년 46억 5천만달러, 1982년 26억 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경제 전반의 상황에서 해외로의 자금유출, 금융권에서의 자금이탈, 각종 실물투기 성행, 증시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곤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金融實名制의 유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金融實名制 留保 이후 정부는 金融實名去來 촉진을 위한 조치로써 1983년 7월부터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非實名去來資産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稅率은 1983년 15%, 1985년 20%, 1989년 40%, 1991년 이후에는 60%로 단계

적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가계종합예금, 저축예금, 세금우대저축 등 실명에 의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보급함으로써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金融機關과 國稅行政의 전산처리능력을 확충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2) 2차유보(1988.10 ~ 1990.4)

1988년 10월 정부는 “經濟의 安定成長과 先進和合經濟推進對策”을 통해 1991년 1월부터 金融實名制를 전면적으로 實施할 것임을 예고했다. 1989년과 1990년 초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金融實名制 實施論議는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1989년 4월에는 재무부내에 ‘金融實名去來實施準備團’이 발족되었고 정부관련부처 및 금융기관대표로 구성된 ‘金融實名制推進 實務對策委員會’가 구성되어 제도개선방안, 예상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推進方案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상황악화, 증시침체, 부동산투기 조짐 등 經濟危機論이 제기되면서 實名制 實施는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란만 거듭된 뒤 결국 다시 留保되었다. 그러나 1990년 4월의 實名制 留保는 국민 일반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경제상황 악화와 준비상황 미비를 명분으로 행해짐으로써 國民들의 반발과 政府에 대한 不信을 야기하였다.

다. 金融實名制 實施에 관한 贊反論理의 내용

1982년 ‘7·3조치’ 이후 10여 년 동안 金融實名制 實施가 두 차례 유산되는 과정은 金融實名制 實施與否 및 그 內容을 둘러싼 각 이해 집단간의 치열한 논쟁과정이었다. 대기업, 금융권, 일부 관료와 정치권의 이해를 반영하는 金融實名制 實施 留保論者들(한국경제연구원(1990), 삼성경제연구소(1990) 등)은 경제적 부작용과 金融實名制

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사실상 金融實名制를 留保할 것을 즐기치게 주장하였다.

金融實名制 實施에 반대하는 경제적 논리는 주로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金融實名制를 실시하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증권시장이 침체한 상태에서 金融實名制를 실시하면 거액의 '큰손'들이 證券市場을 이탈함으로써 증시침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것은 證券市場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金融圈에서 이탈한 자금이 不動產市場으로 몰려들어 不動產投機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金融實名制 實施로 노출을 꺼리는 資金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한 金融資產所得에 대해 종합과세하면 저축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로 貯蓄率이 하락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國內貯蓄의 동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金融實名制 實施로 社債去來가 동결되고 社債資金이 회수된다면 社債依存度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대량의 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金融實名制 實施가 초래하는 경제적 부작용의 흡수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實名制 留保論의 주된 논거는 그 실효성이었다. 金融去來의 實名化를 법적 강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전례가 없는 일이며, 金融實名制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는 대부분 관행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金融機關과 國稅廳의 전산망 확충상태를 살펴볼 때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전면적 동시실시는 행정적 소화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1,2차 유보 당시에는 실시의 전면적 유보와 여건조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 金融實名制 실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金融實名制의 충격을 약화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제기하는 형태로 탈바꿈하였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 학계 등 金融實名制 적극

추진론자들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증대, 경제적 신분세습 억제, 경제 질서의 건실화와 투기붕쇄, 금권부패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金融實名制의 실시가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위의 반대논리를 비판하였다. 실제로 1990년 4월 2차유보 직후 證券市場이 침체로 반전하여 株價指數가 830에서 1990년 9월 566까지 떨어졌던 경험은 증시붕괴를 우려하는 논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금이 기본적으로 收益率에 따라 이동한다는 원리를 생각하면 資金의 海外流出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不動産投機 재연 가능성의 문제도 투기자금에 대한 資金出處調査 등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¹⁾.

金融實名制 실시논쟁과정은 사회 각 집단의 이해가 전면적으로 表出되었던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金融實名制가 경제논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였던 주된 이유이다. 金融實名制가 '經濟正義'라는 추상적인 구호 아래 과도하게 정치적 논리로 포장됨으로써 金融去來의 투명화, 租稅負擔의 형평성 제고, 社會不條理 제거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여타 필요조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라. 金融實名制의 實施

金融實名制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非實名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差等課稅의 지속적 강화와 實名으로만 거래가능한 금융상품의 보급, 신용카드, 가계수표의 사용 확대, 각종 대체결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實名去來 慣行이 상당수준 개선되었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機關投資家의 범위확대 등 證券市場制度의 개선으로 부작용

1) 金融實名制 유보론에 대한 비판과 적극 실시의 논리에 대해서는 經實聯(1993), 『金融實名制』, 비봉출판사를 참조.

적으로도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金融實名制가 제기되고 있었다. 결국, 金融實名制 實施의 부담 축소와 경제의 소화능력 확대로 實名制 實施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는 과제였기 때문에 두 차례나 유보되었던 金融實名制는 문민정부 최대의 경제개혁으로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다만 實施 時期와 方法이 문제였는데, 부작용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緊急命令」에 의한 實施는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金融實名制 實施의 內容

가. 基本方向

10여 년간 논란이 되었던 金融實名制는 대통령 「緊急命令」 형식으로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實施되었고, 緊急命令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緊急命令에 의해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實地名義'의 사용이 義務化되었다. 그러나 利子·配當所得 등에 대한 綜合課稅는 '新經濟 5個年 計劃'의 세제 부문계획에 따라 1995년 所得稅法을 개정하고 19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實施하여 1997년 5월 첫신고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課稅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에는 實施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실명거래의 의무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단계적으로 分離實施하는 3단계 實施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主要內容

1) 實名去來 義務化

「緊急命令」은 1993년 8월 12일 이후 은행·증권사·보험사·단자사·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예를 들어 예금·적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은행이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고 그 이자를 지급할 때, 증권사에서 주식이나 無記名債券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實地名義 여부는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法人名과 事業者 登錄番號 또는 固有番號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개인의 경우)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으로 확인받도록 하였다.

2) 既存 非實名資産에 대한 措置

첫째, 實名制 實施日 현재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모든 金融資産의 名義人에 대하여 實名制 實施 이후 최초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 引出을 禁止하였다(「緊急命令」 제3조).

둘째, 「緊急命令」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1993년 8월 12일~1993년 10월 12일)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實名轉換義務期間을 설정하고(「緊急命令」 제5조) 이 기간중 실명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 ① 實名轉換 計座別로 다음 금액에 대하여 資金出處調査를 면제한다.
 - 20세 미만(미성년자) = 1,500만원 이하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00만원 이하
 - 30세 이상 = 5,000만원 이하
- ② 實名轉換으로 상법·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내에 당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

는 同法律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실명 전환으로 증권거래법상 주식소유제한규정인 상장당시 비율 또는 10%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 내에 당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을 면제한다.

- ③ 종전에 실명형태 借名으로 예입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종전의 명의를 본인의 實名으로 전환할 때에는 과거에 부족하게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追徵한다. 즉, 일반저축의 경우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20%(주민세 포함 21.5%)와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60%(주민세 포함 64.5%)의 차이만큼, 稅金優待貯蓄의 경우 非課稅 또는 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세율과 20%(주민세 포함 21.5%)의 차이만큼 소득세를 추징한다. 이것은 실명전환을 이용하여 贈與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 ① 經過期間에 따라 實施日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 수준)의 過徵金을 부과한다(「緊急命令」 제7조).
과징금은 당해 금융자산에서 원천징수한다.

(單位 : %)

경과일수	징수율
의무기간 경과 후 實施日로부터 1년간	10
實施日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20
實施日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30
實施日로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	40
實施日로부터 4년 이상 5년 미만	50
實施日로부터 5년 경과 후	60

- ②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일 이후(1993년 10월 13일부터)에는 비 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差等課稅率을 현행 64.5%(소득세 60%, 주민세 4.5%)에서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로 인상 적용한다(「緊急命令」 제9조).

넷째, 高額現金引出 등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여(「緊急命令」 제10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량 現金引出事態를 防止하였다.

- ① 실명전환의무기간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인출액이 3천만원 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하여 特別管理함으로써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 ② 이미 발행된 債券, 收益證券 및 讓渡性 預金證書를 實物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의 賣買, 元利金償還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점포별 월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단,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실물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金融情報의 秘密保障 強化

「緊急命令」은 명령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秘密保障 政策意志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金融情報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情報提供을 인정하고 있다(「緊急命令」 제4조 1항).

- 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해 요구할 때
- ② 租稅法律에 의해 조사할 때
- ③ 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이 감독 검사의 필요에 의해 요구할 때
- ④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 ⑤ 다른 법률에 의해 不特定多數人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러나 예외적으로 情報提供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보제공을 요구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문서에 의하여 店鋪別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緊急命令」 제4조 2항). 그리고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거부 의무를 부여하고(「緊急命令」 제4조 3항) 제공받은 金融情報의 他人(제3자)提供을 禁止하고 있다(「緊急命令」 제4조 4항).

4) 金融實名制 違反者에 대한 罰則

「緊急命令」은 실명거래 의무화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철저한 金融去來情報의 秘密保障을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첫째, 실명거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해 5백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緊急命令」 제13조).

둘째, 정보를 누설한 금융기관 임직원,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자, 업무상 知得한 情報의 漏泄者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處罰은 竝課가 가능하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주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해서도 벌금부과가 가능하다(「緊急命令」 제12조).

5) 其他 補完措置

「緊急命令」은 中小企業 등 擔保能力이 약한 기업의 債務保證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緊急命令」 시행 후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緊急命令 14조). 또한 「緊急命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緊急命令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緊急命令」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타법률 배제를 명시하였다(緊

急命令 15조 2항).

이상의 「緊急命令」의 주요내용과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表 1 - 1>과 같다.

<表 1 - 1> 緊急命令과 既存法律과의 主要差異點

구분	긴 급 명 령	기 존 법 률
계 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緊急命令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실명대상	-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일체	- 보험 등 일부 금융기관 제외
기 존 비실명 자산처리	- 비실명인출 일체불허 - 실명전환의무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이 기간 이후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90%의 높은 이자·배당 소득세 및 매년 10%에서 최고 60%의 과징금을 징수	- 비실명인출 무기한 허용 · 정기에금 등은 동일규모내에서는 계속하여 비실명거래 허용 - 실명전환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이후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5%의 과징금 부과
실명확인 의무위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실명전환자에 대한 조치	- 연령별로 기준을 차등화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 면제 - 실명전환 전의 명의를 비실명으로 보아 과거에 부족하게 징수한 5년간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	- 미성년자(700만원 이상)이외에는 일체면제 (신 설)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실명 21.5%에 비해 4.5배 수준인 96.75%로 증가	- 실명 21.5%에 비해 3배 수준인 64.5% 부과

<表 I - 1>의 계속

구분	진급명령	기존법률
금융정보 비밀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요구절차 요건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 · 문서에 의한 요구 · 금융기관 점포별로 요구 - 금융기관에 부당한 정보제공에 대한 거부 의무 부여 - 비밀보장 위반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p>(신설)</p> <p>(신설)</p> <p>- 비밀보장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p>
경과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타법률 위반사실이 1년 이내에 시정되면 벌칙규정 적용 면제 	<p>(신설)</p>

3.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後續措置

가. 副作用防止對策

1) 不動産投機 抑制對策

정부는 金融實名制 實施와 함께 부동산투기 등 실물투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制度金融圈에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 귀금속 등 실물부문으로 유입되어 투기자금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지정이다. 정부는 1993년 8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군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국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약 3개월 동안 전국토의 93.8%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거래가 허가사항이 된 셈이다.

또한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은 地價動向 監視班을 신규 운용하여 부동산가격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대도시와 상가, 오피스텔 밀집지역 등 부동산투기 우려 지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土地·住宅價格 및 去來動向을 일일점검하였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을 월 2회 파악하면서 실수요목적의 부동산 취득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 투기사례가 포착될 경우 稅務調査에 착수하였다. 부동산투기 심리의 사전억제를 위해 변칙적 부동산거래로 음성블로소득을 취한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綜合稅務調査를 實施하여 讓渡所得稅를 추징하였다.

한편 증견화가 이상 예술가, 주요창작 예술품, 골동품, 보석 판매업소 등에 대한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관리를 강화하였다.

2) 金融市場 安定化對策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금융저축의 제도권 이탈 방지를 위해 「緊急命令」은 非實名 상태의 預金引出을 禁止하고 純引出額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緊急命令」의 특별조치 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한국은행에 '金融市場安定 非常對策班'을 설치하였고, 實名制 實施에 따라 일시적으로 通貨流通速度가 하락하여 총통화공급수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通貨를 彈力的으로 運用하였다.

또한 制度金融圈의 受信基盤 擴充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였다. 少額家計貯蓄의 1인당 가입한도를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노후생활연금신탁의 1인당 가입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税金優待貯蓄의 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個人年金貯蓄制度를 도입하여 1994년 6월부터 은행, 보험, 투자신탁, 농수축협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게 하는 등 제도금융권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장기적 대책을 시행하였다.

3) 證券市場 安定化對策

「緊急命令」은 金融實名制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분리하여 1996년부터 實施하고 株式讓渡 差益에 대한 종합과세는 1997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인 證券市場의 동요는 예상된 사태였으므로 정부는 단기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증권시장의 투자심리안정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식매수 확대를 유도하였고, 投信社의 株式賣物 最少化를 위하여 국고차입금 1조원의 단계적 상환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證券社와 投信社의 銀行借入金 약 7천억원의 상환을 연기하고 銀行과 證券金融(株)간에 설정된 회전한도(6천억원)를 활용하여 증권사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資金의 海外流出 防止對策

金融實名制 實施 이후 우려했던 상황 중의 하나는 制度金融圈을 이탈한 자금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실명노출을 꺼리는 자금이 상거래 위장이나 개인송금, 휴대반출 등의 방법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海外送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해외정보의 수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개인의 의화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贈與性 個人送金에 대한 國稅廳 通報制度를 강화하여 통보대상을 연간 1만달러 이상에서 건당 3천달러 이상으로 조정하고 통보시기도 매월에서 매주로 변경하였다. 국세청은 기존의 人別 資料와 연계하여 불법유출 혐의시 稅務

調査를 實施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환은행은 환전시 해외송금 필요사항(인적사항, 송금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외화, 고액 원화수표 등의 휴대반출 방지를 위한 검색활동을 강화하였다.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價格 適正性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고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재산 도피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였다.

5) 中小企業 支援對策

中小企業은 취약한 擔保力과 信用의 부족으로 實名制 實施 이후 자금조달의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컸다.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었고 私債市場의 동결은 중소기업의 私債 依存度를 감안할 때 연쇄 도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金融實名制 實施와 함께 中小企業 支援에 力點을 두었다.

金融實名制 實施 직후인 1993년 8월 13일 정부는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緊急運轉資金' 3천억원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83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1993년 8월 16일에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緊急經營安定支援資金' 2천억원을 배정하고 긴급운전자금을 추가로 3천억원 배정하였다.

이후 信用管理基金의 어음 재매입한도 확대, 주택관련 영세기업 자금지원 및 보험회사의 영세기업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자금배정규모는 2조 2,530억원에 달하였으며 지원실적은 <表 1-2>와 같다.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외에도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자금사정의 애로를 완화시켰다. 「緊急命令」 제16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信用保證機關의 保證限度를 기본자산의 15배에서 30배로 2배 확대하였다. 또한 相互信用金庫의 수신기반을 강화하여 시중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이 자금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여수신금리를 동시에 1%포인트 상향조정하였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先給金支給比率도 확대하였다.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라 중소기업,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워진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기관이 공사,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급금 지급비율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였다.

<表 1 - 2> 金融實名制 關聯 中小企業 資金支援實績(1993.12.31)

(單位: 억원, %)

	지원계획	지원실적	계획대비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0,000	8,502(29,532)	85.0
긴급운전자금	9,000	7,919(13,752)	88.0
지방중소기업자금	830	813 (1,103)	97.9
신용관리기금 어음재매입	1,700	1,263 (4,282)	74.3
중소주택업체지원자금	500	135 (462)	27.0
보험사 중소기업지원자금	500	520 (948)	104.0
합 계	22,530	19,152(50,079)	85.0

나. 補完措置

1) 1次 補完措置(1993. 8. 31)

金融實名制 實施 이후 자금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高額 現金引出資料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稅務調査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보완조치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1차 보완조치의 내용은 크게

세무행정상의 보완조치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가) 稅務行政上 補完措置

세무행정상 보완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實名轉換資料의 國稅廳 通報에 따른 資金出處調査 緩和: 계좌 별로 일정금액(예: 30세 이상 5천만원)을 초과하여 실명전환된 예금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는 탈세 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일정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사업경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기, 증여,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한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제한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 ② 生産的 資金과 家計生活資金에 대한 稅務調査 排除: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 8. 13~10. 12)중 純引出額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에도 그 자금이 공장건설, 원재료매입,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1세대 1주택의 취득이나 이사·혼례비 등 家計生活資金으로 사용되는 등 그 사용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인출자금이 부동산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 ③ 金融去來資料를 근거로 한 稅務調査 排除: 금융거래가 아닌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과거의 판매실적이나 소득금액을 역추적하여 稅務調査를 하는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이 세무행정상의 보완대책은 주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 명백히 제한하여 국민불안심리를 해소하고자 한 조치였다.

한편 配偶者名義 預金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을 실명전환할 경우 외에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으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기, 증여,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나) 金融關聯 補完對策

금융관련 보완대책은 부작용 방지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단력적 통화운용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강화, 證券·債券市場의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金融實名制 實施 이후 다소 약화된 金融仲介機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동화된 시중자금을 制度金融圈으로 유인하기 위해 제2단계 金利自由化의 年內 實施를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제2단계 금리자유화의 주된 대상이 受信金利이므로 금리의 價格機能 提高를 통해 금융저축을 유지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在外國民(해외장기체류자 포함)의 實名確認節次를 간소화하여 재외국민 등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의 경우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포 없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포로만 실명확인 및 전환이 가능토록 허용하였다.

2) 2次 補完措置(1993. 9. 24)

정부는 제1차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불안심리를 감안하고 非實名資金의 實名轉換이 미진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2차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 7가지이다.

- ① 3천만원 초과 현금인출시에도 국세청 조사배제
- ② 課稅標準 陽性化 신고시 과거 세금에 대한 추적조사 배제
- ③ 이자·배당소득세 추정방법 개선

- ④ 人別로 2억원까지는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배제
- ⑤ 法人名義 實名化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⑥ 증여세 자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⑦ 長期低利債券 발행

다. 稅制改編

金融實名制 實施로 인해 課稅資料가 陽性化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여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3년 말에 稅制改編을 단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所得稅 및 相續·贈與財産에 대한 稅負擔 輕減

收入金額의 노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여 거래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所得稅率을 課稅階級別로 1%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인하하였다. 또한 각종 所得控除制度 중 基礎控除를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으로 인상하고 勤勞所得控除額을 확대하여 연 250~600만원을 연 270~62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稅務行政 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소득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받게 되는 標準所得率과 所得稅 申告基準率을 경감하여 소득세의 급증을 방지하였다. 즉,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1994년 5월에 신고하는 1993년 귀속신고수입금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30% 이상 증가분에 대한 所得金額 계산시 標準所得率을 30% 경감하였다.

이와 함께 金融實名制에 따라 相續·贈與稅의 세원포착률이 제고될 것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5%에서 50%로 인하하여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配偶者 控除額을 상향조정하였다.

2) 企業의 稅負擔 輕減

金融實名制의 조기정착과 기업의 競爭力 強化를 위해 法人稅率을 2%포인트 인하하여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은 20%에서 18%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은 34%에서 32%로 조정하였다. 특히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小製造業體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해 주는 中小製造業 臨時特別 稅額減免制度를 1993년 말에 종료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도록 하였다.

3) 事業者의 附加價値稅 負擔 輕減

課標陽性化에 따라 課稅特例者가 一般課稅者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附加價値稅 限界稅額控除制度를 신설하여 1993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였다.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원래 납부할 세액과 과세특례자로 있을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률을 一般課稅者 納付稅額에서 控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限界稅額控除制度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경감혜택이 적어지도록 하는 遞減式 輕減方式을 채택하여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限界稅額控除制度가 조세이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논란이 야기되었다.

II. 金融實名制가 國民經濟에 미친 影響分析

金融實名制가 논의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10년여 동안 논란을 벌여 왔던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命 令에 의해 전격 실시되었다.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즈음한 特別談話文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金融實名去來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分配正義를 구현할 수가 없으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의 先進化도 이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金融實名制는 新韓國 建設을 위한 새정부의 改革意志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금융실명제는 법이나 긴급명령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實名使用을 법으로 의무화함으로써 假名에 의한 금융거래는 막을 수 있으나 合意借名에 의한 형식상 實名去來 내지는 일부 盜名去來는 막을 수 없다. 美國, 英國 등 선진국의 금융실명제는 대부분 오랜 관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며 법적 강제력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實名制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선진국에서도 돈세탁, 탈세 등 地下經濟活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상당히 陰性化되어 있으며 경제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社會의 부정부패, 不法的 行動의 자행, 政府規制 回避欲求, 높은 稅率 등 수많은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金融去來의 實名化만으로 쉽사리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金融實名制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경제정의와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많은 경우 필요조건이 된다고 하겠다¹⁾.

金融實名制가 오랜 기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고 할 때 지난 1년의 기간은 金融實名制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에 수반되는 초기충격의 극복과 국민경제의 변화를 개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本章에서는 우선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分析을 통하여 금융실명제의 정도를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금융실명제가 金融市場 및 實物市場에 미친 영향을 개관하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金融實名制 成果를 평가하고자 한다.

1.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實績

가. 金融實名制 實施 以前 實名化率

金融實名制의 成果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 實績統計이다.

1) 金融實名制 자체는 경제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필요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郭泰元, 1993). 이러한 견해는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經濟正義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金融實名制의 실시가 정부의 改革意志에 대한 국민의 信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간 여러 번 실시논의가 있었으므로 金融實名制 실시의 초기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金融實名制 자체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金融實名制가 경제정의를 이루기 위한 稅制改編 등 改革推進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실명제는 그 동안 두 차례나 實施와 留保가 반복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금융실명제에 대비해 왔으며, 實名과 非實名去來에 대한 差等課稅幅을 확대하였으므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 이전에도 거의 모든 預金이 실명화되어 있었다. <表 II - 1>에 의하면 재무부 내에 '金融實名去來實施準備團'이 발족되고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기 시작한 1989년 6월 우리나라 金融去來의 實名化率은 금액기준으로나 계좌기준으로나 98%를 상회하였다. 금융기관별로는 證券會社의 금액기준 실명화율이 95.7%로 평균에 약간 미달하나 여전히 높은 실명화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無資料去來 및 脫稅가 상당규모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預金留置競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높은 實名化率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假·借名 金融去來에 대한 實查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993년 9월중 서울거주 中産層(자가용·자기집소유, 월 150만원 이상 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假名·借名計座 所有率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表 II - 2> 참조). 韓國開發研究院(1990)이 고려대학교에 의뢰하여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貯蓄者의 26%가 假·借名 金融資産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II - 3> 참조). 또한 1993년 8월경 金融圈資金 중 假·借名計座의 資金은 약 33조원에 이르며 이 중 假名計座의 자금은 2조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²⁾. 이는 당시 金融資産 330조원의 10%, 總通貨 100조원의 3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 安鍾範, 「金融實名制와 國民經濟」, 韓國租稅研究院, 1993. 10.

〈表 II - 1〉 各 金融機關別 實名 및 非實名預金 現況(1989년 6월 현재)

(單位 : 천좌, 억원, %)

機 關	區 分	實 名	非實名	合 計	實名比率	
은 행	예 금	계 좌	62,142	1,163	63,305	98.2
		금 액	443,000	7,878	450,878	98.3
	금 전	계 좌	2,361	47	2,408	98.0
		금 액	189,981	578	190,559	99.7
상 호 신 용 금 고	계 좌	1,822	4	1,826	99.8	
	금 액	61,237	325	61,562	99.5	
중 권	계 좌	3,546	39	3,585	98.9	
	금 액	282,528	12,561	295,089	95.7	
투 자 신 탁	계 좌	4,142	52	4,194	98.8	
	금 액	134,452	335	134,787	99.8	
투 자 금 용	계 좌	170	4	174	97.7	
	금 액	169,119	2,631	171,750	98.5	
종 합 금 용	계 좌	22	2	24	91.7	
	금 액	12,241	42	12,283	99.7	
합 계	계 좌	74,209	1,311	75,516	98.3	
	금 액	1,292,558	24,350	1,316,908	98.2	

資料 : 財務部, 1989. 9.

〈表 II - 2〉 巨額 假 · 借名計座 所有與否(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問) ○○님은 實名制 이전에 假名이나 借名으로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金融機關과 去來하고 있었습니까?	
結果)	(%)
있었다	10.7
없었다	88.7
무응답	0.6

資料 : 공보처 홍보국, 『實名制 실시관련 輿論調查 結果』, 1993. 9. 15.

<表 II - 3> 金融去來 實名化 程度(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조사)

(單位 : %)

金融資産 保有規模	전부 實名	일부 他人	일부 假名	전부 假名
5백만원 미만	78.1	18.8	-	3.1
5백만원~1천만원	77.3	15.2	7.6	-
1천만원~5천만원	83.3	14.3	2.4	-
5천만원~1억원	59.1	34.1	6.8	-
1억원~5억원	66.3	18.1	15.7	-
5억원 이상	45.5	27.3	27.3	-
全體	73.6	18.7	7.4	0.3

資料 : 南相祐, 『金融實名制의 波及影響과 實施論議』, 韓國開發研究院, 1990. 3.

나. 金融實名制 實施 後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 實績

1993년 8월에 金融實名制를 전격 실시한 것은 實名制 실시 이전 金融機關預金の 2%에도 못 미치는 비실명(가명)예금을 實名預金化 하려 함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상 실명예금인 借名預金을 가능한 한 많이 실명예금으로 전환시키려 함에 더 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表 II - 4>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내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實績을 보여주고 있다. 實名計座의 경우 반드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율은 의무기간 완료시점 현재 금액기준으로 81.3%에 달하였으며 2조 8천억원의 假名預金은 거의 모두 實名化되었다. 문제는 盜名이나 恣意借名形式의 차명계좌가 얼마나 실명으로 전환되었느냐는 것인데 實名轉換義務期間이 끝나는 1993년 10월 12일 현재 實名預金確認率은 금액기준으로 81.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借名에서 실명전환액은 약 3조 5천억원에 그쳤다. 借名計座는 형식상 실명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安鍾範(1993)

〈表 II - 4〉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1993년 10월 12일 현재)

(單位 : %, 천좌, 억원)

구 분	銀行	證券	保險	投信	短資	信用金庫	其他 ¹⁾	合計
실명예금 확인율 (계좌)	78.3 (52.8)	83.8 (43.4)	84.4 (81.8)	73.7 (63.0)	94.6 (96.3)	78.7 (70.8)	84.9 (61.8)	81.3 (61.8)
가명예금액 (계좌)	8,524 (540.5)	15,333 (22.5)	-	295 (6.0)	3,513 (1.5)	168 (1.6)	509 (58.4)	28,342 (630.5)
실명전환액 (계좌)	8,250 (426.2)	14,965 (9.1)	-	265 (0.7)	3,506 (1.46)	167 (1.1)	459 (41.1)	27,604 (479.7)
전환율 (계좌)	96.8 (78.8)	97.5 (40.3)	-	89.9 (12.1)	99.8 (97.6)	99.2 (70.5)	90.1 (70.4)	97.4 (76.1)
미전환액 (계좌)	274 (114.3)	376 (13.4)	-	30 (5.3)	7 (0.04)	1 (0.5)	50 (17.3)	738 (150.8)
차명→ 실명전환액	13,656	3,304	3,246	2,691	2,862	6,776	2,240	34,775

註 : 1) 농·수·축협, 상호금융, 종합금융, 증권금융, 인삼조합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체신예금, 체신보험, 농·수협공제보험.

에 인용된 바와 같이 金融實名制 실시 전 우리나라 借名計座의 자금이 30조원에 이른다면 차명예금 중 약 10%만이 본명으로 실명전환한 셈이다.

〈表 II - 5〉는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 실명예금확인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중에도 借名에서 實名轉換額은 크게 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4년 6월 30일 현재 실명예금확인율은 92.4%에 달하여 실명전환의무기간 말인 1993년 10월 12일에 비해 약 11%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 1994년 6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借名에서 實名으로의 추가적인 전환액은 274억원에 불과하였다. 아직까지 실명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7.6%의 金融機關預金은 休眠計座거나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實名預金으로 추정된다.

<表 II - 5>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1994년 6월 30일 현재)¹⁾

	실명예금확인율		가명예금액(A)		실명전환액(B)		전환율(B/A)		미전환액(A-B)		차명→ 실명전환액
	%	천좌	억원	천좌	억원	천좌	%	천좌	억원	천좌	
은행	86.8 (78.3)	68.1 (52.8)	8,524 (8,524)	540.5 (540.5)	8,350 (8,250)	534.6 (426.2)	98.0 (96.8)	98.9 (78.8)	174 (274)	5.9 (114.3)	13,714 (13,656)
증권	95.6 (83.8)	60.4 (43.4)	15,333 (15,333)	22.5 (22.5)	15,000 (14,957)	10.4 (9.1)	97.8 (97.5)	46.3 (40.3)	333 (376)	12.1 (13.4)	3,325 (3,304)
보험	94.5 (84.4)	93.6 (81.8)	-	-	-	-	-	-	-	-	3,377 (3,246)
투자 신탁	90.0 (73.7)	79.6 (63.0)	295 (295)	6.0 (6.0)	270 (265)	0.8 (0.7)	91.8 (89.9)	13.1 (12.1)	25 (30)	5.2 (5.3)	2,710 (2,691)
투자 금융	98.7 (94.6)	97.3 (92.1)	3,513 (3,513)	1.5 (1.5)	3,508 (3,506)	1.46 (1.46)	99.8 (99.8)	97.7 (97.6)	5 (7)	0.04 (0.04)	2,874 (2,862)
신용 금고	91.7 (78.7)	83.5 (70.8)	168 (168)	1.6 (1.6)	167 (167)	1.2 (1.1)	99.3 (99.2)	71.7 (70.5)	1 (1)	0.4 (0.5)	6,779 (6,776)
기타 ²⁾	96.5 (84.9)	83.3 (61.8)	509 (509)	58.4 (58.4)	490 (459)	49.1 (41.1)	96.3 (90.1)	84.1 (70.5)	19 (50)	9.3 (17.3)	2,270 (2,240)
합계	92.4 (81.3)	76.5 (59.7)	28,342 (28,342)	630.5 (630.5)	27,785 (27,604)	597.6 (479.7)	98.0 (97.4)	94.8 (76.1)	557 (738)	32.9 (150.8)	35,049 (34,775)

註: 1) () 안은 1993년 10월 12일 현재.

2) 농·수·축협, 상호금융, 종합금융, 증권금융, 인삼조합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체신예금, 체신보험, 농·수협공제보험.

다. 낮은 實名轉換率의 解釋

金融機關預金の 實名確認率이 92%를 상회하는 가운데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예상보다 저조한 3조 5천억원에 그치고 약 2조 8천억원의 가명예금 實名轉換을 포함할 때 전체 금융자산의 2%에 불과한

6~7조원만이 實名轉換되었다는 <表 II - 5>의 통계는 金融實名制 실시 이전 우리나라 金融實名化率이 98%에 달한다는 <表 II - 1>의 통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金融實名制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表 II - 1>과 <表 II - 5>를 비교하여 金融實名制의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 하나는 金融實名制 이전 우리나라 金融資産의 실명화율이 진정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법적인 金融實名制 실시만으로는 진정한 實名化를 유도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해석이다.

우선 實名制 실시 전 實名化率이 진정으로 매우 높아서 금융자산의 거의 모두가 이미 실명화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엄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金融實名制 실시 전에 이루어진 많은 조사가 우리나라 金融資産의 상당부분이 假·借名 資産일 것으로 추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본명 실명자산일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만약 金融實名制 실시 이전 金融資産의 實名化率이 이미 98%에 달하였다면 金融實名制 실시를 두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 왔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株式·債券市場이 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재산증식과 재산은닉처로 證市를 이용하며 證市를 움직이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그간의 부정부패 척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非理와 不正, 脫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 음성소득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實名制 실시 이전 금융자산의 實名化率이 진정으로 98%에 이르렀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實名制가 관행상 정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차명계좌는 合意借名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나라의 金融實名化率은 실제 추정치보다 낮지만 金融實名制 실시 이전 당사자간에 차명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므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借名의 實名轉換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러한 주장은 당사자간의 비밀스런 합의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쉽게 검증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實際預金主와 借名預金主와의 담합이 항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金融實名制나 金融所得의 綜合課稅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合意借名을 본명 실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식과 금융관행의 변화, 전산망을 이용한 자금 추적 및 실명예금주와 차명예금주와의 談合決裂을 위한 각종 조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實名轉換에 따르는 不利益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실명확인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정책당국은 앞으로 金融實名制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본명 실명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불이익을 줄여서 借名計座의 本名轉換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과거의 부정을 물을 것인가 또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借名の 本名轉換率을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合意借名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盜名에 의한 실명전환의 문제이다. 실명확인이 제대로 되었다면 盜名에 의한 실명전환은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명확인은 개인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남기는 동시에 본인이나 법인대표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한 盜名에 의한 실명전환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

다. 이러한 盜名預金은 실명확인된 예금이므로 金融所得의 종합과세시 또는 실명확인상태에 대한 금융기관 감독강화시 아무런 장애 없이 우선적으로 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盜名預金은 향후 金融實名制定着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2. 金融市場에 미친 影響

金融實名制란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實地名義(實名)』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預·積金 등의 계좌개설, 은행자기앞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지급, 증권사를 통한 株式·債券의 매매 등을 포괄하는 모든 金融機關과의 去來를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까지 실명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번 金融實名制 措置와 아울러 利子·配當所得 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과세는 新經濟 5개년 계획기간중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따라서 金融實名制의 내용을 金融實名去來의 義務化와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번 실명제 조치는 먼저 金融實名去來를 의무화한 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利子·配當·讓渡所得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金融實名制 施行方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단계적 시행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시행된 금융실명제의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 金融實名去來의 의무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金融實名制 실시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假名 또는 借名을 통한 금융거래가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實名化를 의무화하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우리 국민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 논의

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融實名制가 금융관행의 혁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 바로 금융실명제가 國民經濟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金融實名制 실시 초기 金融市場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곧 安定勢를 되찾음으로써 금융실명제가 국민경제에 미친 초기충격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金融實名制가 국민경제에 미친 초기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은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우리나라 金融資産이 대부분 實名化되어 있었거나 또는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는 合意借名預金 등 차명예금을 본명으로 전환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金融實名去來 義務化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金融實名制의 초기충격 극복 후 景氣가 恢復되는 등 안정세를 되찾은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金融實名制를 지지하고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새로운 관행에 잘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정부도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한때는 實名義務轉換期間이 끝나는 10월 중순에는 大規模의 資金이 금융권을 離脫하여 큰 경제혼란이 빚어진다는 10月 大亂說이 유포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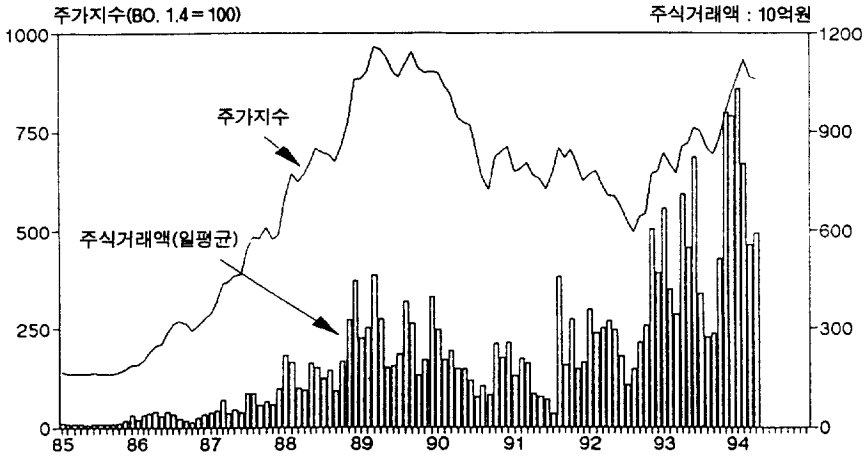
金融實名制의 전격 실시 후 2개월의 實名轉換義務期間을 두어 동기간중 巨額 現金引出의 국세청 통보로 大規模 資金離脫을 억제하도록 하였는데, 2개월의 짧은 기간중 實名制의 초기충격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명전환의무기간 후 巨額 現金引出에 대해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혼란 없이 오히려 經濟가 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더 나아짐으로써 결국 金融實名制 定着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고 하겠다.

가. 證券市場

〈表 II - 6〉 金融實名制 實施 後 株式市場 推移

	1993. 8.12	8.14	8.19	8.31	12.13	1994. 1.31	1993. 8.12 대 비
주가지수	725.94	666.67	737.97	664.88	850.03	945.71	+ 219.77
		(△59.27)	(12.03)	(△61.06)	(148.16)	(219.77)	
거래량(만주)	1,470	2,120	5,046	2,197	4,439	6,878	+ 5,408
예탁금(억원)	24,416	24,530	27,932	27,184	30,937	40,178	+ 15,762

〔圖 II - 1〕 株式市場



金融實名制 실시 초기 증권시장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金融市場 安定化政策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실명제에 대한 不安心理가 해소되면서 점차 安定勢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圖 II - 1〕은 금융실명제 실시 후 우리나라 株式市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은 8~9월중 대체로 株式去來額이 격감하고 株

價指數가 하락하였으나 10월 들어서는 주식거래액 및 주가가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일별로 보면 株價가 실명제 실시 처음 이틀간 약 8%나 下落하였으나 곧 실명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8월 말에는 다시 不安心理가 팽배하여 株價가 다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내 반등하였다³⁾. 株式市場은 1993년 10월 실명제 실시 초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1994년 2월 초에는 過熱을 걱정할 만큼 活況場勢를 보였다(表 II - 6) 참조).

한편 債券市場도 실명제 실시 초기 去來規模가 줄어드는 등 株式市場과 함께 위축되었으나 곧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表 II - 7>에

<表 II - 7> 金融實名制 實施 後 債券市場 推移

(單位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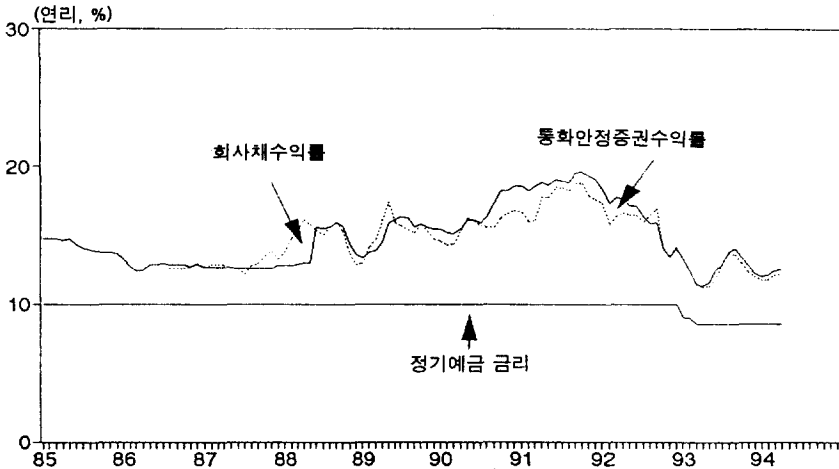
	1993년 8월	1993년 10월	1993년 11월	1994년 1월	1993년 8월 대비 증가율
채권거래대금 (일평균)	2,355	4,059	5,431	6,426	173
회사채 거래 (일평균)	1,259	1,860	3,181	3,489	177

의하면 債券去來代金は 1993년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기간평균금액으로 꾸준히 上昇하였다.

나. 金利

3) 實名轉換되지 않는 가명계좌라도 株式賣買注文이 가능하고 株式引出이 국제청에 통보되지 않아서 인출 후 소액계좌로 분할하여 賣却·引出이 가능하다는 조치도 株價上昇에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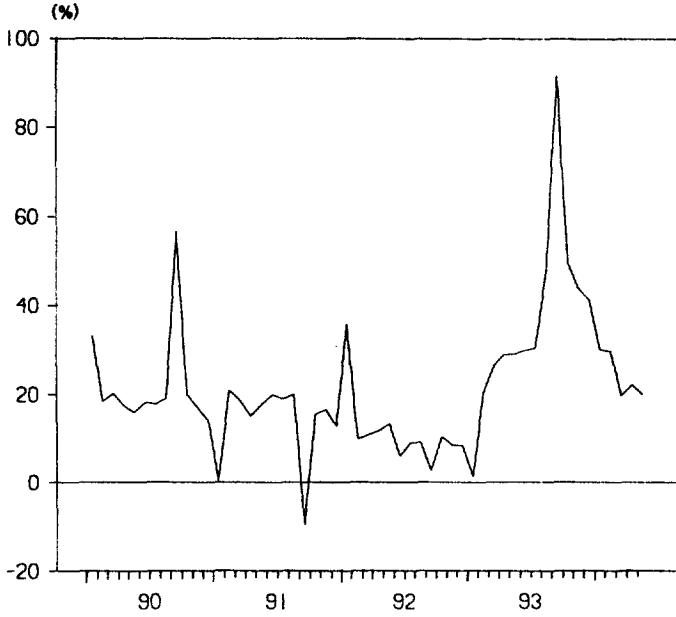
[圖 II -2] 主要金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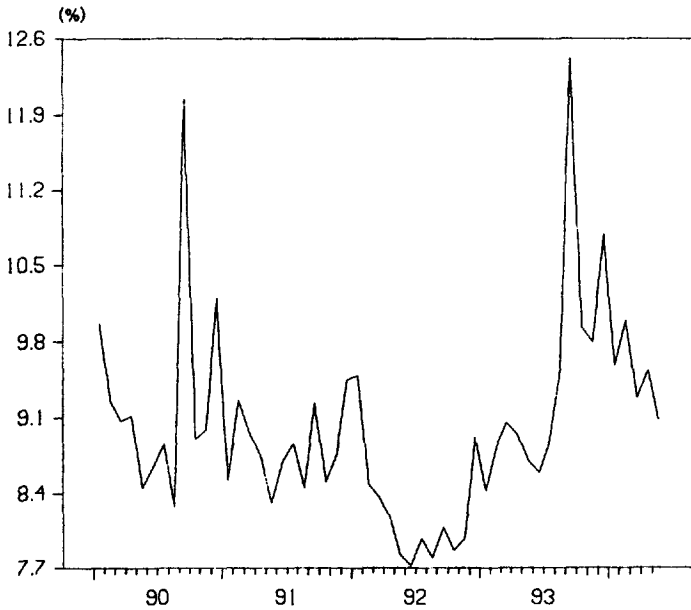
[圖 II -2]는 실명제 실시 후 금융부문간이나 금융과 비금융부문간의 자금흐름이 동결되는 金融梗塞으로 8~9월중 會社債金利 등 주요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8월 12일 會社債金利(잔존만기 3년물)는 年 13.55%이었으나 8월 30일에는 1%포인트 정도 높아진 年 14.50%의 最高値를 기록하였다. 이후 金利가 차차 안정되면서 1994년 1월 말 會社債 金利는 年 11.8%로 실명제 실시일인 1993년 8월 12일에 비해 1.75%포인트 하락하였다. 會社債 金利뿐 아니라 콜金利도 통화의 신축적 운용으로 金融機關의 資金事情이 점차 好調를 보이면서 安定基調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金利의 상승 후 하락현상은 실명제 실시 후 現金需要增大 및 예금회전율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金融梗塞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축적 通貨政策에 연유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金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通貨動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圖 II - 3] 現金通貨 增加率



[圖 II - 4] 現金通貨/總通貨 比率



다. 通貨動向

사전예고 없는 전면적인 金融實名制의 시행과 함께 巨額 現金引出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규정함으로써 金融市場에서의 대규모 자금이탈과 금융권간의 資金移替 등 금융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現金保有性向의 증대, 通貨流通速度의 하락, 私債市場의 위축 등 금융경색이 초래되었다.

[圖 II - 3]과 [圖 II - 4]는 각각 現金通貨(말잔) 증가율과 현금통화/총통화 비율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假名去來를 할 수 없고 은행자기앞수표도 발행 및 지급단계에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현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1993년 4~7월중 현금통화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0% 수준이었으나 金融實名제가 실시되었던 1993년 8월 現金通貨는 말잔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으며 9월에는 무려 92%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통화/총통화 비율도 그 이전의 8.6~8.9% 수준에서 1993년 8월과 9월중 각각 9.7%와 12.9%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金融實名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金融市場이 안정되면서 1993년 10월부터는 現金通貨 保有性向이 점차 둔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현금통화 보유성향은 은행자기앞수표, 신용카드, 은행지로 및 계좌이체 등의 확대에 따라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現金通貨 保有性向이 높아졌으며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금통화 보유성향 증대현상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1993년 초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現金去來나 退藏 등을 위해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지면 무엇보다도 銀行의 信用創出過程에서 현금인출이 증가함에 따라 通貨乘數가 하

락한다⁴⁾. 通貨乘數가 하락하면 本源通貨供給이 일정할 때 통화공급의 부족이 초래된다.

한편 통화수요면에서도 現金通貨 保有性向의 증대와 예금거래의 위축 내지 동결로 通貨流通速度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預金去來가 위축되는 것은 假·借名計座의 경우 실명전환이나 확인 이전까지는 去來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고 巨額現金 純引出에 대한 국세청 통보로 인출둔화 및 금융기관 이용기피현상이 나타나며 향후 경제

<表 II - 8> 預金銀行 預金回轉率

(單位 : 回/月)

	총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1990	6.7	23.2	163.8	10.7	15.0	0.63	0.15	1.60
1991	8.2	28.7	246.2	11.9	15.0	0.72	0.14	1.64
1992	7.9	28.5	295.9	13.4	14.2	0.75	0.11	1.76
1993	7.9	32.8	444.9	15.3	14.4	0.78	0.11	1.83
1993. 6	8.1	34.2	476.2	16.2	15.3	0.80	0.09	1.99
1993. 7	8.2	34.3	486.8	15.5	15.6	0.81	0.08	2.00
1993. 8	7.4	32.3	461.8	14.4	13.8	0.70	0.08	1.60
1993. 9	7.2	30.6	408.6	13.7	12.3	0.73	0.10	1.52
1993. 10	7.6	33.2	471.4	14.1	12.9	0.72	0.08	1.55
1993. 11	8.0	34.3	471.3	15.9	13.9	0.79	0.08	1.79
1993. 12	9.4	38.5	517.5	18.7	15.0	0.93	0.15	2.06
1994. 1	8.7	37.6	516.7	16.8	14.1	0.82	0.13	1.76
1994. 2	7.6	32.8	489.0	15.3	11.8	0.74	0.11	1.62

資料 : 韓國銀行, 『調査統計月報』, 1994. 4.

4) 通貨乘數는 $1/[r+c(1-r)]$ 로 정의된다(단, c: 현금통화비율, r: 예금지급준비율).

사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資金의 假需要가 증대하기 때문이다. <表 II-8>은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要求拂預金 및 貯蓄性預金の 회전율이 급격히 낮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중 예금은행의 總預金回轉率은 전월보다 무려 10%나 낮아졌으며 1993년 10월에 가서야 총예금회전율이 다시 上昇하기 시작하였다. 예금종별로 보면 1993년 8월중 現金保有增大와 은행자기앞수표 사용둔화를 반영하여 別단예금의 회전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저축성예금의 회전율은 전월에 비해 무려 20%나 낮아졌다. 한편 당좌예금의 회전율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크게 낮아지지 않다가 9월에 들어서야 크게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南相祐(1993)와 左承喜·劉載均(1993)의 연구에 의하면 預金回轉率과 通貨의 流通速度는 通貨增加에 따른 공동추세요인을 제거할 때 서로 밀접한 陽(+)의 相關關係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예금회전율 하락은 通貨의 유통 속도하락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다시 通貨需要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通貨供給의 鈍化와 통화수요의 증대에 따른 金利上昇 및 景氣萎

<表 II-9> 主要 通貨指標 推移

(單位 : %)

	1992	1993. 7	1993. 8	1993. 9	1993. 10	1993. 12	1994. 1
M2 (평잔) ¹⁾	18.4	18.9	20.6	21.5	20.8	17.3	14.9
M3 (말잔) ¹⁾	20.9	21.2	21.7	21.9	19.8	18.5	17.9
본원통화(평잔) ¹⁾	11.2	20.0	24.6	24.9	36.4	22.9	19.3
현금통화(말잔) ¹⁾	8.4	30.6	47.7	91.7	49.7	41.1	30.6
총통화승수	5.32	5.47	5.59	4.97	5.35	4.86	
현금/총통화	0.09	0.09	0.10	0.12	0.10	0.11	
지급준비율	0.11	0.11	0.09	0.09	0.10	0.11	

註 : 1)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縮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本源通貨供給을 늘리고 支給準備率을 낮추어 통화공급을 늘려가야 한다. <表 II- 9>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후한 주요 通貨指標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金融實名制 실시 후 정부당국은 本源通貨(평잔) 증가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현금보유증대에 따른 通貨乘數下落을 억제하기 위하여 支準管理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8~10월 총통화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⁵⁾.

한편 1993년 10월 이후 金融市場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 동안 플렸던 通貨를 환수하기 위하여 다시 本源通貨供給을 억제하고 支給準備를 높여서 通貨乘數의 하락을 유도하였다.

라. 企業의 資金事情과 私債市場

금융실명제 실시 후 金融梗塞으로 1993년 8~9월중에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역시 10월부터는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表 II- 10>은 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각종지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8~9월중에는 어음교환액이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預金の 回轉率과 預貸率이 낮아지는 한편, 會社債 收益率 등 금리수준의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대체적으로 나빠졌다. 그러나 10월에는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이들 지표가 好轉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사정은 8~9월에 비해 나아졌다고 하겠으나 어음의 부도율은 8~9월에 비해 오히려 上昇하였다.

1993년 10월 이후 어음의 不渡率이 높아진 것은 擔保力과 信用不足 등으로 制度金融圈의 이용이 어려운 中小企業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私債市場의 위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5) 通貨需要函數와 流通速度函數를 이용하여 예측해보면 1993년 3/4분기의 통화량은 예측치보다 4~5% 높고 流通速度는 예측치보다 4%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表 II - 10〉 企業의 資金事情 推移

	1992	1993. 7	1993. 8	1993. 9	1993. 10	1993. 12	1994. 1
전국어음교환 (일평균, 조원)	19.2	18.4	16.8	17.2	18.2	20.6	20.4
전국어음부도율 (%)	0.12	0.11	0.12	0.11	0.16	0.15	0.13
시중은행요구불 예금회전율(회)	48.4	58.0	56.7	53.8	58.6	67.3	67.6
일반은행 예대율 (%)	96.7	112.3	110.2	107.2	109.9	97.6	106.2
회사채 수익률 (3년, %)	16.2	12.9	13.8	14.0	13.4	12.2	12.0

인 것으로 보인다.

私債市場은 금융실명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借名을 이용한 거래가 어렵게 되면서 巨額 사채전주가 資金運用을 급격히 축소하면서 어음할인 등 사채거래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대신 가급적 金融機關 利用을 회피하면서 기업과 직접 거래하며 소액 현금거래 형태의 거래가 늘어나게 되었다(財務部 1994년 2월 보고서 참조).

私債市場의 위축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資金難이 가중되자 정부는 여러 가지 支援對策을 마련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保證限度 擴大,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緊拏運轉資金, 긴급경영안정 지원자금 확대, 지역밀착형 소형금융기관의 業務規制 緩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장영자 거액어음부도사건으로 사채거래가 더욱 위축되었으며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단의 보고서(1994년 2월)에 의하면 일부 小規模 私債業所에서는 위험부담을 이유로 높은 割引金利를 적용하여 소규모로 어음을 할인하고 있으며 비교적 信用이

<表 II - 11> 企業部門의 資金調達

(單位 : 조원, %)

	1992년		1993년		1993년 분기별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I	II	III	IV
자금조달	54.9	100.0	61.5	100.0	13.7	14.5	18.5	14.8
간접금융	19.9	36.3	20.2	32.8	2.3	6.5	10.3	1.1
직접금융	22.7	41.4	32.8	53.3	9.6	6.9	6.7	9.6
(기업어음)	(4.2)	(7.6)	(9.0)	(14.7)	(4.3)	(0.5)	(1.6)	(3.6)
(주 식)	(7.2)	(13.1)	(8.6)	(14.0)	(1.7)	(2.0)	(1.7)	(3.2)
(회 사 채)	(6.6)	(12.1)	(9.2)	(15.0)	(2.8)	(3.6)	(2.7)	(0.1)
해외차입	2.5	4.6	-1.3	-2.1	0.3	-0.4	0.1	-1.3
기 타 ⁶⁾	9.7	17.7	9.9	16.0	1.4	1.4	1.3	5.8
(기업신용)	(4.9)	(8.9)	(4.5)	(7.4)	(0.8)	(1.0)	(0.7)	(2.0)

註 : 1) 기업신용, 정부차입,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2) 금액은 증감액을 나타냄.

확실한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계수표나 신용카드 少額貸出이 이루어지고 있고 高利의 개인적 代金行爲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⁶⁾.

한편 1993년중 株價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消費支出增加勢가 둔화됨으로써 자금순환표상에서는 기업부문의 資金不足規模가 증대되고 개인부문의 資金剩餘規模가 늘어났다. <表 II -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중 기업부문은 1992년보다 늘어난 61조 5천억원을 金融市場에서 조달하였는데 이와같이 資金調達規模가 늘어난 것은 금융실명제 이후 通貨의 신축적 공급에 따른 市中資金事情 호전, 市場金利의 하향안정세, 證券市場 好調 등으로 자금조달여건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資金調達經路를 형태별로 보면 企業어음과 會社債發行을 중심으로 直接金融의 비중이

6) 財務部, 『金融實名制 施行 6個月에 대한 評價』, 1994. 2.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중 資金調達規模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이 확대되고 通貨의 신축적 공급으로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조달 형태별로는 中小企業 資金支援 擴大와 商業어음割引 增加 등으로 間接金融比重이 늘어난 반면 證券市場의 위축으로 直接金融의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초기충격을 극복하고 株式市場이 活況을 보인 4/4분기에는 간접금융이 크게 줄어들고 直接金融이 크게 늘어났다.

마. 金融貯蓄

實名制 실시 후 금융저축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꾸준히 증가하였다. 당초에는 실명제 실시로 資金의 金融圈 離脫이 촉진되어 금융저축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거나 實名轉換義務期間 후에는 금융자금이 대거 금융권을 이탈한다는 10월 大亂說이 한때 유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기우로 끝나고 말았다. <表 II-12>에 의하면 銀行, 金錢信託, 短資 등 금융기관의 受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投信은 은행 등의 자금인출로 8~9월중 수신이 격감하였으며 讓渡性 預金證書 賣出도 실명제의 영향을 받아 無記名 金融資産으로서의 매력이 상실되면서 10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信用金庫의 수신은 8월 25일 金利引上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金融實名制 실시 후 株式·債券市場의 안정회복과 함께 금융저축이 꾸준히 늘고 있음은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두 가지 사실은 金融市場이 실명제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여 새로운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表 II - 12> 金融貯蓄動向

(單位 : 조원)

	1993. 7	1993. 8	1993. 9	1993. 10	1993. 11	1993. 12
금융저축순계	377.4	381.0	388.5	396.9	405.4	414.2
저축성예금	77.3	78.1	79.8	80.4	80.7	82.5
C D	14.0	13.6	13.3	13.1	15.6	16.5
비은행저축	255.3	256.2	260.8	269.1	276.0	282.9
보험	49.4	49.8	50.3	51.0	51.5	52.2
금전신탁	66.4	68.0	69.9	73.1	75.6	78.5
단기금융	25.3	25.4	26.9	25.5	32.0	32.0
상호금융	26.7	26.9	27.7	28.1	28.6	29.9
신용금고	16.8	16.7	17.0	17.3	17.7	18.4
투신	47.4	46.2	45.0	45.5	46.2	47.3
국·공·금융채	26.5	26.6	26.8	27.1	27.7	27.9
주식	36.8	37.2	37.4	37.7	37.9	38.4
회사채	39.4	39.7	40.2	40.3	40.5	40.1

3. 實物經濟에 미친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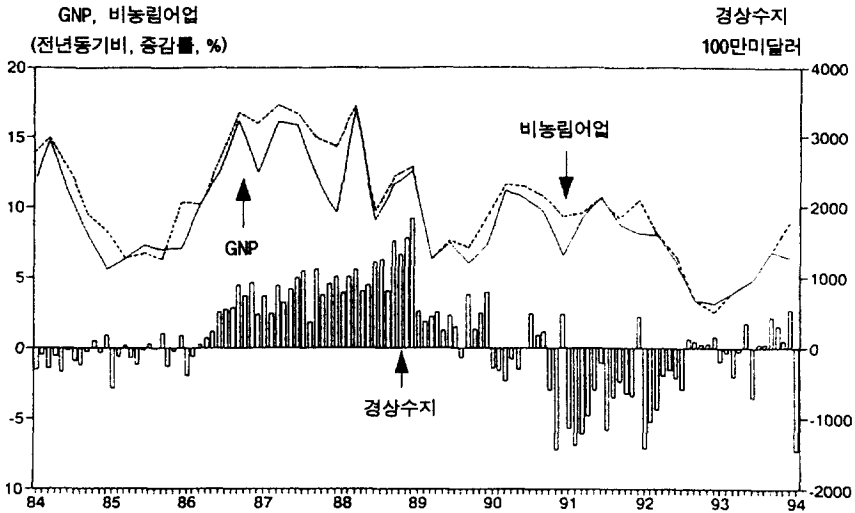
金融實名制는 우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實物經濟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實名制의 衝擊이 실시 후 두 달 안에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實物市場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하겠다. 즉 실명제 실시 후 金融梗塞이 實물경기위축과 물가불안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 經濟成長과 物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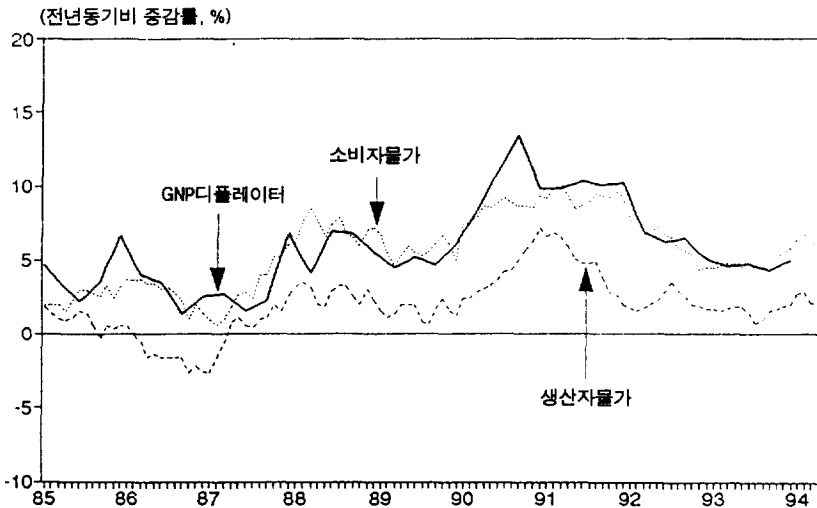
[圖 II - 5]와 [圖 II - 6]은 經濟成長, 國際收支 및 物價上昇率 推移

를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3/4분기의 GNP 成長率은 6.8%로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992년 4/4분기 이후의 景氣 恢復勢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4/4분기에 들어서는 經濟成長率이

[圖 II - 5] 經濟成長



[圖 II - 6] 物價



6.4%로 낮아지고 消費者 物價上昇率이 다시 5%를 상회하는 등 成長鈍化 · 物價不安의 징후가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農林水産業의 부진에 따른 것이다. [圖 II - 5]에 보인 비농림어업의 성장세는 4/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냉해, 해저리현상 등에 따른 農林漁業部門의 부진은 1993년 4/4분기 이후 식료품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物價不安의 원인이 되었다.

<表 II - 13>은 실명제 실시 후 實物經濟의 월별동향을 보이고 있다. 월별동향은 추석 및 구정효과 등에 의해 심한 계절변동을 보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9월중 生産指數 및 生産者出荷指數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10월 들어 다시 크게 둔화된 것은 추석효과가 개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절변동효과를 감안하면 실명제 실시 이후 實物市場이 충격을 받았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는 1/4분기의 GNP 成長率이 8.8%를 기록하여 오히려 株式市場過熱에 이어 景氣過熱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實物市場이 실명제의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실명제 실시 후 景氣好轉을 실명제의 긍정적 효과 때문

<表 II - 13> 實名制 實施 後 實物經濟動向

(單位 : %)

	1993. 7	1993. 8	1993. 9	1993. 10	1993. 12	1994. 1
제조업(변화율)						
생산지수	2.3	3.1	10.1	3.8	11.9	18.7
생산자출하지수	3.2	4.6	12.0	4.7	13.1	18.6
생산자재고지수	4.5	4.1	1.4	1.4	2.3	2.9
가동률지수 (1990 = 100)	99.9	94.3	99.1	101.5	105.4	102.4
失業率	2.7	2.6	2.4	2.6	2.6	2.9

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이다. 1992년 4/4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 추세는 실명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實物投機와 消費

金融實名制를 실시하면 假·借名 자금이 金融圈을 이탈하여 實物投機資本으로 전환되거나 奢侈性消費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表 II -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價, 住宅賣買價格 등 不動産價格은 정부의 강력한 실물자산 투기억제정책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金 등 貴金屬의 가격은 실명제 실시 초기 다소 上昇하였으나 곧 안정되었다.

實名制 실시 후 1993년 3/4분기와 4/4분기에는 耐久財를 중심으로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크게 증가하는 등 消費增大의 징후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3년 하반기에는 消費財뿐 아니라 전품목의 출하가 크게 증가하였고 GNP 成長率도 상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消

<表 II - 14> 實名制 實施 後 實物資産價格과 消費

(單位 : %)

	1991	1992	1993					1994. I
			年中	I	II	III	IV	
전국지가 ²⁾	12.8	-1.3	-7.4	-0.4	-2.9	-2.6	-1.6	-0.4
주택매매가격	-0.5	-5.0	-2.9	-4.3	-3.2	-3.0	-3.3	-2.9
도소매판매액	8.7	5.5	8.5	8.3	8.3	8.3	9.0	7.1
내수소비재출하	11.4	5.2	4.0	2.6	-0.4	5.1	8.7	6.8
(내구재)	(12.6)	(4.8)	(7.4)	(8.6)	(-1.4)	(7.5)	(15.3)	(9.8)
(비내구재)	(10.9)	(5.3)	(2.4)	(0.0)	(0.1)	(4.0)	(5.5)	(5.3)
최종소비지출	9.3	6.8	5.3	5.4	5.0	5.2	5.4	6.4

註 :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全國 地價上昇率은 前期對比 變化율임.

費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附加價値 기준 최종소비지출은 1993년 하반기중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1993년 4/4분기중 耐久財消費가 크게 증가한 것은 금융실명제보다는 1994년 초로 예정되었던 特消稅 引上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내구재를 早期購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 1/4분기중에는 내구재·사치재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서 소비패턴의 고급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過消費 現象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1994년 초 經常收支의 적자 反轉은 消費增加보다는 投資增大에 연유하고 있다.

4. 過去事例와의 比較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충격은 實名轉換期間이 마감되는 1993년 10월에 크게 弱化되었음을 보았다. 이번 金融實名制 실시의 충격을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된 過去事例와 비교하여 그 충격의 정도를 판단하고자 한다.

금융실명제는 1982년 5월의 거액어음사건을 계기로 처음 논의되었으며, 동년 7월에 동일한 事件의 再發을 방지하기 위해 1983년부터 金融去來實名制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실명제의 사전예고로 預金引出과 現金保有가 급격히 증대하는 金融混亂 現象이 발생하자 동년 12월에는 金融實名去來에 대한 法律이 제정되면서 실명거래 실시일을 1986년 이후로 연기시켰다. 일단 연기된 實名制 實施는 제6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후 다시 논의되다가 1988년 10월에는 금융실명제를 1990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정시한에 임박한 1989년 12월 당시의 景氣沈滯를 이유로 다시 연기하였다.

實名制 實施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新政府가 들어서고 난 후부터이다. 1993년 2월 新政府가 들어서면서부터 選舉公約의 이행과 改革推進을 위해서 金融實名制를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졌고, 실제로 1993년 8월에는 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金融實名制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影響을 미친다. 그러나 실명제 관련사태들간의 비교를 위해 本節에서는 실명제의 1차적 충격인 金融衝擊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실명제 충격은 가장 먼저 金融市場, 그 중에서도 개인의 預金 및 現金保有에 직접 影響을 미쳐서 일반적으로 預金回轉率의 下落과 現金保有性向의 增大로 나타난다. 예금회전을 하락은 通貨流通速度 下落과 이에 따른 通貨需要 增大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현금보유성향 증대는 通貨乘數 下落과 이에 따른 通貨供給 減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일부는 通貨流通速度의 減少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실명제의 通貨·金融衝

<表 II - 15> 金融實名制 事例의 金融衝擊 比較

(單位 : %)

	예금회전율	현금통화비율	M2공급
1982년 7.3조치	-14.9	1.6	5.0
1988년 10월 조치	-11.2	3.6	0.8
1993년 실시 기대	-2.4	8.1	-0.2
1993년 8월 실시	-9.3	11.3	2.0

註 : 모든 자료는 趨勢와 季節變動效果를 제거한 것이고 預金回轉率과 現金通貨比率는 通貨供給衝擊效果를 제거하였음. 단, 1982년 7.3조치의 예금회전율은 市中銀行 要求拂預金回轉率을 이용한 것임.

1982년 7.3조치 : 1982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변화율.

1988년 10월 조치 : 1988. II ~ III분기 대비 1988. IV ~ 1989. IV분기중 변화율

1993년 실시 기대 : 1992년 하반기 대비 1993년 상반기 변화율

1993년 8월 실시 : 1993년 1~7월 대비 1993년 8~9월중 변화율

擊에 대응하여 정부는 정책적으로 通貨供給量을 조절하게 된다.

<表 II - 15>에서는 실명제 사례별로 預金回轉率, 現金通貨/M2比率, M2供給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1993년 8월의 實名制 전격 실시에 따른 충격은 과거사례에 비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3년의 실명제 관련 충격은 그 이전에 비하여 現金保有性向 增大에 의한 通貨供給 減縮의 效果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左承喜·劉載均(1993)은 각 충격별 계량분석을 통하여 金融衝擊의 規模를 試算한 바 있으며, 同 研究에서도 1993년 8월 실명제 전격 실시의 金融衝擊이 그 이전 사례에 비하여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政策當局은 실명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對處하였다. 실제로 1993년 8~9월중 總通貨供給은 1993년 1~7월 대비 通貨乘數가 12%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政府의 政策對應을 감안할 때 1993년 8월의 실명제 실시에 따른 總金融衝擊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現金通貨比率 증대의 通貨乘數效果가 本源通貨의 蒸發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金融實名制 實施의 충격이 조기에 완화된 것은 이와 같은 政策對應에도 크게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5. 評價

우리 사회의 不正腐敗와 不條理, 음성 불로소득과 불건전 자금거

7) 左承喜·劉載均(1993)은 1988년 10월 조치와 1993년 실명제 실시 기대에 따른 總金融衝擊이 통화의 超過需要壓力으로 나타난 반면 1982년 7월 조치와 1993년 8월 실명제 전격 실시의 總금융충격은 통화의 超過供給壓力으로 나타났다.

래는 모두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므로 金融實名制는 정경유착을 차단하고 각종 不條理의 발생소지를 줄이며 私債市場과 地下經濟를 위축시켜 金融去來를 正常化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利子·配當·讓渡所得 등 금융소득의 人別合算이 가능해짐에 따라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통한 租稅衡平性 提高가 가능해지고 相續·贈與稅의 회피를 막을 수 있으며 無資料去來의 防止 등 稅源管理가 용이해질 것이다.

金融實名制 실시는 이와 같이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法的 강제력을 동원하여 金融實名制를 실시하면 짧은 기간 안에 실명제가 정착되어 새로운 金融秩序 및 租稅正義가 구축되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만약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단기간 내에 모두 이루려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費用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金融實名制의 費用이란 바로 새로운 金融秩序와 租稅正義를 구축하는 데 수반하는 비용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社會不條理를 척결하고 租稅衡平을 이루려면 자금의 金融圈 離脫과 새로운 형태의 地下經濟構築 등 금융실명제에 역행하는 資金의 흐름으로 금융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유발되는 經濟的 費用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개혁은 金融·稅制 등의 경제개혁과는 달리 완전할 수가 없다. 資金을 은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金融慣行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한 단기간 내의 완전한 정착은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金融實名制 실시로 假名預金은 거의 모두 실명전환되었지만 借名의 실명전환실적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밀들었다. 借名의 實名轉換實績이 3조 5천억원 정도에 그쳤던 것은 實名制 실시 이전 우리나라 金融資産이 본명이든 비본명이든 대부분 實名化되어 있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로도 合意借名 등 비본명 실명예금을 본명 실명예금으로

전환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金融實名制는 金融實名去來 義務化와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첫 단계인 金融實名去來 義務化 段階를 借名の 실명전환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가운데 마무리지었다. 假·借名の 실명전환액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추계된 비실명화금액에 근접한 금액이라는 사실은 금융실명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초기충격도 크지 않았을 것임을 쉽사리 유추하게 한다. 왜냐하면 金融實名制의 정식도입으로 實名化率이 크게 높아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2절과 제3절의 여러 가지 經濟統計分析은 바로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초기에는 금융실명제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추측과 기대 및 심리적 불안으로 證券市場이 위축되고 現金保有性向이 증대되며 通貨流通速度가 하락하는 등 전형적 金融梗塞現象이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의무화조치가 기존 금융질서의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지 않음이 점차 널리 인식되고 정부도 충격완화를 위한 신속한 제반조치를 취함에 따라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마감되는 1993년 10월경에는 金融實名制의 전격 실시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거의 해소되고 經濟도 安定勢를 회복하게 되었다⁸⁾. 實名轉換義務期間 동안 금융실명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거의 해소되었음은 실명전환의무기간 후 金融圈으로부터의 大規模 資金引出로 경제혼란이 야기됨이 없이 오히려 金融貯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재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金融實名制를 지지하는 가운데 이제 금융실명

8) 정부는 實名制 實施에 따르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稅務調査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등 1993년 8월 31일과 1993년 9월 24일에 두 차례의 補完措置를 취한 바 있다.

제 정착을 위한 基盤이 構築되었다. 이제부터 金融實名制는 관행으로 착실히 정착되어 나가야 하며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變化와 改革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金融實名制 실시 후 충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지만 이는 金融實名制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음을 의미할 뿐 金融所得의 綜合課稅와 관련하여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金融實名制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밝히고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금융실명제 정착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金融實名制의 효과도 시간이 감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融實名制의 初期衝擊을 극복하였다고 해서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예를 들면 제2의 장영자 어음부도사건은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도 과거의 金融去來慣習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時差를 두고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借名預金이라도 일단 實名確認을 받으면 입출금이 자유로우므로 향후 稅制改革過程에서 새로운 副作用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하게 되면 차명계좌의 實名化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속단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제2단계인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전후하여 實名制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Ⅲ. 金融實名制에 대한 國民意識 設問調查 結果分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金融實名制의 成果를 評價하고 향후 補完해야 할 政策方向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事業者, 貯蓄者, 金融機關 從事者를 대상으로 設問調查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실명제 실시 이후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金融慣行 및 納稅行態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設問調查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기관 및 정책기관 또는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들과는 調查內容과 調查對象 면에서 다르다. 조사대상은 크게 事業者(사업), 一般貯蓄者(저축), 金融機關從事者(기관)로 나뉘지고, 설문조사도 각 대상자별로 별도로 진행되었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에 이용된 調查方法과 標本의 特性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제2절에서는 세 가지 설문지에 공통으로 다뤄진 금융실명제에 대한 國民意識調查 結果를 대상자별로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인 標本設計 過程은 부록에서 다룬다.

1. 調查設計 및 標本特性

가. 設問調查의 目的

設問調查의 對象은 크게 事業者와 一般貯蓄者, 金融機關從事者로

분류되고 조사의 내용도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다. 調查의 目的은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金融實名制에 대한 社會 全般의 認識變化를 評價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특히 사업자조사는 金融實名制에 대한 국민의식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업태별 課稅資料 陽性化 程度를 測定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저축자와 금융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식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金融慣行의 變化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나. 設問調查의 內容

금융실명제의 성패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 사용의무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와 더불어 ① 金融去來 秩序의 正常化, ② 租稅 衡平性 提高를 위한 여건 조성, ③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라는 실명제 실시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金融實名制에 대한 評價와 금융실명제의 影響 및 向後 補完對策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정착 정도, 금융실명제 고유목적의 달성 정도 및 기존의 실명제에 대한 조사분석과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에 반영하였다. 사업자조사의 경우는 특히 課標陽性化 程度, 無資料去來 慣行, 稅負擔 變化를 測定할 수 있는 내용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단, 조사대상에 따라 설문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자별 조사의 내용은 <表 III- 1>에 정리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다. 調查方法 및 調查對象

설문조사를 통한 金融實名制에 관한 既存의 分析에는 한국개발조사연구소(1993. 9)¹⁾, 산업연구원(1993. 8)²⁾, 중소기업협동조합(1993.

9)³⁾, 한국경제신문·럭키금성연구소(1993. 9)⁴⁾, 경실련(1993. 9)⁵⁾, 김원길(1993. 10)⁶⁾, 한국무역협회(1993. 10)⁷⁾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설정된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며, 조사대상이 輸出業者 혹은 中小事業體 등으로 제한적이고, 김원길의 1,200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500명을 제외하고는 유효표본의 수가 300개 이하로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용한 조사는 調査對象의 範圍를 擴大하고, 표본크기도 調査期間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증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각 조사대상자별로 표본수를 700개 정도를 목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2천 개의 표본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방법은 개별면접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전화면접이나 우편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차를 제외시키고자 하였다.

1) 韓國갤럽調査研究所, 『金融實名制에 대한 中産層 意識調査』, 1989. 9.

유효표본은 생활수준 기준으로 중산층(자가용, 자기집 소유, 월 150만원 이상 소득층)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500명.

2) 117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4) 경제인, 시민 등 118명에 대한 설문조사.

5) 曹尤鉉, 『金融實名制 補完政策, 이렇게 해야 한다』, 經實聯, 1993. 9.

서울, 인천, 수원, 안산, 순천 등에 소재한 120개의 중소제조업체와 도소매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6) 金元吉, 『金融實名制에 대한 輿論調査 報告書』, 未發刊 資料, 1993. 10.

서울시대 중·소·대기업에 근무하는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함.

7) 韓國貿易協會, 『金融實名制의 輸出業界에 미치는 影響』, 1993. 10.

1992년도 수출실적 기준 50만불 이상의 기업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한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함.

〈表 Ⅲ - 1〉 調査對象者別 調査內容

대상자 내 용	사업자	일반저축자	금융기관종사자
기 초 질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학력 - 종업원수 - 업종 - 사업장 소유형태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금융자산 총액 - 월 소득규모 - 주식투자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 금융기관 근무 경력 - 학력
납세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납세형태 - 장부기장방식 - 추계조사자 실태 - 표준소득률에 대한 의견 - 세무조사경험 - 세무처리 용역 이용료 - 한계세액공제에 대한 인지도 및 신청유무 - 월평균 매출 및 1993년 2기 부가세납부액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의견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제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 - 금융실명제 실시 목적에 대한 실명제의 기여도 - 비실명거래와 금융실명제의 사회적 문제 - 금융실명제 추진상황 및 후속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2. 금융실명제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 - 금융실명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 반대하는 계층 - 금융실명제에 따른 불편경험 및 사례 3. 금융실명제의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와 개혁의 관계 - 금융실명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완대책 		
금융실명제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변화 - 무자료거래 비중 변화 - 금융관행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구성의 변화 - 금융자산종합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의견 - 금융관행의 변화 - 비실명거래에 대한 의견 -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활동계좌 수의 변화 - 고객의 금융행태의 변화 - 비실명거래에 대한 의견 -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表 Ⅲ- 2> 有效標本 크기 및 標本誤差⁸⁾

대 상 자	유효표본수	최대허용 표본오차
사 업 자	664	±3.79
일반저축자	675	±3.77
금융기관종사자	638	±3.88

라. 資料處理 方法

조사된 설문지 중에 檢討 및 檢證을 거쳐 有效標本으로 확정된 설문지는 코딩(coding), 펀칭(punching), 편집(editing)과정을 거쳐 IBM 486DX2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집계 및 모수추정하였다.

마. 標本資料의 特性

1) 事業者

<表 Ⅲ-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業態別 標本分布는 모집단 분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은 業態別·事業形態別(法人, 個人)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줌으로써 調查結果를 직접 모집단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이론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sampling error)의 계산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한다. 모집단의 크기가 크고 표본의 수가 모집단의 5%에 미치지 못하므로 조정계수(correction factor)는 무시한다.

$$SE = \pm 1.96 \sqrt{\frac{P(100-P)}{n}}$$

SE : 표본오차, P : 응답비율, n : 표본의 수

〈表 III - 3〉 業態別 構成比 比較

(單位 ; 개, %)

업 태 별	업체수 (모집단)	구성비 (모집단)	업체수 (표본)	구성비 (표본)
제조업	86,858	16.4	127	19.1
도매업	64,454	12.2	66	9.9
소매업	172,080	32.5	191	28.9
음식 및 숙박업	13,227	16.2	72	10.8
건설업	85,727	2.5	17	2.6
운수 창고 통신업	4,899	0.9	12	1.8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19,641	3.7	41	6.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2,231	15.5	138	20.8
합 계	529,117	100.0	664	100.0

업태별로 특이한 사항은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조사된 업체는 거의 飲食業에 해당하고 宿泊業種은 조사결과를 거의 얻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종도 임대업은 거의 조사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음식 및 숙박업은 음식업으로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은 不動産 仲介業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一般貯蓄者

유효표본의 年齡別 構成比를 보면 '31~40세(이하 30대)'가 51.9%로 가장 많고, '20~30세(이하 20대)'가 29.6%, '41~50세(이하 40대)'가 10.7%이고 '51세 이상(이하 50대)'도 7.9%였다.

응답자의 所有 金融資産 規模로 보면 '1천만~5천만원'이 39.4%, '5백만~1천만원' 26.4%, '5백만원 미만' 22.8%, '5천만~1억원' 6.9%, '1억원 이상'은 4.5%로 분포되었다. 연령에 따른 금융자산 규모에서 5천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0대'는 28.3%, '40대'는 27.8%, '30대'

<表 Ⅲ- 4> 事業者 標本의 特性

(單位 : 명, %)

특 성	사례수	비 율
연령별		
20대	47	6.3
30대	231	35.3
40대	223	34.9
50대 이상	163	23.5
학력별		
국졸 이하	30	5.3
중졸	61	10.4
고졸	329	53.9
대재 이상	228	30.5
부가세 납세 형태		
법인	91	3.6
일반과세자(개인)	221	39.9
과세특례자	262	41.8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자	61	9.6
비등록사업자	31	5.1
사업자구분		
법인	90	3.6
개인	574	96.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15.7
간이기장	123	20.7
일기장	180	30.2
기장 안함	196	33.3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미만	60	9.6
100~300만원 미만	192	34.9
300~500만원 미만	68	13.0
500~1,000만원 미만	93	17.5
1,000~3,000만원 미만	82	15.0
3,000~7,000만원 미만	35	5.0
7,000만원 이상	62	5.0

註 : 구성비는 업태별 · 사업형태별 추출률로 가중조정된 결과임.

는 8.9%, '20대'는 1.5%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금융자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러한 표본의 분포는 金融資産 規模와 年齡의 관계가 파악되는 김동원(1989)¹⁰⁾, 강석훈(1994)¹¹⁾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月所得 規模는 '1백만~2백만원'이 58.7%로 가장 많았고 '1백만원 미만' 24.2%, '2백만~3백만원' 13.4%, '3백만~5백만원' 2.6%, '5백만원 이상'은 1.2%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株式投資를 '한다'는 응답이 45.5%, '안한다'가 54.5%로 나타났으며, 주식투자 비율은 金融資産 規模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백만원 미만' 29.0%, '5백만~1천만원' 50.7%, '1천만~5천만원' 58.3%, '5천만~1억원' 75.6%, '1억원 이상' 75.9%)¹²⁾. 연령에 따라서는 '30대(50.7%)'와 '40대(48.6%)'가 '20대(39.0%)'와 '50대(31.4%)' 순으로 나타났다.

3) 金融機關從事者

勤務經歷을 기준으로 10년 이하가 77.1%, 10년 이상이 22.9%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20~40대의 직장인에 해당한다. 學歷 基準으로는

9) 각 설문과 특성이 독립적인가의 여부는 Pearson chi-square 통계량을 기준으로 P-value가 0.1(1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10) 金東源, 『金融實名制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과 政策對應 方向』, 高麗大學校 附設 經濟研究所, 1989. 12.

11) 姜錫勳, 「韓國家口의 金融資産 및 金融所得의 推定」, 『1994年度 定期學術大會 論文集』, 韓國金融學會, 1994. 6, pp. 677~707.

12) 금융자산 규모별 주식투자 비율은 金東源(1989)과 일치하지만, 김동원의 경우 '주식투자를 한다'가 75.5%로 상당히 높는데 이는 가능하면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큰 사람을 설문대상으로 택하려고 했다는 점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表 III- 5> 一般貯蓄者 標本の 特性

(單位 : 명, %)

특 성	사례수	구성비
전 체	675	100.0
연령별		
20~30세	200	29.6
31~40세	350	51.9
41~50세	72	10.7
51세 이상	53	7.9
금융자산 규모별		
5백만원 미만	153	22.8
5백만~1천만원	177	26.4
1천만~5천만원	264	39.4
5천만~1억원	46	6.9
1억원 이상	30	4.5
무응답	5	
월소득 규모별		
1백만원 미만	161	24.2
1백만~2백만원	391	58.7
2백만~3백만원	89	13.4
3백만~5백만원	17	2.6
5백만원 이상	8	1.2
무응답	9	
주식투자 여부		
한다	306	45.5
안한다	366	54.5

註 : 구성비는 무응답을 제외한 것임.

<表 III - 6> 金融機關從事者 標本の 特性

(單位 : 명, %)

특 성	사례수	구성비
전 체	638	100.0
근무경력		
5년 이하	264	41.4
5년~10년	228	35.7
10년~15년	104	16.3
15년 이상	42	6.6
교육경력		
고등학교 졸업	150	23.8
대학교 졸업	389	61.6
석사 이상	92	14.6

대학교 졸업자가 61.6%이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14.6%나 되었다. 또, 응답자들의 근무경력과 학력의 업종과의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金融實名制에 대한 評價

가. 金融實名制에 대한 贊反與否와 理由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금융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80.6%가 실시 이전과 이후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實名制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贊成比率이 실명제 실시 전의 90.2%에서 실

시 후 85.7%로 낮아졌고 反對比率은 9.8%에서 14.3%로 증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贊成하였지만 현재는 贊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9.6%)이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反對하였지만 현재는 贊成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5.1%)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9월에 실시된 設問調查 結果를 분석해 보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中産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경우 86.8%가 贊成, 9.5%가 反對 意見を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고, 金元吉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소재 직장예 근무하는 給與生活者 중 87.0%가 실명제 실시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表 III- 7> 實名制에 대한 贊反意見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사업자	(653)	69.7	15.6	4.7	9.9
금융기관종사자	(611)	86.6	5.2	6.2	2.0
일반저축자	(665)	84.4	8.1	4.5	3.0
계	100.0 (1929)	80.6 (1555)	9.6 (186)	5.1 (98)	4.7 (90)

이는 實名制 實施 직후와 비교해 지난 1년 동안 贊成率 상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贊成率 85.7%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시

13) 서로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를 수치상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변화의 방향을 추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에 포함시켰다.

간이 더 경과하더라도 贊成率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金融實名制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調査對象者別로 差異를 보여 사업자의 경우 실시 후의 반대비율이 25.5%로 금융기관종사자(7.2%)나 일반저축자(11.1%)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갤럽이 실시한 設問調査에서 自營業者의 23.5%가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14% 이상이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명제 실시를 기준으로 實名制에 대한 贊反態度가 찬성에서 반대로 변화한 응답자의 비율도 事業者集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명제로 인해 불편이나 불이익을 본 사람이 금융기관종사자나 일반저축자 집단보다도 사업자 집단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金融實名制가 꼭 필요한 措置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실명제에 대한 찬성비율보다 낮은 81.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金元吉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給與生活者의 90.1%가 積極的으로 必要한 政策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實名制에 대한 呼應度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Ⅲ-8> 實名制는 必要한 措置였는가

(單位: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르겠다
사업자	(663)	77.2	22.8	0.0
금융기관종사자	(620)	83.9	7.3	8.9
일반저축자	(668)	82.0	8.4	9.6
계	100.0 (1950)	81.3 (1586)	12.6 (245)	6.1 (119)

반면에 실명제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답변은 12.6%에 불과한데 '모르겠다'는 답변까지 합칠 경우 18.7%에 달하는 應答者들이 否定的인 立場을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를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조사대상자별로 큰 차이를 보여 실명제에 대한 반대율이 가장 높았던 사업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타집단의 약 3배에 달하는 2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명제 실시 후 金融實名制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한 사람들 중에는 실명제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시 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金融實名制 실시 전후의 贊反與否와 실명제가 필요한 措置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 항목간에 一貫性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實名制 실시 후의 찬성비율 85.7%에 비해 실명제가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81.3%로 다소 낮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사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두 질문의 성격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단순한 찬반의 경우 사회적 道德性의 回復과 連繫된 立場의 質問이지만 실명제가 필요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도덕성과는 다른 政府政策의 有用性에 관한 質問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社會 全般의 道德性 次元이 아닌 個人의 有用性 次元에서의 실명제에 대한 찬반은 8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가 필요한 조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4.7%가 그 이유로 '실명제를 실시해도 陰性的 去來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라는 점을 들었다. 그 다음에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經濟的 衝擊이 크므로'(19.6%),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되므로'(17.9%)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陰性的 去來

〈表 Ⅲ- 9〉 實名제가 必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理由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실명이 문제가 안되므로	경제적인 충격이 크므로	음성적인 거래는 불 변	금융거래 불편이 가 증	기 타
사업자	(153)	8.7	21.1	41.7	25.4	3.1
금융기관종사자	(124)	2.4	14.5	66.1	16.9	0.0
일반저축자	(131)	7.6	22.9	59.5	9.9	0.0
계	100.0 (408)	6.4 (26)	19.6 (80)	54.7 (223)	17.9 (73)	1.5 (6)

의 防止라는 實名제의 效果에 대해 信賴感을 갖고 있지 못할 뿐더러 실명제 실시에 따른 經濟的 衝擊에 대해 많은 不安感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실명제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있어서 도 조사대상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저 축자의 경우 '실명제 실시에 따른 經濟적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두번째로 지적한 데 반해 사업자와 금융기관종사자들은 '금융 기관 및 고객 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사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實名제 導入으로 金融去來 節次가 다소 複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 출입이 잦은 사업자들이 많은 번거로움 을 느끼고 있으며 금융기관종사자들의 경우 業務量이 크게 늘어났 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 實名제 實施 目的에 대한 寄與度

실명제가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를 통한 金融去來 正常化'에 도 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69.4%에 달하고 '金融資産 綜合課稅를 통 한 租稅衡平性 提高'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은 61.4%,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59.1%로 나타남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金融實名制의 實施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조사대상자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金融機關從事者들이 實名制에 대하여 가장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데 반해 否定的인 見解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事業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제에 대한 반대율이 사업자(25.5%), 일반저축자(11.1%), 금융기관종사자(7.2%) 순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치한다(<表 III- 7> 참조).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별로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實名制가 金融去來 秩序의 確立에 寄與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응답자는 전체의 6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지명의로 인한 금융거래를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그리 높은 비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실명제의 '金融去來 透明性 提高' 기능에 대해 '그저 그렇다'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도 3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실명제가 실시된 후에도 여전히 借名이나 盜名 計座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

<表 III- 10> 金融實名制의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

(單位: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안됨
사업자	(655)	14.6	38.8	34.9	8.3	3.4
금융기관종사자	(622)	24.1	53.7	18.0	3.7	0.5
일반저축자	(667)	22.8	52.8	19.5	4.3	0.6
계	100.0 (1944)	20.8 (404)	48.6 (945)	23.8 (463)	5.5 (107)	1.3 (25)

단된다.

조사대상자별로 보면 사업자의 경우 11.7%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金融機關從事者(4.2%)나 一般貯蓄者(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나타낸다.

<表 Ⅲ- 11> 金融實名制의 租稅衡平性の 提高

(單位: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안됨
사업자	(654)	7.2	30.7	44.0	13.2	4.9
금융기관종사자	(621)	21.7	53.5	18.0	5.5	1.3
일반저축자	(663)	17.8	51.6	22.8	6.6	1.2
계	100.0 (1938)	15.8 (306)	45.6 (883)	27.8 (539)	8.5 (164)	2.4 (46)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통한 '租稅衡平性 提高'에 실명제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4%가 肯定的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透明性 提高'에 대한 肯定的 評價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반면 실명제가 '租稅衡平性의 提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38.7%로 약간 늘어났는데 이들은 금융거래가 實地名義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가 '租稅衡平性 提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사업자의 경우 37.9%로 전체 평균보다 23.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실명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表 Ⅲ- 12> 金融實名制의 社會不條理 除去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안됨
사업자	(656)	15.6	38.1	27.2	13.4	5.8
금융기관종사자	(621)	20.9	42.0	26.9	8.1	2.1
일반저축자	(668)	17.7	42.8	29.8	7.0	2.7
계	100.0 (1945)	18.1 (353)	41.0 (797)	28.2 (548)	9.4 (183)	3.3 (64)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명제가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8.1%의 응답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41.0%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全體적으로 59.1%가 肯定的인 意見을 表明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체 응답자의 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사업자들에게 특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가 금융거래 방식 이외의 다른 요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다. 金融實名制 實施의 制約要因

'비실명거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36.2%, '동의하는 편이다' 48.2%로 총 84.4%의 응답자가 긍정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非實名去來가 社會的 問題라는 共感帶가 全般的으로 形成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제시된 것 중에 '비실명거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낮

〈表 Ⅲ - 13〉 非實名去來가 社會的으로 큰 問題다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사업자	(664)	28.0	42.8	24.0	4.3	0.9
금융기관종사자	(621)	42.0	49.1	7.1	1.6	0.2
일반저축자	(665)	38.2	52.3	6.5	1.7	1.4
계	100.0 (1950)	36.2 (706)	48.2 (940)	12.3 (239)	2.5 (49)	0.8 (16)

있던 것과 일치한다.

사업자들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비실명거래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事業者들이 非實名 金融資産의 去來에 더 많이 露出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명제를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지 않는

〈表 Ⅲ - 14〉 實名制에 따른 經濟的 衝擊이 크다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사업자	(664)	11.3	27.4	48.0	10.8	2.5
금융기관종사자	(619)	3.2	32.6	40.2	19.4	4.5
일반저축자	(664)	4.2	30.6	42.9	16.3	6.0
계	100.0 (1947)	6.0 (117)	30.4 (592)	43.9 (854)	15.4 (299)	4.4 (85)

응답자의 19.6%는 '실명제로 인한 經濟的 衝擊이 크다'는 점을 두번째 이유로 지적하였다. 이에 제한된 응답 범위를 조사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동일한 질문을 해본 결과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를 표시한 응답자는 3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19.8%는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수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63.7%에 달하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實名制 實施에 따른 經濟的 打撃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3년 10월에 실시된 韓國貿易協會의 設問調查에서 金融實名制가 輸出企業의 經營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46%, '다소 문제가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47%였다는 점, 그리고 外部資金 調達 展望과 관련된 질문에 '1994년에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4.3%에 불과했다는 점과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1993년 말부터 올해로 이어지고 있는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 등을 고려한다면 실명제 실시 1년이 다 되어가는 조사시점에서 응답자의 63.7%가 실명제의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은 합당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응답자의 84.4%가 사회적으로 非實名去來가 큰 問題라는 認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3.7%의 응답자가 실명제로 인해 경제가 받는 충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非實名去來의 問題點이 經濟的 要因보다는 經濟外的인 要因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가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54.7%가 그 이유로 '실명제를 실시해도 陰性的 去來는 여전히 存在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명제의 찬반 여부에 상관없이 '실명제가 실시된 후에도 여전히 음성적 거래가 존재할 것

〈表 Ⅲ-15〉 實名制下에서도 陰性的 去來는 如前하다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사업자	(661)	20.6	55.4	16.9	6.1	1.1
금융기관종사자	(620)	11.1	68.1	12.4	8.1	0.3
일반저축자	(667)	13.3	68.1	12.3	5.5	0.7
계	100.0 (1948)	14.7 (287)	64.3 (1253)	13.8 (268)	6.5 (127)	0.7 (13)

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져본 결과, 79.0%가 동의를 나타냈고 불과 7.2%의 응답자만이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89년 12월에 실시된 金東源 교수의 貯蓄者에 대한 認識 調査에서 불과 12.1%만이 '실명제가 모든 소득을 양성화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실명제가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9.4%를 차지하였고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59.1%였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陰性的 去來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비율은 의외로 높은 편이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불신을 품고 있는 데에다 민간 스스로 정책적 강제를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해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金東源 교수는 '실명제가 모든 소득을 양성화하는 데 실패할 경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설문하였는데 이에 응답자의 19.5%가 '政治的 推進力 不足', 22.6%가 '稅務行政力 부족', 57.8%가 '어떤 방법이든 回避手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실명제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응

<表 Ⅲ- 16> 實名制로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單位: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저	반대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편이다	그렇다	편이다	반대한다
사업자	(663)	14.0	36.1	35.5	11.6	2.9
금융기관종사자	(618)	15.2	48.7	17.5	14.9	3.7
일반저축자	(667)	7.2	35.2	27.7	23.4	6.4
계	100.0 (1948)	11.8 (230)	39.9 (778)	26.8 (523)	16.8 (328)	4.6 (89)

답한 조사대상자의 17.9%는 그 이유로 '실명제가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을 招來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의 51.7%가 금융실명제의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의 뜻을 나타냈으나 이와 거의 맞먹는 48.2%의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설문 에 응한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實名制 實施에 따른 不便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종사자의 경우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63.9%의 응답자가 동의를 포함으로써 '實名制가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을 가중시켰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저축자의 42.4%만이 금융거래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일반저축자의 경우 金融去來에 따른 불편이 實名確認 이후 상당히 감소한 반면 金融機關從事者들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金融慣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로 業務處理 節次가 다소 번거로워진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金融實名制 推進狀況 및 補完對策에 대한 評價

金融實名制의 推進狀況에 대해 肯定的인 評價를 내린 응답자가 5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르겠다'를 제외한 否定的인 評價도 3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993년 9월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긍정 58.5%, 부정 29.2%)와 비교해 보면 肯定的인 評價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否定的인 評價는 다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명제 실시 직후인 1993년 9월 당시 실명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 사람들의 대부분과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사대상자별로 보면 金融機關從事者의 67.0%가 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肯定的인 評價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0% 내외인 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한편, 金融實名制의 推進狀況에 대한 견해는 실명제 실시 전후의 贊反與否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명제 실시 후 金融實名制에 贊成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 중에는 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肯定的으로 답한 응답자가 많고, 실시 후 反對

<表 III-17> 金融實名制의 推進狀況

(單位: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잘 추진	어느정도 잘 추진	그다지 잘 안됨	전혀 잘 안됨	모르겠다
사업자	(666)	4.4	41.5	32.8	7.1	14.1
금융기관종사자	(622)	2.7	64.3	29.4	2.4	1.1
일반저축자	(667)	1.5	52.8	37.3	4.9	3.4
계	100.0 (1955)	3.1 (61)	53.0 (1037)	33.2 (649)	4.7 (91)	6.0 (117)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잘 推進되고 있지 않다는 否定的 見解를 가진 응답자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특히 實名制가 실시되기 전에는 贊成했지만 실시 후 反對하게 되었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들 문항간에 일관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推進狀況에 대해서 肯定的으로 評價한 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實名制의 後續補完措置가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65.7%,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12.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취해진 보완조치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政府의 追加的인 補完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後續補完措置의 適切性에 대한 평가는 1993년 9월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적절' 14.3%, '더 보완' 67.2%)나 韓國 貿易協會의 調查 結果('만족' 8.0%, '미흡' 79.3%)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表 III - 18> 補完措置의 適切性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적절함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음	부적절함	모르겠다 (보통이다)
사업자	(664)	9.4	62.0	7.6	20.0
금융기관종사자	(615)	10.1	71.9	13.8	4.3
일반저축자	(664)	7.5	63.1	17.5	11.9
계	100.0 (1943)	9.2 (178)	65.7 (1277)	12.9 (250)	12.3 (238)

金融實名制의 推進狀況에 대한 견해와 後續補完措置의 適切性에 대한 견해 사이에 一貫性이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실명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肯定的인 評價를 내린 사람들 중에는 補完措置가 적절하거나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實名制의 推進狀況에 대해 否定的인 評價를 내린 응답자의 대부분은 後續補完措置가 더 보완되어야 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명제가 전혀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補完措置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들 항목간에 一貫性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3. 金融實名制의 影響

가. 金融實名制의 政治, 經濟, 社會에 대한 影響

실명제 실시로 인해 政治, 經濟 및 社會 각 측면이 받는 影響에 대해서는 대체로 肯定的인 評價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명제가 政治에 미치는 影響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政治資金의 鮮明化를 들 수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無資料去來 등 陰性的인 去來의 減少, 金融去來의 透明性 제고, 租稅衡平性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뇌물수수와 같은 不條理 剔抉 등이 있다.

먼저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 政治에 미치는 影響을 '상당히 긍정적'(33.5%) 또는 '약간 긍정적'(46.8%)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80.3%이고, '그저 그럴 것이다'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의견은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經濟에 미치는 影響의 경우 '상당히

<表 Ⅲ-19> 實名制의 우리나라 政治에 대한 影響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상당히 긍정적	약간 긍정적	그저 그럴것임	약간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사업자	(662)	24.0	41.8	26.5	5.4	2.3
금융기관종사자	(620)	39.5	46.0	10.3	3.4	0.8
일반저축자	(667)	35.2	52.8	9.9	1.5	0.6
계	100.0 (1949)	33.5 (652)	46.8 (912)	15.4 (301)	3.2 (63)	1.1 (21)

긍정적'(26.9%), '약간 긍정적'(48.7%)로 전체 응답자의 75.6%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24.3%만이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社會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31.5%)이거나 '약간 긍정적'(47.0%)이라는 의견이 78.5%에 달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21.5%의 응답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設問調查에서 나타난 肯定的 評價 比率은 政治 86.0%, 經濟 69.0%, 社會 83.1%였다. 따라서 실명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한국갤럽의 조사나 본 설문조사 모두 政治-社會-經濟의 순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政治와 社會에 미치는 金融實名制의 影響에 대한 肯定的 評價 比率이 낮아진 데 반해 經濟部門에 좋은 影響을 줄 것이라는 견해는 1993년 9월 당시 69.0%였던 것이 현재는 75.6%로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 注目해야 한다. 이는 金融實名制 실시 직후 社會에 만연되어 있었던 經濟的 衝擊에 대한 不安感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당히 鎮靜되었고, 그간의 景氣가 뚜렷한 恢復勢를 보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Ⅲ-20〉 實名制의 우리나라 經濟에 대한 影響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상당히 긍정적	약간 긍정적	그저 그럴것임	약간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사업자	(662)	18.1	42.8	26.1	9.2	3.9
금융기관종사자	(620)	33.7	49.0	12.6	4.2	0.5
일반저축자	(667)	28.5	54.3	13.2	2.7	1.3
계	100.0 (1949)	26.9 (525)	48.7 (950)	17.3 (337)	5.3 (103)	1.7 (34)

〈表 Ⅲ-21〉 實名制의 우리나라 社會에 대한 影響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상당히 긍정적	약간 긍정적	그저 그럴것임	약간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사업자	(662)	20.8	41.1	28.5	7.5	2.1
금융기관종사자	(620)	39.4	46.9	10.8	2.9	0.0
일반저축자	(666)	33.8	52.9	10.1	2.3	1.1
계	100.0 (1948)	31.5 (614)	47.0 (915)	16.4 (320)	4.1 (80)	1.0 (19)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事業者들은 他集團에 비해 否定的인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측면 중 실명제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經濟部門의 경우 전체 사업자의 39.2%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명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經濟뿐만이 아니라 政治, 社會 側面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否定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金融實名制로 어려움을 겪는 階層

‘실명제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두 개만 고르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49.2%가 私債業者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에는 中小企業人(40.9%), 政治人(34.4%), 自營業者(25.3%), 大企業 經營人(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3년 9월 갤럽조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中小企業人 41.7%, 私債業者 9.7%, 高位公務員 8.6% 등이 지적된 것과 비교해 사채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사채업자를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의 순위는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事業者의 경우 사채업자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中小企業人(41.4%)과 自營業者(37.8%)를 들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속한 자영업 계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一般貯蓄者들은 私債業者 다음으로 中小企業人(44.9%), 政治人(40.4%)을 지적하였고 金融機關從事者들은 政治人(39.3%), 中小企業人(36.9%)을 실명제 실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꼽았다. 이는 일반저축자와 금융

<表 Ⅲ- 22> 實名制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階層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대기업 경영인	중소 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 업자	봉급 생활자	자영 업자	일반 서민
사업자	(665)	16.7	41.4	23.2	14.6	43.5	1.8	37.8	20.9
금융기관종사자	(621)	16.1	36.9	39.3	13.5	51.4	6.1	17.6	12.6
일반저축자	(666)	13.8	44.9	40.4	10.7	52.0	3.8	21.5	7.7
계	100.0 (1952)	15.8 (308)	40.9 (798)	34.4 (671)	13.1 (255)	49.2 (960)	3.8 (75)	25.3 (493)	13.2 (258)

기관종사자들이 사업자에 비해 실명제 실시 이후 정치인들이 政治資金運用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實名制에 反對하는 階層을 묻는 질문은 실명제 실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을 선택하라는 질문과 유사하다.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사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1993년 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실명제에 반대할 것으로 생각되는 계층이 私債業者(25.3%), 高位公務員(15.6%), 政治人(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이번 조사에서도 계속 이어져 私債業者가 63.9%로 수위를 지켰고, 그 다음에는 政治人이 50.3%로 실명제에 대한 반대가 클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實名制 실시 이후 私債市場이 상당히 萎縮되었다는 데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政治人에 대한 不信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별로 분석해 보면 실명제에 반대하는 계층이 사채업자 일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정치인일 것이라는 응답은 타집단과 비교했을 때 사업자에게서 2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사업자 중에는 政治人 대신 中小企業人

<表 Ⅲ-23> 實名制를 가장 反對하는 階層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대기업 경영인	중소 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 업자	봉급 생활자	자영 업자	일반 서민
사업자	(661)	31.5	20.9	33.7	27.0	60.9	1.9	18.0	6.5
금융기관종사자	(621)	27.4	11.6	59.4	25.3	63.3	0.5	8.5	2.1
일반저축자	(664)	23.8	17.2	58.9	18.4	66.9	1.1	10.7	1.5
계	100.0 (1946)	27.8 (541)	16.4 (319)	50.3 (979)	23.0 (448)	63.9 (1244)	1.1 (22)	12.4 (242)	3.1 (60)

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금융기관종사자나 일반 저축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자들의 경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實名制에 반대하는 상황을 經驗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본 조사의 실명제에 반대하는 계층에 대한 설문에서 大企業 經營人이 27.8%로 3위를 차지한 것은 秘資金 管理의 어려움을 고려한 응답으로 보인다.

다. 金融實名制에 따른 不便經驗

'실명제 실시에 따른 不便이나 不利益을 經驗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8.6%인 데 반해 없다는 응답자는 51.3%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실명제로 인해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가중되는가에 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1.7%만이 동의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작년 9월 한국갤럽이 서울거주 중산층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7.1%만이 '不便 또는 不利益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實名制 實施로 인해 銀行의 業務處理 節次가 複雜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을 느끼게 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實名制 실시 이후 金融機關을 利用하면서 느낀 不便이나 不利益의 類型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문항의 경

<表 Ⅲ - 24> 實名制로 인한 不便이나 不利益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아주 많음	몇번 있음	한두번 있음	없음
사업자	(664)	6.7	19.8	16.3	57.2
일반저축자	(668)	3.0	25.7	24.4	46.9
계	100.0 (1331)	4.7 (63)	22.8 (304)	21.1 (281)	51.3 (683)

우 무응답자가 많아서 사례수 기준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몇 가지 不便事例들만 紹介하기로 한다.

우선 身分證 確認과 관련된 불편이 가장 많았는데 그 유형은 無通帳入金, 代理人에 의한 送金, 手票를 이용한 入金 등이었다. 이처럼 실명제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을 불편 사례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신분증 없이도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했던 오랜 관행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部下職員이나 代理人을 통한 銀行業務處理에 많은 制約이 따르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소수의견으로는 은행 수수료의 과다, 단체명의로 된 통장의 관리 불편,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休眠計座에 대한 시비, 은행간 수표 입금의 불편, 資金追跡에 의한 稅務調査 실시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不便이나 不利益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頻度を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실명제 실시 이후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가중되었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명제 실시 후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의 경우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아주 많거나 몇 번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빈도수는 동의수준이 낮아지면서 점차 줄어들어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횟수를 묻는 설문항목과 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항목 사이에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實名制의 補完對策

가. 金融實名制와 改革의 關係

金融實名制와 改革의 聯關性에 대해서는 76.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實名制가 성공적으로 定着되어야 改革이 成功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 實名制 定着의 重要性을 높게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 9월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 77.4%가 개혁의 성공에는 실명제의 정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實名制 定着과 改革 成功間의 聯關性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實名制가 定着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 및 租稅衡平性 提高, 社會不條理 除去 등의 순기능이 改革의 前提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자별로는 금융기관종사자들 중에서 실명제와 개혁의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III - 25> 實名制의 定着이 改革의 前提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실명제가 정착되어야 성공	실명제 정착없이도 성공	모르겠다
사업자	(663)	68.1	13.2	18.7
금융기관종사자	(619)	81.4	10.7	8.0
일반저축자	(667)	78.9	12.6	8.5
계	100.0 (1949)	76.2 (1486)	11.9 (232)	11.9 (231)

나. 金融實名制의 目的을 고려한 必要 補完對策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金融實名制가 成功的으로 定着되기 위해서 가장 必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4%가 무엇보다도 全般的인 國民意識의 改革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즉, 실명제는 사회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全般的인 意識의 變化 없이는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실명제 관련 긴급명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金融去來의 正常化를 위한 金融機關의 監督 強化(17.7%), 脫稅防止를 위한 稅務行政의 強化(16.7%)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에 따라 실명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表 Ⅲ -26> 金融實名制의 成功的인 定着을 위한 補完對策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금융기관 감독강화	세무행정 강 화	국민의식 개 혁	기 타
사업자	(664)	17.7	16.7	42.4	23.1
계	100.0 (664)	17.7 (113)	16.7 (106)	42.4 (294)	23.1 (151)

금융기관종사자와 일반저축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질문을 실명제의 실시 목적별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명제하에서 金融去來의 透明性を 提高하기 위한 補完措置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금융통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信用去

<表 Ⅲ-27> 透明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증여한도 축 소	보고한도 인 하	신용거래 제도정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 타
금융기관종사자	(629)	9.7	6.8	44.8	37.2	1.4
일반저축자	(665)	14.7	10.8	35.6	37.1	1.7
계	100.0 (1294)	12.3 (159)	8.9 (115)	40.1 (519)	37.2 (481)	1.5 (20)

來制度 定着' 40.1%, '金融資産 所得에 대한 綜合課稅制度의 導入' 37.2%, '소득원이 없는 未成年者에 대한 贈與限度 縮小' 12.3%, '資金 移動에 대한 國稅廳 報告限度의 引下' 8.9%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에 응한 금융기관종사자들과 일반저축자들은 실명제가 본래 목적인 金融去來의 透明性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를 줄이는 방식의 새로운 去來制度의 導入과 金融資産에 대한 綜合課稅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타로는 '借名預金에 대한 철저한 對策樹立', '不動産 賃貸業의 철저한 조사 및 규제를 통해 賃貸料를 實名化하기 위한 立法', '陰性 所得者에 대한 計座追跡의 合法化', '實名으로 去來하는 一般 顧客의 不便을 解消하는 方案 講究'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補完措置의 優先順位는 조사대상자별로 차이를 보여 금융기관종사자들이 '信用去來制度의 定着'(44.8%), '金融 所得 綜合課稅'(37.2%)의 순으로 지적한 데 비해 일반저축자들은 '金融所得 綜合課稅'(37.1%)가 '信用去來制度의 定着'(35.6%)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기관종사자들은 일반저축자들과 달리 실명제하에서 金融去來의 透明性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現金을 이용한 直接去來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Ⅲ-28>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補完措置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부가세율 인 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통구조 개 선	기 타
금융기관종사자	(624)	19.2	36.4	43.6	0.8
일반저축자	(662)	20.4	36.4	42.0	1.2
계	100.0 (1286)	19.8 (255)	36.4 (468)	42.8 (550)	1.0 (13)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2.8%가 '流通構造의 改善을 통한 無資料 去來의 遮斷'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에는 '金融資産 所得에 대한 綜合課稅制度의 導入' 36.4%, '無資料 去來를 防止할 수 있는 附價稅率의 인하'가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불평등보다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는 未申告 所得에 대해 더 큰 조세불평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보완대책의 경우 금융기관종사자나 일반저축자들간에 우선 순위와 지지비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29> 社會不條理 除去를 위한 補完措置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사정활동 강 화	강력한 법 제정, 시행	국민의 의식전환	기 타
금융기관종사자	(630)	23.5	27.9	48.3	0.3
일반저축자	(667)	15.0	36.9	46.5	1.6
계	100.0 (1297)	19.1 (248)	32.5 (422)	47.3 (614)	1.0 (13)

이 밖에도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기타 의견으로 '변호사나 의사 등 高所得 自營業者의 소득원에 대한 철저한 監視 및 課稅', '不勞所得 階層에 대한 課稅強化', '勤勞所得稅 등의 現實化를 통한 勤勞所得者의 課稅上 不利益 解消', '陰性所得者에 대한 철저한 重課稅', '金融資産을 포함하여 개인자산에 부과되는 直接稅 비중의 증대' 등이 제시되었다.

社會不條理 除去를 위해 필요한 補完對策으로는 '국민의 의식전환' 47.3%, '강력한 법의 제정 및 시행' 32.5%,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 19.1%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社會不條理 除去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이 법의 제정이나 사정활동의 강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意識轉換이라는 認識이 널리 擴散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表 III - 26>에서 사업자의 42.4%가 金融實名制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補完對策으로 국민의식의 개혁을 지적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정신을 함양하여 보답을 바라는 사상을 지양할 것', '부정부패와 관련된 資金去來 調査要件의 완화',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 강력한 시행력이 중요하다' 등이 제시되었다.

Ⅳ. 金融實名制가 課稅陽性化에 미친 影響分析

1. 所得稅 및 法人稅에 미친 影響

실명제의 실시로 우려했던 不動產 投機 등의 實物投機, 株價의 暴落事態와 資金의 海外逃避 등이 철저히 예방조치됨으로써 실명제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실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조사의 결과 및 각종 經濟指標를 통한 실명제의 평가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實名制 成功의 關鍵은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이라기보다는 地下資金을 陽性化하여 產業資金化하고 課稅資料의 陽性化를 통한 租稅衡平性을 提高하는 데 있다.

금융실명제가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陽性化에 미친 影響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1994년 申告된 法人稅(3월), 綜合所得稅(5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개략적인 課稅標準 陽性化 趨勢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1993년 귀속분 法人稅와 綜合所得稅 申告資料를 전산처리한 통계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設問調査를 통해 수집한 資料를 토대로 실명제가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資料 陽性化에 미친 影響을 分析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문항 중 포함되어 있는 '1993년 귀속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각 個人事業者和 法人이 답한 자료를 기초로 實名制 이후

의 세부담 변화를 나타낸 것이 <表 IV-1>이다. <表 IV-1>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所得稅의 경우 평균 6.1%의 稅負擔 增加를 보였고 法人稅의 경우 평균 2.2%의 稅負擔 增加를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小賣業이 8.8%로 가장 높은 세부담의 증가를

<表 IV-1> 所得稅 및 法人稅 變化程度

(單位: 個, %)

구 분	사례수	10%이상	0~10%	0~5%	5~10%	10~20%	20%이상	평균 증감률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전 체	(583)	2.1	1.9	75.5	3.6	6.3	10.6	5.9
업종별								
제조업	(110)	1.4	9.4	77.2	3.1	2.4	9.4	3.0
도매업	(60)	.0	.0	72.8	5.4	10.9	10.9	8.2
소매업	(167)	3.2	.6	73.3	3.9	6.0	12.9	8.8
음식 및 숙박업	(66)	.0	.0	84.5	3.4	5.2	6.9	3.1
건설업	(15)	6.9	.0	59.8	.0	6.9	26.4	5.9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88.2	.0	.0	11.8	4.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5)	7.2	.0	74.5	3.6	4.0	10.8	.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7)	1.9	1.0	71.3	4.8	9.5	11.6	5.3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3)	1.3	.0	83.0	.8	9.5	5.3	2.2
일반과세자(개인)	(212)	2.4	3.1	68.8	5.2	5.1	15.3	9.1
과세특례자	(228)	1.6	.8	80.8	3.3	6.0	7.6	3.0
면세 및 영세율대상자	(52)	2.2	.0	76.1	.0	10.4	11.2	5.9
비등록사업자	(7)	.0	13.6	52.3	17.0	17.0	.0	1.9
사업자 구분								
법인	(83)	1.3	.0	83.0	.8	9.5	5.3	2.2
개인	(499)	2.0	1.9	74.5	4.0	6.2	11.4	6.1

보였고 다음으로 都賣業(8.2%), 建設業(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의 경우 0.8%의 稅負擔 증가를 보여 전업종 평균 세부담 증가율 5.9%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증가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所得稅 및 法人稅의 부담변화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表 IV-2>~<表 IV-5>에서 알 수 있듯이 景氣好轉에 따른 賣出增加, 稅務行政強化, 實名制로 인한 課標露出 등의 순으로 그 원인을 꼽았다. 경기호전에 따른 매출증가는 순수한 경제적 요인을, 稅務行政強化는 非自發的(強制的) 要因을 그리고 실명제의 실시는 自發的 要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實名制로 인한 自發的인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標陽性化 程度는 다소 未盡한 것으로 推定된다. 課標陽性化의 원인을 業種別로 살펴 보면 1993년 3/4분기 이후 회복된 경기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경기변화에 따른 매출변화가 과표양성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경기변화보다 세무행정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표양성화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1993년 10월 이후 강화된 세무행정력이 이러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더욱 집중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法人의 경우는 個人事業者보다 課標陽性化의 要因으로 景氣變化를 중요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實名制나 稅務行政強化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개인사업자보다 課標現實化에 충실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金融實名制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資料 陽性化가 부진한 이유는 金融資料를 稅務資料로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과 金融所得의 綜合課稅時까지 借名去來의 利用可能性이 常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실명제의 실시가 납세자의 納稅意識 변화에 影響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金融去來와 稅務申告는 별개라는 인식하에 세금

은 事業實績 및 所得規模에 관계없이 前期對比 一定額만 增額하여 申告하려는 납세의식이 상존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所得稅 및 法人稅 세부담 變化를 분석한 結果가 다음에 논의되는 附

<表 IV -2>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151)	48.8	31.5	15.1	4.6
업종별					
제조업	(30)	72.0	24.5	.0	3.5
도매업	(18)	54.6	9.2	30.2	6.0
소매업	(50)	41.1	36.8	15.7	6.4
음식 및 숙박업	(9)	42.9	57.1	.0	.0
건설업	(5)	41.4	17.2	20.7	20.7
운수·창고·통신업	(1)	.0	100.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6)	52.5	23.7	23.7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1)	40.3	36.5	23.2	.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5)	53.9	38.1	8.0	.0
일반과세자(개인)	(67)	52.0	23.3	15.6	9.1
과세특례자	(50)	46.0	40.4	13.6	.0
면세 또는 영세율대상자	(14)	45.4	36.3	18.3	.0
비등록사업자	(5)	34.8	43.4	21.7	.0
사업자 구분					
법인	(15)	53.9	38.1	8.0	.0
개인	(136)	48.6	31.3	15.4	4.7

加價値稅 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와 어떻게 연관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表 IV-3>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要因 (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139)	12.4	32.1	44.2	11.3
업종별					
제조업	(25)	12.7	30.9	47.9	8.5
도매업	(18)	.0	54.6	39.4	6.0
소매업	(48)	11.5	27.2	45.2	16.0
음식 및 숙박업	(8)	14.2	28.5	43.0	14.2
건설업	(5)	20.7	41.4	37.9	.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100.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5)	.0	73.1	2.6	24.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	25.8	18.4	48.4	7.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3)	4.1	41.7	50.1	4.1
일반과세자(개인)	(64)	9.1	36.5	38.3	16.1
과세특례자	(46)	18.4	26.8	50.7	4.1
면세 또는 영세율대상자	(12)	7.0	34.4	41.4	17.2
비등록사업자	(4)	26.3	.0	73.7	.0
사업자 구분					
법인	(13)	4.1	41.7	50.1	4.1
개인	(126)	12.7	31.8	44.0	11.5

<表 IV-4>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要因 (稅務行政 強化)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150)	40.3	28.2	22.3	9.1
업종별					
제조업	(25)	16.9	35.2	39.4	8.5
도매업	(18)	45.4	36.2	18.4	.0
소매업	(54)	42.1	27.2	20.4	10.2
음식 및 숙박업	(8)	42.7	14.2	28.5	14.5
건설업	(5)	37.9	41.4	20.7	.0
운수·창고·통신업	(1)	100.0	.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6)	78.3	2.1	.0	19.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2)	44.9	26.2	16.1	12.8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5)	46.7	17.8	34.7	.7
일반과세자(개인)	(66)	32.3	32.6	23.5	11.6
과세특례자	(48)	43.6	26.7	22.2	7.5
면세 또는 영세율대상자	(17)	62.6	17.5	19.9	.0
비등록사업자	(4)	52.6	21.1	.0	26.3
사업자 구분					
법인	(15)	46.7	17.8	34.7	.7
개인	(135)	40.1	28.6	21.9	9.4

〈表 IV-5〉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變化要因 (一般課稅者로의 轉換)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72)	15.4	13.3	21.9	49.4
업종별					
제조업	(10)	10.0	10.0	30.0	50.0
도매업	(11)	9.1	.0	9.1	81.8
소매업	(26)	19.9	19.9	20.5	39.8
음식 및 숙박업	(5)	25.4	.0	49.8	24.9
건설업	(3)	33.3	.0	.0	66.7
운수·창고·통신업	(1)	.0	.0	.0	100.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	.0	.0	100.0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	7.7	30.8	15.4	46.2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2)	15.8	.0	84.2	.0
일반과세자(개인)	(49)	18.9	11.8	21.2	48.1
과세특례자	(15)	8.2	11.2	24.4	56.2
면세 또는 영세율대상자	(4)	.0	22.3	33.0	44.7
비등록사업자	(2)	.0	50.0	.0	50.0
사업자 구분					
법인	(2)	15.8	.0	84.2	.0
개인	(70)	15.4	13.4	21.7	49.5

2. 附加價值稅에 미친 影響

金融實名制가 附加價值稅 課稅資料 陽性化에 미친 影響을 분석하는데 있어 먼저 1993년 하반기 附加價值稅 申告實績을 토대로 개략적인 부가가치세 課稅資料 陽性化 정도를 파악해 보고 다음으로 設問調査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附加價值稅 課稅資料 陽性化 程度를 分析하고자 한다.

가.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程度와 原因

暫定推計된 1993년 하반기 附加價值稅 申告實績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 IV-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課稅標準은 18.1%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1993년 하반기 經常經濟成長率(11.0% 추정)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實稅收의 측면에서는 限界稅額控除制度의 도입에 따른 약 1,500억원의 稅收減少에도 불구하고 還給稅額의 減少로 인해 前年同期對比 32.2%가 增加한 3조 7,8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잠정추계된 자료

<表 IV-6> 1993年 下半年期 附加價值稅 申告實績(豫定+確定)

	1992년 2기		1993년 2기	
		전년 동기 대비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증가율
과세표준	263조 9,000억원	9.8%	311조 6,200억원	18.1%
납부세액	4조 9,300억원	13.9	5조 8,100억원	17.8 (20.9)
환급세액	2조 700억원	△4.5	2조 300억원	△2.2
실세수	2조 8,600억원	32.4	3조 7,800억원	32.2 (37.4)

에 따르면 附加價值稅의 課標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實名制 實施의 결과만으로 볼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의 景氣恢復, 1993년 10월 附加價值稅 稅務行政 努力의 強化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金融實名制 실시 및 稅務行政 強化 등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과거 10년간(1983~1992년)의 經常國民總生産과 20개 과세기간의 申告課稅標準과의 相關關係模型을 이용하여 1993년 과세표준을 추정한 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후의 1993년 2기 實績課標는 311조 6,300억원으로 1993년 2기 推定課標 305조 1,400억원에 비해 6조 5천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종 巨視經濟指標에 의한 課稅標準 推定値와 實績을 비교해 보면 <表 IV-7>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表 IV-7>에 제시된 1993년 2기의 각종 附價稅 課標推定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다.

<表 IV-7> 其他 巨視經濟指標에 의한 推定(過去 10年間 平均增加率 基準¹⁾)

	1993년 2기	전년 동기 대비증가율
(A) 과세표준의 평균증가율에 의한 추정	303조 4,900억원	15.0%
(B) 과세표준의 경상성장율에 의한 탄성치	307조 4,500억원	16.5
(C) 과세표준의 소비자출증가율에 의한 탄성치	313조 5,200억원	18.8
(D) 실 적	311조 6,300억원	18.1
차 이 : 과세표준증가율 (D-A)	8조 1,400억원	+3.1
경상성장율에 의한 탄성치 (D-B)	4조 1,800억원	+1.6
소비자출증가율에 의한 탄성치 (D-C)	△1조 8,900억원	△0.7

註 : 1) 과거 10년간 : 1983~1992년.

(A) 과세표준의 평균증가율에 의한 추정 = 10년간 평균 과표증가율(1983~1992년) × 1992년 2기 실적과표

(B) 과세표준의 경상성장률에 의한 탄성치

$$= \frac{\text{과세표준증가율}}{\text{경상성장률}} \text{의 } 10\text{년간 평균} \times 10\text{년간 평균 경상성장률} \\ \times 1992\text{년 } 2\text{기 실적과표}$$

(C) 과세표준의 소비지출증가율에 의한 탄성치

$$= \frac{\text{과세표준증가율}}{\text{민간소비증가율(경상)}} \text{의 } 10\text{년간 평균} \times 10\text{년간 평균 민간소비} \\ \text{증가율(경상)} \times 1992\text{년 } 2\text{기 실적과표}$$

<表 IV-7>은 申告課標가 推定課標에 비해 4~8조원(2~3%) 정도 상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金融實名制 實施와 稅務行政力 強化 效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課稅標準 陽性化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논의한 바 있듯이 自發的인 陽性化의 수준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金融實名制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課稅資料 陽性化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金融資料를 課稅資料로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하며 둘째, 金融所得의 綜合課稅時까지 借名去來 利用可能性이 상존하고 있으며 셋째, 納稅者의 納稅意識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金融實名制 실시는 課稅資料 陽性化에 間接的인 影響을 줄 것이다. 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와 관련된 가능성이 큰 금융 입·출금 자료에 대한 세무상의 접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去來慣行과 納稅意識의 變化가 미약하여 현금거래의 선호 등 변칙거래 관행의 지속과 함께 세금은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전기대비 일정액만 증액

하여 신고하려는 납세의식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課稅標準 陽性化는 金融實名去來慣行이 定着되어가는 과정에서 商去來 秩序 및 流通構造의 改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실명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借名이나 現金去來를 통한 脫稅는 여전히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명제를 기반으로 稅務行政의 科學化를 통해 金融情報를 稅源管理를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비로소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기대된다.

나. 附加價值稅 負擔變化 設問調查 結果分析

1) 附加價值稅 課標現實化率 推定을 利用한 分析

附加價值稅 負擔의 變化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그 동안 課標漏落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을 통해 조사한 月平均 賣出額과 1993년 2기 附加價值稅 納付額 및 業種別 平均 附加價值率을 이용하여 業種別 附加價值稅 課標

<表 IV-8> 業種別 平均 附加價值率

(單位 : %)

구 분	평균 부가가치율(1990년~1992년)
평 균	21.4
제 조 업	21.1
도 매 업	20.5
소 매 업	12.5
음 식 및 숙 박 업	49.6
건 설 업	36.0
운수·창고·통신업	59.3
부 동 산 임 대 업	47.2
사회및개인서비스업	37.7

註 : 1) 부가가치율 =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 × 100

2) 1990~1992년 국세청 통계자료 평균

現實化率을 추정하고자 한다. 즉,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스스로 밝힌 월평균 매출액을 기초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附加價値稅 납부세액을 추정하여 1993년 2기 附加價値稅 납부액과 비교함으로써 課標漏落의 정도를 間接的으로 推定할 수 있다. 이와같이 업종별 附加價値稅 課標現實化率을 추정하는 것은 업종별로 과표누락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課標陽性化를 위한 業種別 對策樹立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附加價値稅 課標現實化率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推定된다.

부가가치세 과표현실화율(%)

$$= \frac{\text{납부세액}}{\text{업종별 평균부가율에 의한 추정세액}} \times 100$$

業種別 平均附價率에 의한 推定稅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부가가치세 추정세액(법인 및 일반과세자)

$$= \text{업종별 평균부가율} \times \text{월평균 매출액} \times 6\text{개월} \times 0.1\%$$

附加價値稅 추정세액(과세특례자)

$$= \text{월평균매출액} \times 6\text{개월} \times (0.2 \text{ 혹은 } 0.35) *$$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0.35 적용 그 외에는 0.2 적용)

그러나 設問調査를 이용하여 課標現實化率을 추정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그 한계로 인식해야 한다. 우선 資本金 1억원 이하의 法人體와 個人事業者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체 사업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課標現實化率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設問調査에서의

과표현실화율 수치는 過小評價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加重值를 업종별로 줌으로써 업종 내의 賣出額 規模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推定值가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 즉, 업종 내 매출 규모가 클수록 課標現實化率이 크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 단위로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表 IV-8>의 업종별 평균 附加價值率을 이용하여 업종별, 附加價值稅 납세형태별 등으로 課標現實化率을 추정하면 다음 <表 IV-9>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로 구성된 중소기업 사업체의 平均 課標現實化率은 52.2%로 저조하다. 이처럼 附加價值稅의 平均 課標現實化率이 저조한 원인은 架空買入, 賣出漏落, 無資料去來 등과 같은 附加價值稅 脫漏現象이 만연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전 개인사업자의 과표현실화율이 30% 정도라고 추측하던 것에 비하면 이 數値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과표현실화율의 絕對數値가 아니라 業種別 課標現實化率을 비교하여 業種別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업종별 과표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45.6%), 음식 및 숙박업(30.0%)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附價稅 納稅形態別로는 법인(92.3%), 일반과세자(67.1%), 과세특례자(35.2%) 순으로 나타났다.

2) 金融實名制 實施로 인한 附價稅 課標陽性化 程度 分析

<表 IV-10>에 나타나듯이 實名制 實施에 따른 附價稅 稅負擔(1993년 1기 대비 2기 확정신고 실적)은 약 11.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實名制 실시에 따른 附價稅 稅負擔變化는 建設業(37.6%), 飲食 및 宿泊業(18.8%)의 순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 결과를 <表 IV-9>의 課標現實化率과 비교해 보면 아

<表 IV-9> 附價稅 課標現實化率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과표현실 화율평균
전 체	(393)	67.2	14.5	7.3	11.0	52.2
업종별						
제조업	(60)	52.0	9.2	12.7	26.1	80.5
도매업	(55)	58.3	22.8	10.0	8.9	54.9
소매업	(118)	59.6	18.3	10.1	12.1	54.5
음식 및 숙박업	(43)	94.7	5.2	.1	.1	30.0
건설업	(11)	54.5	36.4	9.1	.0	45.6
운수·창고·통신업	(7)	79.7	.0	10.1	10.1	42.1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4)	61.4	31.8	.0	6.8	42.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7)	76.4	9.2	6.1	8.4	50.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50)	22.8	20.0	31.9	25.3	92.3
일반과세자(개인)	(162)	50.8	19.9	11.5	17.8	67.1
과세특례자	(183)	85.4	10.3	2.5	1.8	35.2
사업자 구분						
법인	(50)	22.8	20.0	31.9	25.3	92.3
개인	(345)	68.0	15.1	7.0	9.9	51.2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미만	(29)	4.0	1.7	.5	.2	53.3
100~300만원 미만	(135)	28.5	5.0	1.2	1.1	38.4
300~500만원 미만	(47)	9.5	.6	.9	2.4	54.9
500~1,000만원 미만	(63)	10.1	3.2	2.2	2.8	57.7
1,000~3,000만원 미만	(58)	9.7	3.4	1.2	1.6	52.2
3,000~7,000만원 미만	(23)	3.2	.6	.7	1.3	89.2
7,000만원 이상	(40)	1.4	.7	1.2	1.1	91.8

〈表 IV-10〉 附價稅 稅負擔 變化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0%이상	0~10%	0~5%	5~10%	10~20%	20%이상	평균 변화율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전 체	(535)	.9	.9	68.0	6.4	11.6	12.1	11.1
제조업	(106)	3.3	5.5	64.0	5.5	8.0	13.8	5.8
도매업	(59)	.0	.0	60.3	11.1	19.4	9.2	5.7
소매업	(145)	.7	.0	64.6	8.9	11.6	14.2	11.9
음식 및 숙박업	(60)	.0	.0	64.3	3.6	16.0	16.0	18.8
건설업	(14)	.0	.0	62.9	7.4	.0	29.6	37.6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88.2	.0	11.8	.0	1.3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6)	.3	.0	73.2	6.5	13.4	6.5	4.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1)	.0	.0	74.5	6.6	9.0	9.9	9.1

주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表 IV-9〉에 나타난 건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課標現實化率은 각각 45.6%, 30.0%로 최저의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 課標漏落 程度가 큰 업종일수록 실명제 실시 후 稅負擔 增大의 폭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表 IV-10〉에서 나타난 附價稅 稅負擔 增加率만의 단순수치로는 실명제 실시 이후 業種別 課稅資料 陽性化 程度の 測定指標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평상시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의 부가세 세부담 증가율과 평상시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업종의 附價稅 稅負擔 增加率을 단순비교하여 業種別 課稅資料 陽性化 程度의 측정지표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업종별 부가세 세부담 증가율과 과표현실화율을 다음과 같이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지표인 調整된 附價稅 稅負擔 增加率을 구할 수 있다.

조정된 부가세 세부담 증가율(%)

$$= (\text{업종별 부가세 세부담 증가율} \times \text{업종별 과표현실화율}) / 100$$

이렇게 調整된 附價稅 稅負擔 增加率은 평상시 課標漏落 程度를 반영하여 실명제 실시 이후 附價稅 稅負擔 變化(課標陽性化 程度)를 業種別로 比較가능하게 한다. 즉, 평상시 과표누락 정도에 따른 主觀的인 附加價値稅 稅負擔 變化효과를 제거한 客觀的 稅負擔 變化를 業種別로 比較한다는 것이다. <表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명제 실시 이후 建設業(26.1%), 小賣業(10.1%), 飲食 및 宿泊業(6.4%)의 순으로 附價稅 稅負擔 增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建設業

<表 IV-11> 調整된 附價稅 增減率(限界稅額控除 適用 前)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이상 증가	평균 증감률
전 체	(375)	2.2	83.3	4.9	9.6	6.2
업종별						
제조업	(57)	11.7	71.0	.0	17.3	2.8
도매업	(53)	.0	88.8	9.2	2.0	1.9
소매업	(109)	1.0	82.8	4.2	12.0	10.1
음식 및 숙박업	(40)	.0	81.1	10.8	8.1	6.4
건설업	(10)	.0	60.0	10.0	30.0	26.1
운수·창고·통신업	(7)	.0	100.0	.0	.0	.0
부동산 임대 및 증개업	(23)	.6	82.7	5.4	11.4	2.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5)	.0	94.0	1.5	4.5	3.0
부가세 납세 형태						
법인	(48)	.6	82.1	8.3	9.0	2.2
일반과세자(개인)	(155)	3.3	77.8	6.9	12.1	9.2
과세특례자	(171)	.5	88.7	3.6	7.1	3.4
사업자구분						
법인	(48)	.6	82.1	8.3	9.0	2.2
개인	(326)	1.9	83.1	5.3	9.7	6.3

의 경우 평균 세부담 변화가 37.6%이던 것이 조정 후 26.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부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景氣恢復 및 稅務行政 強化가 건설업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 課標漏落의 程度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稅務行政力이 이 업종에 더욱 強化되어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부담은 全業種 平均 11.1% 增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附加價值稅 稅負擔의 增加原因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 IV-12>~<表 IV-1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稅務行政 強化, 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一般課稅者로의 轉換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課標現實化率이 낮고 實名制 실시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건설업의 경우 稅務行政 強化를 1순위(50%)로 꼽았고,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경기회복(47.1%)을 1순위로 그리고 一般課稅者로의 전환을 2순위(44.6%)로 꼽았

<表 IV-12>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單位: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178)	42.3	33.6	16.7	7.4
제조업	(40)	54.3	24.2	16.1	5.4
도매업	(23)	35.5	24.5	26.6	13.3
소매업	(52)	40.4	35.9	13.2	10.5
음식 및 숙박업	(19)	47.1	41.2	11.7	.0
건설업	(6)	16.7	50.0	16.7	16.7
운수·창고·통신업	(1)	.0	100.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8)	3.4	48.3	32.2	16.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7)	47.4	35.6	17.0	.0

<表 IV -13>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165)	12.4	32.4	43.8	11.4
제조업	(38)	17.0	30.1	44.3	8.5
도매업	(23)	4.4	40.0	42.3	13.3
소매업	(50)	4.7	35.3	44.4	15.6
음식 및 숙박업	(19)	11.7	35.3	41.2	11.7
건설업	(5)	20.0	40.0	40.0	.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100.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5)	73.1	24.4	2.6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2)	31.0	9.9	54.2	4.9

<表 IV -14>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稅務行政 強化)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181)	42.0	29.0	22.6	6.4
제조업	(38)	28.4	38.6	27.3	5.7
도매업	(24)	57.5	25.5	17.0	.0
소매업	(57)	44.3	24.4	23.5	7.8
음식 및 숙박업	(20)	33.3	27.7	27.8	11.2
건설업	(6)	50.0	16.7	16.7	16.7
운수·창고·통신업	(1)	100.0	.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9)	49.3	38.3	12.3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4)	40.4	37.2	17.9	4.5

<表 IV - 15> 附價稅 稅負擔 變化要因(一般課稅者로의 轉換)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87)	23.2	10.8	19.9	46.0
제조업	(16)	6.3	12.5	25.0	56.3
도매업	(19)	5.3	10.5	15.8	68.4
소매업	(27)	38.2	11.5	15.9	34.4
음식 및 숙박업	(10)	44.6	.0	33.3	22.2
건설업	(4)	25.0	.0	25.0	50.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0	100.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	50.0	.0	50.0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0	50.0	.0	50.0

다. 한편 附價稅 課標現實化率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賣出增加를 부가세 부담변화의 주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課標現實化率이 낮은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稅務行政 強化를 主要原因으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의 경우 <表 IV-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附價稅 稅負擔의 변화요인으로 73.1%가 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을 1순위로 들고 있어 實名制로 인해 附價稅 부담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課標現實化率이 낮은(과표누락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993년 10월의 附價稅 稅務行政 努力的 強化(一般課稅者로의 전환도 세무행정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가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그리고 소매업에 대해 높은 附加價値稅 세 부담의 증가를 가져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無資料去來 規模의 推定

無資料去來란 商品의 거래단계에서 稅金計算書가 수수되지 않아 稅源이 누락된 무자료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無資料商品은 정상적인 상품에 비해 10~20% 가량 저렴하고 무자료상품 거래시 세율이 누락되어 附加價值稅, 所得稅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대부분의 小賣商은 無資料商品을 선호하고 있다.

1993년 8월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 去來秩序 正常化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조사·단속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무자료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나 아직도 酒類와 一部 生必品을 중심으로 한 無資料商品의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무자료 전문시장이나 도·소매 유통단계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 商工資源部에서 所得-支出 隔差 分析方法을 이용하여 추정된 우리나라의 無資料去來 規模는 <表 IV-16>에 나타나 있듯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1991년의 경우 無資料去來의 규모는 약 12조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지출에 비해 그 규모가 작게 나타난다. 소득의

<表 IV-16> 無資料去來 規模

(單位 : 10억원,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국민계정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중 재화구입액(A)	42,555	48,207	56,143	64,872
총사업체 또는 도·소매업 통계 조사보고서의 소매업 매출액(B)	29,036	34,207	41,108	52,178
무자료시장 규모(C=A-B)	13,519	14,000	15,035	12,694
소매 매출액에서 무자료상품이 차지하는 비중(C/A)	31.8	29.0	26.8	19.6

資料 : 상공자원부, 유통산업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경우 규모를 줄여서 보고하거나 漏落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지출행위는 감출 필요가 적고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所得-支出 隔差 分析方法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支出規模로부터 파악된 所得規模와 보고된 所得規模의 격차를 地下經濟의 規模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소득-지출 격차 분석방법은 所得과 支出간의 不一致가 일정기간 동안 어떤 경향을 갖는지 검토함으로써 地下經濟規模의 變化를 파악하는 것이다.

4) 實名制로 인한 無資料去來 規模의 變化 分析

設問調査를 통해 추정한 無資料去來의 規模는 <表 IV-17>과 <表 IV-18>에서 알 수 있다. 販賣代金에 대한 領收證 발급 정도는 全業種平均 44.9%로 나타났고 購入代金에 대한 領收證 受取 程度는 58.1%로 나타났다.

이들 추정치들은 앞에서 설명한 附價稅 課標現實化率과 課標漏落率 및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추정한 無資料去來 規模와 상당히 一貫性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課標現實化率이 극히 저조한 음식 및 숙박업(30.0%)의 販賣代金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정도는 34.8%로 아주 저조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른 업종별 無資料去來 規模의 변화 정도는 <表 IV-1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업종 전체 평균으로 3.2%의 減少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實名制로 인한 無資料去來의 縮小는 아주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金融實名制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意識調査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金融實名制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 실명제를 실시해도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金融實名制가 실시되어도 陰性的 去來가 여전히 존재하리라는 의견에는 76.0%가 동의를 표했다.

<表 IV -17> 購入代金에 대한 領收證 收取 程度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75~100%	50~75%	25~50%	0~25%	평균
전 체	(665)	46.5	16.5	9.9	27.0	58.1
업종별						
제조업	(127)	48.7	17.9	9.2	24.2	60.3
도매업	(66)	67.8	13.2	7.4	11.5	71.8
소매업	(191)	49.7	14.7	11.8	23.8	60.1
음식 및 숙박업	(72)	39.8	19.0	4.7	36.4	53.0
건설업	(17)	40.4	29.3	12.1	18.2	60.5
운수·창고·통신업	(12)	52.8	11.8	11.8	23.6	60.9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29.0	6.7	9.1	55.1	39.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32.7	19.3	13.7	34.3	50.1
부가세 납세 형태						
법인	(90)	83.5	10.6	4.6	1.2	81.6
일반과세자(개인)	(221)	59.0	19.5	7.1	14.4	68.3
과세특례자	(261)	31.6	17.8	12.7	37.9	48.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54.2	7.7	10.5	27.6	59.6
비등록사업자	(31)	30.1	2.9	12.4	54.5	39.6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 바 있으며 金融實名制의 실시가 단기간에 無資料去來의 縮小, 課標陽性化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豫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명제의 실시 및 1993년 10월의 資料商 단속, 偽裝 課稅特例者의 적발, 流通過程 追跡調査 등 稅務行政 強化에도 불구하고 무자료거래가 3.2%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무행정의 강화로 근절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제도적 기반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자료상품은 정상적인 상품에 비해 10~20% 가량 저렴하고 무자료상품 거래시 세원이 누락되어 附加價値稅뿐만 아니라 所得稅 등

<表 IV -18> 販賣代金에 대한 領收證 發給 程度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75~100%	50~75%	25~50%	0~25%	평균
전 체	(660)	31.3	12.7	10.3	45.7	44.9
업종별						
제조업	(127)	45.7	18.2	7.2	28.9	57.7
도매업	(65)	62.2	11.8	10.9	15.1	67.8
소매업	(191)	20.7	16.0	14.2	49.1	39.6
음식 및 숙박업	(72)	19.2	9.5	12.7	58.6	34.8
건설업	(17)	51.5	12.1	6.1	30.3	58.7
운수·창고·통신업	(12)	64.6	.0	11.8	23.6	63.9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8)	39.5	12.6	.0	47.9	48.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6)	20.0	4.4	.7	69.9	31.1
부가세 납세 형태						
법인	(90)	81.8	10.2	3.0	5.7	79.2
일반과세자(개인)	(219)	45.5	17.2	11.2	26.1	58.0
과세특례자	(260)	16.5	10.4	10.9	62.2	32.8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59)	27.1	6.4	7.2	59.3	37.8
비등록사업자	(31)	14.5	8.7	10.2	66.6	30.3

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無資料商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無資料去來의 規模變化와 附價稅 稅負擔 변화 사이에는 陰(-)의 相關關係가 존재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들 두 변수간의 相關關係를 검증한 결과 相關係數가 -0.1046이고 P 통계치(P-value)가 0.1% 미만으로 유의수준 1%하에서 陰(-)의 相關關係가 있고, 이는 統計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附價稅 課稅陽性化를 통한 附價稅 負擔 增加는 所得稅 및 法人稅 稅源露出로 이어져 所得稅 및 法人稅 負擔의 增加를 가져오리라는 점

<表 IV-19> 無資料去來 規模의 變化

(單位: 個, %)

구 분	사례수	10%이상	0~10%	0~5%	5~10%	10~20%	20%이상	평균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전 체	(184)	10.9	16.8	52.2	4.9	7.1	8.2	-3.2
업종별								
제조업	(46)	11.0	26.3	43.5	2.4	4.8	12.0	-3.3
도매업	(25)	4.2	31.3	39.6	8.3	16.6	.0	-.8
소매업	(56)	14.5	12.7	49.2	3.6	10.9	9.1	-5.6
음식 및 숙박업	(19)	5.3	5.3	78.9	5.3	.0	5.3	-.5
건설업	(4)	50.0	.0	50.0	.0	.0	.0	-25.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0	100.0	.0	.0	5.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5)	.0	34.4	62.2	.0	.0	3.3	-.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7)	8.5	4.9	69.1	8.5	.6	8.5	.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6)	14.8	22.4	57.8	.0	3.1	1.9	-9.7
일반과세자(개인)	(90)	16.0	22.8	37.7	4.4	8.2	10.8	-6.0
과세특례자	(63)	2.9	5.6	75.2	6.4	6.3	3.6	1.1
면세 및 영세율대상자	(12)	6.6	14.5	62.4	6.6	9.8	.0	-1.5
비등록사업자	(3)	.0	35.7	64.3	.0	.0	.0	-1.8
사업자구분								
법인	(16)	14.8	22.4	57.8	.0	3.1	1.9	-9.7
개인	(168)	10.4	16.3	53.2	5.2	7.5	7.3	-3.1

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세 세부담의 변화와 所得稅 및 法人稅의 稅負擔 변화간에 陽(+)의 相關關係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예측한 대로 附價稅 稅負擔 증가와 所得稅 및 法人稅 稅負擔 증가간의 相關係數가 0.35이고 P 통계치가 0.1% 미만으로 有意水準 1%하에서 두 변수간에 陽(+)의 相關關係가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陽의 相關關係는 부가세의 납부가 소득세에 先行된다는 점에서 부가세의 탈루가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附價稅의 課標陽性化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附加價值稅率을 어느 정도로 引下해야 100% 資料去來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결과 <表 IV-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附價稅率 調整과는 無關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10%의 附價稅率을 4~5%로 引下해야 100% 資料去來를 하리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에는 21.8%, 免稅事業者, 零稅率 對象者, 非登錄事業者를 제외한 응답자 중에는 23.9%로 차순위를 보였다. 이는 실명제 실시 직후 실시한 한 輿論調查의 결과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¹⁾.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면세 사업자, 영세울 대상자, 비등록사업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表 IV-21>의 결과에 의하면 一般課稅者가 課稅特例者보다 부가세를 더 많이 인하해야 100%의 자료거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월평균 매출액이 500~7,000만원 미만 사이에 속하는 계층이 매출액 100~500만원 미만에 속하는 계층보다 100% 자료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附價稅率 引下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附價稅 課標現實化率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수준의 聯關關係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업종의 平均 附價稅 課標現實化率은 52.2%를 나타냈으며 현행 10%의 부가세율을 4~5%로 인하해야 100% 자료거래를 하겠다는 응답과 一貫性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無資料去來의 縮小를 위해서는 稅制改善 및 流通產業 現代化에

1) 金元吉, 『零細, 中小事業者의 金融實名制에 대한 意識調查』, 未發刊 資料, 1993. 10. 수도권지역 영세사업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8%가 4~5% 부가세율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 -20> 100% 資料去來를 하기 위한 附價稅率 引下 程度(전체 응답자 자료)

(單位 : 個, %)

구 분	사례수	부가세 페 지	1~3%	4~5%	6~7%	8~9%	부가세율 조정과 무관
전 체	(627)	11.9	15.6	21.8	8.4	3.6	38.8
업종별							
제조업	(119)	8.9	7.5	29.3	7.6	1.9	44.8
도매업	(66)	9.9	14.8	35.5	13.2	4.1	22.3
소매업	(179)	12.1	16.8	17.8	7.9	4.3	41.0
음식 및 숙박업	(67)	16.6	24.9	13.4	8.3	3.3	33.4
건설업	(17)	6.1	.0	24.3	16.1	6.1	47.5
운수·창고·통신업	(11)	.0	37.8	13.4	13.4	.0	35.4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7)	13.0	6.5	30.3	3.3	6.5	40.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29)	12.8	15.6	17.6	6.0	2.6	45.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4)	8.1	7.5	23.3	14.1	3.8	43.3
일반과세자(개인)	(212)	12.6	15.3	28.2	10.0	5.8	28.1
과세특례자	(246)	12.8	18.5	18.9	6.2	2.1	41.5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자	(56)	9.2	8.3	12.4	9.3	2.1	58.8
비등록사업자	(29)	6.9	13.1	10.0	8.0	.0	62.0
사업자 구분							
법인	(84)	8.1	7.5	23.3	14.1	3.8	43.3
개인	(543)	12.1	15.9	21.7	8.2	3.5	38.6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미만	(55)	8.1	11.8	14.6	10.3	1.6	53.6
100~300만원 미만	(180)	12.6	17.2	19.2	5.5	3.4	42.2
300~500만원 미만	(67)	12.7	9.8	21.2	2.9	1.3	52.1
500~1,000만원 미만	(86)	12.9	21.7	21.8	5.2	5.5	32.9
1,000~3,000만원 미만	(81)	10.2	16.1	23.9	16.1	3.4	30.3
3,000~7,000만원 미만	(35)	14.9	9.3	36.2	18.1	4.5	17.1
7,000만원 이상	(60)	10.9	7.7	37.2	8.2	5.8	30.2

<表 IV -21> 100% 資料去來를 하기 위한 附價稅率 引下 程度
(免稅事業者, 零稅率對象者, 非登錄事業者 除外)

(單位: 個, %)

구 분	사례수	부가세 페 지	1~3% 정 도	4~5% 정 도	6~7% 정 도	8~9% 정 도	부가율 조정과 무관	부가율 조정 평균
전 체	(383)	13.1	16.6	23.9	8.4	4.4	33.7	5.7
업종별								
제조업	(58)	9.5	6.3	30.5	11.4	3.8	38.4	6.4
도매업	(55)	11.9	17.8	35.6	13.9	5.0	15.9	4.9
소매업	(113)	15.2	18.0	19.4	5.8	5.8	35.7	5.7
음식 및 숙박업	(43)	10.2	20.5	15.4	10.2	2.6	41.1	6.1
건설업	(11)	9.1	.0	36.4	9.1	9.1	36.4	6.6
운수·창고·통신업	(6)	.0	46.2	.0	.0	.0	53.8	6.3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3)	16.2	5.4	38.9	.0	.0	39.5	5.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4)	16.8	21.8	19.0	4.6	3.1	34.7	5.3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50)	10.3	6.2	18.5	11.6	6.5	46.9	7.0
일반과세자(개인)	(158)	13.1	15.1	29.6	10.6	6.4	25.2	5.4
과세특례자	(175)	13.2	18.9	18.5	5.8	2.1	41.4	5.9
사업자구분								
법인	(50)	10.3	6.2	18.5	11.6	6.5	46.9	7.0
개인	(333)	13.2	17.0	24.1	8.3	4.3	33.2	5.6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미만	(27)	11.1	11.9	23.3	3.4	3.4	46.9	6.5
100~300만원	(127)	13.7	18.3	18.7	6.8	4.1	38.4	5.8
300~500만원 미만	(47)	10.9	10.6	22.6	4.0	1.8	50.0	6.6
500~1,000만원 미만	(61)	13.1	22.5	23.9	7.1	7.4	25.9	5.2
1,000~3,000만원 미만	(58)	12.7	17.8	29.6	14.9	4.6	20.4	5.1
3,000~7,000만원 미만	(23)	18.6	10.3	33.4	18.5	5.6	13.6	4.8
7,000만원 이상	(40)	10.7	9.3	35.9	8.8	.0	35.4	5.9

대한 支援 擴大 등을 통해 零細商人들의 無資料 商品取扱 유인을 줄이면서 稅政의 強化와 公正去來規程의 強化를 통해 無資料去來 및 製造業體의 不正行爲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는 二元的인 接近이 필요하다.

<表 IV-22>에서 알 수 있듯이 平均附價率이 높은 업종일수록 課標現實化率이 낮고 平均附價率이 낮은 업종일수록 課標現實化率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을 살펴 보면 附價率이 높은 업종일수록 課標를 누락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단위 稅源漏落에 따른 附價稅 節減效果가 상대적으로 부가율이 낮은 업종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高附價率 業種의 경우 100% 자료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율을 많이 인하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低附價率 업종은 상대적으로 高附價率 業種보다 적게 引下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綜合的 評價

金融實名制의 실시가 단기간에 課標陽性化로 이어져 租稅衡平性

<表 IV-22> 平均附價率, 課標現實化率, 適正附價稅率의 關係

(單位 : %)

구 분	부가율	과표현실화율	100%자료거래를 하기 위한 적정부가세율 평균
제조업	21.1	80.5	6.4
도매업	20.5	54.9	4.9
소매업	12.5	54.5	5.7
음식 및 숙박업	49.6	30.0	6.1
건설업	36.0	45.6	6.6
운수·창고·통신업	59.3	42.1	6.3
부동산 임대업	42.2	42.4	5.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7.7	50.1	5.3

의 提高로 직결되리라는 것은 성급한 기대라는 판단이 본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金融實名制가 所得稅 및 法人稅 그리고 附加價値稅의 課稅資料 陽性化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4년 신고된 1993년 귀속 法人稅(3월), 1993년 귀속 綜合所得稅(5월), 그리고 1994년 1기 附加價値稅 確定申告(7월) 등을 綜合的으로 分析하여 大략적인 課稅標準의 陽性化 趨勢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결과 實名制가 課稅資料 陽性化에 미친 影響은 다소 不振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實名制 實施 이후 所得稅의 경우 平均 6.1%, 法人稅의 경우 平均 2.2%, 附價稅의 경우 平均 11.1%의 稅負擔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稅負擔 증가요인으로 1993년 下半期의 景氣恢復과 1993년 10월 附加價値稅 稅務行政의 강화를 주요인으로 꼽았으나 金融實名制에 의한 자발적인 稅源露出은 세부담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에 無資料去來의 규모가 3.2%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의 분석과 상당한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金融實名制 실시에도 불구하고 課稅資料 陽性化가 부진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金融資料를 稅務資料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金融所得의 綜合課稅時까지 借名去來의 利用 可能性이 常存하고 있다는 점과 셋째, 實名制 실시로 인한 納稅者의 납세의식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넷째, 자발적인 課稅資料 陽性化를 위해서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어야 하는데 現行 稅率體系下에서는 課標陽性化가 곧 稅負擔의 增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른 課稅資料 陽性化 程度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실명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자는 것은 아니다. 實名制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의 단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그 첫번째 단계는 실명제 실시로 우려되는 不動産 投機 등의 實物投機, 株價暴落 등의 경제적 충격을 잘 조정하고 예방조치하여 實名制의 순조로운 定着을 이끌어냈는지의 與否에 대한 評價이다. 이러한 첫단계에 대한 評價는 成功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인 實名制로 인한 課標陽性化 그리고 租稅衡平性 提高 등은 實名制 實施 1년에 즈음하여 평가하기엔 때이른 느낌이다. 따라서 두번째 단계에 대한 評價는 中·長期的으로 稅制와 稅務行政의 相互聯關性에 바탕을 두고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V.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租稅關聯 政策課題

제Ⅳ장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實名制 실시 이후 課標陽性化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實名制 실시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實名制가 課標陽性化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지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향후 稅制와 稅政關聯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課標陽性化를 지속적으로 誘導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稅制와 稅政의 상호연관성에 기초를 둔 향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稅制와 稅政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작용이 결여된 稅制改編과 稅務行政의 개선방안이 마련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課標陽性化의 추진을 통해 實名制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稅制와 稅政의 보완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本章에서는 稅制와 稅政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課標陽性化의 추진을 위한 稅制와 稅政關聯 補完對策을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94년에 발표된 세계개혁안의 관련 부분에 대해 논평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租稅政策의 方向

가. 稅率體系의 調整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稅制側面의 補完方案은 「新경제 5個年計劃」의 稅制改革方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¹⁾. 金融實名制의 실시는 과세베이스의 확대라는 新경제 稅制改革의 기본방향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新경제 稅制改革方案에서 제시된 과세베이스 확대라는 기본방향은 租稅理論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稅制와 稅政의 效率性を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과세베이스의 확대란 세금에 대한 특례를 가급적 줄여서 모든 과세대상자가 빠짐 없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新경제 稅制改革部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필요한 租稅減免의 縮小·廢止와 함께 金融實名制의 실시를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화와 課標陽性化는 모두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金融實名制의 실시를 계기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은 課稅資料陽性化와 稅率引下의 相關關係이다. 이 문제는 1993년 稅制改編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이는 과감한 稅率引下를 통해 課稅資料陽性化를 유도해야 한다는 업계와 일부 학계의 주장에 대해 課稅資料의 陽性化 정도를 지켜본 후 전면적인 稅率體系의 調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부당국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띠었다.

논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는 稅務行政의 쇄신이다. 그 동안 稅制와 稅政과의 상호보완에 대한 필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다. 實名制 實施 이후 金融資料와 같은 새로운 課稅資料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稅制와 稅政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효율적이고 공정한 稅務行政을 추진하

1) 大韓民國 政府, 『新경제 5個年計劃(1993~1997)』, 1993. 7. 2.

면서 稅率引下를 단행하는 것은 納稅者에게는 세부담이 증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課稅當局에는 稅收確保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993년 10월 金元吉 의원이 영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9.2%의 중소기업자가 과표를 100% 신고하기 위해서는 附加價值稅率을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인 사업자의 22%가 附加價值稅率을 4~5% 정도로 인하해야 100% 課標陽性化를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稅率引下가 課標陽性化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稅務行政의 뒷받침이 없이 대폭적인 稅率引下가 단행되면 세수확보뿐 아니라 공평과세에도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40% 정도의 사업자가 附加價值稅率 조정과 課標陽性化는 무관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93년 稅制改編으로 시행된 附加價值稅 限界稅額控除制度는 稅率引下 대신 課標陽性化에 따른 세액증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세부담 증대를 경감하려는 시도였다. 한계세액공제제도가 課標陽性化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稅務行政上的 뒷받침이 한계세액공제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稅務行政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납세자 스스로 課標陽性化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계세액공제제도는 課標陽性化를 실현하지 못한 채 세액만 감면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稅率引下와 동시에 강력하고 과학적인 稅務行政을 추진하는 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稅率引下는 1996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분리과세되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됨에 따라 증가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綜合所得稅率體系를 下向調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세율구조의 조

정은 조정폭이나 누진구조에 따라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稅率構造를 찾아야 한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하여 高所得層이나 事業所得者의 세부담이 너무 급격히 증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세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最高稅率은 所得稅制의 누진구조를 심화시켜 결국 근로의욕의 상실과 사업소득의 탈세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의 조정과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세부담 증대의 완화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세부담 증대를 완화하고 課標陽性化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所得稅制의 累進構造를 緩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最高稅率을 引下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最高稅率의 인하는 외국의 세율체계 및 우리나라의 階層別 所得分布 構成을 감안할 때 40%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²⁾. 우리나라의 계층별 소득분포는 1980년대 말의 3低好況과 거품경제현상을 거치면서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金融所得의 경우 고소득층에의 집중이 강화된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의 분산이 상당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所得稅率의 累進構造 調整을 위한 最高稅率 引下는 所得稅의 세수비중 증대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最高稅率이 인하됨으로써 最高稅率 適用課標도 동일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수준(6,40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적용과표를 인상시킬 경우 階層間 稅負擔 輕減效果·所得稅收 등에 적지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 韓國租稅研究院, 『金融所得綜合課稅와 開放化·國際化를 위한 稅制改革方案』, 1994. 6.

또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1994년 세계개혁안은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세율계급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소득공제액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이것은 누진도의 완화를 통한 세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방향인 것으로 평가된다.

所得稅率의 調整과 함께 法人稅率의 引下도 고려될 수 있다. 法人稅率의 引下는 法人의 課標陽性化를 위한 절실한 조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과표현실화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法人稅率이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東南亞 競爭國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法人稅率의 引下가 검토될 수 있다. 法人稅 負擔의 輕減이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充分條件은 아니다. 그러나 國內 金融市場環境 등 우리 기업이 처한 경제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稅制面에서라도 경쟁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 法人稅率을 적정수준으로 引下하되, 稅收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연차적 예시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附加價值稅制의 改編方向

그 동안 流通市場의 미정비로 인한 無資料去來, 領收證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賣出漏落이 빈번하여 附加價值稅의 課稅捕捉率이 낮았다. 이제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賣出漏落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附加價值稅의 과세포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설문조사에서도 所得稅와의 상호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밝혀졌듯이 소득세의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세원이 노출되어 附加價值稅 및 所得稅의 세부담이 크게 증

가할 것이다. 附加價値稅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實名制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를 경감해 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며 間接稅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세액의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렵다. 즉, 실질적으로는 세액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稅制改編 중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급격히 늘어나는 附加價値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實名制의 실시에 따라 課稅特例者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다소 완화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課稅特例者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되, 少額不徵收 範圍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 附加價値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한계세액공제제도의 방만한 운용이나 남용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韓國租稅研究院에서는 지난 1994년 6월 발표한 稅制改革方案에서 附加價値稅 본연의 機能強化와 건전한 納稅風土의 定着을 위하여 課稅特例制度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이 개선방안은 앞으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채택될 것이지만 附加價値稅 과세특례제도의 개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無記帳을 근거로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附加價値稅 課稅特例者가 될 뿐만 아니라 所得稅의 所得標準率에 의한 推計調査者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附加價値稅의 課稅特例制度는 所得稅의 標準所得率制度和 함께 소득세가 申告納付制度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財産稅制의 改編

實名制 실시와 관련된 중요한 稅制改革의 내용으로 財産課稅의 強化를 빼놓을 수 없다. 金融實名制가 정착되면 金融資產 所得은

100% 과표가 노출되는 반면 不動産 所得은 아직까지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時價에 못미치는 課標에 따라 과세된다. 이것은 資産間 稅負擔의 衡平性 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財産課稅의 強化가 제기되는 것이다.

선진국형 재산과세의 특징이 保有課稅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도 부동산과세를 保有費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新경제 5개년계획에 따르면 綜合土地稅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1996년부터 과세표준을 公示地價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土地課標를 差等引上하여 1995년 公示地價 대비 전국평균 30~40%가 되도록 하고 1996년부터 課稅標準을 公示地價로 轉換하여 平均實效稅率을 현재의 2~3배가 되도록 調整할 계획이다.

현재, 土地의 課標現實化 수준은 1993년 公示地價 대비 21.3% 수준에 불과하고 평준화되어 있지 않아 租稅衡平을 저해하고 土地過多保有를 억제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다. 1995년까지 土地課標를 公示地價의 30% 수준으로 平準化하면 綜合土地稅額은 1993년의 8,858 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증가하여 稅負擔은 1993년 수준의 1.5~2배가 될 것이다. 현행 綜合土地稅의 綜合合算課稅 對象土地의 稅率體系는 課稅區間이 좁고 累進程度가 급격해서 課稅時價標準額이 個別公示地價의 50% 수준으로 현실화되어도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따라서 課標現實化와 더불어 課稅區間을 넓히고 累進度를 緩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996년에 土地課標를 公示地價의 50~60% 수준으로 一元化하면서 稅負擔은 평균적으로 1993년 수준의 2~3배에 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土地課標를 단계적으로 公示地價의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土地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稅負擔의 衡平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建物보다 土地가 重課되어야 하며 住宅보다는 商業用 建物이 重課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강화보다 土

地保有에 대한 綜合土地稅의 強化가 더 급선무이다. 또한 財産稅制의 建築物 評價方法 및 稅率體系의 改編을 통해 建築物間의 稅負擔 衡平性을 提高해야 할 것이다.

土地超過利得稅는 기본적으로 미실현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이며 시행상의 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綜合土地稅와 讓渡所得稅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어 土地利用 및 開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나타나게 될 短期的·局地的 地價急騰勢가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라 長期的·全國的인 地價急騰勢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상 나타난 부작용 등을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당분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土地超過利得稅를 讓渡所得稅에 대한 예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補完하고 遊休土地判定과 관련된 기준들을 가급적 통일시키고 완화하여 조세마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改編方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讓渡所得稅는 그 동안 높은 세율구조(40~60%)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非課稅 및 減免條項 등으로 인해 實現된 讓渡差益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과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稅率을 綜合所得稅의 稅率體系에 맞추어 조정하면서 각종 控除, 非課稅 및 減免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相續·贈與稅制의 改編

金融實名制 실시로 假名 및 借名에 의한 금융자산의 세습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相續·贈與財産에서 金融資産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相續資産의 회피가 많았을 때를 고려하여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相續·贈與稅의 稅率을 調整하고 控除額을 擴大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金融實名制 시행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증여세의 보완방향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稅目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稅率體系 및 控除範圍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相續·贈與稅制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993년 稅制改編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最高稅率을 5% 포인트 引下하고, 각종 控除額도 획기적으로 引上하였다(상속세 기초공제액: 1억원, 결혼생활 30년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4억원, 결혼생활 20년의 배우자 증여공제액: 약 1억원(9천만원)³⁾. 長期的으로는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은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인정해 주는 방안과 영국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배우자 상속재산 전액에 대하여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金融實名制 실시로 배우자의 金融資産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엄격해짐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金融實名制 실시를 계기로 배우자간의 상속·증여에 대한 현행 課稅制度의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富의 집중을 억제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應能課稅原則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유형으로 평가되는 취득과세형으로 현행 유산과세형을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은 면제되어야 한다. 특히 취득과세형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承繼稅(accessions tax)는 相續稅와 贈與稅를 완전 통합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평생 누적과세하는 제도로서 수평적·수직적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과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이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韓國租稅研究院의 稅制改革建議案에서는 遺産取得課稅로의 전환

3) 최근 韓國租稅研究院의 建議案에서는 세율과 공제액의 조정을 통한 세 가지 案을 제시하고 있다.

의 전단계로 法定相續分 課稅方法을 제시하였다. 法定相續分에 의한 상속세액 결정은 유산취득형의 본래 목적인 應能負擔의 原則과 富의 分散促進에는 미흡하나, 配偶者에 대한 控除規模 확대가 가능하고 배우자 공제혜택을 배우자가 직접 받게 되며, 相續稅와 贈與稅를 통합하여 單一稅率體系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제행정 전산망이 완비되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合算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遺産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한다면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配偶者控除를 2단계로 설정하여 配偶者의 實際相續分(과세가액)이 일정액(5억원 또는 현행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配偶者의 算出稅額을 全額控除하고, 實際相續分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法定相續分(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算出稅額을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현재 1억원의 基礎控除는 유산취득과세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재차상속인 경우가 대부분임)에 대한 배려로서 이를 계속 존속시켜 '1억원+주택공제(1억원 한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子女控除 및 年老者控除는 폐지하고, 未成年者控除 및 障礙者控除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상향조정하여 매년 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편 金融實名制 실시로 상속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자산과 부동산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金融資產은 市場價額에 의해서 평가되나 土地는 公示地價(시장가액의 80% 수준)로, 共同住宅은 國稅廳 基準時價(實去來價額의 70~75% 수준), 建築物은 內務部 課稅時價標準額(실거래가액의 30~40%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現金化가 어렵고 物納이 인정되므로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實去來價額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稅務行政의 刷新

金融實名制는 금융거래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각종 稅源의 陽性化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金融情報가 課稅資料로 활용되어 課標가 陽性化되기까지는 稅務行政上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實名制가 실시되었다고 하여도 의도적인 차명이나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는 여전히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實名制 정착을 위한 稅制側面의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稅務行政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시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현재 사업소득자에게 주어지는 課稅資料 陽性化의 誘引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事業所得者에게 稅率引下 등과 같은 適切한 稅制上의 誘引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소득자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조치에 협력하여 세금을 納付토록 함으로써 稅額이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課稅資料 陽性化가 지지부진하여 오히려 納付稅額이 減少할 可能性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金融實名制의 早期 定着과 課稅資料 陽性化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보완조치 이외에 稅務行政上으로도 納稅指導를 적극 강화하고 특히 無資料 去來商들의 資料陽性化를 위한 指導와 團束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稅務行政當局의 납세지도 노력이 징세강화의 노력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課稅資料의 陽性化를 유도하기 위해서 事後的으로 稅務調査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事前的인 情報蒐集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세청의 電算能力이나 예산 및 전산관계 인원은 金融機關의 전체 계좌수인 약 1억 8천만개를 처리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전적인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金融所得 綜合課稅時 방대한 金融所得資料를 人別·家口別로 電算處理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의 主電算

機의 용량을 擴大하고, 제출서식 및 코드를 표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금융자료 이외에도 앞으로 각종 課稅資料가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전산종합정보체제 확립에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국세청에 편성한 稅政企劃團의 활동방향이다. 稅政企劃團은 金融實名制의 實施, 金融所得 綜合課稅, 그리고 高度情報産業時代로의 進入에 따라 각종 대량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稅政與件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는데, 중심사업내용은 국세청 업무의 혁신, 국세행정조직의 개편 및 국세청 전산망의 구축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稅政企劃團의 稅務行政 刷新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쇄신방안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다. 아울러 稅政企劃團이 마련하는 稅務行政刷新方案을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稅務行政 刷新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방안 마련을 시도하였지만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강한 실천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문민정부시대의 稅務行政 刷新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稅務行政 現況은 인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이에 따른 稅源管理의 허술 등 稅務行政의 效率性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納稅者의 權益保護라는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이를 위해서 稅制改革의 단행과 더불어 불요불급한 行政負擔을 축소하고, 納稅서비스 機能을 擴充하며 不誠實申告에 대한 規制를 강화하는 등의 稅政改善方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短期的으로 稅政의 대폭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不誠實申告 및 脫稅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실화하되, 보다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加算稅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中

· 長期的으로는 國稅行政組織을 현재의 稅目別 조직에서 機能別 조직으로 개편하고, 능률적인 電算體制를 구축하여 稅務調査를 강화하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不條理 방지를 위하여 稅務調査要員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稅務不條理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一般公務員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방안도 檢討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微視的인 觀點에서의 稅務行政 刷新은 所得稅 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이라고 할 수 있다. 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標準所得率制度의 改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과 標準所得率制度의 改編에 관련된 稅務行政上 보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

현재 所得稅의 政府賦課決定制度下에서는 全數調査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스스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하겠다⁴⁾. 申告納付制度가 도입되면 납세자의 신고 자율성이 보장되고 정부의 조사권 발동이 제약되어 納稅便宜 增進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金融實名制가 실시되어 각종 金融資料가 課稅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다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徵收費用을 줄이기 위해서도 신고납부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申告納付制度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장 및

4) 1994년 稅制改革案에서는 1995년부터 소득세를 申告納付制度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무계산 능력이 제고되고 稅務士 등 전문가의 조력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신고성실도 관리를 위한 國稅廳의 심리·분석기능이 강화되고 조사기능이 확충되는 등 稅務行政 改編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無申告者의 증대문제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도입초기에 급증하게 될 무신고자를 적절히 처리하고 신고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상 신고지도 및 독려와 稅務代理人의 적극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稅務行政組織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稅目別 組織에서 機能別 組織으로의 개편을 통한 行政의 效率化方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申告納付制度의 基本方向은 自律申告를 철저히 보장하여 각종 申告基準을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신고간섭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요건 및 절차를 법제화하여 조사권 발동을 엄격히 한다는 것이다.

나. 標準所得率制度的 全面 改編

1993년 귀속분의 경우 事業所得稅 전체 신고인원 중에서 66.2%가 推計調査申請者였고 세액기준으로는 25.2%를 차지함으로써 표준소득률제도는 여전히 所得稅機能의 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이 추계조사결정의 비중이 큰 것은 事業所得稅 行政이 각종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標準所得率이 業種別로 정확히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 하여금 과표누락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점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推計調査決定者의 대부분이 附加價値稅의 課稅特例者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한층 커진다. 즉, 모든 所得稅 推計調査決定者가 附加價値稅 課稅特例者가 된다는 것은 所得稅의 標準所得率制度가 附加價値稅의 課稅特例制度和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⁵⁾.

記帳者 또한 표준소득률표에 의거하여 업종별로 申告基準率에 따

라 實地調査를 결정한다는 사실로 볼 때 표준소득률제도 자체를 재 검토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이다. 事業所得者の 課稅者比率이 낮은 것은 현재 推計調査決定이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推計調査決定의 所得推計 기준이 되는 標準所得率制度의 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標準所得率制度의 改編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1995년부터 시행기로 계획되어 있는 所得稅 申告納付制度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稅務行政上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추계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국세전산망 확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附加價値稅의 課稅特例制度가 標準所得率制度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과세특례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事業所得者 중 推計調査者의 경우 稅務行政上 所得稅는 住所地, 附加價値稅는 事業場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현행 制度를 동일기준으로 전환하여 所得稅와 附加價値稅 擔當 行政組織을 單一化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득세의 추계조사자와 부가세의 과세특례자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金融慣行 正常化의 實態分析

1. 設問調查 目的 및 內容

가. 調查目的

金融實名制가 실시되기 전에는 實名制가 産業活動을 포함한 巨視經濟 및 金融市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지, 별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예를 들면, 1982년 7월 15일 政府가 “1983년 7월 1일 이후 假名·無記名 형태로 있는 預金 등 金融資產은 實名化될 때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실시되기 전까지 假名去來에 대한 差等課稅의 실시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천명되어 왔으므로 크게 우려할 만한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그 하나다. 다른 한 견해는 金融實名制의 본격적 실시의 경험이 없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經濟·社會的 충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기대와 우려 속에 1993년 8월 12일 大統領의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 財政經濟命令』으로 金融實名制가 전격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실제로 금융실명제 실시 후 通貨管理와 物價問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1993년 말부터 景氣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증권시장도 단기간내에 안정을 회복했고, 산업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實名制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상황의 호전이 實名制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實名制가 巨視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저축자들의 행태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인데, 일반 개인 저축자들의 금융거래 관행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거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개별 貯蓄者로부터 비롯되는 금융거래 관행이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實名制 실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金融實名制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主要 調査內容

非實名の 금융거래 관행은 저축자의 수요, 금융기관의 공급 및 제도의 미비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緊急命令으로 실시된 金融實名制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실지명 의미가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實名制下에서 金融慣行의 변화는 실명제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행태변화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實名去來制度에 대한 의식, 정부의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감,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에 대한 신뢰감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에 本 研究은 이미 제Ⅲ장에서 분석한 金融實名制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조사와 병행하여 개별 경제주체로서 저축자와 금융기관종사자의 金融實名制에 대한 의식을 추가로 조사하고 개별 저축자의 貯蓄率, 資産構成行態와 證券市場 및 私債市場의 변화, 정부의 정책 혹은 정책의지에 대한 민간의 信賴感 등을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1) 實名制 實施 前의 非實名計座

가) 非實名計座의 類型 및 保有動機

나) 非實名計座에 대한 規制의 認識

- 다) 非實名計座 生成의 主體

- 2) 實名制 實施 後의 意識變化
 - 가) 金融實名制에 대한 贊反
 - 나) 金融實名制에 대한 意識
 - 다) 非實名去來에 대한 意識變化

- 3) 實名制의 金融慣行에 대한 影響
 - 가) 資産構成行態
 - 나) 貯蓄率
 - 다) 證券市場
 - 라) 私債市場

- 4) 政府政策에 대한 信賴感
 - 가) 金融去來에 관한 秘密保障
 - 나) 資金出處調査

다. 設問調査 및 分析方法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종사자에 대한 조사방법, 표본설계 및 자료의 통계적 처리방법 등의 내용은 제Ⅲ장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단, 金融慣行에 관한 조사대상에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金融實名制가 금융거래 관행에 미친 영향을 좀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제Ⅲ장에 제시한 個人事業者 및 法人事業體의 설문조사에 금융거래관행에 관한 설문을 일부 포함시켜 수행하였다.

金融實名制에 따른 의식이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金融實名制 실시 전의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金融實名制가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金融慣行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는 1989년 金東源 교수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따라서 1989년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당시 설문과 유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貯蓄者와 金融機關從事者 및 個人事業者의 설문에도 유사한 내용의 설문을 다수 배치하였다.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은 통계적 처리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해석을 위주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설문조사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2. 實名制 實施 前의 非實名計座

가. 非實名計座의 類型 및 保有動機

우리나라의 金融市場에 非實名計座의 개설 및 이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1961년 7월 29일 법률 제668호 「預金·積金 등의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¹⁾. 이후 1983년 7월 非實名の 금융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도입할 때까지 假名, 借名, 盜名 등의 비실명거래가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차등과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非實名去來는 지속되었는데, 이는 金融 實名制가 실시 전까지는 非實名計座라도 원본에 대한 5%의 과징금이 유명무실했고,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83년 이후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중에 비실명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는 實名化하였다. 이러한 實名化 추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비실명계좌는 작년 實名制 실시 전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대부분의 研究者들은 非實名 金融資産의 총액이 국내 金融資産의 9

1) 李逸均·金裕萬, 「金融改革과 金融實名制」, 『1993年度 定期學術大會 論文集』, 韓國金融學會, 1993.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非實名 金融資産의 규모를 밝히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나, 非實名計座의 보유사실에 관한 설문을 하여 저축자 중 어느 정도가 非實名去來를 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非實名計座의 유형과 보유사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表 VI-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實名轉換 義務期間 중 실명 전환이 필요한 計座를 보유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6.2%가 '예'라고 답하였으며, 특히 金融資産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는 33.3%가 非實名計座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實名化 비율 83.8%는 1989년(金東源)의 연구에서 '개인의 實名化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應答者의 73.6%가 '모두 실명'이라고 응답한 것보다는 높은 實名化率을 보여준다. 그러나 1989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26.4%가, 본 연구의 경우 1993년 8~10월까지 응답자의 16.2%가 非實名計座를 통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VI-1> 金融資産 規模別 非實名 計座 保有

(單位: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계
예	13.7	14.8	15.7	22.2	33.3	16.2
아니오	86.3	85.2	84.3	77.8	66.7	83.8
사례수	153	176	261	45	30	665

金融實名制 실시 전에 非實名計座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했는가? 借名計座의 경우 그 구체적인 통계파악은 상당한 정보비용의 문제를 수반한다. 재무부에서 발표한 實名轉換實績(1993년 10월 12일 현재) 통계에서 借名에서 實名으로 전환한 실적이 3조 5천억원으로 금액만 발표되고 計座 數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借名計座

의 비율은 단지 성실한 응답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만 그 近似值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實名轉換 義務期間 중 實名으로 전환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종사자들은 29.9%가 假名, 64.3%가 借名, 4.9%가 盜名計座라고 답하였다(<表 VI-2> 참조).

이 결과는 1989년의 경우도 非實名計座를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 70.8%가 타인명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부분의 非實名去來의 유형이 차명거래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질문에 응한 저축자 모두가 1計座씩만 보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계좌의 약 10.4%가 借名計座에 해당한다²⁾. 실제 차명계좌의 금액은 알 수 없지만 計座 수와 금액이 비례한다고 가정한다면 非實名 金融資産의 문제는 假名計座라기보다는 오히려 借名計座에 있다. 따라서 金融所得

<表 VI-2> 非實名計座의 類型

(單位: 명, %)

	사 례 수	비 율
假 名	191	29.9
借 名	410	64.3
盜 名	31	4.9
無 應 答	6	0.9
계	638	100.0

2) <表 VI-1>에서의 非實名 보유비율인 16.2% 중 <表 VI-2>에서와 같이 64.3%가 借名計座 비율일 경우 전체 계좌의 10.4%(16.2%×0.643)가 借名計座에 해당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소가 1993년 9월에 서울·경기주 중산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應答者の 10%정도가 본인만인 이상의 假·借名計座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綜合課稅가 도입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借名去來를 철저히 방지하지 않을 경우 金融實名制 그 본래의 취지가 크게 손상당할 수 있다.

金融實名制 실시 전에 非實名 金融資産에 대한 差等課稅는 실명 자산에 부과되는 21.5%의 3배 정도인 64.5%였다. 이러한 差等課稅에도 불구하고 저축자들이 非實名 金融資産을 보유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非實名計座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저축자들은 '제3자가 만들어준 통장을 실명으로 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81.5%, '差等課稅를 받더라도 재산규모 노출이 싫어서' 13.0%, '가명으로 하는 것이 증여나 상속에 유리할 것 같아서' 5.4%의 순으로 그 보유동기를 답하였다. 階層別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규모 노출이 싫어서', 젊을수록 '實名化가 귀찮아서' 非實名計座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VI-3> 참조).

<表 VI-3> 非實名計座 保有動機

(單位: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계
귀찮아서	80.8	90.7	68.8	57.1	81.5
재산규모 노출	11.5	7.0	18.8	42.9	13.0
증여, 상속위해	7.7	2.3	12.5	0	5.4
사례수	26	43	16	7	92

결국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非實名計座를 보유했던 사람은 18.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實名化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非實名計座를 보유한 셈이다. 한편 金東源 교수(1989년)의 연구에서 '差等課稅에도 불구하고 假名 金融資産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5.4%가 '재산규모 노출을 꺼려서', 18.4%가 '자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에 편리해서', 36.2%가 '實名化가 귀찮아서'라고 답한 것

과는 대조적이다.

두 설문조사의 표본이 保有金融資産 規模의 분포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非實名計座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金融實名制가 실시되기 전인 1989년과 실시 후인 1994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는 설명될 수도 있다.

나. 非實名計座에 대한 規制의 認識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굳이 非實名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었지만 實名化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非實名計座를 보유하고 있었던 응답자가 81.5%(1989년의 경우 36.2%)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非實名計座에 대한 差等課稅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보게 되는지 인식하고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종사자와 저축자들에게 金融實名制 실시 이전에 非實名計座에 대한 差等課稅率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表 VI-4>에서 나타나듯이 차등과세율이 64.5%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종사자는 전체의 35.7%에 불과하였으며, 저축자들의 경우는 더 낮아서 18.5%에 불과하였다. 금융기관종사자들의 경우 입종별로 보면, 단자·종금의 종사자들의 53.2%, 투자신탁 종사자의 52.2%가 정확한 답을 한 반면에 증권 37.5%, 은행 33.9%, 보험업종은 8.3%만이 정확한 답을 하였다.

保險의 경우 금번 金融實名制가 실시되기 전에는 실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證券과 銀行의 경우는 각 금융기관이 實名化의 추진에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저축자들의 경우는 非實名計座를 보유했던 응답자의 21.3%, 보유하지 않았던 응답자의 18.4%가 差等課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差等課稅에 대한 이 정도의 認知度는 저축자들의 非實名計座 선택의 대부분이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과정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表 VI-4> 従前 非實名計座에 대한 差等課稅 認識

(單位 : 명, %)

	貯蓄者		金融機關從事者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實名の 21.5%와 동일	106	15.7	104	16.3
實名の 2배인 45%	95	14.1	97	15.2
實名の 3배인 64.5%	125	18.5	228	35.7
實名の 4배인 85%	22	3.3	30	4.7
잘 모르겠다	315	46.7	15.8	24.8
무응답	12	1.8	21	3.3
계	675	100.0	638	100.0

非實名 資産을 보유했던 저축자들이 금융소득에만 差等課稅하는 정도의 불이익을 무시했거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근무방식과 정부의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非實名計座 生成의 主體

금융시장에서 '非實名'이라는 금융서비스는 저축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금융기관들의 外形競爭에 따른 적극적 영업행위에 의해

<表 VI-5> 非實名計座 開設 理由

(單位 : 명, %)

	貯蓄者		金融機關從事者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고객의 요구	241	35.7	294	46.1
금융기관의 판촉활동	147	21.8	112	17.6
양자의 이해일치	248	36.7	220	34.5
무응답	39	5.8	12	1.9
계	675	100.0	638	100.0

서 창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자와 금융기관종사자에게 '金融實名制 이전에 개설된 非實名計座 가운데 고객의 요구와 금융기관의 권유에 의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表 VI-5>에서 나타나듯이 저축자들은 '고객의 요구' 35.7%, '금융기관의 판촉활동' 21.8%, '양자의 이해의 일치' 36.7%로 응답하고, 금융기관종사자들은 '고객의 요구' 46.1%, '금융기관의 판촉활동' 17.6%, '양자의 이해의 일치' 34.5%로 답하였다. 각 지문의 의미를 非實名計座 開設에 대한 적극성의 정도로 해석한다면, 종래의 非實名計座는 1차적으로 고객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부추기는 형태로 발생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3. 實名制 實施 後의 意識變化

가. 金融實名制에 대한 贊反

제Ⅲ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실시된 金融實名制에 대해서 실시 후 저축자의 88.9%, 금융기관종사자의 92.8%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9년의 연구에서 저축자의 66.4%, 금융기관종사자의 84.3%가 찬성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實名制 실시 후 경제주체들의 實名制에 대한 의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금번 실시된 實名制가 꼭 필요한 조치였는가'하는 질문에 저축자의 82.0%, 금융기관종사자의 83.9%가 '예'라고 답하여,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社會的인 道德性의 문제와 個人的인 有用性과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社會的 道德性만의 충족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實名制

에 대한 찬반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은 金融實名制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實名制 실시의 시기에 대한 異見 때문일 수도 있다.

나. 金融實名制에 대한 意識

우선 이번에 실시된 金融實名制에 대해서 저축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정도는 貯蓄者들의 意識變化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귀하께서 金融實名制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저축자의 45.7%가 '實名으로 去來해야 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 30.7%가 '實名制는 물론 綜合所得課稅 실시 豫定時期에 대해 알고 있다', 23.7%가 '實名制·綜合所得課稅 및 過徵金이나 未成年者 名義의 保有限度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계층별로 특이한 것은 보유한 金融資産 규모가 작을수록 實名制 내용 파악이 부정확하여 '5백만원 미만'의 경우는 58.2%가 '實名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정도만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적인 實名制의 실시 자체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表 VI-6>에서 나타난 것처럼 45.7%가 '實名으로의 去來'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 과징금 및 미성년자 보유한도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나 금융기관이 金融實名制에 대해 알기 쉽고 體系的인 弘報에 疏忽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金融實名制가 현 정부의 개혁과정의 하나로서 취해진 조치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부유층이나 서민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는 더욱 철저히 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金融實名制가 부과하는 여러 형태의 制裁手段들에 대한 저축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過徵金, 資金出處 調

〈表 VI-6〉 實名制에 대한 理解程度

(單位 :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이상	계
실명거래	58.2	49.4	41.1	23.9	33.3	45.7
종합소득세	27.5	28.4	32.3	43.5	26.7	30.7
미성년자한도	14.4	22.2	26.6	32.6	40.0	23.7
사례수	153	176	263	46	30	668

査, 制裁手段 중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이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시각에서 저축자들이 金融實名制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도 조사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축자들이 金融實名制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制裁手段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적지 않고 응답자들의 직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면 분석결과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현행 金融實名制는 實名轉換義務期間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최고 60%의 過徵金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課徵金은 金融實名制의 조속한 정착과 金融去來慣行의 正常化를 위해서 非實名 金融資産의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課徵金이 원본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私有財産權 侵害의 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課徵金에 대한 저축자들의 견해는 金融實名制의 조기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課徵金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평가한다는 측면이 있다. 課徵金에 대해 저축자의 13.0%는 '부당하다', 27.6%는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59.4%는 '더 무거운 課徵金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金融資産 보유 규모가 작을수록 課徵金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5백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응답자의 63.3%가 더 무거운 課徵

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VI-7> 참조).

그런데, 현행 實名制에 대해서 45.7%가 '實名으로의 거래'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課徵金이 첫째에 10%가 부과되고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최고 60%까지 부과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저축자들이 알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9.4%가 '60%보다 더 무거운 課徵金'을 지지하며, 특히 保有金融資産이 작을수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변칙적인 贈與나 相續의 수단으로서의 非實名 金融去來에 대한 社會的 反感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부당하다'고 답한 27.6%의 응답자는 이와 같은 課徵金 부과가 국민의 基本權 侵害의 소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VI-7> 實名轉換業務期間 違反에 대한 課徵金

(單位: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계
부당하다	15.0	13.5	11.4	6.5	23.3	13.0
하향조정	21.8	27.6	27.8	45.7	26.7	27.6
상향조정	63.3	58.8	60.8	47.8	50.0	59.4
사례수	147	170	255	46	30	648

현행 金融實名制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은 1천 5백만원,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3천만원, 30세 이상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實名으로 전환된 金融資産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종래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700만원 이상일 때 資金出處 調査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非實名去來가 저축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용성 중의 하나는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非實名 金融資産의 보유동기가 '증여나 상속에 유리할

<表 VI-8> 未成年者の 限度超過 保有 金融資産에 대한 調査

(單位: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이상	계
조사불필요	5.9	4.0	4.2	13.0	30.0	6.3
최소한조사	43.8	46.0	48.1	41.3	33.3	45.4
엄격한조사	50.3	50.0	47.7	45.7	36.7	48.3
사례수	153	174	260	46	30	663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5.4% 정도였지만, 1989년의 연구에서는 18.4%가 '증여에 편리하기 때문에' 非實名 金融資産을 보유하고 답하였다. 이러한 변칙적 상속·증여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의 한도초과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저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表 V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3%,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하다' 45.4%,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4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89년의 연구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7%,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하다' 51.8%, '엄격하게 해야 한다' 24.5%에 비하여 훨씬 강경한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金融實名制의 여러 조치 중 저축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었다. 그 결과 <表 VI-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모두 합당하다' 40.1%, '예정된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 26.9%, '재산규모의 노출문제' 13.8%, '자금이동 내용의 조사 가능성' 8.6%, '과징금' 6.0%,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4.6%의 순으로 답하였다. 金融實名制에 대해 저축자의 88.9%가 찬성하는 가운데, 실명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치에 대해 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저축자들의 27%는 앞으로의 세부담 증가에

<表 VI-9> 金融實名制의 不當한 部分

(單位 :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이상	계
종합과세	30.3	25.6	27.3	20.5	23.1	26.9
과징금	7.0	6.1	4.3	11.4	7.7	6.0
자금출처 조사	4.2	3.7	5.5	4.5	3.8	4.6
자금이동 조사	6.3	7.9	7.5	20.5	15.4	8.6
재산규모 노출	14.8	9.8	15.0	11.4	26.9	13.8
모두 합당	37.3	47.0	40.3	31.8	23.1	40.1
사례수	142	164	253	44	26	629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14%는 재산규모의 노출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셈이다.

특이한 것은 金融資産 보유규모가 작을수록 세부담에 대해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21.5%의 일률적인 金融資産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과 비교할 때,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오히려 課稅不平等 문제를 改善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동시에, 金融去來에 관한 秘密保障에 대해 국민들이 좀더 信賴 感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종사자들의 시각에서 저축자들이 金融實名制로 인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에 대해, '자금출처의 조사 가능성' 30.7%, '예정된 金融所得 綜合課稅' 29.6%, '재산규모 노출' 22.7%, '贈與나 相續의 회피 어려움' 17.0%의 순으로 답하였다(<表 VI-10> 참조). '증여나 상속의 회피 어려움'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 저축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참고하면, '綜合課稅-재산규모의 노출-資金出處 調査 가능성'의 순이어서 金融機關從事者들이 생각하는 첫번째 어려움이 '자금출처 조사 가

〈表 VI-10〉 貯蓄者들의 不便(金融從事者의 意見)

(單位 : 명, %)

	은행	단자·종금	보험	증권	투자신탁	계
종합과세	24.1	36.9	23.1	32.1	40.8	29.6
재산규모 노출	24.9	33.8	30.8	18.5	4.1	22.7
증여·상속 곤란	17.2	9.2	15.4	18.6	20.4	17.0
자금출처 조사	33.7	20.0	30.8	29.8	34.7	30.7
사례수	261	65	39	215	49	629

능성'이라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종합과세와 재산규모 노출'의 문제는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문제에 비하면 금융기관종사자와 저축자간에 交感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金融實名制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制裁手段에 대해서도 저축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분배의 갈등과 관련된 자금출처 조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金融實名制에 앞서서 시행된 土地綜合課稅, 土地超過利得

〈表 VI-11〉 高所得者의 負擔 增加에 대한 意見

(單位 : 명, %)

	사례수	비율
저항감 없음	409	60.6
경제성장에 따라 불가피	75	11.1
분배갈등 해소되면 수용	156	23.1
가진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25	3.7
무응답	10	1.5
계	675	100.0

稅 등의 제반조치는 우리나라의 分配葛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가진 자들의 고통분담이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저축자들의 의견은 '高所得層의 稅金負擔 增加는 당연하다' 60.6%, '經濟成長에 따라 불가피하다' 11.1%,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分배갈등이 해소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23.1%, '정부가 가진 자들을 너무 들볶는다' 3.7%로 답하였다(表 <VI-11> 참조). 1989년의 연구에서 동일한 설문문에 대해 '富裕層의 많은 租稅負擔은 當然하다'는 응답이 46.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富裕層의 사회 내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자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非實名去來에 대한 意識變化

非實名으로 金融資産을 관리함에 따른 이익이 금융자산을 非實名으로 보유하는 데 따르는 비용보다 더 크다면, 저축자는 비실명 금융자산 보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과거에 非實名 金融資産이 고객의 요구와 금융기관의 부추김으로 양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金融實名制 실시 후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서 요구되는 의식변화는 非實名の 금융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이나 직장상사의 지시에 대해 당당히 거부하는 자세일 것이다.

'고객의 非實名 서비스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85.5%가 '부당함을 알린다', 7.3%가 '상사에게 문

<表 VI-12> 非實名計座 開設 問議에 대한 反應

(單位: 명, %)

	은행	단자·종금	보험	증권	투자신탁	계
불가능 알림	93.5	84.4	70.3	77.3	95.8	85.5
상사에 문의	4.2	10.9	13.5	9.7	2.1	7.3
고객에 편의	2.3	4.7	16.2	13.0	2.1	7.2
사례수	261	64	37	216	48	626

의한다', 7.2%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도모한다'로 나타났다. 특히, 保險·證券業種에서 고객의 문의에 대해 정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表 VI-12>).

한편, '직장상사의 非實名去來 지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종사자의 75.3%가 '거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24.7%는 '따른다'고 답하였다(<表 VI-13>). '따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상사의 지시이므로 할 수 없이' 55.4%, '직장의 이익을 위해' 31.8%, '고객의 이익을 위해' 7.0%의 순으로 답하였다(<表 VI-14>). 또, 저축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종사자들의 실명확인 방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고객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인정한다' 7.4%, '주민등록증과 기재내용을 대조한다' 47.6%, '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및 본인여부도 확인한다' 44.3%로 답하였다(<表 VI-15>).

<表 VI-13> 上司의 非實名去來 要求에 대한 職員의 反應

(單位: 명, %)

	은행	단자·종금	보험	증권	투자신탁	계
거부한다	84.3	86.2	53.8	64.8	77.6	75.3
따른다	15.7	13.8	46.2	35.2	22.4	24.7
사례수	261	65	39	219	49	633

<表 VI-14> 上司의 要求에 따르는 理由

(單位: 명, %)

	사례수	비율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50	31.8
상사의 지시이므로	86	55.4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11	7.0
기 타	9	5.7
계	156	100.0

<表 VI-15> 實名確認의 節次

(單位 : 명, %)

	사례수	비율
고객의 기재사항 인정	50	7.4
주민등록증과 대조	321	47.6
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본인 확인	299	44.3
무응답	5	0.7
계	675	100.0

고객의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알린다는 85.5%의 비율과,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다는 75.3%의 비율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금융사고는 단 한 計座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객의 요구에 직면하여 상사에게 문의하거나 편의를 봐준다는 14.5%,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는 24.7%는 제3의 장영자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실명확인 방법에서 고객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및 본인여부 확인까지 철저히 하는 비율이 44.3%라는 것은 앞에서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이다.

金融實名制 실시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實名制에 反하는 행위를 할 의사가 있는 金融機關 종사자들의 비율이 24.7%나 되므로 고질적인 金融慣行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사원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고객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과 회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주지시켜야 한다. 더구나 金融機關이 外形競爭에 몰두한 나머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풍토는 시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각 金融機關들을 대상으로 外形競爭으로부터 오는 이익보다는 便法的인 金融去來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제Ⅲ장의 분석에서 貯蓄者들은 대부분 少額去來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와 관련된 사소한 것을 금융거래상의 불편으로 지적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정부는 저축자의 사소한 불편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의 制度 改善을 모색함과 아울러 對國民 弘報를 強化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신분확인 과정에서 금융기관종사자와 저축자간의 사소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좀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분확인에 기여할 것이다.

직장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과정에서 면담한 몇몇 종사자들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外國系 銀行의 경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상사 개인의 부조리로 이해하고 거부하지만, 우리나라의 金融機關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상사 개인의 부조리가 아니라 조직의 지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보편적 의식이라면, 이는 金融機關만의 문제가 아니라 社會的 次元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實名制의 金融慣行에 대한 影響

가. 資産構成行態의 變化

金融實名制가 실시되면서 現金의 退藏, 不動産을 비롯한 實物資産에 대한 선호증대 등 급격한 자금의 이동에 따른 副作用이 우려되었다. 특히 자금의 이탈에 따른 證券市場의 붕괴와 그로 인한 金融의 마비, 不動産이나 實物投資 수요의 급증에 따른 물가문제와 분배 갈등, 혹은 대규모 자금의 海外流出 등이 염려되었다. 實名制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하는 응답자의 견해는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實名制 실시 후 정부의 積極

의인 規制와 補完對策에 힘입어 증권시장은 신속히 안정을 회복하였으며, 實名制 실시 1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不動産과 淸金속 등 現物市場으로의 流動資金 流入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金融機關從事者들에게는 實名制에 따른 '시중자금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65.6%가 '현저한 자금이동 현상을 없을 것'이라고 답하여 實名制에 따른 급격한 자산구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다(表 <VI-16>). 또, 금융기관종사자의 11.6%는 '증권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8.8%는 '淸金속 등의 現物市場에 몰릴 것이다', 7.4%는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6.6%는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表 VI-16> 實名制 以後 市中資金의 흐름

(單位 : 명, %)

	은행	단자·淸金	보험	증권	투자신탁	계
자금이동 없음	58.9	70.8	52.5	72.8	71.4	65.6
부동산 유입	9.9	1.5	5.0	5.5	2.0	6.6
증권시장 유입	13.3	13.8	5.0	10.6	10.2	11.6
현물시장 유입	9.9	10.8	25.0	5.1	4.1	8.8
해외로 유출	8.0	3.1	12.5	6.0	12.2	7.4
사례수	263	65	40	217	49	634

또, '金融實名制의 실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저축자들의 30.9%만이 '별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하여, 金融機關從事者들에 비해서 경제가 實名制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表 VI-17). 貯蓄者들의 16.9%는 '物價를 상승시켰다', 21.5%는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 15.4%는

'귀금속 등의 현금거래가 증가했다' 그리고 15.4%는 '자금의 海外流出이 증가했다'라고 답하였다.

다수의 저축자(30.9%)와 금융기관 종사자(65.6%)들은 金融實名制가 資産의 再構成을 포함하여 경제일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소수가 제시한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의견은 1993년 8월 12일 이후의 預託金 추이와 綜合株價指數의 변동을 볼 때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및 귀금속 등의 現物市場으로의 자금 유입은 정부의 강력한 投機抑制 時策으로 流動資金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³⁾. 또, 住宅價格은 1993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금값도 안정세를 유지했으며⁴⁾ 1993년의 物價上昇率이 5.8%라는 것을 고려하면 물가동향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表 VI-17> 金融實名制의 經濟에 대한 影響(貯蓄者)

(單位: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계
별영향 없음	26.3	29.1	33.6	39.5	28.6	30.9
물가 상승	16.4	14.9	17.8	18.6	21.4	16.9
증권시장 유입	17.8	27.4	21.2	20.9	7.1	21.5
현금거래 증가	20.4	17.1	12.7	7.0	14.3	15.4
해외유출 증가	19.1	11.4	14.7	14.0	28.6	15.4
사례수	152	175	259	43	28	657

3) 財務部, 『金融實名制 施行 7個月에 대한 評價 및 金融實名去來 指導 監査方向』, 1994. 3.

4) 기간중 상승률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1993년 1/4분기에 0.2%, 2/4분기 1.6%, 3/4분기 1.0%, 4/4분기 0.5% 하락하였다. 또, 금값은 實名制 실시 당일 한 돈에 41,000원이던 것이 계속 약세에 있다가 12월말에 41,200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1994년 초의 物價動向 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1994년 초의 物價上昇은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수반한 公共料金 引上 및 作況不振과 열악한 流通構造에 기인한 農産物價格의 上昇이 주요 원인이며, 실명제 이후 크게 늘어났던 통화 환수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金融實名制의 여파로 물가상승이 자극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명제 실시 후 資産構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축자들의 21.5%가 '예', 78.5%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현금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앞의 조사결과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表 VI-18> 참조). 자산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2개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식' 54.7%, '투자신탁 수익증권' 51.0%, '부동산' 40.6%, '예금' 25.4%, '귀금속, 골동품, 그림' 17.3%, '현금' 14.4%, '사채' 4.5%, '해외부동산' 4.2%, '외화, 해외예금'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貯蓄者들이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킬 유인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적당한 不動産이 있을 경우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저축자들의 21.7%가 '투자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14.2%는 '미국의 부동산은 수익률이 낮아 매력이 없다', 64.8%는 '수익률과 무관하게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表 VI-20> 참조).

<表 VI-18> 實名制 以後 財産構成을 變化시킬 必要가 있는가?

(單位: 명, %)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이상	계
있다	23.6	21.0	12.4	41.2	62.5	21.5
없다	76.4	79.0	84.6	58.8	37.5	78.5
사례수	157	391	89	17	8	662

〈表 VI-19〉 有望 投資資産

(單位 : 명, %)

	사례수	비율
주식	209	54.7
투자신탁 수익증권	195	51.0
부동산	155	40.6
예금	97	25.4
귀금속, 골동품, 그림	66	17.3
현금	55	14.4
사채	17	4.5
해외 부동산	16	4.2
외화, 해외예금	13	3.4

〈表 VI-20〉 美國 不動産에 대한 投資用意

(單位 :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계
투자 용의 있음	25.4	20.7	21.7	5.9	21.7
수익률이 낮음	15.7	16.4	7.2	2.0	14.2
무조건 안함	58.9	62.8	71.0	92.2	64.8
계	197	347	69	51	664

저축자들이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자산들의 순위를 보면 金融實名制와 무관하게 나타났던, 高收益性 追求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예정된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앞두고 稅金優待와 相續·贈與稅 賦課가 면제될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美國으로 투자대상국을 한정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저축자들은(64.8%)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여 不動産에 투자할 유인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美國의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약 5분의 1에 해당하므로 정치·사회·경제 혹은 안보상의 혼란이 있을 때 거액의 金融資産을 가진 계층의 일부는 자금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일반서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株式, 投資信託 受益證券 및 不動産의 선택비율이 높은데 주식의 경우는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과세가 현정부 이후로 미루어져 있고 金融所得 綜合課稅 導入이 예정됨에 따라 時勢差益 향유가 가능한 金融資産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외국인 투자한도의 추가적인 개방에 대한 기대, 침체국면을 벗어난 實物經濟의 株式에 대한 영향 등의 요인이 반영된 선택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은 실제 株價의 上昇과 預託金 殘高의 增加 등으로 이미 그 개연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投資信託 受益證券은 전문가에 의한 대행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주식투자의 안정성이 높고 동시에 근로자재산형성 수익증권, 근로자수익증권과 같이 稅金優待 種목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근년에 들어 자산선호형태의 특징적 양상인 高收益 選好傾向에 따라 급격히 신장하고 있다. 金融實名制의 여파로 대규모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개입영향이 감소하고 기관장세의 특징이 나타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流動資金의 유입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土地綜合課稅의 도입 및 不動産에 대한 課標現實化 5개년 계획이 1989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도입되더라도 不動産이 稅制 면에서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다. 1989년의 연구에서 부동산이 52.8%로 가장 우선하는 투자자산으로 지목되었던 것과 대조적인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투자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산구성변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은 土地利用規制의 완화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허용가능성 등과 같은 不動産 需要觸發 要因과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도입될 경우 상가·오피스텔·주택 등을 중심으로 투자매력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및 1980년대까지의 부동산 수익률을 토대로 하는 심리적 선호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土地公概念 政策의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강도를 완하시키지 않는 한 金融實名制로 인한 不動産市場으로의 資金流出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4%는 '예금'을 투자대상으로 제시했는데, 金融實名制 이후 稅金優待나 相續·贈與稅의 부과한도를 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收益性이 높고 특정 저축자를 상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新商品들이 개발되는 등 금융기관의 영업이 저축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등 장기형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금리자유화가 더 진전되면 저축자들의 '예금'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단계 金利自由化 이후 수익률이 자유화된 金錢信託의 경우, 은행간에 受信高 경쟁의 수단이 되고 있고 저축자 입장에서는 收益性和 流動性이 확보되는 동시에 일부는 稅金優待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은행이 고수익 보장을 위해 신탁자산을 家計貸出과 有價證券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기업 대출자금의 부족이나 증시의 여건에 따라 은행 경영이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貯蓄率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국민의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증대시켜 저축의 유인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심각한 저축률 저하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근검·절약이라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하게 되며, 해외자금의 유입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결국 자립경제의 기틀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 綜合課稅 이후 家計의 貯蓄率 變化方向은 實名制의 성공적 정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金融實名制에 따른 저축률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實名制에 직면한 자산선택에 있어서 귀금속 등의 현물·현금·사채·해외부동산·외화 등 보다는 '예금'을 저축자들이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준다.

家計의 貯蓄率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축상품의 收益性과 稅制이다. 稅制는 가처분소득의 크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축의 稅後收益率을 결정하는 변수로도 작용한다. 金融實名制와 더불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가처분소득과 저축의 세후수익률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節稅 혹은 脫稅의 기회가 축소되고, 위장 상속 및 증여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데다, 실물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가 규제되고 있어서 소비성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金融機關從事者를 대상으로 實名制에 따른 家計貯蓄率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金融機關從事者의 66.1%가 '별 영향이 없다', 5.3%는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답해 71.4%가 實名制로 인한 貯蓄率의 下落은 없었다고 답하였다(<表 VI-21>). 부수적으로 實名制 이후 개별 저축자의 활동성 計座數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는데, '감소하였다' 39.2%, '증가하였다' 8.6%, '불변이다' 46.2%로 나타났다(<表 VI-22>). 동일한 설문에 대해 零細事業體는 불변(83.5%), 감소(11.8%), 증가(4.6%)의 순으로 답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實名制가 저축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家口當 平均貯蓄率이 1992년의 29.4%에서 1993년에 30.6%로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⁵⁾. 또한, 언론을 통해 實名制下에서는 하나의 통

〈表 VI-21〉 家計의 貯蓄率의 變化

(單位: 명, %)

	사례수	비율
변화 없음	422	66.1
약간 낮아짐	155	24.3
현저히 낮아짐	17	2.7
상승함	34	5.3
무응답	10	1.6
계	638	100.0

〈表 VI-22〉 顧客의 常時使用 計座數의 變化

(單位: 명, %)

	금융기관 고객		사업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감소하였다	250	39.2	79	11.8
증가하였다	55	8.6	31	4.6
불변이다	295	46.2	555	83.5
무응답	38	6.0	2	0.3
계	641	100.0	667	100.0

장을 이용하여 종합적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홍보가 있었으며 보유한 계좌 實名轉換 혹은 實名確認 과정을 거치면서 活動性 計座數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46.2%가 活動性 計座數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것은 實名制가 저축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앞의 조사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貯蓄者를 대상으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가 個人의 貯蓄率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하였다. 저축자들의 60.4%는 '과

<表 VI-23> 綜合所得稅의 貯蓄率에 대한 影響

(單位 :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계
과표조정	57.6	69.0	58.8	57.8	43.3	60.4
저축의욕하락	27.8	25.3	29.8	40.0	43.3	29.5
저축증대	14.6	5.7	11.5	2.2	13.3	10.1
사례수	151	174	262	45	30	662

표의 조정으로 세부담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저축률에 별 영향이 없을 것', 29.5%는 '세부담이 커지므로 저축의욕이 떨어질 것', 10.1%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저축은 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表 VI-23>).

保有金融資産 규모가 클수록 저축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1억원 이상의 金融資産을 보유한 사람은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면 43.3%가 저축의욕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實名制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金融機關 從事者들이 응답한 결과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세부담을 초래하더라도 저축을 하겠다는 응답이 10.1%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課標의 調整으로 稅負擔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저축률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응답한 저축자들은 실제 세부담이 증가한다면 저축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실시의 목표가 稅收增大에 있지 않으며 현행 稅制가 안고 있는 課稅不平等을 시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서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즉,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도입 결과 국민전반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土地綜合課稅, 土地超過利得稅 및 강력한 投機抑制 對策으로 위축되어 있는 不動產 收益率과 金融資産 收益率의 격차가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도입으로 축소될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金融實名制下에서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면 부동산의 경우 상당한 課標現實化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특성상 金融資産보다는 조세회피가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金融資産의 대체 투자수단인 부동산 투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질 경우 金融所得 綜合課稅 도입에 의한 得보다 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 우려는 不動產에 관련된 각종 稅制와 規制가 있는 상태에서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보유 金融資産 규모가 큰 高所得層의 過消費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입한 고급 자동차, 가구, 의류를 중심으로 한 고소득층의 誇示的 소비대상 품목은 UR 협상의 결과로 국내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가품을 대상으로 한 誇示的 소비에 중산층의 일부도 쉽게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부유층의 이러한 消費風土는 결국 사회전반에 대해 전시효과를 미쳐서 국민의 건전한 消費風土는 물론 勤勞意慾 低下와 分配葛藤을 촉발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유층의 여유자금의 과소비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政治·社會的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證券市場

實名制 실시에 직면하여 證券市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우려와 긍정적 기대가 혼재하였다. 1993년말 현재 非實名率이 2.8%이고 假名資金이 1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大株主나 大規模 投資者들이 非實名計座를 정리하고 證市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매물이 나오고, 少額 投資者들이 뇌동매매를 할 경우 證市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의 내용이다. 반면에 긍정적 기

대는 단기적인 일시 폭락에 그치고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實名制가 장기간 거론되었기 때문에 공시효과가 많이 삭감되었고, 강력한 資金離脫 防止策이 樹立되어 있으며, 通貨供給의 擴大와 기관투자자의 적극 개입을 유도하고 실물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예정되어 있어서 他金融資産에 비해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證券市場은 實名制 실시 후 대량의 매물홍수는 없었고, 단기적 조정과정을 거쳐 안정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大株主가 지분관리를 목적으로 한 非實名計座의 실명전환은 모두 인정해주었다는 점과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 實名制가 실시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어서 사전에 상당부분 정리하였거나 借名狀態로 전환하여 서서히 現金化하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에 기인한다.

實名制 실시 이후 대주주나 대규모 투자자의 활동성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규모 매매 및 자금이동의 제약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金利自由化에 따른 低金利 現象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收益性 확보를 위해 有價證券市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대주주나 대규모투자자의 활동성 제약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證市는 소위 '기관장'화 한 것이다. 정보의 획득이나 株式賣買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일반투자자와 기관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投信의 受益證券 중 非課稅 종목이 있는 등 저축자들의 증권투자가 기관을 통한 間接投資의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實名制에 따른 證券市場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新경제 5개년계획 기간 이후로 예정된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課稅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실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저축자들은 '주식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43.0%)', '讓渡差

〈表 VI-24〉 株式의 讓渡差益課稅에 대한 意見

(單位 : 명,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이상	계
투자매력감소	43.6	36.3	42.1	52.3	73.3	43.0
주식투자유리	10.1	12.3	12.7	15.9	3.3	11.8
기간별 차등	46.3	51.5	45.2	31.8	23.3	15.2
사례수	149	171	259	44	30	653

益稅를 내더라도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11.8%)의 순
으로 답하였다(〈表 VI-24〉).

實名制 실시 후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지목받고 있
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지금보다 높았던 1989년의 연구에
서 讓渡差益稅를 내더라도 주식투자가 유리하다는 응답이 9.6%였
다는 점과 본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讓渡差益課稅의 도입은 증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株式讓渡差益課
稅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金融資産의 所得은 종합과세를 통해
과세되므로 金融資産間의 형평의 문제가 있다. 또, 賣買差益은 대규
모 투자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므로, 金融實名制가 陰性的 所得을
차단하고 租稅의 衡平性을 제고하여 分配葛藤을 解消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는 근본 취지가 손상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증권시장이 '기관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年 ·
基金의 경우 讓渡差益이 免稅될 것이고 기관의 경우 法人所得稅로
대체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투자
자에게 讓渡差益課稅를 부과하여 증시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게 된다면, 讓渡差益稅 도입에 따른 득보다 失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라. 私債市場

급속한 經濟成長은 制度圈 金融市場에서 항상 資金의 超過需要를 초래했고, 금융기관의 신용할당이나 정부의 신용통제는 영세한 中小企業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운용자금을 고금리의 私債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은 私債市場의 규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었다. 지난 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시 기업들이 신고한 사채자금은 3,540억원으로 당시 總通貨의 24%에 달하였으며, 實名制 실시 전에 금융계는 私債規模가 총통화의 10%선인 1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었다⁶⁾.

1982년 어음사기사건은 金融實名制 시행에 관한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金融實名制 실시 목적의 하나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陰性的 金融거래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私債市場에서 활동하던 자금들이 制度圈 金融市場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金融實名制 실시 직후 대부분의 연구는 假名去來의 근절에 따라 사채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전업하거나 제도금융권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 재무부의 『金融實名制 7개월에 대한 평가』에서도 사채 전주들이 일제히 시장을 이탈하여 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소액단위의 현금을 高利로 빌려주는 개인적 대금행위가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무부는 기존의 사채 전주들을 制度金融圈으로 흡수하기 위해 實名制 실시 후 48개 信協의 新規設立을 認可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實名制 실시 후 자금이동 내용이 밝혀지기를 꺼리는 陰性的 去來는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假定과 종래 私債市場의 주요 거래수단이 자기앞수표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現金

6) 三星經濟研究所, 『金融實名制의 豫想波及效果 및 成功을 위한 補充對策』, 1993. 8.

과 자기앞수표 이용에 관해 조사한 후 私債市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零細事業體에 대한 조사에서 31.9%가 자기앞수표의 이용빈도가 감소하거나 대폭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하였다. 또 代金の 決濟方式에 대한 설문에서

<表 VI-25> 事業體의 手票利用頻度 變化

(單位: 명, %)

	사례수	비율
대폭 증가	6	0.9
증가하는 편	17	2.5
변화가 없다	424	63.6
감소하는 편	186	27.9
대폭 감소	27	4.0
무응답	7	1.0
계	667	100.0

<表 VI-26> 事業體의 決濟方式

(單位: 명, %)

	판매수입		구입대금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즉시 현금결제	465	69.7	417	62.5
신용카드 결제	25	3.7	11	1.6
외상 또는 어음	171	25.6	224	33.5
무응답	6	0.6	15	2.2
계	675	100.0	638	100.0

'즉시 현금결제'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販賣收入의 경우 69.7%, 購入代金の 경우는 62.5%로 나타났다.

零細事業體의 31.9%가 자기앞수표의 이용빈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실은 實名制가 현금에 대한 선호를 증대시켰다는 판단을 가늠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現金去來의 增加가 모두 사채시장에서 이용된 것은 아니며, 私債市場과는 다른 이유로 자금이동 내용의 노출을 꺼리는 無資料去來에 상당부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사업체의 60% 이상이 販賣收入과 購入代金の 決済를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이같은 추정의 간접적인 증거이다. 실제 본 조사의 진행과정에서 면담한 세운상가의 상인들은 판매대금을 즉각 入金하던 종래와는 달리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어 銀行利用 回數가 줄었다고 하였는데, 零細事業體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2.2%의 응답자가 은행이용 빈도수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앞수표 기피경향의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 貯蓄者들과 金融機關從事者들은 각각 59.9%와 58.2%가 '자금흐름을 追跡당할 수 있기 때문에'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 저축자의 19.1%, 금융

<表 VI-27> 事業體의 銀行利用 頻度變化

(單位: 명, %)

	사례수	비율
대폭 증가	1	0.1
증가하는 편	23	3.4
변화가 없다	559	83.8
감소하는 편	77	11.5
대폭 감소	5	0.7
무응답	2	0.3
계	667	100.0

기관종사자의 26.6%가 '裏書要求'를 기피 원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수표 이용과정에서의 裏書가 資金追跡의 고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금흐름을 추적당할 가능성이 자기앞수표의 이용을 기피하게 한다는 응답비율은 실제 6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事業體의 경우 전체 설문자의 33%만이 자기앞수표 기피 이유에 관한 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51.6%가 '手數料', 19.8%가 '裏書要求', 17.5%가 '資金追跡'의 순으로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자기앞수표 이용시 '입금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貯蓄者는 4.9%, 金融機關從事者는 2.8%, 事業體는 9.7%로 나타나 금융기관의 이용빈도가 높은 사업체가 자기앞수표 이용에 따른 입금불편에 대해 가장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드러난 바처럼 자금흐름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앞수표의 이용이 감소했다는 것이 私債市場 縮小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實名制가 私債市場에 미친 影響을 판단하기 위해 사채시장을 많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中小企業의 사채이용 실태와 零細事業體의 사채이용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表 VI-28> 자기앞手票 忌避 理由

(單位 : 명, %)

	저축자		금융기관종사자		사업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이서요구	129	19.1	170	26.6	43	19.8
자금추적	404	59.9	371	58.2	38	17.5
수수료	95	14.1	64	10.0	112	51.6
입금불편	33	4.9	18	2.8	21	9.7
무응답	14	2.1	15	2.4	3	1.4
계	675	100.0	641	100.0	217	100.0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조사결과를 보면 1993년 2/4분기부터 1994년 1/4분기까지 中小製造業體 중에 부족한 運轉資金을 私債로 조달한다는 비율이 21.7~22.7%로서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93년 2/4분기보다 私債利用 比率이 낮은 기간이 없으며 금년 1/4분기에는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또 영세한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私債利用 計劃에 대한 본 조사의 설문에서 事業에 필요한 資金調達에 사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9.4%에 달했으며, 사채이용을 밝힌 업체들 중에 私債利用 規模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13.2%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채이용 규모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답하였다.

1993년 2/4분기 이후 1994년 1/4분기까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

<表 VI-29> 中小製造業體의 私債資金 調達比率

(單位 : %)

기 간	1993년 2/4	3/4	4/4	1994년 1/4
사채비율	21.7	22.1	22.0	22.7

資料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中小企業經營實態 및 動向』, 각호.

<表 VI-30> 零細事業體의 私債調達 計劃

(單位 명, %)

	사례수	비율
대폭 증가함	4	3.1
증가하는 편	34	26.4
변화가 없다	74	57.4
조금 감소함	7	5.4
대폭 감소함	10	7.8
계	129	100.0

고 있는 中小企業의 私債資金調達比率이나, 본 조사에서 29.5%의 사업체가 私債調達規模를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은 實名制實施로 단기간 내에 私債市場이 위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實名制가 사채시장에 미친 영향을 단정짓기보다는 實名制 실시 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制度金融圈 내부에서 중소기업의 資金調達 與件上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제도금융권의 상황변화가 크지 않을 때 본래 私債市場依存도가 높은 中小企業의 資金調達は 상당부분 사채시장 이외의 代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私債市場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中小企業의 私債利用 實態나 計劃이 實名制 실시 이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實名制實施로 인해 사채시장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어렵게 한다. 또 사업자, 금융기관종사자, 일반저축자를 대상으로 한 '實名制가 陰性的 去來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설문 에 대해 <表 III-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79%가 實名制下에서도 陰性的 去來가 萎縮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私債市場의 資金供給者인 사채 전주의 경우 實名制 실시 이후 지금까지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고, 私債市場에서의 資金需要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私債金利에 가중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實名制가 私債市場에 미친 영향을 단정짓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私債市場의 縮小를 위한 政策當局과 制度金融機關의 役割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즉, 制度金融圈에서 私債市場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사채시장에서의 資金需要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금융권의 貸出審査機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擔保能力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도 貸出의 機會를 公正하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책당국은 地下經濟나 私債市場의 음성적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도입되기 전에 현단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政府政策에 대한 信賴感

가. 金融去來에 관한 秘密保障

전격적으로 시행된 金融實名制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적 정서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들에 대한 對政府 信賴感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들은 財産規模의 露出이나 資金의 追跡調査 등에 대해 念慮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당수 응답자들은 변칙적인 贈與나 相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저축자들이나 금융기관종사자

<表 VI-31> 査定機關의 非合法的 金融情報 要求를 拒否할 것인가

(單位 : 명, %)

	저축자		금융기관종사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예	203	30.1	522	81.8
아니오	327	48.4	110	17.2
모르겠다	142	21.0		
무응답	3	0.4	6	0.9
계	675	100.0	638	100.0

들은 金融去來에 관한 秘密保護나 투명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정부의 추적조사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금번 실시된 金融實名制는 金融去來情報의 秘密保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大統領 緊急命令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節次없이 사정기관에서 金融情報를 요구할 때, 금융기관이 정보를 保護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貯蓄者들의 경우 응답자의 거의 반 정도(48.4%)가 자신의 金融去來에 관한 情報의 保護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金融機關從事者의 약 17%도 비밀보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비밀보호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이유를 답한 응답자 중 貯蓄者의 40.1%, 金融機關從事者의 56.3%가 '情報提供을 거부할 경우 金融機關은 不利益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慣行에 의해서'라는 응답도 저축자와 금융기관종사자의 약 28% 정도였다.

최근의 상무대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金融去來에 관한

<表 VI-32> 査定機關의 要求를 拒否하지 않는 理由

(單位: 명, %)

	저축자		금융기관종사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거부시의 불이익 때문에	164	40.1	57	56.3
협조시의 이익 때문에	42	10.3	9	8.7
직장 내부의 약점 때문에	87	21.3	7	6.8
관행에 의해서	116	28.4	29	28.2
계	409	100.0	102	100.0

註: 구성비는 무응답을 제외한 것임.

秘密이 保護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秘密保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은 '상무대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보호되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秘密保障에 관한 정부는 政府 스스로 金融去來에 관한 秘密保障 원칙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秘密保障에 관한 규정 중 모호한 부분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 資金出處調查

'實名轉換義務期間중 일정액 이상을 거래한 자의 자금흐름에 관한 정부의 조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서는 貯蓄者의 42.7%가 '아니오', 44.0%가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예'라고 답한 저축자는 12.7%에 불과하였다. 金融機關從事者의 경우는 40.0%가 '아니오', '모르겠다' 40.0%로 답하였고, '예'라고 답한 것은 19.3%에 불과하였다.

앞의 설문에서 '아니오' 혹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만약 정부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貯蓄者는 '行政力이 미치지 못해서(40.4%)', '경제에 대한 波及效

<表 VI-33> 一定額 以上の 去來者에 대한 政府의 調査 與否

(單位: 명, %)

	저 축 자		금융기관종사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실제로 한다	86	12.7	123	19.3
하지 않는다	288	42.7	255	40.0
모르겠다	297	44.0	255	40.0
무응답	4	0.6	5	0.8
계	675	100.0	638	100.0

果 우려(27.6%)', '큰 손들의 로비(20.1%)'의 순으로 답하였다. 금융기관종사자들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58.2%)',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우려(18.7%)', '큰 손들의 로비(13.9%)'로 저축자와 동일한 순으로 답하였다.

<表 VI-34> 調査가 施行되지 않는 理由

(單位: 명, %)

	저 축 자		금융기관종사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큰 손의 로비	99	20.1	53	13.9
기존 행정력을 넘어섬	199	40.4	219	58.2
금융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136	27.6	71	18.7
모르겠다	59	12.0	34	9.2
계	493	100.0	377	100.0

註: 무응답 제외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부의 추적조사 대상자가 실제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계가 없으며, 단지 政府의 追跡調査 意志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많은 응답자들이 '行政力の 限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정부의 행정력을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의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조사대상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後者の 경우, 分配 葛藤을 招來하는 變則的 贈與나 相續에 대한 사회저변의 反感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前者의 경우는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규제수단의 나열로 국민을 계도하는 식의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현정부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

비'를 염려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金融實名制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신들의 불이익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金融不條理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불안감이나 불신이 지속된다면 개혁차원에서 추진된 金融實名制의 성공적 정착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6. 要約 및 評價

本章에서는 金融慣行의 實態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한 分析 結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調査의 結果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問題點을 推論하면 다음과 같다.

- (1) 實地名義가 강제되는 金融實名制의 주 대상은 假名計座라기 보다는 本人名義가 아닌 他人名義를 사용하는 借名計座다.
- (2) 1993년 8월 이전에 非實名計座에 부과되던 差等課稅에 대해서 저축자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종사자의 대부분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 (3) 종래의 非實名計座는 고객의 필요에다 금융기관의 적극적 영입이 가세하여 만들어졌다.

實名轉換義務期間중에 實名轉換된 假名計座보다, 借名狀態로 實名確認한 借名計座의 근절이 金融實名制의 成功的 定着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 非實名計座의 생성에 금융기관의 적극적 영입이 상당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정부의 엄정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실명전환 내지는 실명확인 과정에서 金融機關이 광범위하게 고객의 편의를 봐주었을 개연성이 있다.

- (4) 금번 시행된 金融實名制의 내용에 대해서 綜合所得稅, 過徵金, 未成年者 限度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아는 저축자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 (5) 金融實名制에 수반된 여러 가지 제제조치에 대해서 저축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분배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 (6) 非實名計座 개설에 대한 고객의 문의나 직장상사의 지시에 적지 않은 비율의 금융기관 종사자가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저축자의 반 정도는 완전한 실명확인을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은 金融實名制의 目的이나 趣旨에 찬성하며 實名制에 따른 製劑措置에 대해 肯定的 見解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金融機關從事者의 의식은 제3의 장영자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對策樹立이 必要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시중자금 흐름이나 일반경제가 實名制로부터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實名制 실시 후 자산구성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다.
- (8) 實名制 이후 가장 매력적인 投資對象 資產은 주식-투자신탁-수익증권-부동산-예금 등의 순이라고 평가하였다. 一例로 美國에 있는 不動產에 투자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저축자는 약 5분의 1 정도였다.
- (9) 實名制 이후 1년 사이에 가계의 저축률은 대부분 별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지만,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도입되면서 과포의 현실화를 통한 稅負擔의 適正한 調整이 없을 경우 저축률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10) 株式의 讓渡差益課稅가 유보된 현재는 주식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 자산이지만, 讓渡差益課稅가 도입되면 투자매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實名制의 실시는 대다수 저축자들의 資産構成行態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저축자들이 선정한 매력적인 투자대상 자산은 토지 공개념을 기조로 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된 이후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정부의 적절한 규제조치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海外로의 資金流出과 貴金屬 등 現物市場으로의 유동자금 유입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金融實名制의 경제에 대한 충격은 단기간에 그쳤거나 借名人 名義의 실명전환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예정된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株式 讓渡差益課稅의 導入은 경제주체들의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청된다.

- (11) 자기앞수표의 이용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표이용 감소의 주된 이유는 資金追跡 調査에 대한 우려였다. 한편, 中小企業의 사채이용 실태나 계획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12) 貯蓄者의 약 절반 정도는 金融去來 情報의 秘密保障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저축자의 약 40% 정도는 정부의 자금출처조사 시행의지나 능력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私債市場으로 대표되는 陰性的 거래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비정상적 거래이거나, 자금이동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소액단위의 借名計座를 통한 거래일 것으로 추측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히 재산규모 노출이나 자금출처 조사 및 자금이동의 추적 등에

대해 불안해하며, 자신들의 금융정보가 원칙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政府는 金融情報의 秘密保障에 대한 恣意的 解釋이나 行動을 止揚해야 하며, 社會不條理 別決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政府機能 遂行意志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金融實名制는 成功的으로 定着하였는가? 實名制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적었고 경제가 곧 안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金融實名制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金融實名制의 근본취지는 금융거래시 본인의 實地名義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金融去來의 透明性提高, 租稅衡平性提高 및 社會不條理 除去 등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融資産 實所有主와 名義貸與者간의 借名談合이 근절되지 않는 한, 金融實名制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행위자의 實地名義가 사용되도록 하는 법적조치로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 金融機關을 경유하는 모든 金融去來에서 實地名義 使用을 의무화한 金融實名制는 資金移動이나 出處에 대한 조사의 위험을 가중시켜서 각종 陰性的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금융거래자 본인의 實地名義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조치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시행을 예고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도입은 이러한 金融實名制의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도입이 實名制의 근본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면, 건전한 金融慣行의 정착을 위한 國民意識의 變化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VII. 金融慣行 正常化를 위한 向後 政策課題

우리는 金融實名制의 제 1단계인 實名去來 의무화단계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단계인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비하고 있다. 1993년 8월 12일 金融實名制가 실시된 이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모든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이 1년안에 뚜렷하게 변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향후 變化와 改革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서서히 實名制慣行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金融實名制가 실시된다고 하여 일거에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金融實名制 실시 후 金融實名制 실시 이전에 비하여 借名計座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金融實名化率은 金融實名制 실시 이전이나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의 實名預金은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에도 實名預金으로 남아 있어서 合意借名 등 차명예금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金融實名制 제1단계 조치 후 그 이전에 비하여 金融實名化率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제 2단계인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제 2단계 金融實名制 시행에 있어서 정책당국자는 제 1단계와 마찬가지로 '借名去來의 防止'와 '經濟的 費用의 最少化'라는 두 가지 선택에 부딪히게 된다. 즉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借名去來를 엄격히 추적하면 제 1단계와 마찬가지로 金融混亂이나 金融梗塞의 경제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고, 반대로 借名去來를 억제하지 않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향후 金融實名制 대책수립에 있어서는 '借名去來의 防止'와 '經濟的 費用의 最少化'라는 두 가지 선택간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金融實名制를 未來指向의으로 운용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선택 중 金融實名制 시행에 따르는 經濟的 費用의 최소화보다는 借名去來의 방지를 통한 경제정의의 구현을 더욱 중시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稅制改革에 앞서 金融實名制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앞서서 借名去來 抑制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金融實名制의 목표인 經濟正義와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經濟的 費用을 지불하여야 한다. 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金融實名制의 정착은 기대하기 힘들다. 문제는 어느정도나 調整費用을 부담하면서 實名制 정착을 위한 制度改革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借名去來 抑制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후 借名計座가 확대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借名을 방지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속단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合意借名의 확대, 無記名 金融資産으로의 대체가 촉진되어 오히려 實名化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金融實名化率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¹⁾.

따라서 향후 金融實名制 對策은 우선 金融實名制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金融制度和 慣行을 개선하고, 금융기관 및 국제청의 전산능력 및 통수보체제를 강화하여 金融情報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金融所得의 종합과세 등 稅制改革과 稅政改善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本章에서는 이 중 금융관행 정상

1) 金融所得 綜合課稅時 채권과 주식의 비실명 場外去來를 통한 조세회피 방법에 대해서는 李哲松(1989) 참조.

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1. 借名去來의 實名去來 誘導

1994년 3월말 현재 금융기관예금의 실명확인율은 90%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合意借名 등 借名預金の 非本名 實名確認도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金融實名去來가 관행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借名預金の 非本名 實名確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통하여 盜名이나 合意借名 형식의 예금계좌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제반조치를 취하여 점진적으로 借名去來를 本名去來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初期 衝擊을 분산하고 金融實名制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去來者(名義人) 실명확인을 통해 일단 金融去來가 성립되면 去來者(名義人)와 實所有者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금융거래 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금융기관이 名義人을 실제 예금주로 추정하고 名義人에게 지급처리를 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여 借名去來 억제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不動産 名義信託에 관한 법제를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차명거래의 本名去來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印章 대신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확대하여 印章이 없어도 署名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1994년 2월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률상 날인이 필요한 경우인 당좌예금 및 담보대출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거래시 署名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제도를 정비하고

署名에 의한 금융거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거래시 印章을 사용하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借名去來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인장도용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實名制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預金引出이나 貸出去來時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내부규정을 우선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어음수표법을 개정하여 수표나 어음발행의 기명날인 요건을 개정함으로써 서명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擴大하기 위해서는 署名對照 緩和方案을 마련하고 政策的 支援과 弘報를 지속하는 등 상당 기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적 서명대조방법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서명대조를 완화하여 신분증 및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임이 확인되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서명이 크게 틀리지 않는 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署名에 의한 信用卡 사용이 점차 확대·정착되고 있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慣行도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對顧客 金融去來 通報制度 導入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실시하게 되면 이름을 盜用 또는 借用당한 사람에게 利子·配當所得稅 부과내역이 통보되기 때문에 도용사실이 쉽게 발각되어 盜名이 원천적으로 근절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金融實名制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앞서서 盜名去來를 防止할 수 있는 制度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일정시점에서

고객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去來內譯 및 殘高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盜名去來 防止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울러 對顧客 金融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金融所得 綜合課稅 실시에 따른 利子·配當所得稅 부과내역 통보에 앞서서 계좌별 對顧客 통보체제를 가동시킬 수 있고 그 문제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對顧客 金融去來通報는 일반인이 자신의 명의 도용 여부를 인지할 수 있게 하므로 반송될 경우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재확인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證券會社와 일부 銀行에서만 對顧客 서비스차원에서 金融去來를 통보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 도입에 따르는 費用과 人力不足을 감안할 때 우선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계좌와 차명거래의 유인이 많은 稅金優待貯蓄에 대해서 정기적인 通報制度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稅金優待貯蓄의 경우 현재 비과세 13종, 5% 저율분리과세 5종 등 18종이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低所得層의 財産形成을 지원하고 현행 이자소득 원천분리과세제도의 租稅衡平性 왜곡을 補正하는 효과가 있으나 稅金優待限度를 피하기 위한 위장 분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盜名防止 및 人別 加入限度管理 등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金融貯蓄支援의 效率性을 높여야 한다.

3.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強化

金融實名制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금융실명제 시행 후 제2의 장영자사건 등 몇몇 實名制 위반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金融界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外形實績 爲主의 經營戰略을 추구하는 등 아

직도 非正常的 金融活動에 종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현행 金融實名制는 實名去來慣行의 정착을 위해서 비밀보장의 철저한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행정기관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감독·사찰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情報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情報提供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實名制 移行 與否의 점검은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의 自體 監査機能을 확대하거나 3개 金融監督機關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된 監督·檢査機能을 십분 활용하여 제대로 實名制가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자칫 금융기관자체내 實名制 違反事例를 조장하지 않도록 監督·監査機能의 公正性 강화가 요망된다. 모든 예금계좌에 대한 감독·검사가 어려우면 정기적으로 예금계좌를 임의로 추출하여 공정하고 정밀한 實名確認監査를 벌여나가도 대단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4. 代替支給手段의 多樣化

金融實名制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支給決濟手段을 多樣化하여 現金需要를 축소하고 무기명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감축시키는 것이다. 實名制가 정착된 信用社會일수록 현금에 대한 代替決濟手段이 다양하여 현금 선호도가 낮다. 現金選好度는 현금통화/GNP 비율로 측정될 수 있는데 <表 V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금통화/GNP 비율은 1980년대 이후 下落勢를 보이

<表 VII-1> 現金通貨/經常 GNP 比率

(單位 : %)

	1980	1985	1990	1993 ^{D)}
韓 國	5.1 (10.9)	4.2 (12.4)	4.1 (14.1)	4.6 (11.3)
日 本	7.3	7.3	8.7	8.1
美 國	4.3	4.3	4.5	5.0
獨 逸	5.7	5.7	6.5	7.4
英 國	4.4	2.8	3.0	3.0
프랑스	6.8	6.9	5.4	4.3

註 : 1) 외국은 1992년 기준.

2) () 안은 대부분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인 별단예금을 현금통화에 포함할 경우의 비율

資料 : 조성제, 『信用社會 定着方案』, 한국은행 보도자료, 1994. 5. 12.

고 있으며 그 수준도 선진국인 日本, 獨逸보다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無記名去來가 가능한 은행자기앞수표가 현금과 같이 통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금통화와 자기앞수표 발행규모(별단예금)를 합한 금액의 經常 GNP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선진국의 현금통화/경상 GNP 비율보다 훨씬 높다.

非現金 支給決濟手段도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다. <表 V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현금 지급결제수단 중 자기앞수표의 비중이 1990년대 들어 크게 줄었지만 1993년 자기앞수표의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58%, 금액기준으로 26%에 달하였다. 또한 지급결제의 전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표 및 어음을 물리적으로 반송하는 帳票方式(paper-base)이 비현금 지급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代替支給手段을 多樣化하기 위하여 먼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계수표 등 非現金 支給手段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993년 12월 CD/ATM을 통한 타행간 계좌이체를 시행하였

으며 1994년 3월에는 정기적금 등 정기적 납입금의 타행간 자동계좌이체를 시행하였던 바, 앞으로도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결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金融電算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하겠다.

또한 無資料去來慣行이 아직까지도 불식되지 않고 稅源露出을 우려한 신용카드 및 가계수표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거래액에 대한 稅制支援制度를 확충하여야겠다. 또한 信用卡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手數料率이 거래실적에 따라 체감되도록 手數料率體系를 改善하고 直拂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학교수업료, 공과금, 병원료 납부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制度를 整備해 나가면 신용카드 사용의 基盤이 크게 擴充될 수 있을 것이다.

<表 VII-2> 非現金 支給決濟手段의 利用現況

(單位 : %)

	1987		1990		1993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장표방식	100.0	100.0	95.8	99.8	88.1	98.5
자기앞수표	83.2	50.0	69.2	28.5	58.4	26.0
기타수표·어음	11.9	49.9	5.8	70.7	4.3	72.5
신용카드	4.9	0.1	6.2	0.2	8.0	0.4
은행지로 ¹⁾	—	—	14.6	0.3	17.3	0.4
전자방식	—	—	4.2	0.2	11.9	1.5
은행지로 ²⁾	—	—	3.6	0.1	7.8	0.2
타행환	—	—	0.6	0.1	4.1	1.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1) 일반계좌이체.

2) 대량지급 및 자동계좌이체.

資料 : 조성계, 『信用社會 定着方案』, 한국은행 보도자료, 1994. 5. 12.

銀行의 자기앞수표는 무기명으로 발행되고 讓渡背書 없이 流通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같이 稅源露出 回避手段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일시에 없애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는 자기앞수표의 발급 및 지급단계에서 實名義務가 부과되었으므로 자기앞수표가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앞수표에 유효기간을 명기하는 등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預金擔保 등 가계수표 이용의 불편을 보완하면서 高額決濟에 은행 자기앞수표 대신 銀行保證 가계수표를 쓰도록 권장해야 한다. 은행보증 가계수표는 점차 個人信用에 의한 가계수표로 대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서구식 個人手票制度를 도입하여야 하겠다.

한편 현재 자기앞수표의 發行과 流通을 위하여 금융기관 및 사용자가 이미 막대한 費用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金融實名制가 상당히 정착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실시 시점을 전후하여 5만원권이나 10만원권의 高額券도 發行하여 金融去來의 費用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金融實名去來의 法制化

현행 金融實名制는 대통령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대통령 긴급명령 이전의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金融實名制를 실시할 수도 있었으나 기존의 實名法은 문제가 많아서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개정을 거쳐 실시할 경우 논의과정에서 資金의 金融圈 離脫로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긴급명령에 의한 실시가 불가피하였다.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의 현행 金融實名制法에 관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대통령 긴급명령에서는 實名去來規程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實名去來規程을 위반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종사자만 처벌(과태료 부과 등)하고 있으나 借名去來者도 같이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金融實名去來의 法制化는 종합소득세 제도의 도입 정착과정에서 금융소득의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稅法을 통해 이루어 졌다. 美國의 경우 金融實名制가 관행으로 정착되는 가운데 1970년에는 現金 및 外換去來報告法(일명 은행비밀법)으로 금융실명거래를 법제화하였다. 만일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金融機關 및 顧客에게 모두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所得金額의 20%를 源泉徵收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증권거래시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고객이 납세번호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美國 證券去來法」에 의해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現金 및 外換去來報告法은 巨額現金去來에 대한 資金追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현금거래에 대한 은행원의 국세청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獨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金融實名制가 정착되는 가운데 1977년 租稅徵收法을 제정하여 實名去來管理를 소홀히 할 경우 세법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金融機關從事者뿐 아니라 借名預金主까지 처벌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는 많은 선량한 국민들까지도 배우자·자녀명의 등을 통해 借名預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의의 가족명의에 의한 차명예금과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巨額私債錢主의 차명예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借名預金主에 대한 처벌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限度超過 保有 金融資産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필

요하거나 엄격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6. 新金融商品 開發과 金融서비스 改善

金融實名制의 定着을 위해 補完對策 마련이 필요한 마지막 과제는 金融貯蓄의 위축을 방지하고 私金融資金을 制度金融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에 따른 금융저축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金融自律化의 추진과 함께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금융거래가 투명화됨에 따라 금융자금의 이동요인으로서 金利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1993년 11월에 단행된 2단계 金利自由化로 자금의 金利彈力性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자율화라는 새로운 상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新金融商品의 개발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新金融商品의 開發은 實名制 실시와 종합과세에 따른 금융저축의 감소를 방지하고 私金融資金의 제도권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新金融商品 도입시에는 신금융상품의 金利가 市場金利 수준에 가깝도록 하여 금융상품간의 競爭을 유도하고, 일종의 서민상대 사채업인 貸金業의 導入도 추진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기관 이용을 效率化하고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성패뿐 아니라 實名制 定着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그동안의 金融去來慣行은 필요에 따라 다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당사자의 불편뿐 아니라 다수의 休眠計座를 만들어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할 때 소요되는 行政費用을 증대시킨다. 즉, 金融所得 綜合課稅 실시를 위한 行政費用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行政費用을 줄이

고 금융거래자의 便宜를 增進시키기 위해서는 「綜合通帳」을 모계좌로 한 자금결제의 관행을 확대하여 制度金融圈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銀行·短資社는 「綜合通帳制度」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거래자는 이와 별도로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證券·投信·保險 등도 「綜合通帳制度」를 도입하도록 하고 사용을 늘려나감으로써 資金決濟慣行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休眠計座 整理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實名確認이 되지 않은 휴면계좌는 별도 관리하여 非實名去來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VIII.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主要 檢討課題

현재 거의 모든 利子所得과 少額株主의 配當所得은 20%의 세율(주민세 포함시 21.5%)로 源泉分離課稅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체제는 垂直的 公平性에 문제가 있다. 限界稅率이 20%보다 낮게 적용되는 계층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됨으로써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20%보다 큰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高所得階層의 경우 20%만의 세율로 이자·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됨으로써 세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전체소득에서 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垂直的 公平性의 침해 정도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公平性의 제고를 위해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新경제 5個年 計劃」 稅制改革部門의 주요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所得稅 機能의 強化는 金融所得이 綜合課稅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기능이 미약한 것은 아직까지 包括的 綜合所得課稅制度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자산 소득 등은 분리과세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金融實名制가 실시되고 19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所得稅 機能은 한층 強化될 것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金融實名制 실시의 최종목적이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實名制의 1차 목적이 올바른 金融去來慣行을 法으로 강제 유도하는 데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정상적인 금융관행을 기초로 분리과세되던 金融所得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公平과세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실명제 실시의 궁극적

인 목표가 된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基本方案은 앞으로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적절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사전준비를 철저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分離課稅되던 金融所得이 合算課稅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行政上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1994년 6월에 발표된 韓國租稅研究院의 稅制改革 建議案을 기초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과 이를 위한 사전준비사항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하여 「1994년 세제개혁안」에 제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의 문제점과 추후 보완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1. 基準金額의 決定과 源泉徵收稅率의 調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고려사항은 稅收의 確保, 納稅便宜, 申告人員의 最小化, 稅負擔의 衡平性이라 할 수 있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서 개괄적으로 제시된 利子·配當所得 綜合課稅 방안은 1996년부터 '一定 基準金額' 이상의 利子·配當所得은 綜合課稅하고, '基準金額' 미만은 源泉分離課稅하거나 綜合課稅와 源泉分離課稅 중 선택하도록 하고, '일정 經過期間'이 지난 후에는 모든 利子·配當所得을 綜合課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國稅廳의 行政費用 急増과 納稅者의 申告負擔 增大를 감안하여 마련된 단계적 실시방안인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단계적 실시방안 마련에 중심이 되는 것은 基準金額의 설정과 源泉徵收稅率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금액과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行政費用과 納稅者의 申告負擔의 크기,

稅負擔의 변화, 그리고 稅收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綜合과세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基準金額'을 설정하는 원칙은 行政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稅收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金融所得이 主所得(勤勞所得과 事業所得)에 합산될 경우의 분포를 기준으로 기준금액 설정에 따라 4가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綜合과세에 따라 집단 1의 경우는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집단 2의 경우는 환급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든다. 집단 3의 경우는 환급신고를 통해 세부담이 줄 수 있고 집단 4의 경우 適用限界稅率이 20%보다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이다.

- 집단 1 : 적용한계세율이 20% 초과,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
- 집단 2 : 적용한계세율이 20% 미달,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
- 집단 3 : 적용한계세율이 20% 미달,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집단 4 : 적용한계세율이 20% 초과,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主所得의 分布와 金融所得의 分布가 상호 연관성이 크다는 인식 하에서는 집단 1과 집단 3의 비중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별 비중은 기준금액의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기준금액 설정에 따른 집단 4의 비중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집단 4의 비중이 커지게 됨으로써 세수와 신고인원이 감소하게 된다. 즉, '基準金額'을 높게 설정할 경우 綜合과세되는 납세자의 비중은 작아지므로 行政비용이 감소하는 이점이 있지만 다수의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금융소득에 대해 20%의 저율로 源泉分離課稅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租稅衡平性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울러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주게 된다. 반면 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 경우 집단 4의 비중이 작아지게 되어 세수는 증대하지만 신고인원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源泉徵收稅率을 현행 20%에서 재조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집단별 비중이 달라진다.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0%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分離課稅를 選擇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금융소득자인 집단 4의 비중이 작아지므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증가하고 세수의 증대가 예상된다. 반면 20%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상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로 끝나는 집단 4의 비중이 커지므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은 줄어들지만 稅收의 減少가 예상된다.

基準金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實效稅率이 원천징수세율(현행 20%)과 같게 되는 금액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金融所得만으로 實效稅率이 20%가 되는 소득금액은 현행 세율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3,750만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설정하되 金融市場에 미치는 波及效果, 實名制 實施效果 그리고 綜合課稅의 實效性 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천징수세율은 長期的인 관점에서 현행 세율인 20%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18% 수준인 平均實效稅率은 앞에서 제시된 稅率體系調整案에 따라 短期的으로는 하락할 것이지만, 金融所得이 綜合課稅되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원천징수세율인 2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금액의 설정과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分離課稅되고 있는 利子·配當所得을 人別로 勤勞所得과 事業所得 등의 綜合課稅所得에 합산할 경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利子·配當所得과 기존 종합소득을 합산한 분포가 利子·配當所得이 綜合課稅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1996년에는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방안 마련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1993년 8월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 변화한 金融資產 보유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分布에 반영하고 綜合課稅의 도입이 金融市場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고려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1996년의 人別 金融所得分布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기준금액의 설정문제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단계적 실시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1996년 귀속분부터 시행

-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하고 이에 미달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 허용
- 원천분리세율은 현행대로 20% 유지
- 기준금액의 설정은 실효세율이 20%가 되는 금액을 참고로 하여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임.

<2단계>: 1998년 이후 시행

- 전면종합과세 실시. 다만,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세율 이하의 계층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선택 허용

두번째 단계인 全面 綜合課稅가 실시될 경우 한계세율이 源泉徵收稅率보다 낮은 계층의 세부담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分離課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전면 종합과세가 실시될 때 金融所得의 所得控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金融資產의 경우 不動産과 같은 實物資產에 비해 稅源의 露出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控除를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1994년 稅制改革案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기준금액 미만자에 대해서는 현행 원천분리과세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金融貯蓄의 이탈을 축소하고 대량 환급 신청에 따른 행정부담의 폭증을 방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은

결과이다. 또한 원천징수세율을 1996년 15%, 1997년 이후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기준금액 미만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기준금액의 설정으로 綜合課稅 대상자는 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결과 稅制改革案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綜合課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행정부담의 급증을 피하기 위해 기준금액 미만자에 대해 綜合課稅 선택을 不許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의 실현이 여전히 소득세제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기준금액을 점차 인하고 기준금액 미만자에 대해서도 綜合課稅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行政負擔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금융소득자료를 합산하여 정산함으로써 세무당국의 行政負擔을 완화하는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2. 綜合課稅對象 金融資産의 範圍와 課稅方法

制度金融圈에서 발생하는 모든 金融所得은 원칙적으로 모두 綜合課稅對象에 포함시키되, 稅制支援의 필요성이 있는 貯蓄에 대해서는 非課稅를 유지하고, 이자율이 낮고 거래가 빈번한 要求拂預金은 分離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長期形成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課稅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收益計算期間이 1년 이상 長期인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방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無記名 長期債券과 割引式 長期債券의 경우나 滿期 利子支給式 長期貯蓄利子 등 장기에 걸쳐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어떻게

종합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收益計算期間이 1년을 초과하는 長期 金融商品은 이자 및 배당소득의 支給時點에 源泉徵收하고, 지급시점이 속한 당해연도의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累進課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자산소득을 당해 소득이 일시에 지급되는 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하여 누진과세하게 되면 稅負擔이 과중하게 되므로 장기형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稅負擔 調整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滿期支給式 長期債券, 1년 이상 만기의 定期預·積金, 1년 이상 보유한 投資信託計定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第1案은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세부담 조정방안을 두지 않고 장기형성 금융자산소득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第1案에 의해 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금융상품을 회피하는 저축행태가 나타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第2案은 지급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익계산기간(1년 단위)으로 나누어 지급시점이 속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算出稅額을 구하고 장기형성 금융소득에 의해 추가된 稅額 增加分에 收益計算期間을 곱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제2안에 의한 과세방법은 年分年乘法(income averaging)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금융상품의 장단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계산이 복잡하며 금융상품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과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left\{ (\text{주소득} + \frac{\text{금융소득}}{\text{보유기간}}) \times \text{종소세율} - \text{주소득} \times \text{종소세율} \right\} \times \text{보유기간(1년단위)}$$

第3案은 장기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여유자금이 금융권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형성 금융자산소득을 30%로 원천징수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

득에 합산하여 綜合課稅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을 혼합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中立性 維持 및 장기금융상품의 장려를 위해서 3년 미만의 금융소득은 年分年乘 없이 종합합산하고, 3년 이상의 장기형성 금융소득은 第2案의 방식에 의해 課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第1案은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세부담 조정방안을 두지 않고 장기형성 금융자산소득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당해연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누진적인 세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그 결과 장기금융상품을 회피하는 저축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第2案은 年分年乘을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금융상품의 장단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그 계산이 복잡하며 금융상품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과증된다는 단점이 있다.

第3案은 고액소득자의 장기금융상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여유자금이 금융권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무행정상 부담이 크지 않지만 주택채권, 지하철채권과 같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보유하게 되는 국공채의 경우 세부담이 불공평하게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長期債券의 收益은 利子所得과 讓渡差益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시 또는 만기시에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讓渡差益(讓渡價額 - 取得價額)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債券讓渡差益도 이자소득과의 형평성상 과세해야 하나, 과세포착 등 실무집행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課稅가 시행될 때까지 채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畵引式 또는 複利式 長期債券은 만기에 債券利子가 지급되고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최종보유자는 통상 기관투자가 또는 限界稅率이 낮은 개인투자자가 되어 債券利子所得을 合算課稅

할 경우 낮은 限界稅率이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점 또한 장기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課稅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년 이상의 長期貯蓄性 保險差益에 대한 과세문제를 종합과세 실시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非課稅되고 있는 3년 이상 長期貯蓄性 保險差益의 課稅轉換 時期 및 종합과세 여부는 보험상품의 여타 금융상품과의 收益率에 있어서의 衡平을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와 함께 실시하되 保險商品의 長期性을 고려하여 年分年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994년 세계개혁안은 3년 이상 장기저축보험차익 및 공제회로부터 받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계산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인 금융자산소득의 구체적인 종합과세방식을 밝

<表 VIII-1> 各案의 長短點 比較

	장 점	단 점
1案	— 과세체계의 간소화	—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과중으로 인한 장기 금융 상품 회피
2案	—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을 안분함으로써 장·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중립성 유지	— 과세체계의 복잡
3案	—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고소득층 금융자산의 금융권 이탈을 억제 — 장기저축의 유도로 장기 투자재원화	—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분연승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 다소 증가

하지 않고 있다. 長期債券의 이자에 대해 分離課稅와 綜合課稅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分離課稅 선택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을 뿐이다. 따라서 조속히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金融資産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

金融資産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는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상장주식이 1993년 8월 12일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대통령 담화에 의해 1997년까지 非課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과세방안에 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될 경우 상대적으로 株式 등의 金融資産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996년 귀속분부터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된 후 짧은 기간내에 金融資産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1998년 이후 金融資産 讓渡差益의 課稅方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要求拂預金에 대한 課稅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이자율이 낮고 거래가 빈번한 要求拂預金(예 :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소액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행정부담과 납세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要求拂預金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要求拂預金에서 발생하는 利子에 대하여는 最低稅率基準으로 5%로 分離課稅하여 합산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세계개혁안에서는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 源泉分離課稅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要求拂預金도 동일한 세율로 分離課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任意團體에 대한 課稅

현재 任意團體가 얻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代表者 名義에 의해서만 金融去來를 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등록 종교단체종중·동창회 등의 임의단체에 대하여는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이 없는 團體로 분류하여 非營利法人과 동일하게 과세하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分離課稅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稅金優待貯蓄制度 改編方案

현행 稅金優待貯蓄은 勤勞者·農漁民 등 中産層 以下 階層의 財産形成을 지원하면서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 의하여 높아진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여 왔다.

세금우대저축은 현재 총 18종에 이르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個人保有金融資産의 46%에 이르는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찍이 외국의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종류와 규모이다(表 VIII-2) 참조). 그 결과 貯蓄商品間의 收益率 왜곡과 금융기관간의 公正競爭基盤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계급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계층만이 세제혜택을 받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될 경우 그 실효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종합과세 방안이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綜合課稅하고 기준금액 미만 소득자에게는 綜合課稅와 分離課稅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20%의 현행세율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表 VIII-2>에서 볼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가운데서 5%로 低率分離課稅되고 있는 金融商品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다. 적용 한계세율이 5%가 되지 않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종합과세시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면 오히려 환급을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5% 低率課稅商品의 존재는 오히려 주된 이용자인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에 보조를 맞춰 5% 低率課稅商品을 우선 廢止하고 나머지 非課稅 金融商品들도 대폭 縮小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이의 급속한 축소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탈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金融所得은 속성상 과세포착률이 높아 세부담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과 비교하여 과도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低所得層에 대한 貯蓄支援制度로써 각종 稅金優待貯蓄의 實效性을 면밀히 분석하여 축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4년 세제개혁안은 현행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로 하고 기준금액 초과시 綜合課稅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저축 2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비과세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長期貯蓄 2종을 제외하면 일반저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로 인하되는 1997년 이후에는 세금우대저축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課稅單位 問題

현재의 課稅體系下에서는 利子·配當·不動産所得은 世帶別로 合算課稅되고 그외의 所得은 人別로 綜合課稅되고 있다. 그 동안 대

<表 VII-2> 税金優待 貯蓄現況

(單位 : 만원, %)

가입대상	지원내용	대상저축	도입시기	가입대상	저축기간	1인당 가입한도	저축실적 (93. 5)	점유비	취급기관
근로자 (7종)	비과세	· 근로자장기저축	'91. 1	전 근로자	3~10	월 50	57,886	7.1	은행, 우체국, 투신사, 신용금고 증권사 주택은행, 기타은행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91. 1	전 근로자	3~	월 50	8,877	1.1	
		· 근로자주택저축	'78.2	월급여 60만원 이하 무주택·국민주택 1채 소유자	1~	월 15	749	0.1	
	비과세 및 세액공제	· 근로자재산형성저축 (15% 공제)	'76. 4	월정급여 60만원이하	1·2 3·5년	월 12	31,065	3.8	은행, 투신사
· 근로자증권저축(10%)		'80. 1	월정급여 60만원이하	1~	연 216	6,480	0.8	증권사, 투신사	
· 근로자주식저축(10%)		'92. 7	전 근로자	1~	500	6,247	0.8	증권사	
5% 저율 과세 및 세액공제	· 우리사주저축(15%)	'75. 1	전 근로자(임원제외)	3~	총급여의 50%	15,926	2.0	우리사주조합, 종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대상저축	도입시기	가입대상	저축기간	1인당 가입한도	저축실적 (93. 5)	점유비	취급기관
농어민 (2종)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86. 4	2ha 이하 농지소유 농민	3·5년	월 12	9,625	1.2	단위 농·수·축협
		· 단위 농·수·축협 예탁금·출자금	'76. 4	20t 이하 어선소유 어민 조합원, 순조합원		예탁금:2천 출자금:1천	169,289	20.7	단위 농·수·축협
일반인 (9종)	비과세	·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 출자금	'76. 4	조합원	3~	예탁금:2천 출자금:1천	70,896	8.7	신협
		· 새마을금고 예탁금 · 출자금	'76. 4	회원		예탁금:2천 출자금:1천	102,896	12.6	새마을금고
		·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	'78. 2	무주택 세대주		월 10	27,011	3.3	주택은행
		· 국민주신탁	'88.12	월급여 60만원 이하자 등		—	2,699	0.5	은행, 농·수·축협
			'72. 1	고등학생 이상		국교:1백 중·고:2백	3,869	0.5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5% 저율 과세	· 소액가계저축	'86. 4] 제한없음	1~	1,800	232,874	28.5	은행, 우체국, 신용 금고, 종금, 투신사
		· 소액채권저축	'90. 1		1~	1,800	20,304	2.5	증권사, 은행, 특수 은행, 우체국
		· 노후생활연금신탁	'87. 1] 만 18세 이상	2~] 2,000	32,930	4.0	은행
		·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92. 7		2~		15,915	2.0	투신사
		합		계				815,538	100

부분의 이자·배당소득이 分離課稅되고 있어서 合算課稅의 實效性은 미약하였지만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면 課稅單位가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 配偶者名義의 金融去來行爲에 대한 취급문제가 논란이 되었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도 課稅單位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의 家計生活 관습상 金融資産을 配偶者 등 家族名義로 운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도 配偶者名義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관대하여 사실상 贈與課稅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金融所得綜合課稅의 實效性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夫婦間 合算課稅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금융소득에 대해 夫婦合算課稅를 실시할 경우 기존에 人別課稅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所得稅 또한 夫婦合算課稅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所得稅制 또한 長期的으로는 夫婦를 課稅單位로 轉換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때 美國과 같이 夫婦合算申告와 夫婦別算申告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 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所得稅 全般에 걸친 夫婦合算課稅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所得稅의 累進度를 고려하여 夫婦合算時 稅率體系와 控除水準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長期的 施行方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1996년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時에는 우선 金融所得에 대해서만 夫婦合算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 所得稅 全般에 있어서 夫婦合算 혹은 夫婦別算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世帶別合算은 世帶에 대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고 아울러 稅務行政上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 1994년 세계개혁안에서는 金融所得에 대해서 夫婦合算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金融所得에 대해 夫婦合算을 원칙으로 하면서 夫婦間 財産移動時 課稅하는 현행 贈與稅法의 再檢討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대를 줄이고자 配偶者名義로 金融資産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아닌 配偶者의 經濟活動에 근거한 金融所得을 合算하는 경우 人別 課稅時보다 累進度에 의해 稅負擔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國稅廳과 金融機關의 事前準備事項

가. 金融機關의 電算能力 擴充

1996년에 실시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비한 事前準備對策 마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준비사항은 金融機關의 電算能力 提高라 할 수 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고안내업무는 전산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1983년 10월 國家電算網 調整委員會의 국가 5대 기간전산망계획에 따라 1984년 5월부터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분야의 금융전산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986년 6월 금융망 전담사업자인 金融決裁院이 설립되었고 이를 주축으로 분야별 金融電算網事業을 추진하여 왔다. 그 후 은행분야 金融電算網事業은 금융결제원을 센터로 하여 개별 은행별로 본·지점간의 온라인 전산업무를 완료한 뒤 최근에는 은행간 공동전산망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表 VIII-3>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電算化 추진이 미흡한 금

<表 VII-3> 金融機關의 電算化率 現況

(單位 : 개, %)

금융기관별	기관 수	점포 수	전산화 비율
은행 (외국지점)	85 (51)	5,354 (74)	100
증권회사 (외국지점)	40 (8)	743 (8)	100
보험 (외국지점)	49 (7)	15,371 (385)	100 100
투자신탁	8	166	100
투자금융	24	73	100
종합금융	6	6	100
상호신용금고	237	336	100
신협	1,557	1,557	54.9
새마을금고	3,163	3,163	54.9
우체국	1	3,433	100
단위 농·수·축협	1,676	3,894	100
중소기업협동조합	573	573	100
인삼협동조합	13	19	100
산림협동조합	141	141	100
한국증권금융	1	5	100

註 : 1. 전산화기준 : 컴퓨터(PC포함)를 금융거래 처리를 활용하는지 여부
 2. 외국은행 중 10여개는 개인용 컴퓨터에 의한 단순 사무자동화 수준

용권은 信用協同組合과 새마을金庫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電算能力 擴充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거래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기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電算化가 완료되도록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統合電算網 加入 권유 또는 電算技術 支援 등을 통해 電算化를 강력히 유도

하고 일정기간 동안 電算化가 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전산능력을 확충하는 작업과 함께 金融機關의 計座管理 效率化 方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상당 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休眠計座를 정비하고 2중계좌를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산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금자들이 거래은행의 통장을 複數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計座管理費用을 增大시키고 있으므로 業務電算化의 확대를 통해 복수거래를 단일통장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넘도록 거래가 없는 休眠計座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整備해 나가도록 誘導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와 같이 일정 소액규모 이하로 잔고가 유지되는 계좌는 그 잔고에 대해 罰則率(penalty rate)을 적용시킴으로써 休眠計座를 상시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國稅廳 電算能力 擴充과 通受報體系 確立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稅務行政能力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약 1억 8천만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전체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방대한 금융소득자료를 人別·家口別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國稅廳電算網과 金融機關電算網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국세청간 金融所得資料의 通受報體系가 확립되어야 한다.

1993년 10월 7일 緊急命令權에 의거한 源泉徵收資料(지급조서) 제출 유예조치로 源泉徵收 事後管理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 실시를 계기로 金融機關의 源泉徵收資料 提出制度를 復活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綜合課稅時 申告所得의 성실도를 검증하고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며 借名去來와 같은 非實名去來 혐의자를 색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源泉徵收資料의 제출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불편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비밀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緊急命令의 秘密保障 強化와 금융기관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源泉徵收資料의 提出節次와 內容을 지금보다 簡素化할 필요가 있다. 즉, 종합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별 이자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정도의 정보만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提出時期도 매월 지급시마다 제출하던 것을 年 1 회 翌年 2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원천징수 지급조서 자료제출제도 대신 「計座 開設 通報制度」를 신설하여 非實名去來者의 색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제출되는 금융자료는 다양한 금융상품별로 상당히 복잡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提出書式 및 코드를 標準化하는 작업이 전산망의 확충과 함께 필요할 것이다.

綜合課稅를 위한 금융기관과 국세청간의 通受報體系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1안은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계좌별 정보를 전산데이프의 형태로 1년에 한 번씩 금융기관이 國稅廳에 전달하고 國稅廳은 계좌별 자료를 人別合算하여 납세자에게 개별통지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금융기관이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계좌별 정보를 人別合算하여 그 정보를 고객과 國稅廳에 통보하면 고객은 이를 기초로 申告納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國稅廳은 신고를 받은 후 전체 납세자의 일정비율로 추출된 납세자들의 이자·배당소득자료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稅務調査를 하게 된다.

제2안의 경우 계좌별 모든 金融情報가 국세청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金融去來秘密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 등의 납세자가 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을 우려하여 금융자산보유를 회피하는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人別合算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는 제1안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방안을 비교할 때, 두 가지 안 중에서 제2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金融所得者에 대한 申告案内 문제는 金融機關別로 안내하는 것이 예금주에 대한 고객 서비스의 증대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國稅廳에서 집계하여 종합안내하는 경우 업무량과 시간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과 예금주에게 年 1회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량의 증가, 주소지관리의 어려움, 통신비 부담과 우편물량 폭주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착실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오류방지를 위해 內務部 住民電算資料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非金融機關에서 발생한 所得(비상장 법인의 배당, 개인사채의 이자 등)은 납세자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通受報體系를 綜合課稅前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1995년도부터 금융기관과 국세청간의 通受報體系 확립을 위한 전산확충 준비과정, 즉 예행연습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行政負擔의 증대의 주요요인은 還給이나 追加納付를 위해 신규로 綜合所得稅 申告를 하게 되는 勤勞所得者가 다수라는 데 있다. 즉, 대부분의 勤勞者가 年末精算으로 끝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신고하게 될 勤勞者가 다수일 경우 종합소득신고대상이 급증하여 行政需要 또한 急増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행정상 방안으로서 근로자 年末精算 提出時期가 현재 2월인 것을 1개월 정도 연기하여 3월까지로 하여 源泉徵收義務者인 근로자 소속 직장이 근로자의 金融所得을 合算하여 年末精算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年間金融所得 資料가 金融機關으로부터 勤勞者에게 통보되는 2월 이후 1개월간 금융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종합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稅務行政 負擔과 納稅費用의 增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연말정산시 금융소득자료를 원

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를 대신해서 처리하게 될 경우 행정부담의 급증을 우려하여 마련한 단계적 실시방안 대신 전면 종합과세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활동에서 파생된 소득이 아닌 金融所得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장 우려되는 행정부담의 급증을 줄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서 근로자의 福利厚生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정산시 금융소득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자료를 연말정산시 처리하는 방안은 申告納付制度가 지향하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증대 유도와는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고납부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納稅者의 申告意識이 고양되고 申告書式이 간소화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計座管理의 效率化 方案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현재 상당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 休眠計座를 정비하고 2중계좌를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IX. 結 論

지금까지 金融實名制 實施 1년의 성과를 각종 자료와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평가하고 向後 對策을 논의하였다. 金融實名制 실시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던 때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金融實名制는 일단 순조롭게 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보다 중요한 문제는 金融實名制 實施目的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金融實名制의 目的은 金融慣行의 正常化와 課稅資料 陽性化를 통한 租稅의 公平性 提高다. 金融實名制 실시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金融實名制는 法的 強制를 통해 지난 30년간 형성되어온 金融慣行을 變化시키고자 하는 制度改革이지만 慣行은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補完對策을 강구하기 위해 성과를 점검하고 金融實名制를 中間評價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 연구가 각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實名制 1년의 성과를 평가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

金融慣行의 경우 제2의 장영자사건과 같은 몇몇 金融事故의 발생에서 보여지듯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金融事故는 과거의 金融事故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고 金融事故를 조기에 적발하여 사고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實名制 실시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몇 차례 金融事故가 金融實名制 時代下에서 金融慣行의 正常

化를 촉진되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課稅資料 陽性化의 경우 1993년 2기 附加價值稅 確定申告 資料를 보면 課標가 前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課標伸張의 원인이 實名制로 인한 自發的인 課標陽性化인지 아니면 1993년 3/4분기 이후의 景氣活性化 또는 稅務行政力 強化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事業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도하여 課標伸張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課標陽性化의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金融實名制만으로 課標의 陽性化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과 함께 향후 대책마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向後對策은 法的·制度的 改編과 慣行의 變化를 유도하는 여건의 조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前者는 稅制改編 등과 같은 法的인 補完을 의미하고 後者는 金融慣行 變化의 誘導와 稅務行政 刷新을 통한 보완이다. 法的 補完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一貫性 없는 잦은 稅制改革 등은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立法을 통한 制度化만으로 脫稅 등을 위한 陰性的 金融去來 慣行을 正常化시키는 것은 무리다. 우선 비정상적인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당국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稅制改編, 稅務行政 刷新, 金融機關에 대한 指導와 監督 등 向後對策은 金融實名制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직접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다. 그러나 金融實名制가 경제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운영의 기본틀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한다면 향후 대책도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과제들에 머물 수는 없다. 그 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社會正義 實現과 관련하여 金融實名制의 실시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金融實名制가 사회정의의 실현에 연관되는 매개는 租稅負擔의 公平性 確保, 經濟的 身分의 世襲抑制, 不勞所得 및 投機의

源泉封鎖, 不正腐敗의 減少 그리고 金權政治의 清算과 깨끗한 政治 風土의 造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고리마다 추가적으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金融自律化, 不動產投機 抑制 등 經濟政策이 지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政治資金法, 選舉法, 公職者倫理法 등 정치 및 사회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金融實名制의 定着과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한 노력은 정부당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企業도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이하여 企業經營의 風土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먼저,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기업의 秘資金 造成과 運用이 어려워졌고 자율화에 따라 정부의 경제적, 행정적 간섭도 줄어든 만큼 기업은 본연의 경제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종전과 같이 대외로비에 의한 경쟁에서 벗어나 經營合理化, 品質改善, 價格競爭 등 健全經營風土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顧客指向的인 經營思考를 체질화해야 할 것이다.

金融機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銀行은 投資에 대한 제2차적 심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貸出審査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축동원에만 매달려 왔다. 이것은 정부의 與信規制가 강력하여 銀行經營의 自律性이 크게 제약되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금융기관 스스로 정부의 보호와 규제하에 안일하게 안주해왔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金融實名制와 金融自律化라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금융기관도 고유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投資資金의 動員뿐 아니라 效率的 投資의 수행을 위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貯蓄誘引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新商品 開發 등 고객유치를 위한 내부적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政府와 企業, 그리고 金融機關의 노력 뿐 아니라 一般國民의 意識과 慣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서구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는 사실은 일반국민의 협조가 實名制 성공의 필수조건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先進國의 金融去來가 대부분 信用去來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나친 現金選好傾向은 아직도 후진적인 것이다. 領收證 주고받기를 생활화하고 署名文化를 보급하는 것은 信用社會의 정착을 앞당기는 길이다.

다른 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實名制의 도입도 국민의 의식과 제도의 상관관계가 강조되어야 한다. 先進意識의 전제 없이 理想的인 制度가 실현되기 어렵고,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는 意識이 先進化될 수 없다. 先進社會의 實現을 위한 制度改革으로 金融實名制가 실시된 이상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實名制의 정착을 뒷받침하는 先進意識을 이룩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錫勳, 「韓國家口의 金融資産 및 金融所得의 推定」, 『1994年度 定期學術大會 論文集』, 韓國金融學會, 1994. 6, pp. 677~707.
- 姜哲圭 外, 「特輯 金融實名制」, 『이코노미스트』, 1993. 4. 5.
- 公報處 弘報局, 『實名制 實施關聯 輿論調查 結果』, 1993. 9. 15.
- 郭永吉, 「金融實名制을 反對하는 사람들」, 『新東亞』, 1993. 5.
- 郭泰元, 「金融實名制와 金融資産課稅」, 『季刊 稅務士』, 1993. 봄, 韓國稅務士會, 1993.
- 國民經濟教育研究所, 「主要 經濟輿論-金融實名制」, 『經濟輿論 動向』, 第93-14號, 1993. 9. 3.
- 金都亨, 「租稅正義와 金融實名化」, 『韓國租稅研究』, 第4卷, 韓國租稅學會, 1988.
- 金東源, 「金融實名制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과 政策對應 方向」, 高麗大學校 附設經濟研究所, 1989. 12.
- 金元吉, 『金融實名制에 대한 輿論調查 報告書』, 未發刊 資料, 1993. 10.
- , 『零細, 中小事業者의 金融實名制에 대한 意識調查』, 未發刊 資料, 1993. 10.
- 金喆教, 『金融實名制와 資本差益課稅制度의 導入에 관한 研究』, 1989.
- 南相祐,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의 金融市場動向 및 向後課題」, 『金融動向』, 1993. 9.
- , 「金融實名制의 波及影響과 實施論議」, 韓國開發研究院, 1990. 3.
- 盧基星, 『事業所得稅 過小報告規模의 推計』, 韓國開發研究院, 1992.
- 大韓民國 政府, 『新경제 5個年計劃(93~97)』, 1993. 7. 2.

- 三星經濟研究所,『金融實名制 導入의 波及影響分析 및 施行方案』, 1990. 3.
- ,『金融實名制의 豫想波及效果 및 成功을 위한 補完 對策』, 1993. 8.
- 商工資源部,『金融實名制 實施가 流通業界에 미치는 影響 및 流通 産業 政策方向』, 1993. 9.
- 申鍾益,「稅制改編과 金融實名制」,『全經聯』,全國經濟人聯合會, 1993. 9.
- 新韓綜合研究所,『金融經濟情報』,第204號, 1993.
- 安鍾範,「1993年 稅制改編案의 評價」,『企業經營』,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3. 9.
- ,『金融實名制와 國民經濟』,韓國租稅研究院, 1993. 10.
- ,「金融所得綜合課稅」,『國稅』, 1993. 12.
- ,「所得稅制 改編方案」,『全經聯』, 1994. 5.
-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課題」,韓國金融學會 發表論文, 1994. 6.
- 柳一鎬,「우리나라 脫稅規模 推定: 所得稅와 附加價值稅」,『1994年度 定期學術發表大會 論文集』,韓國財政學會, 1994.
- 尹建永,『金融實名制下的 稅制發展과 金融市場의 對應』,大宇經濟研究所, 1990. 4.
- 尹源培 外,『金融實名制』,飛鳳出版社, 1993.
- 李光宰,「金融實名制와 關聯된 稅務解說」,『月刊租稅』,租稅通覽社, 1993. 10.
- 李圭福,「金融去來實名制 實施에 따른 稅制의 補完方向에 관한 研究」,『1993年度 秋季學術研究 發表 論文集』,韓國稅務學會, 1993. 10. 23.
- 李萬雨,「實名制에 따른 合理的 金融所得課稅制度의 摸索」,『韓國租稅研究』,第5卷,韓國租稅學會, 1989.

- 李明勳,『金融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研究報告, No. 5, 韓國金融研究院, 1993.
- 李逸均·金裕萬,『金融改革과 金融實名制』,『1993年度 定期學術大會 論文集』, 韓國金融學會, 1993.
- 財務部,『金融實名制 實施 1周年 白書』, 1994. 8.
- ,『財政金融統計』, 1994. 4.
- ,『租稅概要』, 1994. 4.
- ,『金融實名制 施行 7個月에 대한 評價 및 金融實名去來 指導·監查方向』, 1994. 3.
- ,『金融實名制 施行 6個月에 대한 評價』, 1994. 2.
-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分野別 向後 政策方向』, 1994. 1.
- ,『金融實名制 實施 2個月: 評價 및 向後 政策方向』, 1993. 10.
- ,『金融實名制 實施 1個月: 現況分析 및 評價』, 1993. 9. 9.
- ,『金融實名資料 通·受報 業務指針』, 1993. 9.
- ,『金融實名制 關聯 法令集』, 1993. 9.
- 第一經濟研究所,『金融實名制 實施가 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月刊 第一經濟研究』, 1993. 8.
- 趙成濟,『信用社會 定着方案』, 韓國銀行 報道資料, 1994. 5. 12.
- 曹尤鉉,『金融實名制 補完政策, 이렇게 해야 한다』, 經實聯, 1993. 9.
- 左承喜·劉載均,『金融的 衝擊의 巨視經濟的 效果에 대한 分析: 金融實名制의 效果를 中心으로』,『韓國開發研究』, 第15卷 第3호, 1993 가을호, 韓國開發研究院, 1993.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中小企業界 意見調查 結果報告』, 1993. 9.
- ,『中小企業經營實態 및 動向』, 各號.
- 崔 洸,『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7.
- 崔 洸·安鍾範,『金融實名制: 論理와 政策課題』, 韓國政治學會, 1993.

- 統計廳, 『都·小賣業 統計調查報告書』, 1993.
- , 『都市家計年報』, 1992.
- , 『總事業體統計調查報告書』, 1991.
- 韓國開發研究院, 『金融實名制의 段階的 推進方案』, 1993. 3.
- , 『金融實名制의 波及影響과 實施 論議』, 1990. 3.
- 韓國걸립調查研究所, 『金融實名制에 대한 中産層 意識調查』, 1989. 9.
- 韓國經濟研究院, 『金融實名去來制 導入實施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 및 企業體 設問調查 結果 分析』, 1990. 6.
- 韓國貿易協會, 『金融實名制의 輸出業界에 미치는 影響』, 1993. 10.
- 韓國銀行, 『國民計定』, 1982~1992.
- , 『都市家計 貯蓄市場調查』, 1992, 1993.
- , 『調查統計月報』, 1994. 4.
- , 『우리나라의 金融制度』, 1993. 12.
- 韓國租稅研究院,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向後 財政·金融政策 方向』, 1993. 9.
- , 『韓國經濟의 새로운 方向定立을 위한 財政·金融政策』, KTI 開院 1周年 紀念 심포지엄 資料集, 1993. 9.
- , 『金融所得綜合課稅와 開放化·國際化를 위한 稅制改革方案』, 1994. 6.
- 現代經濟社會研究院, 『金融實名制의 波及效果와 對策』, 『月刊 企業經濟』, 1993. 9.
- , 『新經濟下의 地下經濟規模와 돈의 흐름』, 1993.
- Cowell, F.A., *Cheating the Government: The Economics of Tax Evasion*, Cambridge: MIT Press., 1990.
- Tanzi, V., *The Underground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Lexington, Mass.: D.C. Heath, 1982.

附 錄 I

1. 設問調査의 標本設計 및 資料處理 方法
2. 事業者 對象 設問調査 結果分析表
3. 一般貯蓄者 對象 設問調査 結果分析表
4. 金融機關從事者 對象 設問調査 結果分析表

1. 設問調查의 標本設計 및 資料處理 方法

가. 표본설계(Sampling Design)

1) 事業者

가) 母集團 및 標本抽出 規模

事業者 設問調查의 경우 標本誤差(sampling error)를 최대한 줄이고자 確率標本抽出(random sampling)을 원칙으로 하여 통계청의 「總事業體實態調查」에서 사용한 모집단명부를 사용하였다.

사업자 표본의 경우 韓國標準產業分類 舊分類基準으로 <附表 1-

<附表 1-1> 母集團의 定義 및 調查方法

조사대상구분	모 집 단	조사방법	조사기간
사업자	- 서울 소재의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체 - 서울 소재의 개인사업자 단, 기준일은 1991년 7월 1일	개별면접	1994. 6. 3~7. 5
일반 저축자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저축자	개별면접	1994. 6. 3~6. 30
금융기관 종사자	수도권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각 점포에 근무하는 종사자 125,830명(1993년 말)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	1994. 6. 3~6. 30

〈附表 1-2〉 母集團 規模” 및 標本抽出 規模

(單位 : 개)

업 종 구 분	모집단 규모		표본추출규모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제 조 업	81,679	5,179	680	190
1) 음식료 제조업	5,567	194	60	20
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0,707	1,407	150	30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	3,203	88	60	20
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0,009	553	60	20
5) 화학제품 제조업	2,983	511	50	20
6) 비금속광물 제조업	951	203	50	20
7) 제1차금속산업	779	112	50	20
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241	1,822	100	20
9) 기타 제조업	7,239	289	100	20
건 설 업	11,227	2,000	100	20
도 매 업	58,389	6,065	300	30
소 매 업	169,751	2,329	500	80
음식 및 숙박업	85,482	245	300	40
운수·창고·통신업	3,470	1,429	60	20
부동산업	19,147	494	100	2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0,771	1,460	460	100
1) 사업서비스업	9,034	1,171	80	20
2)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	8,101	3	100	20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서비스업	18,279	80	80	20
4)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45,357	206	200	40
합 계	509,916	19,201	2,500	500

註 : 1)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1년 「총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業種別 母集團의 規模를 기초로 하였다. 標本抽出 規模는 <附表 1-2>에 제시된 업종구분별 모집단의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製造業의 경우 업종 분류를 中分類 단계까지 하였는데, 이는 업종별 업체의 특성을 조사결과에 고루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 이용할 표본추출틀은 1991년 7월 1일 기준 자료로 현재까지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目標標本 크기의 5배 정도의 업체를 超過抽出 (over sampling)하였다.

나) 標本抽出 方法 및 加重值

표본의 추출은 系統抽出方法(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한 確率 標本抽出(random sampling)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표본추출틀인 「總事業體實態調査」의 결과 화일을 먼저 업종코드와 자본금 규모순

<附表 1-3> 標本抽出 規模 및 加重值

(單位 : 개)

업 종 수	표본추출 규모		완성된 설문수		가 중 치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제조업	680	190	105	22	777.90	235.41
도매업	300	30	55	11	1,061.62	551.36
소매업	500	80	175	16	970.00	145.56
음식 및 숙박업	300	40	63	9	1,356.86	27.22
건설업	100	20	14	3	801.93	666.67
운수·창고·통신업	60	20	6	6	578.33	238.17
부동산업	100	20	33	8	580.21	61.7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60	100	123	15	656.67	97.33
합 계	2,500	500	574	90	-	-

으로 재정렬한 후 각 업종별 모집단 규모를 표본 규모로 나누어 추출간격을 구한 다음 임의 출발점을 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資本金 規模順으로 정렬한 자료를 이용하여 系統抽出할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별로 골고루 표본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게 된다. <附表 1-3>은 추출할 標本規模를 業態別로 정리한 것이다.

<附表 1-3>의 加重値는 抽出率의 逆數를 사용한 것으로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를 구분하여 業態別로 계산한 것이다. 제조업인 경

<附表 1-4> 實查進行 狀況表

구 분	빈 도	비율(%)	적격 표본수	적격표본 대비 응답률(%)
- 면접전 탈락				
전화번호 없음	110	3.67		
전화번호와 상호 불일치	664	22.13		
결번	31	1.03		
전화 안받음	208	6.93	0	
폐업	44	1.47		
이전	5	0.17		
못찾음	8	0.27		
- 면접중 탈락				
조사대상(법인) 아님	9	0.30	766	
거절	558	18.60		
부재	208	6.93		
- 면접완료	738	24.60		
완성설문지	667	22.23	667	36.05
검증 또는 자체폐기	71	2.37		
- 면접시도 안함	417	13.9	417(최대)	
합 계	3,000	100	1,850	

우 한 개의 개인사업체 표본이 약 778개의 업체를 대표하고, 한 개의 법인사업체는 약 235개의 업체를 대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용된 사업자 조사결과의 분석자료는 <附表 1-3>의 가중치로 加重調整된 結果이다. 가중치로 조사결과를 가중조정했기 때문에 업종별, 사업자구분별로 동일한 추출률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차(bias)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附表 1-4>는 표본추출틀에서 추출한 3천개의 표본명부를 이용하여 667개의 유효표본을 완성할 때까지의 진행상황을 나타낸 표이다.

다) 實查統制

(1) 面接員 選拔 및 教育

調査經驗이 있는 面接員을 選拔하여 조사와 관련된 교육을 약 1시간 정도 실시하여 응답오차 및 면접원의 고의적인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이 응답거부를 유발하기가 쉬운 것이어서 면접원 선발 및 교육은 수시로 진행되었는데 총교육 횟수는 8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교육받은 인원은 총 121명이다.

<附表 1-5> 檢證結果表

총면접부수	총투입 면접원수	검증결과	기타	유효설문지
738부	62명 (교육면접원 121명 - 중도탈락면접원 59명 - 학생 44명 - 미혼 5명 - 주부 13명)	55부 폐기	19부 내용부실로 폐기	664부

(2) 設問紙 確認 및 檢證

수거된 설문지는 담당 감독원이 응답자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전수 확인하고, 확인이 다된 설문지만 면접원당 약 50% 정도를 전화로 재검증하였다. 故意的인 面接員 誤差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면접원이 조사한 設問紙를 전량 廢棄處分하였다.

2) 一般 貯蓄者

가) 調査對象 및 有效標本

수도권 거주 세대주를 모집단으로 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有效標本의 수를 500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¹⁾.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개인의 경우는 실명제 실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차적인 調査對象의 예비표본은 證券會社와 銀行의 顧客인 世帶主로 설정하고, 설문조사 기간 동안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한 고객 중에서 有意抽出方式(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유효표본을 추출한다.

나) 設問調査 方法

設問對象者를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조사원은 해당 金融機關의 從事者들에게 조사협조를 의뢰하였다. 협조에 응한 금융기관종사자들에게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자료의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1) 참고로 표본이 500개일 때,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4.4\%$ 가 된다.

나. 金融機關從事者

1) 調査對象 및 有效標本

표본설정의 기준으로 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총 유효표본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② 각 금융기관별 조사표본의 수가 표본의 定規分布 假定에 위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별로 30개 이상이 되도록 하며, ③ <附表 1-6>의 금융기관별 종사자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며, ④ 면접 설문조사의 용이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附表 1-6> 首都圈 金融機關 從事者 現況(1993年末) 및 標本構成

(單位: 명, %)

구 분	종사자수 (모집단)	구성비 (모집단)	종사자수 (표본)	구성비 (표본)
은행	59,653	47.4	264	41.4
단자, 종금	2,177	1.7	65	10.2
보험	42,266	33.6	40	6.3
증권	20,202	16.1	220	34.5
투자신탁	1,526	1.2	49	7.7
계	125,830	100.0	638	100.0

資料(모집단): 재무부

有效標本の 金融機關別 構成比를 보면 銀行業의 경우 모집단에서의 구성비 47.4%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보험은 모집단의 구성비에 비해 상당히 낮고 단자·종금, 증권, 투자신탁의 경우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 종사자 중에 상용 종사자는 70% 미만인 데다가 면접조사가 어려운 외근 영업사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일선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증권이 거래되는 시간

에 노동강도가 높은 증권업의 근무형태가 설문조사에 가장 편리하여 증권업의 有效標本 構成比가 모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有效標本은 각 금융기관 점포의 종사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의추출하여 集團 面接調查로 진행하였다.

다. 資料處理方法

조사된 설문지 중에 檢討 및 檢證을 거쳐 有效標本으로 확정된 설문지는 코딩(coding), 펀칭(punching), 편집(editing)과정을 거쳐 IBM 486DX2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집계 및 모수추정하였다.

2. 事業者 對象 設問調査 結果分析表

<附表 2-1> 推計調査決定者 比率 : 사업 B-3

(單位 : 개, %)

구 분 전 체	사례수 (656)	예 62.4	아니오 37.6
연령별			
20대	(45)	65.1	34.9
30대	(229)	62.4	37.6
40대	(217)	58.0	42.0
50대 이상	(162)	68.2	31.8
학력별			
국졸 이하	(28)	74.4	25.6
중졸	(60)	80.4	19.6
고졸	(323)	69.5	30.5
대재 이상	(226)	43.5	56.5
업종별			
제조업	(122)	56.3	43.7
도매업	(66)	31.3	68.7
소매업	(189)	69.6	30.4
음식 및 숙박업	(72)	74.4	25.6
건설업	(17)	66.7	33.3
운수·창고·통신업	(12)	59.0	41.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82.7	17.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5)	60.5	39.5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0	100.0
일반과세자(개인)	(219)	50.0	50.0
과세특례자	(260)	84.8	15.2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57.3	42.7
비등록사업자	(26)	26.1	73.9
사업자 구분			
법인	(91)	.0	100.0
개인	(565)	64.8	35.2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20.5	79.5
간이기장	(123)	58.2	41.8
일기장	(176)	69.9	30.1
기장 안함	(190)	78.6	21.4

* 사업 B-3은 사업체용 설문지 B질의 3번 문항을 의미함.

<附表 2-2> 標準所得率에 대한 意見 : 사업 B-4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높다	낮다	적당하다	모르겠다
전 체	(517)	48.8	6.8	43.8	.7
연령별					
20대	(34)	36.5	8.3	55.2	.0
30대	(178)	49.5	6.3	44.1	.0
40대	(177)	51.0	6.2	41.2	1.5
50대 이상	(127)	47.9	7.0	44.5	.6
학력별					
국졸 이하	(22)	63.2	12.9	23.9	.0
중졸	(49)	46.8	9.0	44.2	.0
고졸	(277)	41.0	8.4	50.3	.3
대재 이상	(154)	61.4	2.7	34.1	1.8
업종별					
제조업	(91)	47.3	6.6	45.1	1.1
도매업	(53)	50.9	1.9	45.3	1.9
소매업	(156)	50.6	6.4	42.9	.0
음식 및 숙박업	(59)	50.8	8.5	40.7	.0
건설업	(12)	41.7	8.3	50.0	.0
운수·창고·통신업	(6)	33.3	16.7	50.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9)	31.0	13.8	55.2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0)	48.2	7.3	42.7	1.8
부가세 납세형태					
일반과세자(개인)	(209)	55.7	5.3	38.5	.5
과세특례자	(242)	37.9	8.8	53.4	.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52)	72.3	1.5	23.1	3.1
비등록사업자	(14)	36.5	15.0	42.5	6.0
사업자 구분					
개인	(517)	48.8	6.8	43.8	.7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71)	78.2	4.2	17.5	.0
간이기장	(120)	47.7	4.8	45.8	1.6
일기장	(167)	44.9	8.5	46.7	.0
기장 안함	(157)	41.0	7.6	50.3	1.0

<附表 2-3> 稅務調查에 대한 經驗 : 사업 B-5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소득세 부가세	경험 없음
전 체	(660)	1.9	4.9	2.4	90.8
연령별					
20대	(45)	6.2	2.0	.1	91.7
30대	(229)	1.2	5.5	2.1	91.3
40대	(222)	1.6	5.4	3.0	90.0
50대 이상	(162)	1.9	4.1	2.7	91.4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0	.0	100.0
중졸	(60)	.0	7.8	1.8	90.4
고졸	(327)	1.6	5.5	1.0	91.9
대재 이상	(224)	3.0	4.1	5.8	87.1
업종별					
제조업	(125)	2.0	3.8	1.7	92.4
도매업	(65)	.9	5.9	7.6	85.6
소매업	(191)	2.4	3.4	1.8	92.4
음식 및 숙박업	(70)	1.6	4.8	1.7	91.9
건설업	(17)	.0	5.0	5.0	89.9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4.9	95.1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0	5.9	.6	93.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7)	2.4	8.4	1.0	88.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9.3	12.8	19.9	58.0
일반과세자(개인)	(217)	2.9	7.0	3.8	86.3
과세특례자	(262)	.3	3.6	.5	95.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2.6	1.3	.0	96.1
비등록사업자	(30)	.0	.0	.0	100.0
사업자 구분					
법인	(90)	9.3	12.8	19.9	58.0
개인	(569)	1.6	4.6	1.8	92.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6.1	6.8	8.4	78.8
간이기장	(121)	1.8	7.1	1.3	89.8
일기장	(177)	.9	5.7	2.2	91.2
기장 안함	(195)	.8	2.0	.6	96.7

〈附表 2-4〉 稅務處理用役 利用料 : 사업 B-6

(單位 : 만원, 개, %)

구 분	사례수	협회 본사 관리	5 미만	5~ 10	10~ 20	20~ 30	30~ 50	50~ 100	100 이상	직접 처리
전 체	(656)	1.5	4.0	10.4	9.2	1.5	.7	.2	.4	72.3
연령별										
20대	(45)	4.0	2.0	6.9	2.3	.0	.0	.0	.0	84.8
30대	(227)	1.7	1.2	11.7	10.5	1.8	.9	.1	.9	71.2
40대	(222)	1.7	5.1	12.4	8.8	1.1	.3	.4	.1	70.1
50대 이상	(159)	.1	7.3	6.3	9.3	1.7	1.2	.1	.0	74.1
학력별										
국졸 이하	(29)	.0	8.3	.0	.0	.0	.0	.0	.0	91.7
중졸	(61)	1.5	1.2	3.6	1.8	.0	.0	.0	.0	91.9
고졸	(326)	.8	3.8	9.2	5.6	.6	.8	0	.3	79.1
대재 이상	(221)	3.0	4.9	15.3	19.4	3.9	.9	.7	.7	51.1
업종별										
제조업	(126)	.9	1.8	11.7	15.0	3.7	1.5	.3	1.4	63.7
도매업	(65)	1.7	11.6	34.1	22.5	2.6	3.4	.0	.0	24.2
소매업	(188)	2.1	1.1	6.8	4.7	.9	.0	.0	.0	84.3
음식 및 숙박업	(68)	1.7	6.6	1.7	3.4	.0	.0	.0	.0	86.5
건설업	(17)	.0	.0	.0	12.1	.0	.0	5.0	5.0	77.8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16.7	9.7	4.9	.0	.0	.0	68.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3	3.0	.6	.6	.0	.3	.3	.0	94.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7)	.9	4.8	10.0	9.1	1.2	.0	.0	.0	74.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8)	4.3	.0	6.5	11.6	24.0	8.9	5.4	10.0	29.4
일반과세자(개인)	(219)	2.4	7.6	22.0	19.1	.8	.9	.0	.0	47.2
과세특례자	(259)	.5	1.7	.3	.0	.0	.0	.0	.0	97.5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0	2.6	12.7	11.3	2.9	.0	.0	.0	70.5
비등록사업자	(30)	3.0	.0	.0	.0	.0	.0	.0	.0	97.0
사업자 구분										
법인	(88)	4.3	.0	6.5	11.6	24.0	8.9	5.4	10.0	29.4
개인	(568)	1.3	4.2	10.5	9.1	.6	.4	.0	.0	73.9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2)	1.0	3.0	22.3	37.5	7.2	2.0	1.2	2.3	23.5
간이기장	(120)	1.9	9.1	17.1	10.2	.7	1.0	.0	.0	59.9
일기장	(179)	2.0	3.4	8.8	1.9	.6	.5	.0	.0	82.9
기장 안함	(192)	.9	2.0	2.2	1.4	.0	.0	.0	.0	93.5

<附表 2-5> 限界稅額控除 申請 比率(一般課稅者) : 사업 B-7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전 체	(215)	16.3	83.7
연령별			
20대	(11)	.0	100.0
30대	(82)	17.0	83.0
40대	(75)	18.5	81.5
50대 이상	(47)	15.4	84.6
학력별			
국졸 이하	(6)	13.0	87.0
중졸	(13)	13.8	86.2
고졸	(108)	17.1	82.9
대재 이상	(80)	15.1	84.9
업종별			
제조업	(51)	23.5	76.5
도매업	(47)	12.8	87.2
소매업	(68)	14.7	85.3
음식 및 숙박업	(26)	15.4	84.6
건설업	(5)	20.0	80.0
운수·창고·통신업	(1)	.0	100.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1)	.0	100.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	20.0	80.0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54)	10.3	89.7
간이기장	(57)	19.8	80.2
일기장	(57)	24.8	75.2
기장 안함	(46)	9.0	91.0

<附表 2-6> 月平均 賣出額 : 사업 B-8

(單位 : 만원, 개, %)

구 분	사례 수	100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7000	7000~이상	평 균
전 체	(592)	9.6	34.9	13.0	17.5	15.0	5.0	5.0	3177.4
연령별									
20대	(43)	.0	51.0	30.4	9.0	6.1	1.0	2.6	735.0
30대	(204)	7.1	32.0	14.9	17.2	15.9	7.5	5.5	2546.0
40대	(199)	8.0	38.3	11.3	16.0	16.5	6.0	3.9	3470.3
50대 이상	(144)	18.7	30.0	7.8	22.0	14.0	.8	6.7	4386.3
학력별									
국졸 이하	(29)	25.9	38.7	11.3	20.0	4.1	.0	.0	440.9
중졸	(49)	10.7	52.7	9.6	16.2	10.8	.0	.0	510.9
고졸	(298)	11.8	40.5	12.9	14.8	12.3	5.3	2.5	1178.3
대재 이상	(198)	2.6	18.4	14.0	22.9	22.9	6.7	12.4	8308.7
업종별									
제조업	(116)	11.8	31.4	9.8	16.7	14.7	6.1	9.6	5727.6
도매업	(64)	1.7	3.4	5.1	13.6	45.2	17.9	13.0	4287.4
소매업	(164)	5.9	37.0	17.9	22.6	11.8	3.4	1.4	1005.0
음식 및 숙박업	(65)	5.3	44.5	17.8	23.2	5.4	1.9	1.9	710.1
건설업	(16)	12.8	38.3	6.4	19.2	12.8	.0	10.6	32312.5
운수·창고·통신업	(9)	.0	36.6	.0	7.5	.0	25.8	30.1	27081.6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3)	67.3	29.9	.0	.4	.4	1.2	.8	942.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24)	13.4	51.8	12.6	9.3	10.1	.1	2.7	863.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2)	.0	1.0	1.4	5.2	11.2	12.7	68.5	46457.1
일반과세자(개인)	(202)	.0	10.1	16.1	28.9	29.6	10.1	5.2	2919.8
과세특례자	(227)	16.4	63.2	12.0	6.1	2.3	.0	.0	279.8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51)	9.3	21.3	15.7	28.7	16.6	4.4	4.1	1423.1
비등록사업자	(29)	38.4	54.5	.0	7.0	.0	.0	.0	196.7
사업자 구분									
법인	(82)	.0	1.0	1.4	5.2	11.2	12.7	68.5	46457.1
개인	(509)	10.0	36.2	13.4	18.0	15.1	4.7	2.6	1507.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53)	4.0	3.8	3.4	11.7	32.8	21.5	22.9	15029.8
간이기장	(110)	4.9	30.3	15.7	22.4	18.1	3.6	4.9	1421.5
일기장	(161)	10.1	47.6	11.3	19.0	9.8	1.4	.7	681.4
기장 안함	(166)	15.2	42.2	17.3	16.0	8.7	.7	.0	498.2

<附表 2-7> 1993年 2期 附加價值稅額: 사업 B-9

(單位: 만원, 개, %)

구 분	사례 수	10 미만	10~30	30~100	100~300	300~700	700~1000	1000 이상	평 균
전 체	(540)	38.9	25.4	17.8	10.3	2.9	.9	3.7	284.5
연령별									
20대	(29)	53.6	27.0	16.2	.0	.0	3.2	.0	34.7
30대	(181)	31.7	27.1	18.6	14.1	3.8	.5	4.1	234.2
40대	(186)	40.3	26.6	16.1	10.0	2.7	1.4	2.9	311.4
50대 이상	(142)	43.9	21.3	18.8	8.0	2.5	.1	5.4	372.2
학력별									
국졸 이하	(20)	71.0	24.6	.0	4.3	.0	.0	.0	12.3
중졸	(50)	57.0	25.6	13.3	1.8	2.3	.0	.0	29.2
고졸	(273)	41.9	28.2	15.5	9.1	3.0	.6	1.6	115.8
대재 이상	(179)	24.1	21.3	23.9	15.9	3.7	1.8	9.3	731.3
업종별									
제조업	(103)	31.1	15.4	14.3	20.8	7.6	1.8	9.1	645.0
도매업	(58)	9.3	11.2	28.9	31.7	4.7	2.8	11.4	331.7
소매업	(155)	36.4	35.5	21.3	5.0	1.7	.1	.1	38.0
음식 및 숙박업	(54)	31.9	39.9	22.0	4.0	2.0	.0	.1	40.6
건설업	(14)	43.4	21.7	14.5	7.2	7.2	.0	6.0	3048.6
운수·창고·통신업	(9)	33.0	33.0	6.8	.0	.0	.0	27.2	1309.6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4)	84.2	10.5	3.5	.4	.0	.4	1.1	320.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1)	73.6	15.9	5.3	2.1	.0	1.1	2.0	108.3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65)	4.9	.0	8.3	3.2	12.4	9.5	61.6	5543.9
일반과세자(개인)	(188)	6.1	17.9	40.4	23.8	6.1	1.4	4.3	248.4
과세특례자	(221)	55.7	41.6	2.3	.4	.0	.0	.0	10.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43)	96.2	.0	.0	3.8	.0	.0	.0	6.0
비등록사업자	(23)	95.3	4.7	.0	.0	.0	.0	.0	.7
사업자 구분									
법인	(65)	4.9	.0	8.3	3.2	12.4	9.5	61.6	5543.9
개인	(475)	40.0	26.3	18.2	10.5	2.6	.6	1.8	110.3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31)	13.7	6.6	11.3	29.8	13.1	4.5	21.0	1520.7
간이기장	(103)	32.1	25.7	28.5	10.6	.9	.7	1.6	91.3
일기장	(143)	42.0	29.7	20.0	6.8	1.4	.0	.0	35.8
기장 안함	(160)	52.5	30.4	12.7	3.8	.5	.0	.0	21.3

<附表 2-8> 金融實名制 實施 前後의 金融實名制에 대한 見解 : 사업 C-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전 체	(653)	69.7	15.6	4.7	9.9
연령별					
20대	(45)	87.2	2.2	8.2	2.4
30대	(227)	69.4	15.4	4.3	10.9
40대	(219)	70.9	15.4	5.3	8.5
50대 이상	(159)	64.5	20.1	2.8	12.6
학력별					
국졸 이하	(29)	55.9	30.8	.0	13.4
중졸	(60)	59.4	23.4	9.0	8.2
고졸	(321)	71.4	12.6	5.1	10.9
대재 이상	(226)	72.1	15.4	3.9	8.6
업종별					
제조업	(124)	68.2	16.8	4.6	10.4
도매업	(65)	68.9	18.6	4.2	8.4
소매업	(186)	66.0	17.0	5.8	11.2
음식 및 숙박업	(72)	71.4	11.1	4.7	12.7
건설업	(16)	49.5	32.3	.0	18.3
운수·창고·통신업	(12)	88.2	11.8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68.9	12.2	3.4	15.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6)	80.0	12.4	4.3	3.2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75.2	14.8	4.2	5.8
일반과세자(개인)	(216)	66.5	17.1	4.4	12.0
과세특례자	(255)	72.3	15.0	3.7	9.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69.7	13.6	11.0	5.8
비등록사업자	(30)	69.5	13.9	3.8	12.8
사업자 구분					
법인	(91)	75.2	14.8	4.2	5.8
개인	(561)	69.5	15.7	4.7	10.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73.5	13.8	3.2	9.4
간이기장	(121)	71.8	12.9	6.6	8.7
일기장	(175)	65.7	13.5	4.7	16.1
기장 안함	(189)	69.8	20.4	4.4	5.4

<附表 2-9> 金融實名制가 必要한 措置인가 : 사업 C-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63)	77.2	22.8
연령별			
20대	(47)	88.3	11.7
30대	(231)	76.0	24.0
40대	(220)	79.0	21.0
50대 이상	(162)	73.5	26.5
학력별			
국졸 이하	(30)	63.5	36.5
중졸	(61)	79.1	20.9
고졸	(325)	76.7	23.3
대재 이상	(228)	79.8	20.2
업종별			
제조업	(126)	75.7	24.3
도매업	(66)	79.4	20.6
소매업	(191)	76.1	23.9
음식 및 숙박업	(71)	77.5	22.5
건설업	(17)	64.6	35.4
운수·창고·통신업	(12)	88.2	11.8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78.7	21.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7)	80.3	19.7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86.9	13.1
일반과세자(개인)	(219)	73.2	26.8
과세특례자	(260)	78.7	21.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84.0	16.0
비등록사업자	(31)	77.2	22.8
사업자 구분			
법인	(91)	86.9	13.1
개인	(571)	76.9	23.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78.4	21.6
간이기장	(122)	79.6	20.4
일기장	(179)	73.5	26.5
기장 안함	(194)	78.3	21.7

〈附表 2-10〉 金融實名制가 必要한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理由 :
사업 C-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비실명거래 가 사회적 으로 큰 문 제가 아니 므로	실명제 실시 에 따른 경 계적 충격이 크므로	실명제물 실시해도 음성적 거래 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 중되므로	기 타
전 체	(153)	8.7	21.1	41.7	25.4	3.1
연령별						
20대	(6)	.7	37.1	37.1	25.1	.0
30대	(49)	6.2	18.8	44.8	25.9	4.3
40대	(52)	15.3	16.0	40.4	28.0	.2
50대 이상	(44)	5.0	28.5	39.6	21.5	5.4
학력별						
국졸 이하	(11)	17.7	58.0	16.4	.0	7.9
중졸	(16)	.0	20.8	33.6	45.6	.0
고졸	(79)	11.7	18.9	39.2	25.6	4.5
대재 이상	(43)	4.2	16.4	54.7	24.5	.2
업종별						
제조업	(30)	7.0	21.0	43.0	25.5	3.5
도매업	(14)	7.4	22.2	40.8	22.2	7.4
소매업	(46)	7.1	24.8	33.9	29.7	4.5
음식 및 숙박업	(18)	18.8	12.6	49.9	18.7	.0
건설업	(6)	.0	34.3	51.4	14.3	.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100.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9)	.0	27.7	43.1	27.7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	8.1	16.9	45.3	29.1	.6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5)	6.8	4.9	37.1	44.9	6.2
일반과세자(개인)	(63)	6.2	20.0	44.3	24.6	4.9
과세특례자	(56)	10.7	21.8	38.9	26.9	1.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2)	12.9	25.6	45.4	16.0	.0
비등록사업자	(7)	12.8	25.5	33.1	28.7	.0
사업자 구분						
법인	(15)	6.8	4.9	37.1	44.9	6.2
개인	(138)	8.8	21.4	41.8	25.0	3.0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35)	9.2	12.4	32.8	34.5	11.2
간이기장	(29)	14.8	13.8	49.4	22.0	.0
일기장	(48)	8.0	30.5	40.8	20.7	.0
기장 안함	(41)	5.1	19.8	42.0	28.4	4.6

<附表 2-11> 金融實名制가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를 통한 金融秩序의 正常化에 미친 影響 : 사업 C-4-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 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럼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 이 안됨
전 체	(655)	14.6	38.8	34.9	8.3	3.4
연령별						
20대	(45)	18.3	49.6	25.8	6.3	.0
30대	(227)	15.5	37.4	38.5	6.0	2.7
40대	(220)	16.1	34.6	34.3	10.2	4.8
50대 이상	(160)	9.2	44.6	33.2	9.8	3.3
학력별						
국졸 이하	(30)	3.6	36.2	40.0	17.2	3.0
중졸	(59)	18.3	25.9	42.7	8.5	4.5
고졸	(323)	13.4	40.2	35.5	8.3	2.7
대재 이상	(224)	18.7	40.2	29.8	6.5	4.8
업종별						
제조업	(121)	16.6	35.0	41.8	6.6	.0
도매업	(64)	22.2	39.3	31.7	1.7	5.1
소매업	(191)	14.0	34.8	36.5	10.1	4.5
음식 및 숙박업	(71)	11.3	43.6	33.8	6.5	4.8
건설업	(17)	5.0	52.5	24.3	12.1	6.1
운수·창고·통신업	(12)	14.6	45.1	23.6	16.7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15.1	40.3	29.9	11.8	3.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6)	12.5	42.6	31.9	11.4	1.6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25.7	44.5	28.2	1.5	.0
일반과세자(개인)	(216)	17.1	36.5	32.7	7.7	6.0
과세특례자	(259)	11.1	41.3	36.8	8.4	2.4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22.2	39.5	31.0	7.3	.0
비등록사업자	(29)	.0	30.2	49.1	20.7	.0
사업자 구분						
법인	(91)	25.7	44.5	28.2	1.5	.0
개인	(564)	14.1	38.6	35.2	8.6	3.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16.0	36.0	29.8	10.4	7.9
간이기장	(120)	21.7	41.4	28.2	5.6	3.1
일기장	(176)	11.1	43.9	35.9	6.6	2.5
기장 안함	(193)	12.8	34.0	40.1	10.7	2.4

<附表 2-12> 金融實名制가 金融資産 綜合課稅를 통한 租稅衡平性 提高에
미친 影響 : 사업 C-4-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 움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렇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 이 안됨
전 체	(654)	7.2	30.7	44.0	13.2	4.9
연령별						
20대	(45)	1.2	43.3	47.0	8.6	.0
30대	(227)	8.1	26.3	46.2	14.1	5.3
40대	(220)	8.9	30.5	41.9	12.0	6.6
50대 이상	(159)	4.9	34.3	42.4	15.2	3.1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34.3	43.2	16.8	5.8
중졸	(59)	5.6	16.3	56.6	16.6	4.9
고졸	(323)	6.9	33.2	41.6	13.7	4.5
대재 이상	(223)	10.2	31.1	42.8	10.0	5.9
업종별						
제조업	(121)	9.7	35.7	42.7	9.1	2.8
도매업	(65)	7.6	34.5	41.1	11.8	5.0
소매업	(190)	5.9	27.7	46.4	13.1	6.8
음식 및 숙박업	(71)	8.1	25.8	45.1	16.1	4.8
건설업	(17)	5.0	35.4	41.4	12.1	6.1
운수·창고·통신업	(12)	9.7	16.7	35.4	9.7	28.5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6.7	21.6	53.0	15.5	3.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6)	6.6	36.0	40.0	15.5	1.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17.3	40.0	27.9	12.5	2.3
일반과세자(개인)	(217)	6.1	30.1	46.7	9.7	7.4
과세특례자	(257)	5.9	30.0	42.9	17.9	3.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15.7	35.5	36.9	10.6	1.3
비등록사업자	(29)	3.1	24.1	57.5	8.4	6.9
사업자 구분						
법인	(91)	17.3	40.0	27.9	12.5	2.3
개인	(563)	6.8	30.3	44.6	13.2	5.0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9.4	32.5	39.9	10.8	7.4
간이기장	(119)	9.4	33.4	43.3	10.0	3.9
일기장	(176)	5.3	25.7	50.1	13.5	5.4
기장 안함	(192)	6.6	32.0	41.1	16.3	4.0

〈附表 2-13〉 金融實名制가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에 미친 影響:
사업 C-4-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 움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럼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 이 안됨
전 체	(656)	15.6	38.1	27.2	13.4	5.8
연령별						
20대	(47)	17.5	45.6	22.1	12.5	2.3
30대	(227)	17.2	34.0	28.8	14.9	5.1
40대	(219)	16.9	35.0	31.2	11.0	5.9
50대 이상	(160)	10.6	47.3	19.7	15.0	7.5
학력별						
국졸 이하	(30)	18.9	35.1	25.4	13.2	7.5
중졸	(59)	14.0	32.8	29.6	18.6	5.0
고졸	(324)	15.3	41.4	24.9	13.2	5.3
대재 이상	(224)	17.5	33.7	30.6	11.7	6.6
업종별						
제조업	(122)	13.3	45.0	23.6	14.3	3.8
도매업	(64)	14.6	38.5	31.6	6.8	8.5
소매업	(192)	14.4	36.1	30.2	13.0	6.2
음식 및 숙박업	(71)	17.7	35.5	22.6	16.1	8.0
건설업	(17)	16.1	41.4	30.3	6.1	6.1
운수·창고·통신업	(12)	33.3	35.4	26.4	4.9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12.8	40.5	22.0	18.6	6.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6)	18.2	36.9	26.7	15.7	2.6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28.1	38.4	28.1	4.8	.5
일반과세자(개인)	(218)	11.9	40.2	28.7	10.4	8.9
과세특례자	(257)	17.2	37.8	24.6	16.7	3.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20.0	30.6	29.0	15.8	4.6
비등록사업자	(29)	13.0	38.2	33.4	11.6	3.8
사업자 구분						
법인	(91)	28.1	38.4	28.1	4.8	.5
개인	(564)	15.1	38.1	27.2	13.7	6.0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17.0	39.3	28.8	7.4	7.5
간이기장	(119)	21.5	32.1	33.5	8.2	4.8
일기장	(175)	11.6	45.2	23.4	15.0	4.8
기장 안함	(195)	14.6	34.5	26.3	18.1	6.4

〈附表 2-14〉 非實名去來가 社會的으로 큰 問題이다 : 사업 C-5-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	동의하는편	그저그렇	반대하는편	전적으로 반대
전 체	(664)	28.0	42.8	24.0	4.3	.9
연령별						
20대	(47)	19.2	51.3	24.5	2.9	2.0
30대	(230)	28.5	45.1	22.5	2.8	1.0
40대	(222)	28.3	40.2	26.4	4.4	.8
50대 이상	(162)	29.6	40.5	22.8	6.7	.5
학력별						
국졸 이하	(30)	17.4	48.0	28.7	6.0	.0
중졸	(60)	28.4	37.0	30.4	2.9	1.2
고졸	(327)	26.7	40.4	27.2	4.7	1.0
대재 이상	(228)	33.5	47.2	14.5	4.0	.8
업종별						
제조업	(126)	27.2	45.2	23.1	3.6	.9
도매업	(64)	20.5	56.4	20.5	2.6	.0
소매업	(192)	28.2	41.3	23.8	5.6	1.1
음식 및 숙박업	(72)	23.7	47.7	26.9	1.6	.0
건설업	(17)	11.1	35.4	41.4	12.1	.0
운수·창고·통신업	(12)	21.5	66.7	11.8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27.2	33.8	23.9	12.1	3.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42.0	29.9	23.3	3.2	1.6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28.3	51.5	17.1	3.2	.0
일반과세자(개인)	(220)	24.5	48.2	23.9	3.4	.0
과세특례자	(260)	29.3	37.6	25.5	6.2	1.4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44.6	32.9	18.7	1.9	1.9
비등록사업자	(31)	14.1	55.5	28.0	.0	2.5
사업자 구분						
법인	(91)	28.3	51.5	17.1	3.2	.0
개인	(572)	28.0	42.5	24.3	4.3	.9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22.9	57.7	15.1	2.8	1.5
간이기장	(123)	30.4	39.1	25.0	5.5	.0
일기장	(179)	27.4	35.1	29.4	6.4	1.6
기장 안함	(195)	29.0	45.3	23.0	2.3	.4

<附表 2-15> 實名制 實施에 따른 經濟的 衝擊이 크다 : 사업 C-5-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	동의하는편	그저그림	반대하는편	전적으로 반대
전 체	(664)	11.3	27.4	48.0	10.8	2.5
연령별						
20대	(47)	4.0	34.4	43.4	13.0	5.2
30대	(230)	9.9	23.9	50.6	13.8	1.7
40대	(223)	14.8	27.2	45.9	9.3	2.9
50대 이상	(161)	10.5	31.1	47.9	8.1	2.4
학력별						
국졸 이하	(30)	16.9	40.0	43.2	.0	.0
중졸	(59)	13.2	34.1	43.1	6.8	2.8
고졸	(328)	13.3	26.0	45.4	12.4	2.9
대재 이상	(228)	6.4	27.4	52.3	11.6	2.3
업종별						
제조업	(126)	8.1	38.1	41.0	9.2	3.6
도매업	(65)	9.2	18.4	62.2	8.4	1.7
소매업	(192)	11.9	29.3	44.1	13.5	1.1
음식 및 숙박업	(71)	16.1	19.4	51.6	9.7	3.2
건설업	(17)	12.1	17.2	59.6	11.1	.0
운수·창고·통신업	(12)	16.7	28.5	45.1	4.9	4.9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15.1	18.0	58.0	8.9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8.9	30.8	44.9	10.5	4.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5.7	21.5	54.9	16.2	1.7
일반과세자(개인)	(219)	12.4	29.1	45.5	9.8	3.2
과세특례자	(261)	12.7	22.8	51.8	11.1	1.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8.3	40.8	34.9	14.1	1.9
비등록사업자	(31)	2.2	30.0	56.5	5.9	5.4
사업자 구분						
법인	(91)	5.7	21.5	54.9	16.2	1.7
개인	(572)	11.6	27.6	47.7	10.6	2.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7.3	26.7	53.9	11.7	.4
간이기장	(123)	12.8	22.7	53.6	8.5	2.4
일기장	(180)	13.9	24.6	49.7	8.4	3.4
기장 안함	(194)	10.1	32.6	40.4	14.2	2.7

<附表 2-16> 實名制를 實施해도 陰性的 去來는 여전히 存在한다 :
사업 C-5-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	동의하는편	그저그럼	반대하는편	전적으로 반대
전 체	(661)	20.6	55.4	16.9	6.1	1.1
연령별						
20대	(46)	22.0	65.9	12.2	.0	.0
30대	(230)	21.2	55.5	15.8	6.1	1.4
40대	(222)	22.5	53.4	19.0	4.0	1.2
50대 이상	(160)	16.8	55.7	15.8	10.9	.8
학력별						
국졸 이하	(30)	9.0	57.9	33.2	.0	.0
중졸	(59)	20.7	43.3	26.4	5.4	4.2
고졸	(326)	24.8	50.4	17.2	6.7	.9
대재 이상	(227)	16.6	64.7	12.0	6.1	.6
업종별						
제조업	(126)	17.7	61.9	10.8	8.7	.9
도매업	(64)	18.7	51.4	21.3	8.5	.0
소매업	(191)	22.1	55.2	15.3	5.7	1.7
음식 및 숙박업	(71)	24.2	54.9	17.7	1.6	1.6
건설업	(17)	12.1	47.5	34.3	6.1	.0
운수·창고·통신업	(12)	21.5	38.2	28.5	11.8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24.0	49.0	24.0	3.0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18.8	56.0	17.1	7.2	.8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8.2	71.2	17.4	3.2	.0
일반과세자(개인)	(219)	21.7	56.1	14.6	6.5	1.1
과세특례자	(260)	22.6	52.6	17.9	5.9	1.1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10.4	63.6	16.2	7.9	1.9
비등록사업자	(31)	24.5	45.4	27.2	2.9	.0
사업자 구분						
법인	(90)	8.2	71.2	17.4	3.2	.0
개인	(571)	21.1	54.8	16.9	6.2	1.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11.2	66.8	16.6	4.2	1.2
간이기장	(123)	22.1	52.3	16.6	9.0	.0
일기장	(179)	24.0	54.3	12.6	7.5	1.6
기장 안함	(193)	20.9	53.3	20.7	3.9	1.2

<附表 2-17>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 사업 C-5-4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전적으로 동의	동의하는편	그저그림	반대하는편	전적으로 반대
전 체	(663)	14.0	36.1	35.5	11.6	2.9
연령별						
20대	(46)	1.8	55.3	30.4	10.2	2.4
30대	(229)	16.8	35.5	34.6	11.8	1.3
40대	(223)	14.9	32.3	37.8	12.9	2.1
50대 이상	(162)	11.7	37.8	34.1	9.7	6.6
학력별						
국졸 이하	(30)	5.7	54.9	35.8	3.6	.0
중졸	(60)	13.5	28.0	49.3	2.3	6.8
고졸	(327)	14.6	35.8	31.9	15.5	2.2
대재 이상	(228)	14.7	35.2	36.5	10.1	3.5
업종별						
제조업	(125)	12.1	39.2	32.1	10.5	6.0
도매업	(65)	14.3	37.7	37.8	10.1	.0
소매업	(191)	16.9	31.3	38.0	11.0	2.9
음식 및 숙박업	(72)	17.4	38.1	31.7	12.7	.0
건설업	(17)	10.1	35.4	48.5	6.1	.0
운수·창고·통신업	(12)	9.7	68.7	16.7	4.9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9.2	30.8	32.8	21.0	6.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7.8	38.9	35.6	12.9	4.8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22.3	27.9	30.0	16.4	3.5
일반과세자(개인)	(220)	18.8	34.2	35.5	9.9	1.5
과세특례자	(260)	10.8	35.6	36.8	13.4	3.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11.5	43.5	28.7	11.1	5.1
비등록사업자	(31)	.0	46.3	41.3	6.6	5.8
사업자 구분						
법인	(91)	22.3	27.9	30.0	16.4	3.5
개인	(572)	13.6	36.4	35.7	11.4	2.9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16.2	31.2	35.6	11.6	5.4
간이기장	(123)	14.9	37.6	33.2	11.7	2.6
일기장	(179)	18.4	27.6	43.9	8.6	1.4
기장 안함	(194)	8.5	44.8	29.2	14.3	3.3

〈附表 2-18〉 現在 推進中인 金融實名制에 대한 見解 : 사업 C-6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매우 잘 추진됨	어느정도 잘 추진 됨	그다지 잘 추진 되지못함	전혀 잘 추진되 지 못함	모르겠다 보통이다
전 체	(666)	4.4	41.5	32.8	7.1	14.1
연령별						
20대	(47)	7.3	56.9	23.7	2.9	9.2
30대	(231)	3.1	45.5	31.3	7.4	12.7
40대	(223)	3.5	38.0	38.6	6.5	13.5
50대 이상	(162)	7.2	36.3	29.2	8.7	18.6
학력별						
국졸 이하	(30)	3.6	31.1	30.3	12.5	22.6
중졸	(60)	12.8	29.7	30.5	9.9	17.1
고졸	(329)	4.1	43.6	31.6	4.9	15.8
대재 이상	(228)	2.4	44.8	34.1	9.7	9.0
업종별						
제조업	(126)	5.7	39.3	39.3	2.7	12.9
도매업	(66)	.0	43.8	33.1	4.9	18.2
소매업	(192)	5.2	42.6	31.9	8.5	11.8
음식 및 숙박업	(72)	.0	41.3	31.8	9.5	17.4
건설업	(17)	.0	53.5	34.3	6.1	6.1
운수·창고·통신업	(12)	16.7	21.5	38.2	11.8	11.8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15.1	34.1	36.1	8.9	5.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7.2	41.0	27.5	7.3	17.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3.5	53.8	34.0	.6	8.0
일반과세자(개인)	(221)	2.9	41.5	34.7	9.0	11.8
과세특례자	(261)	4.5	42.7	28.6	7.1	17.1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10.2	36.1	38.8	3.2	11.6
비등록사업자	(31)	5.8	33.7	39.9	3.6	17.0
사업자 구분						
법인	(91)	3.5	53.8	34.0	.6	8.0
개인	(574)	4.5	41.1	32.8	7.3	14.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8	54.1	23.4	7.2	14.4
간이기장	(123)	6.4	39.1	34.8	6.0	13.6
일기장	(180)	5.9	40.4	36.7	3.9	13.2
기장 안함	(195)	3.7	37.3	32.9	10.7	15.4

<附表 2-19> 後續補完措置에 대한 意見 : 사업 C-7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적절함	더 보완할 부분이있음	부적절 함	모르겠다 보통이다
전 체	(664)	9.4	62.0	7.6	20.9
연령별					
20대	(46)	4.0	75.2	2.0	18.8
30대	(231)	11.0	66.7	8.2	14.2
40대	(223)	9.1	58.4	7.9	24.6
50대 이상	(161)	8.9	56.9	7.9	26.3
학력별					
국졸 이하	(30)	9.6	52.8	3.6	34.1
중졸	(60)	9.5	47.8	3.3	39.4
고졸	(327)	9.9	63.3	6.4	20.3
대재 이상	(228)	7.1	66.9	12.2	13.8
업종별					
제조업	(126)	7.5	58.6	7.1	26.8
도매업	(66)	6.7	72.7	5.8	14.8
소매업	(192)	10.3	58.6	10.1	20.9
음식 및 숙박업	(72)	7.9	61.9	6.4	23.8
건설업	(17)	6.1	75.7	6.1	12.1
운수·창고·통신업	(12)	4.9	78.5	.0	16.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9)	16.0	61.3	3.5	19.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12.5	61.6	7.2	18.7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12.1	74.3	7.0	6.6
일반과세자(개인)	(221)	8.2	62.9	7.4	21.4
과세특례자	(259)	10.1	59.4	6.7	23.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10.2	65.1	11.1	13.6
비등록사업자	(31)	9.4	61.9	10.3	18.4
사업자 구분					
법인	(91)	12.1	74.3	7.0	6.6
개인	(572)	9.3	61.6	7.6	21.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7.5	66.2	7.3	19.0
간이기장	(123)	10.3	65.3	6.7	17.8
일기장	(179)	10.8	60.1	7.3	21.9
기장 안함	(194)	8.2	59.8	8.8	23.3

<附表 2-20> 金融實名制 實施로 인한 不便이나 不利益 : 사업 C-8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아주많음	몇번있음	한두번있음	없 음
전 체	(664)	6.7	19.8	16.3	57.2
연령별					
20대	(46)	4.5	20.4	18.0	57.1
30대	(231)	5.9	22.5	20.2	51.4
40대	(221)	9.0	17.0	12.2	61.7
50대 이상	(163)	5.1	18.9	16.3	59.7
학력별					
국졸 이하	(30)	7.2	16.4	22.2	54.2
중졸	(61)	4.9	10.3	12.3	72.6
고졸	(328)	7.2	19.0	12.5	61.4
대재 이상	(226)	6.5	25.4	23.1	44.9
업종별					
제조업	(127)	9.0	20.1	25.0	46.0
도매업	(66)	6.6	32.2	10.7	50.5
소매업	(190)	6.4	19.1	15.9	58.7
음식 및 숙박업	(71)	8.0	17.8	13.0	61.2
건설업	(17)	11.1	18.2	11.1	59.6
운수·창고·통신업	(12)	11.8	33.3	.0	54.9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3	18.4	21.3	60.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4.2	13.1	16.4	66.2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5.6	25.8	17.8	50.9
일반과세자(개인)	(219)	8.7	24.8	13.8	52.6
과세특례자	(261)	4.4	16.0	16.6	63.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8.3	13.6	27.1	51.1
비등록사업자	(31)	7.3	19.6	11.6	61.5
사업자 구분					
법인	(91)	5.6	25.8	17.8	50.9
개인	(572)	6.7	19.6	16.3	57.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8.0	24.8	12.6	54.7
간이기장	(123)	8.0	22.3	26.7	43.1
일기장	(178)	9.2	21.8	14.3	54.7
기장 안함	(195)	3.1	14.3	13.3	69.2

<附表 2-21> 金融賣名制가 政治에 미친 影響 : 사업 C-10-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상당히 긍정적	약간 긍정적	그저 그 럴 것임	약간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전 체	(662)	24.0	41.8	26.5	5.4	2.3
연령별						
20대	(47)	24.6	33.4	35.1	6.9	.0
30대	(228)	24.1	42.5	28.0	3.9	1.6
40대	(221)	25.0	42.9	23.6	5.8	2.7
50대 이상	(163)	22.5	40.8	26.6	6.8	3.4
학력별						
국졸 이하	(30)	9.6	31.8	51.1	7.4	.0
중졸	(61)	33.9	31.5	28.0	5.5	1.2
고졸	(325)	21.4	45.1	25.8	6.2	1.5
대재 이상	(228)	28.6	40.6	23.1	3.1	4.7
업종별						
제조업	(125)	27.4	39.0	24.3	8.5	.9
도매업	(65)	28.6	47.8	20.2	.0	3.3
소매업	(191)	23.2	40.6	27.2	5.6	3.4
음식 및 숙박업	(71)	14.5	43.6	29.0	9.6	3.2
건설업	(17)	16.1	42.4	41.4	.0	.0
운수·창고·통신업	(12)	73.6	9.7	16.7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27.2	46.2	26.6	.0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26.0	41.3	27.7	4.1	.8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43.6	32.1	22.5	1.7	.0
일반과세자(개인)	(218)	20.5	46.7	24.0	4.7	4.1
과세특례자	(261)	24.2	37.9	29.5	7.1	1.2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36.6	41.6	19.9	.0	1.9
비등록사업자	(31)	11.9	41.5	36.2	10.4	.0
사업자 구분						
법인	(90)	43.6	32.1	22.5	1.7	.0
개인	(571)	23.3	42.1	26.6	5.6	2.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2)	29.3	43.0	19.2	5.0	3.5
간이기장	(122)	25.8	40.5	25.3	4.3	4.0
일기장	(179)	20.8	45.0	28.5	3.5	2.3
기장 안함	(196)	23.4	38.6	29.1	8.1	.8

<附表 2-22> 金融實名制가 經濟에 미친 影響 : 사업 C-10-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상당히 긍정적	약간 긍정적	그저 그 럴 것임	약간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전 체	(662)	18.1	42.8	26.1	9.2	3.9
연령별						
20대	(47)	12.8	47.5	30.4	7.0	2.3
30대	(228)	16.6	47.5	23.3	10.0	2.6
40대	(221)	20.3	40.4	27.9	8.1	3.3
50대 이상	(163)	18.5	38.8	25.6	10.1	7.0
학력별						
국졸 이하	(30)	6.0	39.3	44.8	9.9	.0
중졸	(61)	24.1	29.2	32.8	9.1	4.9
고졸	(325)	18.3	45.0	23.4	10.4	3.0
대재 이상	(228)	19.4	42.7	26.0	5.9	6.0
업종별						
제조업	(126)	18.2	40.4	28.2	11.4	1.8
도매업	(65)	26.9	46.2	20.2	1.7	5.0
소매업	(190)	13.3	43.2	26.8	11.0	5.7
음식 및 숙박업	(71)	19.3	43.6	19.3	12.9	4.8
건설업	(17)	11.1	30.3	58.6	.0	.0
운수·창고·통신업	(12)	38.2	40.3	21.5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18.7	39.7	23.6	11.8	6.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19.6	44.0	29.2	6.4	.8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27.1	38.5	23.9	10.1	.3
일반과세자(개인)	(218)	18.1	42.7	24.2	7.9	7.0
과세특례자	(261)	15.4	43.1	28.8	10.5	2.1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29.6	45.5	18.6	4.5	1.9
비등록사업자	(31)	11.3	39.2	33.3	16.3	.0
사업자 구분						
법인	(90)	27.1	38.5	23.9	10.1	.3
개인	(571)	17.7	43.0	26.1	9.1	4.0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16.3	49.9	22.1	5.4	6.2
간이기장	(122)	27.2	38.1	25.4	6.5	2.8
일기장	(178)	16.0	44.3	25.8	8.7	5.2
기장 안함	(196)	15.0	41.1	28.5	13.1	2.3

<附表 2-23> 金融實名制가 社會에 미친 影響 : 사업 C-10-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상당히 긍정적	약간 긍정적	그저 그 럴 것임	약간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전 체	(662)	20.8	41.1	28.5	7.5	2.1
연령별						
20대	(47)	22.2	36.6	32.0	6.9	2.3
30대	(228)	20.3	39.9	30.7	8.1	1.1
40대	(221)	21.7	41.2	28.4	7.0	1.7
50대 이상	(163)	20.1	44.3	23.8	7.8	4.0
학력별						
국졸 이하	(30)	9.9	29.4	49.7	11.0	.0
중졸	(61)	26.6	31.4	28.5	13.5	.0
고졸	(325)	22.6	41.9	26.2	7.5	1.7
대재 이상	(228)	18.8	43.1	29.6	4.6	3.9
업종별						
제조업	(126)	22.9	41.7	24.6	8.1	2.7
도매업	(65)	28.6	41.1	22.7	2.5	5.0
소매업	(190)	15.6	40.3	31.5	10.3	2.3
음식 및 숙박업	(71)	20.9	42.0	27.4	8.1	1.6
건설업	(17)	17.2	35.4	47.5	.0	.0
운수·창고·통신업	(12)	38.2	40.3	21.5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21.6	51.5	23.6	3.0	.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22.6	39.8	30.4	7.2	.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36.8	32.5	26.5	3.8	.3
일반과세자(개인)	(218)	20.4	42.5	26.2	6.2	4.7
과세특례자	(261)	20.6	38.2	31.5	9.2	.4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21.8	49.6	26.7	1.9	.0
비등록사업자	(31)	12.0	44.3	26.8	17.0	.0
사업자 구분						
법인	(90)	36.8	32.5	26.5	3.8	.3
개인	(571)	20.2	41.4	28.6	7.7	2.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20.4	52.1	17.5	4.3	5.8
간이기장	(122)	26.2	38.0	27.4	5.6	2.8
일기장	(178)	17.0	41.9	34.6	5.8	.6
기장 안함	(196)	21.3	37.0	28.6	11.9	1.2

<附表 2-24> 金融實名制로 어려움을 겪는 階層(複數應答 2個) :
사업 C-11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대기업 경영인	중소 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 업자	봉급 생활자	자영 업자	일반 서민
전 체	(663)	16.7	41.4	23.2	14.6	43.5	1.8	37.8	20.9
연령별									
20대	(47)	18.0	50.8	33.7	21.0	32.6	2.0	31.1	10.8
30대	(231)	15.0	42.4	24.3	11.7	45.2	3.5	35.3	22.2
40대	(221)	17.0	38.9	21.1	15.8	42.6	.0	40.0	22.3
50대 이상	(163)	18.2	39.7	21.8	15.5	43.9	1.8	38.3	19.2
학력별									
국졸 이하	(29)	29.3	15.2	11.4	13.9	48.6	4.1	42.3	32.3
중졸	(61)	14.1	45.3	18.9	18.0	40.5	1.8	41.4	18.0
고졸	(328)	16.7	42.2	22.7	12.4	41.3	2.2	38.4	23.8
대재 이상	(228)	15.5	42.4	26.2	17.3	48.1	.8	33.3	14.4
업종별									
제조업	(127)	14.0	46.0	18.9	11.3	42.6	.9	44.9	18.8
도매업	(66)	7.4	30.6	30.6	15.7	49.5	4.9	35.6	22.3
소매업	(190)	18.2	34.9	25.3	16.2	45.1	2.3	36.3	21.7
음식 및 숙박업	(72)	14.3	52.3	15.9	11.1	38.0	.0	44.4	22.2
건설업	(17)	23.2	36.4	23.2	6.1	34.4	.0	40.4	30.3
운수·창고·통신업	(12)	21.5	40.3	21.5	4.9	45.1	4.9	40.3	21.5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20.7	42.3	27.2	9.2	43.2	.0	24.9	32.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23.1	46.7	23.6	20.4	41.0	1.6	29.1	13.7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15.6	34.5	29.5	18.0	54.1	1.4	39.1	7.7
일반과세자(개인)	(221)	13.6	36.4	21.2	14.3	45.7	2.8	41.8	23.0
과세특례자	(261)	18.9	46.4	22.7	14.7	40.7	1.5	33.1	20.8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21.1	41.4	30.1	18.1	44.6	.0	33.3	9.5
비등록사업자	(31)	13.3	40.9	23.4	6.5	32.3	.0	47.3	33.4
사업자 구분									
법인	(90)	15.6	34.5	29.5	18.0	54.1	1.4	39.1	7.7
개인	(574)	16.6	41.5	22.9	14.4	42.7	1.8	37.5	21.2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13.7	33.6	20.5	10.9	50.4	.3	46.5	20.9
간이기장	(123)	16.2	43.6	24.7	16.7	52.6	1.9	28.3	15.9
일기장	(179)	17.5	44.3	25.2	12.5	34.0	1.5	42.4	22.2
기장 안함	(196)	17.6	40.1	21.4	16.6	41.7	2.7	35.1	22.7

<附表 2-25> 金融實名制 實施를 反對하는 階層(複數應答 2個) :
사업 C-12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대기업 경영인	중소 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 업자	봉급 생활자	자영 업자	일반 서민
전 체	(666)	31.5	20.9	33.7	27.0	60.9	1.9	18.0	6.5
연령별									
20대	(47)	28.8	25.9	44.4	32.1	50.1	2.9	12.8	.0
30대	(230)	30.1	19.1	35.7	23.5	63.5	3.2	16.7	7.2
40대	(220)	31.0	20.3	32.2	27.4	61.4	.6	18.4	7.1
50대 이상	(161)	34.1	20.5	29.3	28.9	56.2	1.6	19.8	6.1
학력별									
국졸 이하	(29)	39.9	21.1	15.0	16.6	64.5	.0	27.1	12.7
중졸	(60)	35.4	20.7	28.4	31.7	58.6	.0	16.8	6.3
고졸	(326)	32.2	21.8	31.0	27.0	58.7	2.5	17.4	8.2
대재 이상	(227)	28.3	18.7	42.1	24.0	62.8	1.3	17.0	2.8
업종별									
제조업	(127)	29.7	25.5	34.8	23.5	64.3	1.8	16.6	2.7
도매업	(64)	34.2	14.5	32.6	22.2	60.7	5.1	20.5	5.1
소매업	(190)	34.2	17.2	36.6	27.2	56.5	2.3	18.0	5.8
음식 및 숙박업	(71)	19.4	21.0	27.4	35.5	61.2	.0	19.3	14.5
건설업	(17)	29.3	11.1	12.1	24.3	69.7	.0	41.4	6.1
운수·창고·통신업	(12)	38.2	35.4	16.7	4.9	71.5	.0	16.7	16.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39.0	18.0	29.9	17.7	73.1	.3	13.1	8.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7)	35.6	25.9	37.7	27.0	55.9	1.6	12.2	3.2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30.6	15.2	32.0	19.0	76.8	.3	22.5	2.2
일반과세자(개인)	(219)	30.7	18.6	33.7	23.8	61.4	2.2	20.8	6.1
과세특례자	(259)	32.7	24.1	31.2	30.1	59.5	1.5	14.0	5.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33.7	14.1	38.9	27.6	63.0	1.9	13.1	3.8
비등록사업자	(31)	22.3	17.4	40.3	24.7	36.4	3.6	30.4	22.0
사업자 구분									
법인	(90)	30.6	15.2	32.0	19.0	76.8	.3	22.5	2.2
개인	(570)	31.4	20.5	33.5	26.9	59.4	2.0	17.6	6.6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28.4	19.3	28.8	17.4	73.4	3.9	21.5	4.5
간이기장	(122)	33.2	19.3	35.0	31.4	63.3	.0	14.0	1.9
일기장	(177)	33.0	23.0	37.6	24.8	53.8	2.2	17.2	6.5
기장 안함	(195)	29.8	19.2	31.0	29.7	57.2	1.9	19.1	10.2

〈附表 2-26〉 金融實名制와 改革과의 關係 : 사업 C-1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실명제가 정착되어야 성공	실명제의 정착없이도 성공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전 체	(663)	68.1	13.2	18.7
연령별				
20대	(47)	59.6	5.0	35.4
30대	(229)	65.8	16.3	17.9
40대	(222)	70.7	12.5	16.9
50대 이상	(162)	70.4	12.0	17.6
학력별				
국졸 이하	(30)	54.7	13.2	32.2
중졸	(61)	70.8	11.1	18.1
고졸	(328)	68.2	13.9	17.9
대재 이상	(225)	68.1	13.4	18.5
업종별				
제조업	(126)	60.3	11.7	27.9
도매업	(65)	80.6	7.6	11.8
소매업	(191)	62.0	17.6	20.4
음식 및 숙박업	(71)	75.7	12.9	11.4
건설업	(17)	64.6	17.2	18.2
운수·창고·통신업	(12)	71.5	.0	28.5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84.6	12.4	3.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67.6	10.5	21.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78.1	8.5	13.5
일반과세자(개인)	(219)	64.0	13.9	22.1
과세특례자	(261)	69.8	12.7	17.5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79.7	9.0	11.4
비등록사업자	(31)	56.4	22.6	21.0
사업자 구분				
법인	(90)	78.1	8.5	13.5
개인	(572)	67.7	13.4	18.9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74.9	12.9	12.3
간이기장	(122)	65.2	12.0	22.8
일기장	(179)	70.1	12.4	17.5
기장 안함	(196)	64.8	14.6	20.6

<附表 2-27> 金融實名制가 成功的으로 定着되기 위해 必要한 事項：
사업 C-14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금융기관의 감독강화	세무행정 강화	전반적인 국 민의식 개혁	기 타
전 체	(664)	17.7	16.7	42.4	23.1
연령별					
20대	(47)	21.9	14.8	46.3	17.0
30대	(231)	20.1	12.9	43.6	23.4
40대	(221)	15.0	20.7	42.2	22.0
50대 이상	(162)	17.4	17.4	40.0	25.3
학력별					
국졸 이하	(30)	15.8	5.0	43.5	35.7
중졸	(61)	14.5	18.8	47.0	19.7
고졸	(327)	20.1	18.0	41.4	20.4
대재 이상	(227)	16.2	15.3	41.5	26.9
업종별					
제조업	(126)	15.0	19.8	46.7	18.5
도매업	(65)	9.2	11.8	59.7	19.2
소매업	(192)	21.5	15.2	33.1	30.3
음식 및 숙박업	(72)	20.6	22.2	39.7	17.5
건설업	(17)	12.1	17.2	52.5	18.2
운수·창고·통신업	(12)	26.4	11.8	33.3	28.5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9.2	17.7	48.5	24.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7)	18.8	14.8	44.5	21.8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11.3	14.7	59.0	15.0
일반과세자(개인)	(221)	15.4	13.4	44.9	26.3
과세특례자	(260)	19.8	19.5	38.3	22.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24.2	14.1	41.0	20.7
비등록사업자	(31)	11.6	27.2	46.8	14.4
사업자 구분					
법인	(91)	11.3	14.7	59.0	15.0
개인	(572)	18.0	16.8	41.8	23.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13.6	13.4	50.8	22.4
간이기장	(122)	19.9	13.1	43.5	45.6
일기장	(179)	19.4	22.1	36.9	37.5
기장 안함	(196)	16.7	15.9	43.1	44.5

<附表 2-28> 販賣代金 決濟方法 : 사업 D-1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즉시 현금	신용카드 결제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기타
전 체	(665)	72.6	3.5	6.4	8.2	8.9	.2	.1
연령별								
20대	(46)	90.9	.4	6.3	.0	2.4	.0	.0
30대	(231)	67.7	3.8	6.6	9.2	12.5	.0	.2
40대	(223)	69.9	3.9	8.1	8.4	9.0	.7	.1
50대 이상	(162)	80.2	2.7	3.2	8.6	5.3	.0	.0
학력별								
국졸 이하	(30)	73.5	5.0	5.8	5.3	10.4	.0	.0
중졸	(61)	92.2	3.8	1.1	2.9	.0	.0	.0
고졸	(328)	74.8	3.5	6.2	7.8	7.7	.0	.0
대재 이상	(227)	62.8	3.6	7.4	11.3	13.9	.8	.3
업종별								
제조업	(126)	46.0	1.8	13.2	18.4	20.1	.0	.5
도매업	(66)	29.6	.0	6.7	29.7	32.3	1.6	.0
소매업	(191)	84.0	6.0	3.5	2.5	3.9	.1	.0
음식 및 숙박업	(72)	87.3	6.4	4.7	1.6	.0	.0	.0
건설업	(17)	72.8	.0	17.2	.0	10.1	.0	.0
운수·창고·통신업	(12)	73.6	.0	4.9	4.9	16.7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95.5	.0	3.3	.6	.3	.0	.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89.7	1.7	5.8	2.8	.0	.0	.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18.6	3.9	15.1	25.1	33.8	.8	2.8
일반과세자(개인)	(220)	54.3	5.8	7.4	14.2	17.7	.5	.0
과세특례자	(262)	87.7	2.6	6.5	2.4	.9	.0	.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93.6	.0	.0	3.4	3.1	.0	.0
비등록사업자	(31)	91.3	.0	2.9	5.8	.0	.0	.0
사업자 구분								
법인	(90)	18.6	3.9	15.1	25.1	33.8	.8	2.8
개인	(574)	74.7	3.5	6.0	7.6	8.0	.2	.0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32.0	.9	9.3	20.1	35.6	1.5	.6
간이기장	(122)	65.3	8.4	9.4	9.1	7.9	.0	.0
일기장	(180)	82.2	2.7	5.3	5.7	4.2	.0	.0
기장 안함	(196)	87.3	2.7	4.2	4.5	1.4	.0	.0

<附表 2-29> 購入代金 支拂方式 : 사업 D-2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즉시 현금	신용카드 결제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기타
전 체	(657)	66.3	1.4	13.2	12.4	6.1	.5	.1
연령별								
20대	(45)	65.2	2.0	21.6	3.8	5.3	2.0	.1
30대	(230)	59.9	1.4	14.3	15.6	7.7	.8	.2
40대	(222)	65.5	1.5	14.4	14.5	4.1	.0	.0
50대 이상	(157)	77.8	1.0	7.5	6.6	6.9	.2	.0
학력별								
국졸 이하	(30)	77.8	.0	6.8	2.9	12.5	.0	.0
중졸	(61)	81.7	5.0	7.8	1.8	3.6	.0	.0
고졸	(325)	69.3	.6	14.8	10.5	3.9	.9	.0
대재 이상	(222)	54.8	1.9	12.2	21.1	9.8	.0	.2
업종별								
제조업	(126)	57.8	.3	15.6	14.1	11.0	.9	.3
도매업	(66)	34.7	.0	13.2	33.9	18.2	.0	.0
소매업	(189)	69.2	1.8	14.0	11.1	4.0	.0	.0
음식 및 숙박업	(72)	80.8	1.6	11.2	4.8	1.6	.0	.0
건설업	(17)	48.5	.0	23.2	12.1	10.1	6.1	.0
운수·창고·통신업	(12)	85.4	.0	.0	9.7	.0	4.9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5)	94.5	.0	.8	.8	3.6	.0	.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75.1	3.3	13.0	6.9	.8	.8	.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8)	21.0	2.5	16.7	32.4	23.9	1.3	2.2
일반과세자(개인)	(220)	48.1	.9	17.3	22.1	11.2	.4	.0
과세특례자	(256)	83.4	2.0	10.4	2.4	1.2	.7	.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77.6	1.3	7.3	10.9	2.8	.0	.0
비등록사업자	(31)	81.0	.0	13.2	5.8	.0	.0	.0
사업자 구분								
법인	(88)	21.0	2.5	16.7	32.4	23.9	1.3	2.2
개인	(568)	68.0	1.4	13.1	11.6	5.4	.4	.0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1)	32.1	.6	12.8	27.1	26.6	.3	.5
간이기장	(122)	61.4	1.9	17.6	14.6	3.8	.7	.0
일기장	(178)	74.4	1.4	12.8	8.1	3.2	.0	.0
기장 안함	(193)	78.5	1.5	10.8	7.8	.6	.8	.0

<附表 2-30> 去來計座數의 變化 : 사업 D-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증가	감소	변화없음
전 체	(666)	4.2	11.4	84.5
연령별				
20대	(46)	12.3	14.1	73.6
30대	(231)	6.1	11.6	82.3
40대	(223)	1.5	10.9	87.6
50대 이상	(163)	3.1	11.2	85.7
학력별				
국졸 이하	(30)	3.6	.0	96.4
중졸	(61)	1.2	9.9	88.9
고졸	(329)	5.3	11.0	83.7
대재 이상	(227)	3.5	14.8	81.7
업종별				
제조업	(127)	3.9	14.5	81.6
도매업	(66)	4.9	14.0	81.0
소매업	(191)	3.5	9.8	86.7
음식 및 숙박업	(72)	3.2	7.9	88.9
건설업	(17)	10.1	18.2	71.7
운수·창고 통신업	(12)	16.7	4.9	78.5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6.5	11.8	81.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4.0	12.1	83.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11.0	11.9	77.1
일반과세자(개인)	(221)	4.0	14.1	81.9
과세특례자	(262)	3.3	9.4	87.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3.8	11.0	85.2
비등록사업자	(31)	7.5	7.3	85.2
사업자 구분				
법인	(90)	11.0	11.9	77.1
개인	(575)	3.9	11.4	84.7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4.8	15.0	80.3
간이기장	(123)	3.6	14.7	81.7
일기장	(180)	3.7	12.8	83.5
기장 안함	(196)	4.6	6.1	89.2

〈附表 2-31〉 入出金 頻度의 變化 : 사업 D-4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대폭 증가	증가한 편	변화 없음	감소한 편	대폭 감소
전 체	(666)	.0	3.5	83.5	12.0	1.0
연령별						
20대	(46)	.0	6.1	78.9	15.0	.0
30대	(231)	.0	5.3	83.1	10.7	.9
40대	(223)	.0	1.7	87.7	9.3	1.3
50대 이상	(163)	.0	2.6	79.0	17.2	1.1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3.6	88.9	7.5	.0
중졸	(61)	.0	1.1	76.9	19.4	2.5
고졸	(329)	.0	3.9	83.6	11.3	1.1
대재 이상	(227)	.0	3.8	83.7	11.9	.6
업종별						
제조업	(127)	.0	2.1	84.9	12.2	.9
도매업	(66)	.0	4.9	74.4	20.6	.0
소매업	(191)	.0	2.3	85.1	11.5	1.1
음식 및 숙박업	(72)	.0	4.7	85.8	6.3	3.2
건설업	(17)	.0	10.1	71.7	18.2	.0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83.3	16.7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3	3.0	87.9	8.9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0	4.1	84.6	11.3	.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3	9.5	81.5	8.7	.0
일반과세자(개인)	(221)	.0	3.6	80.2	15.0	1.3
과세특례자	(262)	.0	2.1	88.8	8.4	.6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0	5.7	78.2	13.4	2.7
비등록사업자	(31)	.0	5.1	78.0	17.0	.0
사업자 구분						
법인	(90)	.3	9.5	81.5	8.7	.0
개인	(575)	.0	3.2	83.6	12.1	1.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1	6.5	78.6	13.6	1.2
간이기장	(123)	.0	3.5	81.5	13.4	1.6
일기장	(180)	.0	2.5	86.4	10.3	.9
기장 안함	(196)	.0	3.0	84.3	11.9	.8

〈附表 2-32〉 자기앞수표 利用 頻度의 變化 : 사업 D-5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대폭 증가	증가한 편	변화 없음	감소한 편	대폭 감소	이용 안함
전 체	(662)	1.0	2.6	65.4	26.7	4.1	.1
연령별							
20대	(46)	.0	6.2	68.7	20.2	4.9	.0
30대	(230)	1.5	3.4	65.2	26.7	3.3	.0
40대	(221)	1.4	2.6	65.9	25.2	4.9	.0
50대 이상	(162)	.0	.7	63.8	31.0	3.9	.6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0	66.6	31.0	2.4	.0
중졸	(61)	1.2	1.8	56.2	36.8	4.0	.0
고졸	(326)	.4	3.2	66.2	25.8	4.4	.0
대재 이상	(226)	2.3	2.6	66.3	24.0	4.2	.5
업종별							
제조업	(126)	.0	1.2	58.1	35.3	4.5	.9
도매업	(66)	1.6	4.9	52.1	35.5	5.8	.0
소매업	(190)	1.7	2.9	67.0	23.9	4.5	.0
음식 및 숙박업	(71)	.0	3.2	74.2	19.3	3.2	.0
건설업	(17)	.0	.0	70.7	29.3	.0	.0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68.7	31.3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0	.0	59.1	34.8	6.1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1.6	2.4	71.6	21.8	2.6	.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0	2.1	56.5	37.3	4.1	.0
일반과세자(개인)	(220)	2.2	2.6	59.8	30.4	4.7	.4
과세특례자	(259)	.3	2.8	67.9	25.5	3.6	.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0	3.8	73.9	18.1	4.2	.0
비등록사업자	(31)	.0	.0	79.7	16.7	3.6	.0
사업자 구분							
법인	(90)	.0	2.1	56.5	37.3	4.1	.0
개인	(571)	1.0	2.7	65.7	26.3	4.1	.2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1.3	3.0	56.2	36.3	3.2	.0
간이기장	(122)	.9	2.9	65.5	22.4	8.4	.0
일기장	(179)	2.0	2.4	68.3	23.1	3.7	.5
기장 안함	(195)	.0	2.6	66.6	28.5	2.3	.0

<附表 2-33> 手票利用이 減少한 理由 : 사업 D-5-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이서 요구	자금 추적	수수료 징수	입금 불편	기타
전 체	(216)	18.1	16.0	54.7	10.2	1.0
연령별						
20대	(12)	46.0	7.3	39.4	.0	7.3
30대	(72)	19.6	15.7	54.8	9.7	.2
40대	(73)	16.7	10.3	60.4	11.2	1.3
50대 이상	(59)	12.3	25.8	50.1	11.7	.0
학력별						
국졸 이하	(10)	7.2	22.4	44.7	25.7	.0
중졸	(25)	14.0	8.8	65.8	11.4	.0
고졸	(103)	17.4	10.7	63.8	6.4	1.8
대재 이상	(73)	22.4	30.0	34.5	13.1	.0
업종별						
제조업	(52)	28.7	13.1	50.9	5.1	2.2
도매업	(26)	18.8	12.5	62.5	6.3	.0
소매업	(58)	15.7	9.9	58.8	15.7	.0
음식 및 숙박업	(16)	7.3	21.4	50.0	21.4	.0
건설업	(5)	.0	37.9	62.1	.0	.0
운수·창고·통신업	(5)	31.1	53.3	15.6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17)	23.1	23.9	45.5	7.4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5)	15.8	25.3	51.1	4.1	3.7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37)	25.0	23.8	35.7	14.3	1.2
일반과세자(개인)	(78)	15.2	20.9	58.1	5.7	.0
과세특례자	(81)	22.0	7.5	58.2	10.1	2.2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4)	17.9	34.3	16.3	31.5	.0
비등록사업자	(6)	.0	.0	82.1	17.9	.0
사업자 구분						
법인	(37)	25.0	23.8	35.7	14.3	1.2
개인	(179)	17.8	15.6	55.7	10.0	0.9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67)	14.1	20.4	61.9	3.4	.3
간이기장	(39)	20.2	24.7	45.1	9.9	.0
일기장	(48)	19.8	10.9	54.1	15.3	.0
기장 안함	(62)	18.0	12.3	56.5	10.7	2.6

<附表 2-34>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第1金融圈) : 사업 D-6-1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대폭 증가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감소	대폭 감소	이용 안함
전 체	(663)	1.3	11.3	53.7	5.6	1.9	26.1
연령별							
20대	(46)	.0	15.4	56.2	.0	.1	28.3
30대	(229)	1.9	13.8	57.5	6.3	1.3	19.2
40대	(223)	1.9	10.5	50.3	5.7	2.0	29.5
50대 이상	(162)	0	8.0	51.9	5.7	3.2	31.1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3.6	58.4	3.6	.0	34.5
중졸	(60)	.0	1.8	57.2	8.3	2.6	30.1
고졸	(329)	.7	12.0	51.7	5.3	2.2	28.1
대재 이상	(225)	3.2	14.2	54.3	4.9	1.7	21.7
업종별							
제조업	(126)	2.4	9.9	52.0	6.6	1.8	27.4
도매업	(66)	1.6	20.6	57.9	6.6	3.3	9.9
소매업	(190)	1.9	13.2	53.4	5.7	.6	25.3
음식 및 숙박업	(71)	.0	4.8	48.4	3.2	4.9	38.7
건설업	(17)	5.0	12.1	53.5	6.1	6.1	17.2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38.2	11.8	.0	50.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0	12.1	60.3	11.8	.0	15.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1	8.8	57.6	4.0	.8	28.7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8.0	8.5	60.4	1.2	.1	21.8
일반과세자(개인)	(219)	1.8	14.5	53.1	7.9	3.2	19.4
과세특례자	(261)	.4	8.2	52.1	4.2	.9	34.2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1.9	14.1	48.8	6.6	2.7	25.9
비등록사업자	(31)	.0	8.7	75.5	.0	.0	15.8
사업자 구분							
법인	(90)	8.0	8.5	60.4	1.2	.1	21.8
개인	(572)	1.1	11.5	53.4	5.7	2.0	26.3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4.4	16.9	50.8	6.4	3.2	18.3
간이기장	(123)	.7	12.7	59.0	7.9	1.7	18.0
일기장	(180)	1.1	10.8	55.1	3.5	2.1	27.4
기장 안함	(194)	.6	8.5	50.4	5.7	1.3	33.5

<附表 2-35>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相互信用金庫) : 사업 D-6-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감소	이용 안함
전 체	(658)	1.8	15.6	.4	82.3
연령별					
20대	(46)	2.0	20.8	.0	77.2
30대	(227)	1.3	14.0	1.0	83.7
40대	(223)	1.9	16.1	.0	82.0
50대 이상	(159)	2.3	15.1	.0	82.6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23.5	.0	76.5
중졸	(60)	.0	16.0	.0	84.0
고졸	(325)	1.1	10.8	.6	87.5
대재 이상	(224)	4.1	23.6	.1	72.2
업종별					
제조업	(127)	3.0	12.5	.9	83.7
도매업	(65)	3.3	7.6	.0	89.1
소매업	(188)	1.1	18.0	.6	80.3
음식 및 숙박업	(71)	.0	12.9	.0	87.1
건설업	(17)	5.0	17.2	0	77.8
운수·창고·통신업	(12)	.0	16.7	.0	83.3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3.0	14.8	.0	82.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6)	1.7	23.0	.1	75.2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9)	5.3	13.9	.5	80.3
일반과세자(개인)	(216)	2.6	17.1	.4	79.9
과세특례자	(260)	1.3	13.1	.0	85.5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0	16.7	1.9	81.4
비등록사업자	(31)	.0	23.2	.0	76.8
사업자 구분					
법인	(89)	5.3	13.9	.5	80.3
개인	(568)	1.6	15.6	.3	82.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2)	3.5	11.1	.1	85.3
간이기장	(120)	1.5	20.2	.7	77.7
일기장	(180)	2.0	18.0	.6	79.4
기장 안함	(193)	1.0	12.5	.0	86.6

<附表 2-36>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保險會社) : 사업 D-6-3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대폭 증가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감소	대폭 감소	이용 안함
전 체	(657)	1.1	4.6	24.7	.9	.7	68.0
연령별							
20대	(46)	.0	7.2	25.5	.0	2.0	65.3
30대	(226)	2.2	4.7	30.2	1.2	.5	61.1
40대	(222)	1.1	3.9	18.7	.8	.4	75.1
50대 이상	(160)	.0	4.8	24.5	.6	1.1	69.0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6.0	20.7	2.1	.0	71.2
중졸	(59)	.0	3.9	31.6	.0	2.6	61.9
고졸	(324)	1.5	3.5	24.1	.3	.6	70.1
대재 이상	(225)	1.3	7.0	24.4	1.4	.5	65.4
업종별							
제조업	(124)	.0	2.1	19.0	1.8	.9	76.2
도매업	(65)	1.7	6.7	17.7	.0	.0	73.9
소매업	(190)	2.8	4.0	24.2	.6	.6	67.9
음식 및 숙박업	(72)	.0	4.7	26.9	1.6	1.6	65.1
건설업	(17)	.0	.0	42.4	.0	.0	57.6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35.4	.0	.0	64.6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0	5.9	20.7	3.0	.0	70.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5)	.1	7.5	32.2	.1	.8	59.3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7)	.5	1.8	17.1	.5	.0	80.1
일반과세자(개인)	(217)	1.9	5.8	22.4	1.0	.8	68.0
과세특례자	(261)	.4	4.6	28.3	.8	.3	65.6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1.9	3.2	20.6	.0	2.7	71.6
비등록사업자	(30)	.0	.0	24.8	2.2	.0	73.0
사업자 구분							
법인	(87)	.5	1.8	17.1	.5	.0	80.1
개인	(569)	1.2	4.7	24.9	.9	.7	67.6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59)	.1	4.8	17.5	.1	1.0	76.5
간이기장	(122)	1.9	4.1	21.5	3.6	.0	69.0
일기장	(179)	1.8	4.9	31.7	.0	.4	61.2
기장 안함	(194)	.6	4.6	23.5	.3	1.3	69.7

<附表 2-37>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새마을金庫(信協)) :

사업 D-6-4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대폭 증가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감소	대폭 감소	이용 안함
전 체	(656)	.6	4.8	19.2	.9	.2	74.4
연령별							
20대	(46)	.0	13.8	26.3	.0	.0	60.0
30대	(225)	.6	5.3	16.4	.4	.0	77.3
40대	(223)	.4	2.8	17.3	.7	.6	78.2
50대 이상	(159)	1.1	4.8	24.0	2.2	.0	67.9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0	35.2	2.9	.0	61.9
중졸	(59)	1.5	1.5	27.3	2.5	.0	67.2
고졸	(324)	.5	6.9	17.4	1.0	.4	73.9
대재 이상	(224)	.7	3.5	18.5	.0	.0	77.3
업종별							
제조업	(125)	.9	1.8	15.0	1.8	.0	80.5
도매업	(65)	1.7	1.7	9.2	1.7	1.7	84.1
소매업	(189)	.0	8.0	24.5	.0	.0	67.5
음식 및 숙박업	(71)	.0	4.8	16.1	.0	.0	79.1
건설업	(17)	.0	.0	11.1	6.1	.0	82.8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23.6	.0	.0	76.4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3.0	11.9	26.7	.0	.0	58.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5)	.8	3.3	23.2	1.6	.0	71.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7)	.0	.0	10.2	.0	.0	89.8
일반과세자(개인)	(216)	.5	4.5	19.3	.9	.5	74.3
과세특례자	(260)	.9	5.2	19.1	1.0	.0	73.8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0	5.7	22.4	.0	.0	71.9
비등록사업자	(31)	.0	6.5	20.4	2.5	.0	70.6
사업자 구분							
법인	(87)	.0	.0	10.2	.0	.0	89.8
개인	(568)	.6	5.0	19.6	.9	.2	73.7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59)	.0	2.0	9.1	1.3	1.3	86.2
간이기장	(122)	1.0	8.5	15.7	.7	.0	74.1
일기장	(180)	.8	5.8	22.4	1.4	.0	69.6
기장 안함	(192)	.5	2.6	23.5	.4	.0	73.0

<附表 2-38>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私債市場) : 사업 D-6-5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대폭 증가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감소	대폭 감소	이용 안함
전 체	(655)	.7	5.9	11.3	0.9	1.4	79.7
연령별							
20대	(46)	.0	5.9	10.8	2.4	2.0	79.0
30대	(226)	.9	5.8	11.2	1.0	.6	80.5
40대	(222)	1.1	7.6	11.0	.0	2.8	77.5
50대 이상	(158)	.0	3.6	11.4	1.9	.5	82.5
학력별							
국졸 이하	(30)	.0	2.4	11.5	3.6	.0	82.5
중졸	(59)	.0	2.5	9.1	.0	4.5	83.8
고졸	(324)	.0	6.4	10.3	.8	1.5	81.0
대재 이상	(223)	2.4	6.7	14.1	1.1	.7	75.0
업종별							
제조업	(125)	.0	8.1	12.5	2.7	.0	76.7
도매업	(65)	3.3	18.3	5.9	.0	3.3	69.2
소매업	(188)	.6	4.1	11.5	1.1	1.1	81.5
음식 및 숙박업	(71)	.0	3.2	8.0	.0	1.6	87.1
건설업	(17)	.0	.0	11.1	.0	.0	88.9
운수·창고·통신업	(12)	11.8	11.8	.0	.0	11.8	64.6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0	.0	14.8	3.0	3.0	79.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5)	.0	2.5	17.3	.1	1.1	79.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6)	.0	.8	17.4	.5	1.1	80.2
일반과세자(개인)	(216)	1.5	11.4	12.5	1.1	1.5	72.0
과세특례자	(260)	.3	2.5	8.6	.7	1.4	86.4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0	1.9	16.0	1.9	1.9	78.2
비등록사업자	(31)	.0	2.5	10.9	.0	.0	86.7
사업자 구분							
법인	(86)	.0	.8	17.4	.5	1.1	80.2
개인	(568)	.7	6.1	11.1	1.0	1.4	79.7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59)	1.2	22.6	6.6	1.8	1.6	66.3
간이기장	(122)	2.0	3.6	16.7	.0	2.2	75.5
일기장	(179)	.4	2.7	16.7	.5	1.4	78.4
기장 안함	(192)	.0	2.6	5.3	1.6	.9	89.6

<附表 2-39> 事業資金 調達機關別 利用變化(親知) : 사업 D-6-6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대폭 증가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감소	대폭 감소	이용 안함
전 체	(656)	1.4	10.9	22.8	1.3	.4	63.2
연령별							
20대	(45)	.0	7.9	26.6	.0	.0	65.5
30대	(226)	.4	15.3	25.3	1.0	.0	58.0
40대	(221)	3.1	10.2	19.7	1.6	.6	64.8
50대 이상	(161)	.6	6.2	22.0	1.8	1.0	68.4
학력별							
국졸 이하	(29)	.0	12.9	27.1	.0	.0	60.0
중졸	(60)	.0	5.8	20.1	.0	.0	74.1
고졸	(325)	1.6	12.0	22.8	.6	.5	62.6
대재 이상	(223)	1.2	9.0	24.4	3.4	.7	61.3
업종별							
제조업	(125)	3.6	13.6	24.3	2.7	.0	55.8
도매업	(64)	1.7	22.8	19.5	.0	1.7	54.3
소매업	(187)	.6	10.7	21.4	1.2	.0	66.2
음식 및 숙박업	(70)	1.6	8.0	24.2	1.6	.0	64.6
건설업	(17)	.0	.0	23.2	.0	.0	76.8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35.4	11.8	.0	52.8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0	5.9	23.6	.0	5.9	64.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8	5.7	24.2	.8	.1	68.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7)	.0	6.7	21.7	.0	.5	71.0
일반과세자(개인)	(217)	2.8	16.6	24.8	1.8	.5	53.6
과세특례자	(259)	.7	7.7	20.9	1.1	.5	69.1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0	5.7	26.0	1.5	.0	66.7
비등록사업자	(31)	.0	5.1	17.4	.0	.0	77.5
사업자 구분							
법인	(87)	.0	6.7	21.7	.0	.5	71.0
개인	(568)	1.4	11.0	22.8	1.4	.4	62.9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1)	1.9	20.0	18.6	.7	.8	58.0
간이기장	(122)	3.1	12.8	25.6	3.1	.0	55.5
일기장	(179)	.9	9.7	24.3	1.9	.4	62.8
기장 안함	(191)	.5	6.6	21.9	.0	.6	70.5

〈附表 2-40〉 實名制 이후 所得稅 및 法人稅 納付額의 變化有無 :
사업 E-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변화가 있었음	변화가 없었음
전 체	(605)	28.4	71.6
연령별			
20대	(41)	25.3	74.7
30대	(213)	27.2	72.8
40대	(199)	33.0	67.0
50대 이상	(149)	24.3	75.7
학력별			
국졸 이하	(21)	18.5	81.5
중졸	(52)	38.2	61.8
고졸	(293)	24.9	75.1
대재 이상	(221)	32.3	67.7
업종별			
제조업	(110)	27.9	72.1
도매업	(65)	32.8	67.2
소매업	(175)	31.5	68.5
음식 및 숙박업	(67)	17.0	83.0
건설업	(15)	26.4	73.6
운수·창고·통신업	(12)	11.8	88.2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5)	25.1	74.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24)	33.1	66.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6)	21.4	78.6
일반과세자(개인)	(220)	33.1	66.9
과세특례자	(233)	22.3	77.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57)	30.4	69.6
비등록사업자	(8)	68.9	31.1
사업자 구분			
법인	(86)	21.4	78.6
개인	(518)	28.7	71.3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58)	30.0	70.0
간이기장	(120)	34.5	65.5
일기장	(168)	29.3	70.7
기장 안함	(157)	21.8	78.2

<附表 2-41> 實名制 이후 所得稅 및 法人稅 增減率 : 사업 E-2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10%이상 감소	0~10%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20% 증가	20%이상 증가	평균 증감률
전 체	(583)	2.1	1.9	75.5	3.6	6.3	10.6	5.9
연령별								
20대	(39)	.0	.0	81.4	2.3	7.9	8.4	5.7
30대	(201)	1.1	1.0	77.6	2.7	7.0	10.7	6.3
40대	(196)	4.2	2.4	69.0	6.0	7.6	10.8	4.2
50대 이상	(144)	.5	2.9	77.8	2.9	2.7	13.2	8.0
학력별								
국졸 이하	(20)	9.4	4.1	77.2	9.3	.0	.0	-3.5
중졸	(48)	5.2	1.8	67.4	5.3	4.5	15.8	6.3
고졸	(288)	.8	2.0	77.4	4.0	6.1	9.7	4.3
대재 이상	(209)	1.8	1.5	72.3	2.5	7.3	14.6	10.3
업종별								
제조업	(110)	1.4	9.4	74.2	3.1	2.4	9.4	3.0
도매업	(60)	.0	.0	72.8	5.4	10.9	10.9	8.2
소매업	(167)	3.2	.6	73.3	3.9	6.0	12.9	8.8
음식 및 숙박업	(66)	.0	.0	84.5	3.4	5.2	6.9	3.1
건설업	(15)	6.9	.0	59.8	.0	6.9	26.4	5.9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88.2	.0	.0	11.8	4.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5)	7.2	.0	74.5	3.6	4.0	10.8	.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7)	1.9	1.0	71.3	4.8	9.5	11.6	5.3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3)	1.3	.0	83.0	.8	9.5	5.3	2.2
일반과세자(개인)	(212)	2.4	3.1	68.8	5.2	5.1	15.3	9.1
과세특례자	(228)	1.6	.8	80.8	3.3	6.0	7.6	3.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52)	2.2	.0	76.1	.0	10.4	11.2	5.9
비등록사업자	(7)	.0	13.6	52.3	17.0	17.0	.0	1.9
사업자 구분								
법인	(83)	1.3	.0	83.0	.8	9.5	5.3	2.2
개인	(499)	2.0	1.9	74.5	4.0	6.2	11.4	6.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52)	.3	3.0	73.6	5.2	5.6	12.3	9.1
간이기장	(116)	1.5	3.8	69.5	4.0	7.7	13.5	7.5
일기장	(162)	2.5	.0	74.4	4.8	6.3	11.9	5.2
기장 안함	(151)	2.7	1.7	79.8	2.2	5.7	8.0	3.8

〈附表 2-42〉 所得稅 및 法人稅 負擔變化의 原因 : 사업 E-3

(單位 : 개, 만원, %)

구 분	사례수	10% 이상 감소	0~10%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20% 증가	20%이상 증가
전 체	(141)	7.1	6.3	11.5	14.9	21.7	38.4
경기변화에 따른 매출변화							
1위	(69)	11.9	13.0	13.5	16.1	16.8	28.8
2위	(44)	4.5	.0	8.6	20.2	36.0	30.6
3위	(22)	.0	.0	9.4	.0	14.6	76.0
4위	(6)	.0	.0	17.5	14.0	.0	68.5
실명제로 인한 세원 노출							
1위	(18)	.0	.0	11.5	17.1	31.5	39.8
2위	(40)	9.8	2.3	10.3	10.2	24.5	42.9
3위	(57)	7.6	3.4	13.6	13.7	24.6	37.2
4위	(15)	.0	6.1	13.7	30.3	19.7	30.3
세무행정 강화							
1위	(54)	3.7	.0	5.7	8.6	26.3	55.6
2위	(40)	5.8	7.9	15.3	19.4	15.2	36.3
3위	(31)	7.3	2.9	16.2	16.7	31.1	25.7
4위	(14)	12.4	7.1	9.1	14.8	33.1	23.6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1위	(11)	.0	.0	18.6	20.4	32.3	28.8
2위	(10)	.0	9.4	19.7	.0	15.9	55.0
3위	(16)	10.0	5.7	7.1	32.0	23.0	22.1
4위	(32)	6.7	2.7	7.0	17.9	10.7	54.9
부가가치세 증감률							
10% 이상 감소	(5)	51.9	.0	48.1	.0	.0	.0
0~10% 감소	(5)	.0	80.0	.0	.0	.0	20.0
0~5% 증가	(343)	1.8	1.5	91.6	1.8	1.2	2.0
5~10% 증가	(32)	.0	.0	49.6	38.3	8.7	3.4
10~20% 증가	(58)	2.0	.0	43.2	4.3	31.0	19.6
20% 이상 증가	(59)	3.2	1.5	43.2	.0	3.3	48.9

<附表 2-43>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 사업 E-3-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151)	48.8	31.5	15.1	4.6
연령별					
20대	(9)	42.2	20.6	23.3	13.9
30대	(50)	43.6	31.6	20.2	4.5
40대	(60)	58.0	28.8	9.7	3.4
50대 이상	(30)	38.5	41.7	15.2	4.5
학력별					
국졸 이하	(6)	48.4	51.6	.0	.0
중졸	(17)	48.0	46.3	5.7	.0
고졸	(69)	43.6	34.5	20.2	1.7
대재 이상	(54)	55.5	18.7	14.6	11.1
업종별					
제조업	(30)	72.0	24.5	.0	3.5
도매업	(18)	54.6	9.2	30.2	6.0
소매업	(50)	41.1	36.8	15.7	6.4
음식 및 숙박업	(9)	42.9	57.1	.0	.0
건설업	(5)	41.4	17.2	20.7	20.7
운수·창고·통신업	(1)	.0	100.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6)	52.5	23.7	23.7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1)	40.3	36.5	23.2	.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5)	53.9	38.1	8.0	.0
일반과세자(개인)	(67)	52.0	23.3	15.6	9.1
과세특례자	(50)	46.0	40.4	13.6	.0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4)	45.4	36.3	18.3	.0
비등록사업자	(5)	34.8	43.4	21.7	.0
사업자 구분					
법인	(15)	53.9	38.1	8.0	.0
개인	(136)	48.6	31.3	15.4	4.7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36)	52.6	21.9	16.8	8.7
간이기장	(37)	54.1	32.2	5.3	8.4
일기장	(47)	44.2	33.9	19.5	2.4
기장 안함	(31)	46.3	34.5	19.3	.0

〈附表 2-44〉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 사업 E-3-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139)	12.4	32.1	44.2	11.3
연령별					
20대	(8)	23.9	43.3	32.8	.0
30대	(49)	15.3	30.1	36.3	18.3
40대	(54)	11.9	34.8	46.8	6.5
50대 이상	(26)	4.2	24.6	58.8	12.3
학력별					
국졸 이하	(4)	21.1	.0	52.6	26.3
중졸	(14)	.0	33.9	58.0	8.1
고졸	(65)	23.9	20.4	41.7	14.0
대재 이상	(51)	1.6	47.1	44.7	6.5
업종별					
제조업	(25)	12.7	30.9	47.9	8.5
도매업	(18)	.0	54.6	39.4	6.0
소매업	(48)	11.5	27.2	45.2	16.0
음식 및 숙박업	(8)	14.2	28.5	43.0	14.2
건설업	(5)	20.7	41.4	37.9	.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100.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5)	.0	73.1	2.6	24.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	25.8	18.4	48.4	7.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3)	4.1	41.7	50.1	4.1
일반과세자(개인)	(64)	9.1	36.5	38.3	16.1
과세특례자	(46)	18.4	26.8	50.7	4.1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2)	7.0	34.4	41.4	17.2
비등록사업자	(4)	26.3	.0	73.7	.0
사업자 구분					
법인	(13)	4.1	41.7	50.1	4.1
개인	(126)	12.7	31.8	44.0	11.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33)	4.0	43.6	43.1	9.4
간이기장	(34)	16.6	38.4	38.4	6.6
일기장	(47)	15.7	26.6	40.3	17.3
기장 안함	(25)	8.5	23.2	59.7	8.5

<附表 2-45>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稅務行政強化) :
사업 E-3-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150)	40.3	28.2	22.3	9.1
연령별					
20대	(9)	23.3	32.8	34.5	9.4
30대	(52)	36.9	24.1	21.5	17.5
40대	(56)	33.4	31.8	28.6	6.3
50대 이상	(31)	66.4	27.2	6.2	.1
학력별					
국졸 이하	(4)	52.6	26.3	21.1	.0
중졸	(16)	58.4	10.6	26.2	4.8
고졸	(68)	35.8	29.9	16.8	17.5
대재 이상	(56)	40.9	34.2	24.9	.0
업종별					
제조업	(25)	16.9	35.2	39.4	8.5
도매업	(18)	45.4	36.2	18.4	.0
소매업	(54)	42.1	27.2	20.4	10.2
음식 및 숙박업	(8)	42.7	14.2	28.5	14.5
건설업	(5)	37.9	41.4	20.7	.0
운수·창고·통신업	(1)	100.0	.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6)	78.3	2.1	.0	19.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2)	44.9	26.2	16.1	12.8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5)	46.7	17.8	34.7	.7
일반과세자(개인)	(66)	32.3	32.6	23.5	11.6
과세특례자	(48)	43.6	26.7	22.2	7.5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7)	62.6	17.5	19.9	.0
비등록사업자	(4)	52.6	21.1	.0	26.3
사업자 구분					
법인	(15)	46.7	17.8	34.7	.7
개인	(135)	40.1	28.6	21.9	9.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36)	46.1	23.7	21.8	8.4
간이기장	(39)	36.7	26.8	27.0	9.5
일기장	(46)	28.1	32.2	31.1	8.6
기장 안함	(29)	58.5	27.9	3.7	9.9

〈附表 2-46〉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課特者에서
一般課稅者로의 轉換): 사업 E-3-4

(單位: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72)	15.4	13.3	21.9	49.4
연령별					
20대	(4)	33.0	22.3	.0	44.7
30대	(29)	18.8	19.7	28.9	32.5
40대	(24)	13.6	11.8	16.9	57.6
50대 이상	(15)	6.9	.0	21.5	71.7
학력별					
국졸 이하	(2)	.0	.0	50.0	50.0
중졸	(5)	26.5	.0	17.9	55.6
고졸	(36)	11.8	24.9	24.8	38.5
대재 이상	(26)	17.7	2.8	15.9	63.6
업종별					
제조업	(10)	10.0	10.0	30.0	50.0
도매업	(11)	9.1	.0	9.1	81.8
소매업	(26)	19.9	19.9	20.5	39.8
음식 및 숙박업	(5)	25.4	.0	49.8	24.9
건설업	(3)	33.3	.0	.0	66.7
운수·창고·통신업	(1)	.0	.0	.0	100.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	.0	.0	100.0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	7.7	30.8	15.4	46.2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2)	15.8	.0	84.2	.0
일반과세자(개인)	(49)	18.9	11.8	21.2	48.1
과세특례자	(15)	8.2	11.2	24.4	56.2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4)	.0	22.3	33.0	44.7
비등록사업자	(2)	.0	50.0	.0	50.0
사업자 구분					
법인	(2)	15.8	.0	84.2	.0
개인	(70)	15.4	13.4	21.7	49.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4)	8.7	15.2	24.0	52.1
간이기장	(19)	8.6	9.6	28.9	52.9
일기장	(27)	31.5	14.5	13.3	40.8
기장 안함	(12)	.0	14.8	26.4	58.8

<附表 2-47> 實名制 이후 附加價値稅 納付額 變化有無 : 사업 E-4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변화가 있었음	변화가 없었음
전 체	(554)	37.9	62.1
연령별			
20대	(34)	38.0	62.0
30대	(197)	41.0	59.0
40대	(184)	39.9	60.1
50대 이상	(136)	30.2	69.8
학력별			
국졸 이하	(20)	26.9	73.1
중졸	(50)	39.5	60.5
고졸	(280)	38.5	61.5
대재 이상	(185)	38.2	61.8
업종별			
제조업	(109)	39.4	60.6
도매업	(59)	45.6	54.4
소매업	(153)	40.2	59.8
음식 및 숙박업	(64)	36.8	63.2
건설업	(15)	41.4	58.6
운수·창고·통신업	(12)	11.8	88.2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7)	28.8	71.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3)	29.3	70.7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0)	15.1	84.9
일반과세자(개인)	(210)	44.9	55.1
과세특례자	(246)	34.6	65.4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3)	17.3	82.7
비등록사업자	(5)	25.8	74.2
사업자 구분			
법인	(80)	15.1	84.9
개인	(474)	38.9	61.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44)	35.3	64.7
간이기장	(104)	40.6	59.4
일기장	(151)	41.8	58.2
기장 안함	(153)	34.1	65.9

<附表 2-48> 實名制 이후 附加價値稅 納付額 增減率 : 사업 E-5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10%이상 감소	0~10%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20% 증가	20%이상 증가	평균 증감률
전 체	(535)	.9	.9	68.0	6.4	11.6	12.1	11.1
연령별								
20대	(32)	.0	.0	62.7	8.0	14.6	14.7	29.2
30대	(189)	1.1	1.0	65.4	8.8	9.8	13.8	10.7
40대	(180)	.5	1.0	62.3	7.5	17.4	11.2	8.4
50대 이상	(131)	.8	.8	72.5	3.9	7.6	14.4	11.3
학력별								
국졸 이하	(20)	.0	4.4	86.4	5.5	.0	3.7	3.9
중졸	(49)	4.1	.0	59.9	5.6	12.9	17.5	14.3
고졸	(271)	.7	.7	64.6	9.4	12.0	12.7	9.7
대재 이상	(177)	.0	1.2	66.3	4.5	14.1	13.9	14.3
업종별								
제조업	(106)	3.3	5.5	64.0	5.5	8.0	13.8	5.8
도매업	(59)	.0	.0	60.3	11.1	19.4	9.2	5.7
소매업	(145)	.7	.0	64.6	8.9	11.6	14.2	11.9
음식 및 숙박업	(60)	.0	.0	64.3	3.6	16.0	16.0	18.8
건설업	(14)	.0	.0	62.9	7.4	.0	29.6	37.6
운수·창고·통신업	(12)	.0	.0	88.2	.0	11.8	.0	1.3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6)	.3	.0	73.2	6.5	13.4	6.5	4.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1)	.0	.0	74.5	6.6	9.0	9.9	9.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75)	.4	.0	87.2	.0	8.8	3.6	1.8
일반과세자(개인)	(203)	1.7	1.6	59.1	8.6	12.3	16.7	15.0
과세특례자	(239)	.0	.4	68.9	6.4	13.4	10.8	8.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3)	.0	.0	88.6	.0	.0	11.4	5.7
비등록사업자	(5)	.0	.0	74.2	25.8	.0	.0	1.3
사업자 구분								
법인	(75)	.4	.0	87.2	.0	8.8	3.6	1.8
개인	(460)	.8	.9	64.9	7.4	12.4	13.5	11.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40)	.1	3.1	69.5	11.2	7.6	8.5	4.7
간이기장	(98)	.0	.9	65.0	6.9	13.2	14.0	11.9
일기장	(148)	.6	.0	59.4	6.0	16.7	17.3	13.4
기장 안함	(147)	1.9	.6	70.3	6.2	9.9	11.1	12.1

<附表 2-49>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原因 : 사업 E-6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10%이상 감소	0~10%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20% 증가	20%이상 증가
전 체	(172)	2.3	2.7	10.7	18.7	33.3	32.2
경기변화에 따른 매출변화							
1위	(75)	3.0	5.1	15.6	24.3	30.6	21.4
2위	(55)	1.6	1.6	8.5	15.6	43.2	29.4
3위	(31)	3.2	.0	7.5	8.2	25.6	55.5
4위	(11)	.0	.0	.0	24.2	21.2	54.6
실명제로 인한 세원 노출							
1위	(23)	.0	4.7	4.1	11.5	42.9	36.7
2위	(47)	1.8	.0	13.4	14.1	31.7	39.0
3위	(71)	2.7	2.6	11.7	18.0	36.6	28.4
4위	(18)	.0	4.9	6.7	30.5	24.8	33.1
세무행정 강화							
1위	(69)	2.6	.0	9.4	11.8	34.6	41.6
2위	(56)	2.0	3.6	10.7	26.6	30.3	26.8
3위	(37)	.0	2.4	14.3	19.1	33.1	31.1
4위	(11)	.0	8.1	10.3	20.1	46.3	15.1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1위	(18)	.0	.0	5.7	20.1	23.9	50.3
2위	(11)	.0	9.1	7.7	20.1	12.4	50.8
3위	(17)	.0	4.9	6.7	28.9	42.1	17.4
4위	(39)	4.4	.0	15.2	23.1	22.0	35.4
부가가치세 증감률							
10% 이상 감소	(12)	19.1	.0	52.5	.0	10.6	17.8
0~10% 감소	(10)	.0	39.6	50.5	.0	.0	9.9
0~ 5% 증가	(381)	.5	.0	80.5	4.7	7.0	7.3
5~10% 증가	(21)	.0	.0	27.1	61.3	11.5	.0
10~20% 증가	(29)	.0	.0	14.6	11.1	66.9	7.4
20% 이상 증가	(49)	.0	1.9	12.9	2.3	22.9	60.0

<附表 2-50>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景氣變化에 따른 賣出變化):
사업 E-6-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178)	42.3	33.6	16.7	7.4
연령별					
20대	(10)	36.7	42.3	8.0	13.0
30대	(70)	47.6	32.7	16.5	3.2
40대	(63)	48.6	27.4	15.9	8.1
50대 이상	(33)	16.3	47.8	21.4	14.6
학력별					
국졸 이하	(6)	32.8	36.9	30.3	.0
중졸	(17)	37.8	56.8	5.4	.0
고졸	(91)	40.7	32.2	19.0	8.0
대재 이상	(59)	42.9	30.7	16.1	10.2
업종별					
제조업	(40)	54.3	24.2	16.1	5.4
도매업	(23)	35.5	24.5	26.6	13.3
소매업	(52)	40.4	35.9	13.2	10.5
음식 및 숙박업	(19)	47.1	41.2	11.7	.0
건설업	(6)	16.7	50.0	16.7	16.7
운수·창고·통신업	(1)	.0	100.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8)	3.4	48.3	32.2	16.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7)	47.4	35.6	17.0	.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7)	53.3	27.9	18.7	.0
일반과세자(개인)	(83)	43.8	25.9	16.9	13.4
과세특례자	(75)	41.1	41.0	17.1	.9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2)	32.6	67.4	.0	.0
비등록사업자	(1)	.0	100.0	.0	.0
사업자 구분					
법인	(17)	53.3	27.9	18.7	.0
개인	(161)	42.1	33.7	16.6	7.6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42)	56.4	12.6	19.5	11.5
간이기장	(37)	38.0	33.1	15.2	13.6
일기장	(57)	43.4	33.6	18.0	5.0
기장 안함	(42)	35.5	47.4	14.3	2.8

<附表 2-51> 附加價値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實名制로 인한 稅源露出):
사업 E-6-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165)	12.4	32.4	43.8	11.4
연령별					
20대	(9)	19.9	15.1	50.4	14.7
30대	(64)	10.0	37.6	37.8	14.6
40대	(62)	12.1	32.4	44.9	10.5
50대 이상	(28)	16.6	24.2	54.6	4.6
학력별					
국졸 이하	(5)	16.6	39.3	44.1	.0
중졸	(14)	.0	14.1	73.0	12.9
고졸	(86)	16.8	28.8	41.4	13.0
대재 이상	(55)	9.0	39.5	41.3	10.2
업종별					
제조업	(38)	17.0	30.1	44.3	8.5
도매업	(23)	4.4	40.0	42.3	13.3
소매업	(50)	4.7	35.3	44.4	15.6
음식 및 숙박업	(19)	11.7	35.3	41.2	11.7
건설업	(5)	20.0	40.0	40.0	.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100.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5)	73.1	24.4	2.6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2)	31.0	9.9	54.2	4.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6)	13.4	25.4	55.4	5.7
일반과세자(개인)	(84)	10.9	35.9	38.2	15.1
과세특례자	(63)	14.9	29.3	49.0	6.8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	.0	.0	100.0	.0
비등록사업자	(1)	.0	.0	100.0	.0
사업자 구분					
법인	(16)	13.4	25.4	55.4	5.7
개인	(149)	12.3	32.6	43.6	11.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39)	11.7	33.4	41.7	13.2
간이기장	(35)	13.4	34.0	38.3	14.3
일기장	(56)	16.7	29.7	43.6	10.1
기장 안함	(35)	5.0	34.7	51.0	9.3

<附表 2-52> 附加價值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稅務行政 強化): 사업 E-6-3

(單位: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181)	42.0	29.0	22.6	6.4
연령별					
20대	(12)	23.3	48.9	18.3	9.5
30대	(70)	39.3	24.2	26.4	10.1
40대	(63)	33.5	35.7	27.3	3.5
50대 이상	(34)	74.5	17.5	4.8	3.2
학력별					
국졸 이하	(5)	63.8	16.6	19.6	.0
중졸	(16)	65.1	16.5	18.4	.0
고졸	(97)	36.4	32.2	24.7	6.8
대재 이상	(57)	46.6	28.9	15.7	8.8
업종별					
제조업	(38)	28.4	38.6	27.3	5.7
도매업	(24)	57.5	25.5	17.0	.0
소매업	(57)	44.3	24.4	23.5	7.8
음식 및 숙박업	(20)	33.3	27.7	27.8	11.2
건설업	(6)	50.0	16.7	16.7	16.7
운수·창고·통신업	(1)	100.0	.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9)	49.3	38.3	12.3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4)	40.4	37.2	17.9	4.5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8)	40.2	41.2	17.6	1.0
일반과세자(개인)	(87)	34.6	31.2	23.7	10.5
과세특례자	(74)	49.5	26.7	22.2	1.5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	100.0	.0	.0	.0
비등록사업자	(1)	100.0	.0	.0	.0
사업자 구분					
법인	(18)	40.2	41.2	17.6	1.0
개인	(163)	42.0	28.8	22.7	6.5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43)	29.4	43.4	16.6	10.5
간이기장	(39)	43.8	27.2	23.2	5.8
일기장	(55)	30.9	32.8	29.8	6.4
기장 안함	(44)	62.1	17.0	16.6	4.3

<附表 2-53> 附加價値稅 負擔變化의 主要原因(課特者에서 一般課稅者로의 轉換): 사업 E-6-4

(單位: 개, %)

구 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전 체	(87)	23.2	10.8	19.9	46.0
연령별					
20대	(4)	76.1	.0	23.9	.0
30대	(37)	25.9	9.8	14.0	50.4
40대	(31)	19.0	11.4	23.4	46.2
50대 이상	(15)	5.2	16.6	28.4	49.8
학력별					
국졸 이하	(3)	.0	.0	.0	100.0
중졸	(4)	32.3	21.8	.0	45.9
고졸	(49)	26.2	13.3	18.1	42.4
대재 이상	(31)	19.9	6.9	26.5	46.8
업종별					
제조업	(16)	6.3	12.5	25.0	56.3
도매업	(19)	5.3	10.5	15.8	68.4
소매업	(27)	38.2	11.5	15.9	34.4
음식 및 숙박업	(10)	44.6	.0	33.3	22.2
건설업	(4)	25.0	.0	25.0	50.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0	100.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	50.0	.0	50.0	.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0	50.0	.0	50.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3)	15.8	.0	84.2	.0
일반과세자(개인)	(66)	24.5	11.5	21.1	42.9
과세특례자	(17)	19.4	8.8	15.5	56.3
사업자 구분					
법인	(3)	15.8	.0	84.2	.0
개인	(84)	23.2	10.8	19.8	46.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21)	9.5	16.9	27.8	45.9
간이기장	(22)	17.6	10.4	27.1	44.9
일기장	(27)	34.7	14.2	11.3	39.7
기장 안함	(17)	26.0	.0	16.8	57.2

<附表 2-54> 稅金を節減하기 위한 無資料去來 經驗 : 사업 E-7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655)	34.5	65.5
연령별			
20대	(46)	41.6	58.4
30대	(226)	37.5	62.5
40대	(220)	35.9	64.1
50대 이상	(160)	26.4	73.6
학력별			
국졸 이하	(30)	22.8	77.2
중졸	(59)	28.7	71.3
고졸	(324)	34.3	65.7
대재 이상	(223)	36.6	63.4
업종별			
제조업	(124)	42.5	57.5
도매업	(66)	41.2	58.8
소매업	(189)	38.0	62.0
음식 및 숙박업	(71)	33.3	66.7
건설업	(17)	36.4	63.6
운수·창고·통신업	(12)	11.8	88.2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7)	13.7	86.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7)	20.6	79.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8)	16.5	83.5
일반과세자(개인)	(221)	45.6	54.4
과세특례자	(256)	29.9	70.1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0)	23.1	76.9
비등록사업자	(29)	17.1	82.9
사업자 구분			
법인	(88)	16.5	83.5
개인	(566)	35.2	64.8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1)	33.3	66.7
간이기장	(123)	45.7	54.3
일기장	(177)	34.6	65.4
기장 안함	(191)	27.9	72.1

<附表 2-55> 實名制 이후 無資料 去來比重 增減率: 사업 E-8

(單位: 개, %)

구 분	사례수	10%이상 감소	0~10%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20% 증가	20%이상 증가	평균 증감률
전 체	(184)	10.9	16.8	52.2	4.9	7.1	8.2	-3.2
연령별								
20대	(14)	13.4	24.1	49.1	.0	8.0	5.4	-6.9
30대	(67)	12.8	11.3	53.1	4.1	7.0	11.7	-1.5
40대	(64)	9.0	19.0	49.3	8.3	10.3	4.1	-5.0
50대 이상	(39)	8.1	18.0	62.6	3.1	2.5	5.8	-1.7
학력별								
국졸 이하	(7)	10.6	15.7	73.7	.0	.0	.0	-4.0
중졸	(11)	.0	.0	84.5	.0	.0	15.5	10.1
고졸	(99)	7.3	14.5	54.3	6.6	8.9	8.5	-6
대재 이상	(59)	18.8	20.7	47.0	5.0	8.4	.1	-10.6
업종별								
제조업	(46)	11.0	26.3	43.5	2.4	4.8	12.0	-3.3
도매업	(25)	4.2	31.3	39.6	8.3	16.6	.0	-8
소매업	(56)	14.5	12.7	49.2	3.6	10.9	9.1	-5.6
음식 및 숙박업	(19)	5.3	5.3	78.9	5.3	.0	5.3	.5
건설업	(4)	50.0	.0	50.0	.0	.0	.0	-25.0
운수·창고·통신업	(1)	.0	.0	.0	100.0	.0	.0	5.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5)	.0	34.4	62.2	.0	.0	3.3	-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7)	8.5	4.9	69.1	8.5	.6	8.5	.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16)	14.8	22.4	57.8	.0	3.1	1.9	-9.7
일반과세자(개인)	(90)	16.0	22.8	37.7	4.4	8.2	10.8	-6.0
과세특례자	(63)	2.9	5.6	75.2	6.4	6.3	3.6	1.1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12)	6.6	14.5	62.4	6.6	9.8	.0	-1.5
비등록사업자	(3)	.0	35.7	64.3	.0	.0	.0	-1.8
사업자 구분								
법인	(16)	14.8	22.4	57.8	.0	3.1	1.9	-9.7
개인	(168)	10.4	16.3	53.2	5.2	7.5	7.3	-3.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41)	14.9	20.3	31.1	17.8	8.7	7.1	-5.0
간이기장	(50)	11.3	20.6	47.2	.0	14.2	6.8	-5.2
일기장	(47)	9.3	10.4	65.2	8.2	.0	6.8	-2.6
기장 안함	(45)	8.5	13.9	62.3	.0	6.9	8.3	-4

<附表 2-56> 100% 資料去來를 할 수 있는 附加價値稅率 規模 : 사업 E-9

(單位 : 개, %)

구 분	사례 수	부가세 폐지	1~3% 정도	4~5% 정도	6~7% 정도	8~9% 정도	세율조정 과 무관
전 체	(627)	11.9	15.6	21.8	8.4	3.6	38.8
연령별							
20대	(45)	25.2	13.5	15.4	5.2	2.0	38.7
30대	(221)	10.7	16.2	21.9	8.8	4.7	37.8
40대	(209)	12.7	14.5	20.7	8.1	4.0	39.9
50대 이상	(149)	9.0	17.0	24.2	9.3	1.5	39.0
학력별							
국졸 이하	(30)	16.3	11.8	5.3	.0	.0	66.6
중졸	(52)	7.4	18.3	22.2	12.2	1.4	38.6
고졸	(314)	10.6	15.2	22.6	7.8	4.3	39.5
대재 이상	(213)	15.0	14.2	24.0	10.1	3.3	33.4
업종별							
제조업	(119)	8.9	7.5	29.3	7.6	1.9	44.8
도매업	(66)	9.9	14.8	35.5	13.2	4.1	22.3
소매업	(179)	12.1	16.8	17.8	7.9	4.3	41.0
음식 및 숙박업	(67)	16.6	24.9	13.4	8.3	3.3	33.4
건설업	(17)	6.1	.0	24.3	16.1	6.1	47.5
운수·창고·통신업	(11)	.0	37.8	13.4	13.4	.0	35.3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7)	13.0	6.5	30.3	3.3	6.5	40.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29)	12.8	15.6	17.6	6.0	2.6	45.4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84)	8.1	7.5	23.3	14.1	3.8	43.3
일반과세자(개인)	(212)	12.6	15.3	28.2	10.0	5.8	28.1
과세특례자	(246)	12.8	18.5	18.9	6.2	2.1	41.5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56)	9.2	8.3	12.4	9.3	2.1	58.8
비등록사업자	(29)	6.9	13.1	10.0	8.0	.0	62.0
사업자 구분							
법인	(84)	8.1	7.5	23.3	14.1	3.8	43.3
개인	(543)	12.1	15.9	21.7	8.2	3.5	38.6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56)	5.8	8.7	38.8	16.8	2.1	27.9
간이기장	(117)	15.4	14.4	25.7	8.1	5.8	30.7
일기장	(168)	13.8	20.4	21.1	6.0	3.2	35.6
기장 안함	(184)	11.2	15.1	11.3	6.8	3.3	52.3

<附表 2-57> 限界稅額控除制度에 대한 認知度 : 사업 E-10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안다	모른다
전 체	(665)	12.65	87.5
연령별			
20대	(47)	5.6	94.4
30대	(230)	16.8	83.2
40대	(222)	10.3	89.7
50대 이상	(163)	11.2	88.8
학력별			
국졸 이하	(30)	5.0	95.0
중졸	(61)	5.9	94.1
고졸	(328)	10.2	89.8
대재 이상	(227)	20.3	79.7
업종별			
제조업	(125)	20.7	79.3
도매업	(66)	13.3	86.7
소매업	(192)	11.9	89.0
음식 및 숙박업	(72)	4.8	95.2
건설업	(17)	16.1	83.9
운수·창고·통신업	(12)	31.3	68.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1)	9.8	90.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13.1	86.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40.2	59.8
일반과세자(개인)	(220)	14.2	85.8
과세특례자	(262)	7.4	92.6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18.5	81.5
비등록사업자	(30)	9.0	91.0
사업자 구분			
법인	(91)	40.2	59.8
개인	(573)	11.4	88.6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5)	21.7	78.3
간이기장	(123)	15.6	84.4
일기장	(178)	11.9	88.1
기장 안함	(196)	6.9	93.1

<附表 2-58> 限界稅額控除制度가 課標陽性化에 寄與한 程度 : 사업 E-11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기여함	기여하지 않음	모르겠다
전 체	(661)	17.5	12.3	70.2
연령별				
20대	(47)	16.3	7.0	76.7
30대	(228)	21.7	14.5	63.8
40대	(221)	16.2	13.2	70.6
50대 이상	(162)	13.8	9.4	76.8
학력별				
국졸 이하	(30)	6.8	12.2	81.0
중졸	(61)	12.7	15.4	71.9
고졸	(326)	17.2	11.2	71.6
대재 이상	(225)	18.9	14.4	66.7
업종별				
제조업	(124)	26.4	8.5	65.1
도매업	(66)	15.7	7.4	76.9
소매업	(191)	19.0	15.5	65.5
음식 및 숙박업	(71)	6.5	9.6	83.9
건설업	(17)	6.1	41.4	52.5
운수·창고·통신업	(12)	40.3	.0	59.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15.5	12.5	72.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18.8	12.2	68.9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20.8	14.1	65.1
일반과세자(개인)	(218)	19.3	12.0	68.8
과세특례자	(260)	15.1	12.2	72.7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21.7	9.0	69.3
비등록사업자	(30)	13.5	21.4	65.1
사업자 구분				
법인	(91)	20.8	14.1	65.1
개인	(569)	17.4	12.2	70.4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16.1	11.5	72.4
간이기장	(122)	20.7	12.8	66.5
일기장	(177)	21.2	14.6	64.1
기장 안함	(195)	13.1	10.5	76.5

<附表 2-59> 限界稅額控除制度의 向後 施行 與否 : 사업 E-12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시행 되어야 함	폐지 되어야 함	모르겠다
전 체	(660)	52.2	2.9	44.9
연령별				
20대	(47)	62.0	.0	38.0
30대	(228)	55.4	3.0	41.6
40대	(221)	50.6	3.3	46.1
50대 이상	(161)	47.7	2.9	49.4
학력별				
국졸 이하	(30)	31.8	.0	68.2
중졸	(61)	48.8	1.8	49.4
고졸	(326)	56.2	1.6	42.3
대재 이상	(224)	49.6	6.4	44.1
업종별				
제조업	(123)	60.9	2.8	36.3
도매업	(66)	51.2	.9	48.0
소매업	(191)	54.1	5.1	40.8
음식 및 숙박업	(71)	40.3	.0	59.7
건설업	(17)	53.5	11.1	35.4
운수·창고·통신업	(12)	47.9	.0	52.1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43.3	3.4	53.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54.5	1.6	44.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1)	52.3	6.7	41.1
일반과세자(개인)	(217)	51.7	3.6	44.8
과세특례자	(260)	53.3	1.9	44.8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61)	51.5	4.5	44.0
비등록사업자	(30)	48.4	.0	51.6
사업자 구분				
법인	(91)	52.3	6.7	41.1
개인	(568)	52.2	2.7	45.1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4)	47.6	4.3	48.1
간이기장	(121)	45.9	7.2	46.9
일기장	(177)	60.2	1.2	38.6
기장 안함	(195)	51.8	1.0	47.2

〈附表 2-60〉 購入代金에 대한 領收證 受取比率(總購入金額 對比) :
사업 E-13

(單位 : 개, %)

구 분	사례수	75~100% 정도	50~75% 정도	25~50% 정도	0~25% 정도	평균수취 비율
전 체	(665)	46.5	16.5	9.9	27.0	58.1
연령별						
20대	(46)	43.6	21.4	5.9	29.1	57.4
30대	(231)	50.6	15.3	11.0	23.0	60.9
40대	(223)	44.2	19.2	12.4	24.2	58.4
50대 이상	(162)	44.2	13.2	5.6	37.1	53.6
학력별						
국졸 이하	(30)	31.8	6.8	.0	61.4	39.7
중졸	(61)	34.2	13.3	16.9	35.6	49.0
고졸	(329)	43.8	17.1	9.2	29.9	56.2
대재 이상	(226)	57.7	18.7	9.9	13.8	57.6
업종별						
제조업	(127)	48.7	17.9	9.2	24.2	60.3
도매업	(66)	67.8	13.2	7.4	11.5	71.8
소매업	(191)	49.7	14.7	11.8	23.8	60.1
음식 및 숙박업	(72)	39.8	19.0	4.7	36.4	50.3
건설업	(17)	40.4	29.3	12.1	18.2	60.5
운수·창고·통신업	(12)	52.8	29.3	12.1	18.2	60.9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40)	29.0	6.7	9.1	55.1	39.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8)	32.7	19.3	13.7	34.3	50.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83.5	10.6	4.6	1.2	81.6
일반과세자(개인)	(221)	59.0	19.5	7.1	14.4	68.3
과세특례자	(261)	31.6	17.8	12.7	37.9	48.3
면세 및 0%세율 대상자	(61)	54.2	7.7	10.5	27.6	59.6
비등록사업자	(31)	30.1	2.9	12.4	54.5	39.6

<附表 2-60>의 계속

구 분	사례수	75~100%	50~75%	25~50%	0~25%	평균수취 비율
		정도	정도	정도	비율	
사업자 구분						
법인	(90)	83.5	10.6	4.6	1.2	81.6
개인	(574)	45.1	16.7	10.1	28.0	57.3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3)	80.0	9.0	6.5	4.5	78.6
간이기장	(123)	46.4	18.7	15.2	19.6	60.5
일기장	(180)	43.4	20.8	9.0	26.7	57.7
기장 안함	(196)	33.6	14.3	9.2	42.8	47.2
월평균 매출 규모별						
100만원 미만	(60)	17.4	9.6	15.7	57.3	34.2
100~300만원 미만	(191)	34.2	15.4	13.3	37.1	49.2
300~500만원 미만	(68)	41.8	19.0	10.0	29.2	55.9
500~1000만원 미만	(93)	53.9	20.0	5.5	20.7	64.2
1000~3000만원 미만	(82)	71.9	10.6	6.5	11.0	73.4
3000~7000만원 미만	(35)	75.2	14.7	10.2	0.0	78.7
7000만원 이상	(62)	75.4	17.4	2.8	4.3	78.5
과표현실화율						
50% 미만	(290)	42.8	16.9	9.2	31.1	55.3
50%~70% 미만	(67)	59.3	9.7	5.5	25.6	63.2
70~100%미만	(39)	74.6	10.3	6.1	9.0	75.1
100% 이상	(62)	60.5	15.4	20.2	3.9	70.6

〈附表 2-61〉 販賣代金에 대한 領收證 受取比率(總販賣金額 對比):
사업 E-14

(單位: 개, %)

구 분	사례수	75~100% 정도	50~75% 정도	25~50% 정도	0~25% 정도	평균발급 비율
전 체	(660)	31.3	12.7	10.3	45.7	44.9
연령별						
20대	(47)	18.8	14.4	12.0	54.8	36.8
30대	(227)	28.8	13.4	11.4	46.5	43.6
40대	(221)	35.8	12.1	10.5	41.5	48.2
50대 이상	(162)	32.2	12.1	7.4	48.4	44.5
학력별						
국졸 이하	(30)	20.1	6.5	2.9	70.5	31.5
중졸	(61)	19.4	1.8	19.2	59.6	32.7
고졸	(327)	26.4	14.1	10.5	49.0	42.0
대재 이상	(224)	45.3	16.0	9.2	29.5	56.8
업종별						
제조업	(127)	45.7	18.2	7.2	28.9	57.7
도매업	(65)	62.2	11.8	10.9	15.1	67.8
소매업	(191)	20.7	16.0	14.2	49.1	39.6
음식 및 숙박업	(72)	19.2	9.5	12.7	58.6	34.8
건설업	(17)	51.5	12.1	6.1	30.3	58.7
운수·창고·통신업	(12)	64.6	.0	11.8	23.6	63.9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8)	39.5	12.6	.0	47.9	48.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6)	20.0	4.4	5.7	69.9	31.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90)	81.1	10.2	3.0	5.7	79.2
일반과세자(개인)	(219)	45.5	17.2	11.2	26.1	58.0
과세특례자	(260)	16.5	10.4	10.9	62.2	32.8
면세및 영세율 대상자	(59)	27.1	6.4	7.2	59.3	37.8
비등록사업자	(31)	14.5	8.7	10.2	66.6	30.3

<附表 2-61>의 계속

구 분	사례수	75~100%	50~75%	25~50%	0~25%	평균발급 비율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사업자 구분						
법인	(90)	81.1	10.2	3.0	5.7	79.2
개인	(569)	29.5	12.7	10.6	47.2	43.6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62)	72.8	9.2	3.1	14.9	72.5
간이기장	(121)	29.6	23.4	15.8	31.2	50.4
일기장	(179)	28.0	9.2	10.7	52.1	40.8
기장 안함	(195)	16.3	10.4	10.1	63.2	32.4
월평균 매출 규모별						
100만원 미만	(59)	13.9	10.2	9.5	66.4	30.4
100~300만원 미만	(190)	16.3	9.1	10.0	64.6	31.8
300~500만원 미만	(68)	16.8	14.8	14.6	53.8	36.2
500~1000만원 미만	(93)	35.9	13.4	14.9	35.8	49.8
1000~3000만원 미만	(82)	60.3	15.0	7.2	17.5	67.0
3000~7000만원 미만	(34)	65.3	25.9	2.5	6.3	75.1
7000만원 이상	(62)	79.3	12.7	0.1	7.9	78.4
과표현실화율						
50% 미만	(289)	24.2	11.7	10.1	54.0	39.0
50%~70% 미만	(67)	48.7	13.4	3.1	34.8	56.5
70~100%미만	(39)	57.9	17.9	5.5	18.8	66.2
100% 이상	(61)	57.3	14.1	14.0	14.7	66.0

<附表 2-62> 貯蓄總額: 사업 E-15

(單位: 개, 만원, %)

구 분	사례수	없음	500 미만	500~ 1000	1000~ 3000	3000~ 6000	6000~ 10000	10000 이상	저축액 평균
전 체	(550)	17.6	15.4	15.5	34.2	13.0	4.1	.2	1739.7
연령별									
20대	(38)	10.3	29.0	22.7	31.3	6.6	.0	.0	896.4
30대	(185)	11.4	21.5	17.8	33.3	12.2	3.8	.0	1331.9
40대	(185)	20.4	11.9	13.4	35.2	15.2	3.9	.0	1659.3
50대 이상	(141)	24.7	7.8	13.7	34.2	12.7	6.1	.7	2656.8
학력별									
국졸 이하	(24)	26.1	10.8	19.3	40.1	3.7	.0	.0	800.4
중졸	(52)	20.8	19.0	18.2	30.5	9.8	1.8	.0	1209.2
고졸	(278)	16.9	19.1	16.2	33.7	10.1	4.0	.0	1322.2
대재 이상	(177)	18.0	7.9	13.0	32.9	21.3	6.3	.6	2887.2
업종별									
제조업	(101)	13.8	15.3	14.3	36.8	15.6	3.1	1.1	2664.8
도매업	(48)	9.0	14.6	5.6	44.8	20.3	5.6	.0	2475.1
소매업	(160)	20.5	14.9	17.2	33.7	11.7	2.1	.0	1222.0
음식 및 숙박업	(63)	23.2	12.5	16.0	33.8	7.2	7.2	.0	1528.2
건설업	(15)	.0	13.5	13.5	47.2	12.3	13.5	.0	3845.7
운수·창고·통신업	(9)	27.4	15.0	30.1	21.2	6.2	.0	.0	779.7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36)	29.4	19.6	13.1	19.9	13.8	4.3	.0	1327.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7)	15.2	19.0	19.7	28.1	14.4	3.6	.0	1395.3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56)	23.1	9.2	10.9	15.1	27.1	14.6	.0	5753.6
일반과세자(개인)	(178)	18.9	9.9	10.3	37.6	17.7	5.2	.5	2331.9
과세특례자	(236)	18.6	21.0	18.8	21.7	8.6	1.4	.0	1002.3
면세 및 영세율 대상자	(53)	8.9	9.3	21.1	36.6	13.7	10.5	.0	2018.4
비등록사업자	(27)	14.4	21.5	17.8	35.5	7.5	3.3	.0	1272.4
사업자 구분									
법인	(56)	23.1	9.2	10.9	15.1	27.1	14.6	.0	5753.6
개인	(494)	17.5	15.5	15.7	34.7	12.6	3.9	.2	1636.6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14)	15.1	7.0	11.1	28.9	28.6	7.9	1.3	4532.8
간이계장	(109)	14.9	13.3	12.5	34.7	19.8	4.9	.0	1715.1
일기장	(162)	14.1	19.4	18.3	37.9	8.3	2.1	.0	1130.9
계장 안함	(162)	24.3	16.0	17.0	32.2	6.4	4.2	.0	1196.5

<附表 2-63> 課標現實化率

(單位 : 개, 만원, %)

구 분	사례수	50% 미만	50~70%	70~100%	100% 이상	과표현실 화율 평균
전 체	(393)	67.2	14.5	7.3	11.0	52.2
연령별						
20대	(22)	72.3	17.3	5.2	5.2	35.5
30대	(138)	60.8	19.0	9.6	10.7	59.6
40대	(133)	74.4	10.4	6.5	8.8	46.4
50대 이상	(100)	62.5	16.9	8.0	12.5	54.1
학력별						
국졸 이하	(10)	72.3	11.2	16.5	.0	42.9
중졸	(32)	67.4	21.1	.0	11.6	50.6
고졸	(209)	73.3	13.0	6.6	7.0	45.9
대재 이상	(128)	52.2	18.0	11.4	18.4	68.6
업종별						
제조업	(60)	52.0	9.2	12.7	26.1	80.5
도매업	(55)	58.3	22.8	10.0	8.9	54.9
소매업	(118)	59.6	18.3	10.1	12.1	54.5
음식 및 숙박업	(43)	94.7	5.2	.1	.1	30.0
건설업	(11)	54.5	36.4	9.1	.0	45.6
운수·창고·통신업	(7)	79.7	.0	10.1	10.1	42.1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4)	61.4	31.8	.0	6.8	42.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7)	76.4	9.2	6.1	8.4	50.1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50)	22.8	20.0	31.9	25.3	92.3
일반과세자(개인)	(162)	50.8	19.9	11.5	17.8	67.1
과세특례자	(183)	85.4	10.3	2.5	1.8	35.2

註 : 課標現實化率 = 實際納付稅額 / 業種別 平均附加率 適用時 推定稅額

〈附表 2-63〉의 계속

구 분	사례수	50% 미만	50~70%	70~100%	100% 이상	과표현실 화율 평균
사업자 구분						
법인	(50)	22.8	20.0	31.9	25.3	92.3
개인	(345)	68.0	15.1	7.0	9.9	51.2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100)	41.0	19.4	17.8	21.7	84.9
간이기장	(81)	65.5	17.7	5.7	11.1	54.5
일기장	(107)	68.7	16.8	6.2	8.3	45.5
기장 안함	(105)	80.7	9.6	4.4	5.3	39.0
월평균 매출 규모별						
100만원 미만	(29)	62.0	26.8	8.4	2.8	53.3
100~300만원 미만	(135)	79.9	14.0	3.2	2.9	38.4
300~500만원 미만	(47)	71.2	4.5	6.7	17.6	54.9
500~1000만원 미만	(63)	55.6	17.3	12.0	15.1	57.7
1000~3000만원 미만	(58)	60.7	21.6	7.6	10.0	52.2
3000~7000만원 미만	(23)	55.0	11.1	11.6	22.4	89.2
7000만원 이상	(40)	32.7	15.6	26.5	25.3	91.8
부가가치세 증감률						
10% 이상 감소	(5)	23.1	53.8	.0	23.1	107.1
0~10% 감소	(3)	33.3	0	33.3	33.3	127.3
0~5% 증가	(245)	65.7	14.4	7.5	12.3	54.3
5~10% 증가	(31)	56.7	17.5	19.6	6.2	59.0
10~20% 증가	(42)	82.6	9.3	1.1	7.0	42.9
20% 이상 증가	(48)	68.0	16.6	6.2	9.1	47.4

<附表 2-64> 課標現實化率로 調整된 附加價値稅 增減率

(單位 : 개, 만원, %)

구 분	사례수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이상 증가	평균
전 체	(375)	2.2	83.3	4.9	9.6	6.2
연령별						
20대	(20)	.0	86.4	.0	13.6	9.6
30대	(128)	2.4	80.2	5.9	11.5	6.8
40대	(128)	1.4	84.1	7.8	6.6	3.3
50대 이상	(96)	2.3	85.0	1.9	10.8	9.1
학력별						
국졸 이하	(10)	9.0	83.5	.0	7.6	4.9
중졸	(31)	6.5	72.9	3.6	17.0	8.5
고졸	(196)	1.4	86.7	3.4	8.5	3.3
대재 이상	(122)	.9	78.4	10.6	10.1	11.5
업종별						
제조업	(57)	11.7	71.0	.0	17.3	2.8
도매업	(53)	.0	88.8	9.2	2.0	1.9
소매업	(109)	1.0	82.8	4.2	12.0	10.1
음식 및 숙박업	(40)	.0	81.1	10.8	8.1	6.4
건설업	(10)	.0	60.0	10.0	30.0	26.1
운수·창고·통신업	(7)	.0	100.0	.0	.0	.0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23)	.6	82.7	5.4	11.4	2.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5)	.0	94.0	1.5	4.5	3.0
부가세 납세형태						
법인	(48)	.6	82.1	8.3	9.0	2.2
일반과세자(개인)	(155)	3.3	77.8	6.9	12.1	9.2
과세특례자	(171)	.5	88.7	3.6	7.1	3.4

<表 2-64>의 계속

구 분	사례수	감소	0~5% 증가	5~10% 증가	10%이상 증가	평균
사업자 구분						
법인	(48)	.6	82.1	8.3	9.0	2.2
개인	(326)	1.9	83.1	5.3	9.7	6.3
장부기장방식						
복식부기	(98)	2.9	81.7	6.8	8.6	2.5
간이기장	(77)	.0	86.8	3.8	9.4	8.6
일기장	(100)	.8	82.4	8.4	8.3	6.3
기장 안함	(97)	3.8	81.5	2.6	12.1	6.7
월평균 매출액 규모별						
100만원 미만	(28)	3.8	83.8	2.9	9.6	3.6
100~300만원 미만	(126)	.9	88.3	4.4	6.4	4.8
300~500만원 미만	(46)	1.8	83.2	.0	15.0	7.0
500~1000만원 미만	(58)	.1	76.7	8.0	15.2	11.7
1000~3000만원 미만	(56)	3.1	77.1	11.1	8.7	6.6
3000~7000만원 미만	(23)	8.3	84.1	6.4	1.2	.5
7000만원 이상	(37)	.0	87.4	1.1	11.5	3.1

3. 一般貯蓄者 對象 設問調査 結果分析表

<附表 3-1> 金融實名制에 대한 贊反 : 저축 B-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전 체	(672)	84.5	8.0	4.5	3.0
연령별					
20대	(200)	89.5	3.5	5.0	2.0
30대	(350)	87.4	7.1	3.1	2.3
40대	(70)	70.0	15.7	7.1	7.1
50대	(52)	65.4	21.2	7.7	5.8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2)	90.8	5.3	2.0	2.0
5백~1천만원	(177)	84.2	6.2	6.2	3.4
1천~5천만원	(262)	87.8	8.4	2.7	1.1
5천~1억원	(46)	73.9	10.9	6.5	8.7
1억원 이상	(30)	46.7	23.3	16.7	13.3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61)	87.6	6.8	4.3	1.2
1백만~2백만원	(388)	84.3	8.0	4.6	3.1
2백만~3백만원	(89)	88.8	5.6	3.4	2.2
3백만~5백만원	(17)	64.7	11.8	5.9	17.6
5백만원 이상	(8)	50.0	50.0	.0	.0

* 저축 B-1은 일반저축자용 설문지 B결의 1번 문항을 의미함.

〈附表 3-2〉 金融實名制의 必要性 : 저축 B-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르겠다
전 체	(675)	82.2	8.3	9.5
연령별				
20대	(200)	83.5	5.5	11.0
30대	(350)	87.1	6.3	6.6
40대	(72)	65.3	19.4	15.3
50대	(53)	67.9	17.0	15.1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85.0	4.6	10.5
5백~1천만원	(177)	81.4	7.9	10.7
1천~5천만원	(264)	87.1	6.4	6.4
5천~1억원	(46)	67.4	21.7	10.9
1억원 이상	(30)	56.7	26.7	16.7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61)	80.7	5.6	13.7
1백만~2백만원	(391)	84.7	8.2	7.2
2백만~3백만원	(89)	83.1	9.0	7.9
3백만~5백만원	(17)	64.7	11.8	23.5
5백만원 이상	(8)	50.0	25.5	25.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8)	90.1	2.3	7.6
찬성-반대	(54)	29.6	46.3	24.1
반대-찬성	(30)	76.7	6.7	16.7
반대-반대	(20)	15.0	75.0	10.0

〈附表 3-3〉 金融實名制가 꼭 必要한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理由 : 저축 B-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문제아님	충격이 큼	음성거래	불편가중
전 체	(79)	8.9	20.3	59.5	11.4

<附表 3-4> 實名制가 金融去來 透明性 提高에 미친 影響 : 저축 B-4-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도움	그냥도움	그저그림	도움안됨	전혀안됨
전 체	(674)	75.5	52.8	19.4	4.3	0.6
연령별						
20대	(200)	19.5	57.0	21.0	2.5	.0
30대	(349)	24.1	53.6	16.9	4.6	0.9
40대	(72)	31.9	41.7	20.8	5.6	.0
50대	(53)	15.1	47.2	28.3	7.5	1.9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23.6	53.6	19.0	3.9	.0
5백~1천만원	(177)	27.1	50.8	16.9	4.0	1.1
1천~5천만원	(263)	22.4	57.8	15.6	4.2	.0
5천~1억원	(46)	13.0	50.0	30.4	4.3	2.2
1억원 이상	(30)	16.7	26.7	46.7	6.7	3.3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60)	16.9	55.0	24.4	3.8	.0
1백만~2백만원	(391)	27.4	50.6	16.6	4.6	0.8
2백만~3백만원	(89)	18.0	58.4	18.0	4.5	1.1
3백만~5백만원	(17)	23.5	58.8	17.6	.0	.0
5백만원 이상	(8)	.0	37.5	62.5	.0	.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25.4	54.5	17.5	2.3	0.4
찬성-반대	(54)	5.6	40.7	37.0	14.8	1.9
반대-찬성	(30)	20.0	63.3	10.0	3.3	3.3
반대-반대	(20)	.0	25.0	40.0	35.0	.0

〈附表 3-5〉 實名制가 金融資産 綜合課稅를 통한 租稅衡平性 提高에
미친 影響 : 저축 B-4-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도움	그냥도움	그저그럼	도움안됨	전혀안됨
전 체	(670)	17.9	51.3	23.0	6.6	1.2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1)	16.6	50.3	24.5	8.6	.0
5백~1천만원	(176)	20.5	53.4	15.3	8.0	2.8
1천~5천만원	(262)	17.6	54.6	23.3	4.2	0.4
5천~1억원	(46)	17.4	41.3	34.8	4.3	2.2
1억원 이상	(30)	16.7	30.0	40.0	10.0	3.3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3)	19.9	52.6	22.0	4.6	0.9
찬성-반대	(54)	5.6	46.3	29.6	14.8	3.7
반대-찬성	(30)	13.3	60.0	16.7	6.0	3.3
반대-반대	(20)	5.0	15.0	40.0	40.0	.0

<附表 3-6> 實名制가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에 미친 影響 :
저축 B-4-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도움	그냥도움	그저그림	도움안됨	전혀안됨
전 체	(675)	17.6	42.8	29.8	7.1	2.7
연령별						
20대	(200)	12.5	38.0	39.5	7.0	3.0
30대	(350)	19.7	44.5	26.0	7.0	2.9
40대	(72)	19.4	50.0	22.2	8.3	.0
50대	(53)	20.8	41.5	28.3	5.7	3.8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61)	18.0	39.8	36.6	4.3	1.2
1백만~2백만원	(391)	17.6	42.5	28.4	7.9	3.6
2백만~3백만원	(89)	16.9	51.7	19.1	11.2	1.1
3백만~5백만원	(17)	17.6	52.9	29.4	.0	.0
5백만원 이상	(8)	12.5	25.0	62.5	.0	.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8)	18.7	44.5	29.4	5.5	1.9
찬성-반대	(54)	5.6	29.6	33.3	20.4	11.1
반대-찬성	(30)	26.7	50.0	20.0	.0	3.3
반대-반대	(20)	10.0	15.0	45.0	30.0	.0

<附表 3-7> 非實名去來는 社會的으로 큰 問題이다 : 저축 B-5-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동의	동 의	그저그림	반 대	전적반대
전 체	(672)	38.1	52.5	6.4	1.6	1.3
연령별						
20대	(200)	39.0	55.0	5.5	0.5	0.5
30대	(348)	38.2	54.0	5.5	1.1	1.1
40대	(72)	24.7	43.1	11.1	8.3	2.8
50대	(52)	38.5	46.2	11.5	.0	22.2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41.8	51.9	4.1	1.1	1.2
찬성-반대	(54)	13.0	68.5	16.7	1.9	.0
반대-찬성	(29)	34.5	48.3	13.8	.0	3.4
반대-반대	(19)	10.5	42.1	31.6	10.5	5.3

<附表 3-8> 實名制에 따른 經濟的 衝擊이 크다 : 저축 B-5-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동의	동 의	그저그림	반 대	전적반대
전 체	(671)	4.2	30.3	43.2	16.4	6.0
연령별						
20대	(198)	1.5	60.8	43.9	19.7	4.0
30대	(349)	4.3	26.9	45.6	16.6	6.6
40대	(72)	5.6	37.5	37.5	13.9	5.6
50대	(52)	11.5	40.4	32.7	5.8	9.6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2)	3.3	30.9	39.5	22.4	3.9
5백~1천만원	(177)	5.1	23.7	48.0	14.7	8.5
1천~5천만원	(263)	3.4	36.4	43.7	17.1	5.3
5천~1억원	(44)	2.3	30.4	40.9	11.4	9.1
1억원 이상	(30)	13.3	50.0	33.3	.0	3.3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5)	2.7	28.7	43.0	18.9	6.7
찬성-반대	(54)	13.0	35.2	48.0	.0	3.7
반대-찬성	(29)	6.9	41.4	44.8	6.9	.0
반대-반대	(20)	20.0	40.0	35.0	5.0	.0

<附表 3-9> 陰性的 去來는 여전할 것이다 : 저축 B-5-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동의	동 의	그저그림	반 대	전적반대
전 체	(674)	13.4	68.2	12.2	5.5	0.7
연령별						
20대	(200)	14.5	65.5	16.0	4.0	.0
30대	(350)	11.4	73.1	9.1	5.4	0.5
40대	(72)	15.3	59.7	13.9	11.1	.0
50대	(52)	19.2	57.7	15.4	3.8	3.8
주식투자여부						
한다	(305)	9.8	70.2	12.8	6.6	0.7
안한다	(366)	16.4	66.4	11.7	4.6	0.8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12.7	68.3	12.7	5.8	0.5
찬성-반대	(54)	16.7	72.2	9.3	.0	1.9
반대-찬성	(30)	20.0	56.7	10.0	13.3	.0
반대-반대	(20)	15.0	75.0	5.0	.0	5.0

<附表 3-10>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 저축 B-5-4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동의	동 의	그저그림	반 대	전적반대
전 체	(674)	7.1	35.2	27.7	23.4	6.5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4.6	30.7	29.4	28.8	6.5
5백~1천만원	(177)	6.8	36.7	27.7	21.5	7.3
1천~5천만원	(264)	6.1	35.2	27.3	24.2	7.2
5천~1억원	(45)	13.3	44.4	20.0	20.0	2.2
1억원 이상	(30)	20.0	33.3	36.7	6.7	3.3
주식투자여부						
한다	(305)	9.8	34.4	25.2	26.2	4.3
안한다	(366)	4.6	35.5	30.1	21.3	8.5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5.5	32.5	28.7	26.3	7.1
찬성-반대	(54)	14.8	57.4	18.5	3.7	5.6
반대-찬성	(30)	10.0	43.3	26.7	16.7	3.3
반대-반대	(20)	30.0	35.0	30.0	5.0	.0

<附表 3-11> 實名制가 政治에 미치는 影響 : 저축 B-6-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상당긍정	약간긍정	그저그림	약간부정	상당부정
전 체	674	35.3	52.8	9.8	1.5	0.6
주식투자여부						
한다	(305)	30.5	56.4	10.5	2.3	0.3
안한다	(366)	39.3	49.7	9.3	0.8	0.8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38.1	53.3	7.3	0.9	.0
찬성-반대	(54)	13.0	53.7	24.1	5.6	3.7
반대-찬성	(30)	40.0	50.0	6.7	.0	3.3
반대-반대	(20)	1.0	40.0	35.0	10.0	5.0

<附表 3-12> 實名制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 : 저축 B-6-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상당긍정	약간긍정	그저그림	약간부정	상당부정
전 체	(674)	28.3	54.6	13.1	2.7	1.3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27.5	56.9	12.4	1.3	2.0
5백~1천만원	(177)	28.2	57.6	10.7	2.3	1.1
1천~5천만원	(264)	30.3	54.2	11.7	3.4	0.4
5천~1억원	(45)	20.0	55.6	24.4	.0	.0
1억원 이상	(30)	33.3	33.3	13.3	10.0	10.0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60)	26.9	55.0	15.3	1.9	0.6
1백만~2백만원	(391)	28.1	56.8	12.0	2.3	0.8
2백만~3백만원	(89)	30.3	51.7	9.0	5.6	3.4
3백만~5백만	(17)	29.4	41.2	23.5	5.9	.0
5백만원 이상	(8)	37.5	25.0	25.0	.0	12.5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31.2	55.2	11.8	1.6	0.2
찬성-반대	(54)	9.3	53.7	20.4	7.4	9.3
반대-찬성	(30)	26.7	56.7	10.0	3.3	3.3
반대-반대	(20)	5.0	35.0	30.0	20.0	10.0

<附表 3-13> 實名制가 社會에 미치는 影響 : 저축 B-6-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상당긍정	약간긍정	그저그림	약간부정	상당부정
전 체	(673)	33.6	53.2	10.0	2.2	1.0
연령별						
20대	(199)	34.2	55.3	8.5	1.5	0.5
30대	(350)	36.9	50.9	9.7	1.7	0.9
40대	(72)	25.0	58.3	9.7	5.6	1.4
50대	(52)	21.2	53.8	17.3	3.8	3.8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34.6	52.3	8.5	3.3	1.3
5백~1천만원	(177)	33.3	52.5	10.7	2.8	0.6
1천~5천만원	(263)	36.5	52.9	9.1	1.1	0.4
5천~1억원	(45)	26.7	57.8	13.3	.0	2.2
1억원 이상	(30)	20.0	50.0	16.7	6.7	6.7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6)	37.8	53.2	8.0	0.9	0.2
찬성-반대	(54)	5.6	53.7	25.9	11.1	3.7
반대-찬성	(30)	30.0	56.7	3.3	6.7	3.3
반대-반대	(20)	.0	40.0	35.0	10.0	15.0

〈附表 3-14〉 金融實名制의 推進狀況 : 저축 B-7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잘 추진	추진	잘 안됨	전혀안됨	모르겠다
전 체	(674)	1.5	53.0	37.2	4.9	3.4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0	51.6	35.9	5.9	6.5
5백~1천만원	(177)	2.3	55.4	36.2	3.4	2.8
1천~5천만원	(264)	2.3	51.9	40.2	4.9	0.8
5천~1억원	(45)	.0	51.1	40.0	2.2	6.7
1억원 이상	(30)	.0	56.7	23.3	13.3	6.7
주식투자여부						
한다	(305)	2.0	57.7	32.1	4.9	2.3
안한다	(366)	1.1	48.1	41.5	4.9	4.4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1.4	55.4	36.5	3.9	2.8
찬성-반대	(54)	.0	29.6	50.0	14.8	5.6
반대-찬성	(30)	6.7	66.7	20.0	3.3	3.3
반대-반대	(20)	.0	25.0	50.0	10.0	15.0

〈附標 3-15〉 後續補完措置에 대한 意見 : 저축 B-8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적절했다	더 보완	부적절	모르겠다
전 체	(671)	7.5	63.5	17.3	11.8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5.9	61.4	16.3	16.3
5백~1천만원	(175)	9.1	61.1	17.7	12.0
1천~5천만원	(263)	7.2	62.4	20.2	10.3
5천~1억원	(45)	2.2	82.2	8.9	6.7
1억원 이상	(30)	16.7	70.0	10.0	3.3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4)	7.6	63.3	17.4	11.7
찬성-반대	(54)	.0	57.4	22.2	20.4
반대-찬성	(30)	23.3	66.7	10.0	.0
반대-반대	(20)	.0	75.0	15.0	10.0

<附表 3-16> 實名制로 어려움을 겪는 階層(複數應答 2個) : 저축 B-9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대기업 경영인	중 소 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 업자	봉급 생활자	자영 업자	일반 서민
전 체	(673)	14.4	47.4	42.7	11.3	55.1	3.9	22.8	8.0
연령별									
20대	(200)	4.6	14.3	10.8	4.7	16.2	1.6	6.3	2.5
30대	(349)	7.5	22.1	24.6	5.7	30.1	1.4	12.6	2.8
40대	(72)	1.7	5.7	4.9	0.6	5.5	0.5	2.2	1.1
50대	(52)	0.6	5.3	2.4	0.3	3.3	0.5	1.7	1.6
금융자산규모									
5백만원 미만	(153)	2.8	11.2	11.1	2.8	12.0	1.3	4.1	1.9
5백~1천만원	(177)	4.4	12.0	10.3	3.0	14.4	1.1	6.8	2.2
1천~5천만원	(263)	5.7	18.2	17.4	4.6	23.1	0.9	8.4	2.5
5천~1억원	(45)	0.5	3.5	2.4	0.3	3.8	0.5	2.7	0.6
1억원 이상	(30)	1.1	2.5	1.7	0.5	1.9	.0	0.6	0.6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59)	3.5	11.8	8.8	3.0	13.4	1.1	4.9	3.0
1백만~2백만원	(391)	8.4	26.6	26.6	6.8	32.8	2.2	12.7	3.8
2백만~3백만원	(89)	2.1	6.7	6.2	1.1	7.5	0.5	3.7	0.5
3백만~5백만원	(17)	0.3	1.3	0.8	0.3	1.4	.0	0.8	0.5
5백만원 이상	(8)	.0	1.0	0.3	0.2	0.3	.0	0.6	0.2
주식투자여부									
한다	(304)	6.6	20.3	19.9	4.7	27.6	1.7	9.9	2.7
안한다	(366)	7.9	26.8	22.9	6.6	27.6	2.2	12.9	5.2

〈附表 3-17〉 實名制를 가장 反對하는 階層(複數應答 2個) : 저축 B-10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대기업 경영인	중 소 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 업자	봉급 생활자	자영 업자	일반 서민
전 체	(673)	24.1	17.6	59.8	18.6	68.0	1.1	10.9	1.5
연령별									
20대	(198)	7.9	3.3	18.5	7.0	20.5	0.3	1.7	0.6
30대	(349)	12.7	9.1	32.4	8.3	35.2	0.5	6.5	0.2
40대	(72)	2.6	2.6	5.8	1.4	7.4	0.3	1.2	0.3
50대	(53)	0.9	2.6	3.2	2.0	5.0	.0	1.5	0.5
금융자산규모									
5백만원 미만	(153)	6.1	3.7	14.5	5.0	15.1	0.5	1.2	0.3
5백~1천만원	(175)	6.1	3.8	17.3	4.6	17.3	0.3	3.5	0.2
1천~5천만원	(262)	9.8	6.7	22.4	7.0	27.9	.0	4.7	0.6
5천~1억원	(46)	0.8	1.8	4.1	1.2	4.7	0.2	1.1	0.2
1억원 이상	(30)	1.2	1.5	1.8	0.8	2.7	0.2	0.5	0.3
소득수준별									
1 백만원 미만	(160)	7.2	3.7	14.4	5.1	16.0	0.3	1.4	0.9
1백만~2백만원	(388)	14.4	9.5	34.9	12.0	39.3	0.6	6.6	0.5
2백만~3백만원	(89)	2.3	3.2	8.4	1.1	10.1	.0	2.0	.0
3백만~5백만원	(17)	0.5	0.5	1.2	0.2	2.3	0.2	0.5	.0
5백만원 이상	(8)	.0	0.5	0.8	0.3	0.3	.0	0.5	0.2
주식투자여부									
한다	(303)	9.4	8.2	27.4	6.8	33.2	0.5	5.6	0.6
안한다	(365)	14.8	9.1	32.6	11.7	34.9	0.6	5.3	0.9

<附表 3-18> 金融實名制와 改革과의 關係 : 저축 B-1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정착되어야 성공	정착없이도 성공	모르겠다
전 체	(674)	78.8	12.8	8.5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7)	82.7	9.7	7.6
찬성-반대	(54)	64.8	20.4	14.8
반대-찬성	(30)	73.3	23.3	3.3
반대-반대	(20)	20.0	60.0	20.0

<附表 3-19> 透明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 저축 B-1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증여한도	보고한도	거래제도	종합과세	기 타
전 체	(665)	14.7	10.8	35.6	37.1	1.7
연령별						
20대	(198)	11.6	11.1	37.4	38.4	1.5
30대	(345)	14.2	10.1	37.4	36.5	1.7
40대	(71)	12.7	14.1	26.8	43.7	2.8
50대	(51)	33.3	9.8	29.4	27.5	.0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2)	15.1	13.2	28.9	39.5	3.3
5백~1천만원	(172)	16.2	7.0	34.9	41.3	0.6
1천~5천만원	(261)	12.6	10.7	37.2	37.5	1.9
5천~1억원	(46)	17.4	21.7	41.3	19.6	.0
1억원 이상	(29)	17.2	6.9	44.8	31.0	.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1)	15.5	10.0	33.9	39.2	1.4
찬성-반대	(54)	9.3	20.4	38.9	29.6	1.9
반대-찬성	(27)	7.4	11.1	66.7	14.8	.0
반대-반대	(20)	15.0	5.0	40.0	30.0	10.0

<附表 3-20>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 저축 B-1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부가세 인 하	종합과세 시 행	유통구조 개 선	기 타
전 체	(662)	20.4	36.4	42.0	1.2
연령별					
20대	(194)	22.2	43.3	33.5	1.0
30대	(347)	17.0	37.2	44.1	1.7
40대	(69)	21.7	33.3	44.9	.0
50대	(52)	34.6	9.6	55.8	.0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49)	19.5	42.3	36.2	2.0
5백~1천만원	(172)	22.1	37.8	38.4	1.7
1천~5천만원	(260)	16.2	35.0	48.1	0.8
5천~1억원	(46)	21.7	28.3	50.0	.0
1억원 이상	(30)	46.7	26.7	26.7	.0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56)	24.4	38.5	35.9	1.3
1백만~2백만원	(385)	17.9	37.1	44.2	0.8
2백만~3백만원	(89)	19.1	33.7	43.8	3.4
3백만~5백만	(16)	37.5	37.5	25.0	.0
5백만원 이상	(7)	42.9	.0	57.1	.0

<附表 3-21> 社會不條理 除去를 위한 補完對策 : 저축 B-14

(單位 : 명, %)

	사례수	사정활동	제도개혁	의식전환	기타
전 체	(667)	15.0	36.9	46.5	1.6

〈附表 3-22〉 金融實名制的 實施로 인한 不便이나 不利益의 經驗
: 저축 B-15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아주많이	몇번있음	한두번	없었음
전 체	(675)	3.0	26.1	24.3	46.7
연령별					
20대	(200)	2.0	29.5	26.5	42.0
30대	(350)	3.7	25.1	24.6	46.6
40대	(72)	4.2	29.2	22.2	44.4
50대	(53)	.0	15.1	17.0	67.9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0.7	24.8	21.6	52.9
5백~1천만원	(177)	4.5	24.9	27.1	43.5
1천~5천만원	(264)	1.9	27.7	24.6	45.8
5천~1억원	(46)	4.3	21.7	26.1	47.8
1억원 미만	(30)	13.3	33.3	16.7	36.7
주식투자여부					
한다	(306)	3.9	28.1	26.1	41.8
안한다	(366)	1.9	24.0	23.0	51.1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68)	1.4	23.1	25.7	49.8
찬성-반대	(54)	13.0	38.9	20.4	27.8
반대-찬성	(30)	.0	46.7	23.3	30.0
반대-반대	(20)	25.0	45.0	.0	30.0

〈附表 3-23〉 資産構成 變化의 必要性 : 저축 C-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671)	21.8	78.2
연령별			
20대	(196)	28.1	71.9
30대	(350)	20.0	80.0
40대	(72)	19.4	80.6
50대	(53)	13.2	86.8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57)	23.6	76.4
1백만~2백만원	(391)	21.0	79.0
2백만~3백만원	(89)	12.4	87.6
3백만~5백만원	(17)	41.2	58.8
5백만원 이상	(8)	62.5	37.5

〈附表 3-24〉 有望 投資資産 : 저축 C-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주식	209	54.7
투자신탁 수익증권	195	51.0
부동산	155	40.6
예금	97	25.4
귀금속, 골동품, 그림	66	17.3
현금	55	14.4
사채	17	4.5
해외부동산	16	4.2
외화, 해외예금	13	3.4

<附表 3-25> 美國不動產 投資用意 : 저축 C-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용의있음	수익낮음	안 함
전 체	(664)	21.1	14.2	64.8
연령별				
20대	(197)	25.4	15.7	58.9
30대	(347)	20.7	16.4	62.8
40대	(69)	21.7	7.2	71.0
50대	(51)	5.9	2.0	92.2

<附表 3-26> 金融實名制의 經濟에 대한 影響 : 저축 C-4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영향 없음	물가 상승	증권시장 자금유입	현물수요 증가	해 외 유 출
전 체	(662)	30.7	16.9	21.5	15.4	15.6
연령별						
20대	(196)	19.4	14.8	29.6	20.9	15.3
30대	(344)	36.3	18.0	17.4	14.2	14.0
40대	(69)	34.8	13.0	23.2	8.7	20.3
50대	(53)	30.2	22.6	15.1	11.3	20.8
금융자산규모						
5백만원 미만	(152)	26.3	16.4	17.8	20.4	19.1
5백~1천만원	(175)	29.1	14.9	27.4	17.1	11.4
1천~5천만원	(259)	33.6	17.8	21.2	12.7	14.7
5천~1억원	(43)	39.5	18.6	20.9	7.0	14.0
1억원 이상	(28)	28.6	21.4	7.1	14.3	28.6

<附表 3-27>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가 貯蓄率에 미칠 影響 : 저축 C-5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별다른 영향없음	저축률 저하	관계없이 증가
전 체	(667)	60.6	29.2	10.2
연령별				
20대	(198)	63.1	28.8	8.1
30대	(347)	62.2	28.2	9.5
40대	(70)	57.1	32.9	10.0
50대	(52)	44.2	32.7	23.1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1)	57.6	27.8	14.6
5백~1천만원	(174)	69.0	25.3	5.7
1천~5천만원	(262)	58.8	29.8	11.5
5천~1억원	(45)	57.8	40.0	2.2
1억원 이상	(30)	43.3	43.3	13.3

<附表 3-28> 證券의 讓渡差益稅에 대한 意見 : 저축 C-6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매력감소	주식유리	기간차등세율
전 체	(658)	42.9	11.9	45.3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49)	43.6	10.1	46.3
5백~1천만원	(171)	36.3	12.3	51.5
1천~5천만원	(259)	42.1	12.7	45.2
5천~1억원	(44)	52.3	15.9	31.8
1억원 이상	(30)	73.3	3.3	23.3
주식투자여부				
한다	(299)	50.5	12.4	37.1
안한다	(356)	36.2	11.5	52.2

<附表 3-29> 자기앞수표 忌避 理由 : 저축 C-7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이서요구	자금추적	수수료	입금불편
전 체	(661)	19.5	61.1	14.4	5.0
연령별					
20대	(193)	21.2	53.4	19.7	5.7
30대	(344)	17.4	67.2	11.9	3.5
40대	(71)	22.5	64.8	4.2	8.5
50대	(53)	22.6	45.3	24.5	7.5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49)	14.8	62.4	20.1	2.7
5백~1천만원	(174)	21.3	62.1	9.8	6.9
1천~5천만원	(259)	20.5	57.9	15.8	5.8
5천~1억원	(44)	22.7	68.2	6.8	2.3
1억원 이상	(30)	20.0	70.0	10.0	

<附表 3-30> 非實名計座 保有與否 : 저축 C-8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70)	16.3	83.7
연령별			
20대	(200)	15.5	84.5
30대	(347)	14.4	85.6
40대	(71)	28.2	71.8
50대	(52)	15.4	84.6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13.7	86.3
5백~1천만원	(176)	14.8	85.2
1천~5천만원	(261)	15.7	84.3
5천~1억원	(45)	22.2	77.8
1억원 이상	(30)	33.3	66.7

<附表 3-31> 非實名計座 保有動機 : 저축 C-9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귀찮아서	노출회피	상속유리
전 체	(92)	81.5	13.0	5.4
연령별				
20대	(26)	80.8	11.5	7.7
30대	(43)	90.7	7.0	2.3
40대	(16)	68.8	18.8	12.5
50대	(7)	57.1	42.9	.0

<附表 3-32> 非實名計座 開設 原因 : 저축 C-10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고객요구	관측활동	이해일치
전 체	(636)	37.9	23.1	39.0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42)	40.8	18.3	40.8
5백~1천만원	(168)	33.3	22.0	44.6
1천~5천만원	(249)	40.6	21.7	37.8
5천~1억원	(45)	37.8	35.6	26.7
1억원 이상	(28)	25.0	50.0	25.0

<附表 3-33> 金融實名制 理解程度 : 저축 C-1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실명거래	종합과세	보유한도
전 체	(673)	45.6	30.8	23.6
연령별				
20대	(199)	56.3	26.1	17.6
30대	(349)	38.7	34.1	27.2
40대	(72)	37.5	34.7	27.8
50대	(53)	62.3	20.8	17.0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58.2	27.5	14.4
5백~1천만원	(176)	49.4	28.4	22.2
1천~5천만원	(263)	41.1	32.3	26.6
5천~1억원	(46)	23.9	43.5	32.6
1억원 이상	(30)	33.3	26.7	40.0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60)	64.4	22.5	13.1
1백만~2백만원	(390)	43.8	32.1	24.1
2백만~3백만원	(89)	29.2	34.8	36.0
3백만~5백만원	(17)	17.6	52.9	39.4
5백만원 이상	(8)		50.0	50.0
주식투자여부				
한다	(305)	37.7	32.8	29.5
안한다	(365)	52.1	29.3	18.6

〈附表 3-34〉 従前 差等課税에 대한 認識 : 저축 C-1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21.5%	45.0%	64.5%	85.0%	모르겠다
전 체	(663)	16.0	14.3	18.9	3.3	47.5
연령별						
20대	(195)	19.5	11.3	19.5	2.6	47.2
30대	(346)	14.2	15.0	22.3	4.3	44.2
40대	(70)	12.9	22.9	11.4	2.9	50.0
50대	(52)	19.2	9.6	3.8	.0	67.3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49)	13.4	10.1	14.1	1.3	61.1
5백~1천만원	(172)	18.6	17.4	20.3	2.3	41.3
1천~5천만원	(262)	16.4	14.9	21.0	4.6	43.1
5천~1억원	(46)	19.6	8.7	19.6	8.7	43.5
1억원 이상	(29)	6.9	24.1	10.3	.0	58.6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56)	15.4	9.0	14.7	1.9	59.0
1백만~2백만원	(387)	17.3	16.5	18.1	3.9	44.2
2백만~3백만원	(87)	14.9	14.9	31.0	3.4	35.6
3백만~5백만원	(17)	5.9	17.6	23.5	5.9	47.1
5백만원 이상	(7)	14.3	14.3	14.3	.0	57.1
주식투자여부						
한다	(302)	14.6	15.2	25.8	4.3	40.1
안한다	(358)	17.3	13.7	13.1	2.5	53.4

<附表 3-35> 非正常的 金融情報 要求에 대한 金融機關의 態度 :
저축 C-1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보호함	보호안함	모르겠다
전 체	(672)	30.2	48.7	21.1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24.8	44.4	30.7
5백~1천만원	(176)	29.5	51.7	18.8
1천~5천만원	(262)	33.6	49.2	17.2
5천~1억원	(46)	23.9	54.3	21.7
1억원 이상	(30)	40.0	43.3	16.7

※ 저축 C-14번 설문문의 결과표는 <附表 4-36>을 참조할 것.

<附表 3-36> 實名確認의 節次 : 저축 C-15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고객의 기재사항 인정	50	7.4
주민등록증과 대조	321	47.6
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본인 확인	299	44.3
무응답	5	0.7
계	675	100.0

<附表 3-37> 課徴金에 대한 見解 : 저축 C-16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부당하다	하향조정	보다강화
전 체	(652)	12.9	27.8	59.4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47)	15.0	21.8	63.3
5백~1천만원	(170)	13.5	27.6	58.8
1천~5천만원	(255)	11.4	27.8	60.8
5천~1억원	(46)	6.5	45.7	47.8
1억원 이상	(30)	23.3	36.7	50.0
소득수준별				
1백만원 미만	(154)	22.7	22.7	59.1
1백만~2백만원	(378)	10.6	30.4	59.0
2백만~3백만원	(87)	11.5	21.8	66.7
3백만~5백만원	(17)	17.6	35.3	47.1
5백만원 이상	(8)	25.0	37.5	37.5

<附表 3-38> 限度超過에 대한 出處調査 : 저축 C-17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조사불필요	최소한의 조사	엄격한 조사
전 체	(668)	6.3	45.5	48.2
연령별				
20대	(198)	4.0	45.5	50.5
30대	(346)	6.4	46.8	46.8
40대	(71)	5.6	49.6	45.1
50대	(53)	15.1	32.1	52.8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53)	5.9	43.8	50.3
5백~1천만원	(174)	4.0	46.0	50.0
1천~5천만원	(260)	4.2	48.1	47.7
5천~1억원	(46)	13.0	41.3	45.7
1억원 이상	(30)	30.0	33.3	36.7

<附表 3-39> 金融實名制의 不當한 部分 : 저축 C-18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세부담 증가	비실명 과징금	자금출처 조사	자금흐름 추적	재산규모 노출	모두 합당함
전 체	(634)	26.7	6.0	4.9	8.5	13.9	40.1
연령별							
20대	(184)	36.4	6.0	4.3	5.4	12.5	35.3
30대	(334)	23.7	4.5	6.6	9.3	12.9	43.1
40대	(67)	20.9	7.5		10.4	22.4	38.8
50대	(49)	18.0	14.3	2.0	12.2	14.3	38.8
금융자산 규모							
5백만원 미만	(142)	30.3	7.0	4.2	6.3	14.8	37.3
5백~1천만원	(164)	25.6	6.1	3.7	7.9	9.8	47.0
1천~5천만원	(253)	27.3	4.3	5.5	7.5	15.0	40.3
5천~1억원	(44)	20.5	11.4	4.5	20.5	11.4	31.8
1억원 이상	(26)	23.1	7.7	3.8	15.4	26.9	23.1

<附表 3-40> 高所得層 負擔增加에 대한 意見 : 저축 C-19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저항감 없음	409	60.6
경제성장에 따라 불가피	75	11.1
분배갈등 해소되면 수용	156	23.1
가진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25	3.7
무응답	10	1.5
계	675	100.0

※ 저축 C-20, C-21 설문에 대한 결과표는 <附表 4-37>, <附表 4-38>을 참조할 것.

4. 金融機關從事者 對象 設問調査 結果分析表

〈附表 4-1〉 金融實名制 實施 前後의 金融實名制에 대한 見解 : 기관 B-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전 체	(627)	86.8	5.3	6.1	1.9
근무지					
은행	(258)	87.2	6.2	4.7	1.9
단자·종금	(64)	93.8	1.6	4.7	.0
보험	(40)	82.5	10.0	7.5	.0
증권	(216)	83.8	4.2	9.3	2.8
투자신탁	(49)	91.8	6.1	.0	2.0
근무경력					
5년 미만	(259)	86.5	6.2	6.2	1.2
5년~10년	(226)	85.8	3.1	7.5	3.5
10년~15년	(102)	91.2	5.9	2.9	.0
15년 이상	(40)	82.5	10.0	5.0	2.5
학력별					
고졸	(143)	82.5	8.4	4.9	4.2
대졸	(388)	87.9	4.4	6.4	1.3
석사	(89)	88.8	4.5	6.7	.0
박사	(2)	100.0	.0	.0	.0

* 기관 B-1은 금융기관종사자용 설문지 B절 1번 문항을 의미함.

〈附表 4-2〉 金融實名制의 必要性 : 기관 B-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르겠다
전 체	(636)	84.0	7.4	8.6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74.5	10.7	14.8
대학교 졸업	(389)	86.9	6.7	6.4
석사학위 이상	(920)	88.0	4.3	7.6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5)	91.9	1.8	6.2
찬성-반대	(34)	17.6	64.7	17.6
반대-찬성	(38)	65.8	18.4	15.8
반대-반대	(12)	.0	66.7	33.3

〈附表 4-3〉 金融實名制가 必要한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理由 : 기관 B-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실명거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실명제실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크므로	실명제를 실 시해도 음성 적거래는 여전하므로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전 체	(128)	2.3	14.8	64.8	18.0
근무지					
은행	(61)	4.9	19.7	57.4	18.0
단자·종금	(8)	.0	12.5	50.0	37.5
보험	(10)	.0	10.0	60.0	30.0
증권	(43)	.0	11.6	79.1	9.3
투자신탁	(6)	.0	.0	66.7	33.3
근무경력					
5년 미만	(42)	2.4	14.3	61.9	21.4
5년~10년	(50)	2.0	16.0	70.0	12.0
10년~15년	(23)	4.3	17.4	56.5	21.7
15년 이상	(13)	.0	7.7	69.2	23.1
학력별					
고졸	(43)	4.7	9.3	69.8	16.3
대졸	(71)	1.4	15.5	62.0	21.1
석사	(11)	.0	27.3	72.7	.0

〈附表 4-4〉 實名制가 金融去來 透明性 提高에 미친 影響 : 기관 B-4-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	그냥 도움	그저 그림	도움 안됨	전혀 안됨
전 체(기관)	(638)	24.1	53.4	18.0	3.9	0.5
근무경력						
5년 미만	(264)	21.6	51.1	23.9	3.0	0.4
5~10년	(228)	23.2	57.0	13.2	5.7	0.9
10년~15년	(104)	32.7	52.9	13.5	1.0	.0
15년 이상	(42)	23.8	50.0	19.0	7.1	.0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1)	17.3	51.3	27.3	3.3	0.7
대학교 졸업	(389)	26.2	53.2	15.9	4.4	0.5
석사학위 이상	(92)	25.0	62.0	10.9	2.2	.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6)	26.3	55.3	15.3	2.8	0.4
찬성-반대	(34)	.0	36.4	45.5	15.2	3.0
반대-찬성	(38)	28.9	50.0	18.4	2.6	.0
반대-반대	(12)	.0	25.0	58.3	16.7	.0

〈附表 4-5〉 實名制의 租稅衡平性 提高 效果 : 기관 B-4-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	그냥 도움	그저 그럼	도움 안됨	전혀 안됨
전 체(기관)	(637)	22.1	53.2	18.1	5.3	1.3
근무경력						
5년 미만	(263)	17.7	55.9	21.7	3.4	1.1
5~10년	(228)	24.1	52.6	14.9	7.0	1.3
10년~15년	(104)	32.7	45.2	16.3	5.8	.0
15년 이상	(42)	11.9	59.5	16.7	7.1	4.8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13.4	57.0	20.1	7.4	2.0
대학교 졸업	(389)	23.9	52.7	18.5	4.1	0.8
석사학위 이상	(92)	29.3	51.1	12.0	6.5	1.1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6)	24.4	54.8	15.4	4.4	0.9
찬성-반대	(33)	9.4	34.4	46.9	9.4	.0
반대-찬성	(38)	7.9	60.5	18.4	10.5	2.6
반대-반대	(12)	.0	33.0	41.7	16.7	8.3

〈附表 4-6〉 實名制의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 效果 : 기관 B-4-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	그냥 도움	그저 그럼	도움 안됨	전혀 안됨
전 체(기관)	(637)	21.2	41.6	27.2	7.8	2.2
근무경력						
5년 미만	(263)	16.7	42.6	29.3	10.6	0.8
5~10년	(228)	22.8	39.0	28.1	5.7	4.4
10년~15년	(104)	28.8	41.3	23.1	5.8	1.0
15년 이상	(42)	21.4	50.0	19.0	7.1	2.4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14.0	35.3	39.3	10.0	1.3
대학교 졸업	(388)	23.2	42.0	24.0	8.2	2.6
석사학위 이상	(92)	23.9	52.2	20.7	2.2	1.1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3)	23.0	43.8	25.4	5.9	1.8
찬성-반대	(33)	6.1	33.3	30.3	24.2	6.1
반대-찬성	(38)	21.1	26.3	42.1	10.5	.0
반대-반대	(12)	.0	16.7	41.7	33.3	8.3

〈附表 4-7〉 非實名去來는 社會的으로 큰 問題이다 : 기관 B-5-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 동의	그냥 동의	그저 그럼	그냥 반대	전적 반대
전 체	(637)	41.8	49.6	6.9	1.6	0.2
근무업종						
은행	(263)	44.5	47.9	6.1	1.5	.0
단자·종금	(65)	47.7	50.8	1.5	.0	.0
보험	(40)	40.0	45.0	10.0	2.5	2.5
증권	(220)	37.3	51.4	9.1	2.3	.0
투자신탁	(49)	40.8	53.1	6.1	.0	.0
근무경력						
5년 미만	(264)	38.8	51.7	8.4	1.1	.0
5년~10년	(227)	40.4	53.5	4.4	1.3	0.4
10년~15년	(104)	49.0	45.2	4.8	1.0	.0
15년 이상	(42)	50.0	26.2	16.7	7.1	.0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28.7	58.7	10.0	2.0	0.7
대학교 졸업	(389)	44.7	48.3	6.2	0.8	.0
석사학위 이상	(92)	51.1	39.1	5.4	4.3	.0

〈附表 4-8〉 實名制의 經濟的 衝擊이 크다 : 기관 B-5-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 동의	그냥 동의	그저 그럼	그냥 반대	전적 반대
전 체	(635)	3.1	32.4	39.8	20.0	4.6
근무경력						
5년 미만	(263)	2.3	30.2	43.5	19.8	4.2
5년~10년	(227)	2.6	31.3	41.4	21.1	3.5
10년~15년	(103)	6.7	34.6	31.7	22.1	4.8
15년 이상	(42)	2.4	47.6	28.6	9.5	11.9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5)	2.8	30.2	39.8	22.3	5.0
찬성-반대	(34)	9.1	42.4	42.5	3.0	.0
반대-찬성	(37)	.0	45.9	37.8	10.8	5.4
반대-반대	(12)	16.7	41.7	33.3	8.3	.0

〈附表 4-9〉 陰性的 去來는 如前할 것이다 : 기관 B-5-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 동의	그냥 동의	그저 그럼	그냥 반대	전적 반대
전 체	(636)	11.3	67.9	12.1	8.3	0.3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4)	8.7	69.7	12.0	9.2	0.4
찬성-반대	(34)	30.3	60.6	9.1	.0	.0
반대-찬성	(38)	23.7	50.0	18.4	7.9	.0
반대-반대	(12)	33.3	58.3	8.3	.0	.0

〈附表 4-10〉 金融機關 및 顧客의 不便이 加重된다 : 기관 B-5-4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전적 동의	그냥 동의	그저 그렇	그냥 반대	전적 반대
전 체	(634)	15.1	48.9	17.4	15.0	3.6
근무업종						
은행	(261)	19.2	56.7	11.5	9.6	3.1
단자·종금	(65)	12.3	35.4	21.5	23.1	7.7
보험	(40)	12.5	37.5	22.5	27.5	.0
증권	(219)	9.1	45.7	22.8	17.8	4.6
투자신탁	(49)	26.5	49.0	14.3	10.2	.0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30.2	47.7	12.8	6.0	3.4
대학교 졸업	(386)	9.8	51.3	17.9	17.4	3.6
석사학위 이상	(92)	12.0	40.2	23.9	19.6	4.3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3)	10.7	50.1	18.7	16.5	4.1
찬성-반대	(34)	51.5	42.4	6.1	.0	.0
반대-찬성	(38)	23.7	39.5	18.4	15.8	2.6
반대-반대	(11)	54.5	45.5	.0	.0	.0

〈附表 4-11〉 實名制의 政治에 대한 影響 : 기관 B-6-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그저 그렇	약간 부정	매우 부정
전 체	(636)	39.6	46.1	10.1	3.5	0.8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22.7	52.7	17.3	6.0	1.3
대학교 졸업	(388)	41.5	46.4	8.2	3.1	0.8
석사학위 이상	(92)	57.6	37.0	4.3	1.1	.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5)	43.3	46.2	7.7	2.0	0.7
찬성-반대	(34)	12.1	42.4	24.2	18.2	3.0
반대-찬성	(38)	28.9	47.4	18.4	5.3	.0
반대-반대	(12)	8.3	41.7	33.3	16.7	.0

〈附表 4-12〉 實名制의 經濟에 대한 影響 : 기관 B-6-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그저 그렇	약간 부정	매우 부정
전 체	(636)	33.3	49.4	12.6	4.2	0.5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17.3	64.0	17.3	4.0	1.3
대학교 졸업	(388)	36.6	47.7	11.9	3.9	.0
석사학위 이상	(92)	44.6	41.3	7.6	6.5	.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5)	35.7	51.2	9.9	2.9	0.2
찬성-반대	(34)	15.2	33.3	42.4	9.1	.0
반대-찬성	(38)	34.2	36.8	15.8	13.2	.0
반대-반대	(12)	.0	33.3	33.3	25.0	8.3

〈附表 4-13〉 實名制의 社會에 대한 影響 : 기관 B-6-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그저 그렇	약간 부정	매우 부정
전 체	(636)	39.6	47.0	10.5	2.8	.0
근무업종						
은행	(263)	37.3	46.4	13.3	3.0	.0
단자·종금	(65)	47.7	49.2	3.1	.0	.0
보험	(40)	47.5	45.0	7.5	.0	.0
증권	(219)	39.7	47.5	9.1	3.7	.0
투자신탁	(49)	34.7	46.9	14.3	4.1	.0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22.7	54.7	16.0	6.7	.0
대학교 졸업	(388)	44.1	45.1	9.3	1.5	.0
석사학위 이상	(92)	46.7	45.7	6.5	1.1	.0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5)	43.8	46.2	8.7	1.3	.0
찬성-반대	(34)	9.1	60.6	15.2	15.2	.0
반대-찬성	(38)	23.7	50.0	21.1	5.3	.0
반대-반대	(12)	8.3	25.0	33.3	33.3	.0

〈附表 4-14〉實名制의 推進 狀況 : 기관 B-7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잘됨	잘됨	못됨	전혀 못됨	모르겠음
전 체	(638)	2.7	64.3	29.6	2.4	1.1
근무업종						
은행	(264)	2.3	65.9	28.4	3.4	.0
단자·종금	(65)	7.7	63.1	29.2	.0	.0
보험	(40)	2.5	35.0	60.0	2.5	.0
증권	(220)	0.9	70.0	24.5	2.3	2.3
투자신탁	(49)	6.1	55.1	34.7	.0	4.1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6)	2.6	66.4	28.1	2.2	0.7
찬성-반대	(34)	3.0	30.3	60.6	3.0	3.0
반대-찬성	(38)	2.6	68.4	26.3	.0	2.6
반대-반대	(12)	8.3	50.0	25.0	16.7	.0

〈附表 4-15〉 後續 補完措置의 適切性에 대한 見解 : 기관 B-8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적절함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음	부적절함	모르겠다 (보통이다)
전 체	(630)	10.0	71.9	14.0	4.1
근무업종					
은행	(260)	7.3	72.3	17.3	3.1
단자·종금	(65)	12.3	73.8	9.2	4.6
보험	(40)	.0	82.5	15.0	2.5
증권	(217)	14.3	69.6	11.1	5.1
투자신탁	(48)	10.4	68.8	14.6	6.3
근무경력					
5년 미만	(260)	7.7	72.3	17.3	2.7
5년~10년	(227)	11.9	72.7	11.0	4.4
10년~15년	(102)	9.8	70.6	12.7	6.9
15년 이상	(41)	14.6	68.3	12.2	4.9
학력별					
고졸	(148)	10.1	74.3	10.8	4.7
대졸	(384)	9.9	70.3	15.6	4.2
석사	(89)	11.2	73.0	13.5	2.2
박사	(2)	.0	100.0	.0	.0

〈附表 4-16〉 實名制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階層 : 기관 B-9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대기업 경영인	중 소 기업인	정치인	고 위 공무원	사 채 업 자	봉 급 생활자	자 영 업자	일반 서민
전 체	(637)	17.1	39.8	41.8	14.8	54.9	6.7	18.8	13.1
근무업종									
은행	(264)	6.9	15.3	15.8	6.0	25.5	2.2	7.6	5.9
단자·종금	(65)	2.0	4.5	4.7	1.8	5.9	0.5	1.7	0.5
보험	(40)	1.3	2.3	2.7	0.5	2.3	0.8	1.7	1.3
증권	(219)	0.6	14.8	16.4	4.5	17.1	2.2	6.5	3.4
투자신탁	(49)	0.8	2.9	2.2	1.8	4.0	1.0	1.3	2.0
근무경력									
5년 미만	(264)	7.2	16.9	15.9	6.4	22.5	3.2	7.6	5.9
5년~10년	(228)	6.7	14.1	13.9	5.0	20.1	2.3	7.4	4.2
10년~15년	(103)	2.3	5.4	9.2	1.8	9.2	1.0	2.5	2.2
15년 이상	(42)	0.8	3.4	2.7	1.5	3.0	0.2	1.3	0.8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49)	4.4	8.1	7.0	3.6	11.2	3.6	4.2	6.6
대학교 졸업	(389)	10.9	24.8	27.8	9.5	35.0	2.9	11.9	5.1
석사학위 이상	(92)	2.0	6.5	7.1	1.7	9.2	0.2	2.5	1.2

〈附表 4-17〉 實名制를 가장 反對하는 階層 : 기관 B-10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대기업 경영인	중 소 기업인	정치인	고 위 공무원	사 채 업 자	봉 급 생활자	자 영 업 자	일 반 서 민
전 체	(637)	27.4	11.7	60.3	26.2	65.1	0.5	8.6	2.2
근무업종									
은행	(264)	12.8	4.0	24.2	9.4	28.0	0.0	4.3	0.8
단자·종금	(65)	1.8	0.6	6.9	3.4	7.8	0.0	0.3	0.0
보험	(40)	2.1	0.6	3.7	1.9	3.7	0.2	0.3	0.2
증권	(219)	8.3	6.1	20.8	8.5	21.6	0.2	3.4	0.6
투자신탁	(49)	2.4	0.3	4.8	3.0	4.0	0.2	0.3	0.5
근무경력									
5년 미만	(264)	12.3	4.6	26.4	11.2	25.4	0.2	2.7	1.0
5년~10년	(228)	10.1	4.6	19.5	8.5	24.6	0.3	3.5	1.1
10년~15년	(103)	3.8	1.4	10.9	4.5	10.9	0.0	1.1	0.0
15년 이상	(42)	1.1	1.0	3.5	2.1	4.2	0.0	1.3	0.0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49)	7.6	2.8	12.6	7.4	12.8	0.3	1.9	1.3
대학교 졸업	(389)	16.8	6.6	38.7	16.3	41.1	0.2	5.3	0.6
석사학위 이상	(92)	2.9	2.1	9.2	2.6	11.2	0.0	1.5	0.0

〈附表 4-18〉 實名制의 成功이 改革의 前提條件인가 : 기관 B-1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 체	(634)	81.5	10.6	7.9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43)	86.9	6.1	7.0
찬성-반대	(34)	45.5	39.4	15.2
반대-찬성	(38)	57.9	28.9	13.2
반대-반대	(12)	41.7	41.7	16.7

〈附表 4-19〉 金融去來의 透明性 提高를 위한 가장 時急한 補完對策

: 기관 B-1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한도 축소	자금이동에 대한 보고 한도 인하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	금융자산소 득 종합과세 실시	기타
전 체	(629)	9.7	6.8	44.8	37.2	1.4
근무업종						
은행	(260)	8.1	6.9	45.4	38.5	1.2
단자·종금	(64)	3.1	7.8	46.9	40.6	1.6
보험	(39)	10.3	.0	46.2	41.0	2.6
증권	(217)	14.7	8.3	45.2	30.9	.9
투자신탁	(49)	4.1	4.1	36.7	51.0	4.1
근무경력						
5년 미만	(261)	11.5	5.4	41.0	41.0	1.1
5년~10년	(226)	9.3	8.0	46.0	35.0	1.8
10년~15년	(101)	6.9	8.9	51.5	31.7	1.0
15년 이상	(41)	7.3	4.9	46.3	39.0	2.4
학력별						
고졸	(144)	9.7	9.0	51.4	27.8	2.1
대졸	(387)	9.3	5.7	42.9	41.1	1.0
석사	(90)	12.2	7.8	42.2	35.6	2.2
박사	(2)	.0	.0	50.0	50.0	.0

〈附表 4-20〉 租稅衡平性 提高를 위한 補完對策 : 기관 B-1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부가세율 인하	종합과세 시행	무자료거래 차단	기 타
전 체	(624)	19.2	36.4	43.6	0.8
근무경력					
5년 미만	(260)	19.7	46.7	33.6	.0
5년~10년	(224)	21.9	32.1	45.1	0.9
10년~15년	(99)	16.0	24.0	57.0	3.0
15년 이상	(41)	9.8	24.4	65.9	.0

〈附表 4-21〉 實名제의 社會不條理 除去機能 強化 事項 : 기관 B-14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사정활동 강화	강력한 법제정	국민의식 전환	기 타
전 체	(630)	23.5	27.9	48.3	0.3
실명제 찬반					
찬성-찬성	(539)	21.6	30.2	47.9	0.4
찬성-반대	(34)	48.5	12.1	39.4	.0
반대-찬성	(38)	28.9	13.2	57.9	.0
반대-반대	(12)	25.0	33.3	41.7	.0

〈附表 4-22〉顧客들의 不便 : 기관 B-15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금융자산 종합과세	재산규모 노출	번칙상속에 대한 어려움	자금출처 조사가능
전 체	(629)	29.4	22.7	17.0	30.8
근무업종					
은행	(261)	24.1	24.9	17.9	33.7
단자·종금	(65)	36.9	33.8	9.2	20.0
보험	(39)	23.1	30.8	15.4	30.8
증권	(215)	32.1	19.5	18.6	29.8
투자신탁	(49)	40.9	4.1	20.4	34.7

〈附表 4-23〉市中資金の 흐름 : 기관 C-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현저한 자금 이동없음	부동산시장 으로 이동	증권시장 으로 이동	현물시장 으로 이동	해외유출
전 체	(634)	65.6	6.6	11.6	8.8	7.4
근무업종						
은행	(263)	58.9	9.9	13.3	9.9	8.0
단자·종금	(65)	70.8	1.5	13.8	10.8	3.1
보험	(40)	52.5	5.0	5.0	25.0	12.5
증권	(217)	72.8	5.5	10.6	5.1	6.0
투자신탁	(49)	71.4	2.0	10.2	4.1	12.2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54.4	8.7	12.4	12.1	11.4
대학교 졸업	(387)	68.5	5.9	10.1	8.8	6.7
석사학위 이상	(92)	71.7	4.3	16.3	3.3	4.3

〈附表 4-24〉顧客의 常時使用 計座數의 變化 : 기관 C-2, 사업 D-3

(單位 : 명, %)

구 분	금융기관 고객		사업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감소하였다	250	39.2	79	11.8
증가하였다	55	8.6	31	4.6
불변이다	295	46.2	555	83.5
무응답	38	6.0	2	0.3
계	641	100.0	667	100.0

〈附表 4-25〉家計의 貯蓄率 變化 : 기관 C-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변화없음	422	66.1
약간 낮아짐	155	24.3
현저히 낮아짐	17	2.7
상승함	34	5.3
무응답	10	1.6
계	638	100.0

〈附表 4-26〉現金需要의 變化 : 기관 C-4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직후 현저한 증가	직후 증가 점차회복	불변
전 체	(628)	26.0	68.0	6.1
근무업종				
은행	(259)	23.6	68.7	7.7
단자·종금	(64)	12.5	79.7	7.8
보험	(39)	30.8	56.4	12.8
증권	(214)	29.0	68.2	2.8
투자신탁	(49)	38.8	57.1	4.1

〈附表 4-27〉 자기앞수표 回轉速度의 變化 : 기관 C-5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감소하는 추세	167	26.2
증가하는 추세	55	8.6
감소하다 증가	219	34.3
증가하다 감소	37	5.8
불변	97	15.2
무응답	63	9.9
계	638	100.0

〈附表 4-28〉 자기앞수표 忌避理由 : 기관 C-6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이서요구	자금추적	수수료	입금불편
전 체	(626)	27.5	59.3	10.4	2.9
근무업종					
은행	(261)	31.8	55.6	10.0	2.7
단자·증금	(64)	21.9	59.4	14.1	4.7
보험	(37)	29.7	29.7	32.4	8.1
증권	(213)	25.8	66.2	6.6	1.4
투자신탁	(48)	14.6	75.0	6.3	4.2
근무경력					
5년 미만	(257)	34.9	49.4	12.2	3.5
5년~10년	(224)	24.2	63.2	9.4	3.1
10년~15년	(103)	19.4	71.8	6.8	1.9
15년 이상	(42)	16.7	71.4	11.9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150)	38.9	49.0	8.7	3.4
대학교 졸업	(377)	23.6	61.3	11.9	3.2
석사학위 이상	(90)	24.4	67.8	6.7	1.1

〈附表 4-29〉 差等課稅에 대한 認識 : 기관 C-7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21.5%	45.0%	64.5%	85.0%	모르겠다
전 체	(620)	16.9	15.6	36.8	4.8	25.8
근무업종						
은행	(257)	16.3	16.3	33.9	4.7	28.8
단자·종금	(62)	17.7	14.5	53.2	6.5	8.1
보험	(36)	44.4	11.1	8.3	.0	36.1
증권	(216)	12.5	18.5	37.5	6.0	25.5
투자신탁	(46)	17.4	4.3	52.2	2.2	23.9

〈附表 4-30〉 非實名計座의 開設原因 : 기관 C-8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고객요구	관측활동	이해일치
전 체	(629)	46.9	17.8	35.3
근무경력				
5년 미만	(258)	46.5	16.8	36.7
5년~10년	(226)	44.9	16.9	38.2
10년~15년	(103)	52.4	16.5	31.1
15년 이상	(42)	47.6	33.3	19.0

〈附表 4-31〉非實名計座의 類型 : 기관 C-9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가명	차명	도명
전 체	(635)	30.1	65.0	4.9
근무경력				
5년 미만	(261)	31.4	64.4	4.2
5년~10년	(228)	28.6	68.3	3.1
10년~15년	(104)	27.9	65.4	6.7
15년 이상	(42)	35.7	50.0	14.3

〈附表 4-32〉非實名計座 開設問議에 대한 反應 : 기관 C-10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불가능함을 알림	상사에게 문의	편의 봐줌
전 체	(629)	85.5	7.3	7.2
근무업종				
은행	(261)	93.5	4.2	2.3
단자·종금	(64)	84.4	10.9	4.7
보험	(37)	70.3	13.5	16.2
증권	(216)	77.3	9.7	13.0
투자신탁	(48)	95.8	2.1	2.1
근무경력				
5년 미만	(260)	82.9	7.4	9.7
5년~10년	(223)	84.7	10.4	5.0
10년~15년	(104)	91.3	2.9	5.8
15년 이상	(42)	95.2		4.8

〈附表 4-33〉 上司가 非實名 去來를 指示할 境遇의 反應 : 기관 C-11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거부한다	따른다
전 체	(636)	75.3	24.7
근무업종			
은행	(261)	84.3	15.7
단자·증권	(65)	86.2	13.8
보험	(39)	53.8	46.2
증권	(219)	64.8	35.2
투자신탁	(49)	77.6	22.4
근무경력			
5년 미만	(264)	71.8	28.2
5년~10년	(226)	72.9	27.1
10년~15년	(104)	84.6	15.4
15년 이상	(42)	88.1	11.9

〈附表 4-34〉 上司의 指示에 따르는 理由 : 기관 C-12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50	31.8
상사의 지시이므로	86	55.4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11	7.0
기타	9	5.7
계	156	100.0

〈附表 4-35〉非正常的 金融情報 要求에 대한 態度 : 기관 C-13

(單位 : 명, %)

구 분	사례수	보호함	보호안함
전 체	(632)	82.5	17.5
근무업종			
은행	(262)	90.1	9.9
단자·종금	(64)	78.1	21.9
보험	(39)	64.1	35.9
증권	(218)	76.1	23.9
투자신탁	(49)	91.8	8.2

〈附表 4-36〉非正常的 金融情報 要求를 拒否하지 않는 理由 :

저축 C-14, 기관 C-14

(單位 : 명, %)

구 분	저 축 자		기관종사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거부시의 불이익 때문에	164	40.1	57	56.3
협조시의 이익 때문에	42	10.3	9	8.7
직장 내부의 약점 때문에	87	21.3	7	6.8
관행에 의해서	116	28.4	29	28.2
계	409	100.0	102	100.0

〈附表 4-37〉 一定額 以上の 去來者에 대한 政府의 調査 與否 :
저축 C-20, 기관 C-15

(單位 : 명, %)

구 분	저 축 자		기관종사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실제로 한다	86	12.7	123	19.3
하지 않는다	288	42.7	255	40.0
모르겠다	297	44.0	255	40.0
무응답	4	0.6	5	0.8
계	675	100.0	638	100.0

〈附表 4-38〉 調査가 施行되지 않는 理由 : 저축 C-21, 기관 C-16

(單位 : 명, %)

구 분	저 축 자		기관종사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큰 손의 로비	99	20.1	53	13.9
기존 행정력을 넘어섬	199	40.4	219	58.2
금융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136	27.6	71	18.7
모르겠다	59	12.0	34	9.2
계	493	100.0	377	100.0

附 錄 II

1. 事業體用 調查 設問紙
2. 一般 貯蓄者用 調查 設問紙
3. 金融機關 從事者用 調查 設問紙

6. 귀사의 업종이 제조업이면 생산하는 상품은 주로 어디에 이용됩니까?

- ① 내수용 ② 수출용 ③ 내수용 + 수출용

7. 사업장의 소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대 ② 자체 소유 ③ 무상

8. 사업장의 면적은 연건평(계약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 ① 10평 미만 ② 10평~20평 미만 ③ 20평~50평 미만
④ 50평~100평 미만 ⑤ 100평~200평 미만 ⑥ 200평 미만

B.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1. 귀사의 부가가치세 납세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일반과세자(법인) → 문 5로 가시오
②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③ 과세특례자(소액부징수자 포함)
④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

2. 귀사의 장부기장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① 복식부기 ② 간이 기장
③ 일기장 방식 ④ 일기장 안함

3. 귀하는 소득세 납부시 표준소득월에 의거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추계조사결정자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께서는 추계조사를 실시할 때의 표준소득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높다 ② 낮다 ③ 적당하다

5. 귀하께서는 1993년중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세(혹은 법인세) 조사 ② 부가가치세 조사
 ③ 소득세(혹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조사
 ④ 조사받은 적 없음

6. 세무처리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용역을 받을 경우에 월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하는 용역이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10만원 미만
 ③ 10~20만원 미만 ④ 20~30만원 미만
 ⑤ 30~50만원 미만 ⑥ 50~100만원 미만
 ⑦ 100만원 이상
 ⑧ 스스로 세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음
 ⑨ 협회 또는 본사관리

7. 귀하께서는 93년 부가세 확정신고시 한계세액공제를 신청하십니까?

- ① 신청했다 ② 신청하지 않았다

8. 귀사의 월평균 매출액(판매액 또는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만원

9. 귀사가 납세한 93년 2기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됩니까?

_____만원

C. 금융실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금융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찬성했고 현재도 찬성한다
 - ②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찬성하였지만 현재는 찬성하지 않는다
 - ③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반대하였지만 현재는 찬성한다
 - ④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반대하였고 현재도 반대한다

2. 금융실명제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 문 2에서 금융실명제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답해 주십시오.
 - ① 비실명거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 ②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크므로
 - ③ 실명제를 실시해도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 ④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 ⑤ 기타 _____

4. 현재 진행중인 금융실명제가 다음의 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도움이 됨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됨
- ⑤ 전혀 도움이 안됨

2) 금융자산종합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도움이 됨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됨
- ⑤ 전혀 도움이 안됨

3)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제거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도움이 됨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됨
- ⑤ 전혀 도움이 안됨

5.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저 반대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편이다 그렇다 편이다 반대한다

1) 비실명거래가 사회적
 으로 큰 문제이다



8.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아주 많았다 | ② 몇 번 있었다 |
| ③ 한두 번 있었다 | ④ 없었다 |

9.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하십니까?

10.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장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1) 정치

- | | |
|-------------|------------|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 ② 약간 긍정적이다 |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부정적이다 |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 |

2) 경제

- | | |
|-------------|------------|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 ② 약간 긍정적이다 |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부정적이다 |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 |

3) 사회

- | | |
|-------------|------------|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 ② 약간 긍정적이다 |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부정적이다 |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 |

11.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다음의 보기 중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만 골라 주십시오.

대기업 경영인, 중소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업자,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일반서민	1)
	2)

12. 귀하는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는 계층이 있다면 보기 중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만 골라주십시오.

대기업 경영인, 중소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채업자,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일반서민	1)
	2)

13.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 없이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실명제가 정착 되어야 개혁 성공
- ② 실명제의 정착 없이도 개혁 성공
- ③ 무어라 얘기할 수 없다

14.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감독강화
- ②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행정강화
- ③ 전반적인 국민의식 개혁
- ④ 기타

4. 실명제후, 금융기관을 통한 입출금의 이용빈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대폭 증가하였다 ② 증가한 편이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감소한 편이다 ⑤ 대폭 감소하였다

4-1 문 4에서 (4),(5)에 답을 하셨다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5. 실명제후 자기앞수표의 이용빈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대폭 증가하였다 ② 증가한 편이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감소한 편이다 ⑤ 대폭 감소하였다

5-1. 문 5에서 (4),(5)에 답을 하셨다면 단지 실명제 실시 이유외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보기를 보고 하나만 답해 주십시오

- ① 이서 등의 요구로 수표 이용시 불편하기 때문이다
 ②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자금이 흐름이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은행이 수표발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④ 수표를 이용한 입금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⑤ 기타

6.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음 종류별로 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1) 은행(농수축협, 우체국 등)

- ① 대폭 증가함 ② 조금 증가함 ③ 변화없음
 ④ 조금 감소함 ⑤ 대폭 감소함 ⑥ 이용 안함

2) 상호신용금고

- | | | |
|----------|----------|---------|
| ① 대폭 증가함 | ② 조금 증가함 | ③ 변화없음 |
| ④ 조금 감소함 | ⑤ 대폭 감소함 | ⑥ 이용 안함 |

3) 보험회사

- | | | |
|----------|----------|---------|
| ① 대폭 증가함 | ② 조금 증가함 | ③ 변화없음 |
| ④ 조금 감소함 | ⑤ 대폭 감소함 | ⑥ 이용 안함 |

4)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

- | | | |
|----------|----------|---------|
| ① 대폭 증가함 | ② 조금 증가함 | ③ 변화없음 |
| ④ 조금 감소함 | ⑤ 대폭 감소함 | ⑥ 이용 안함 |

5) 사채시장

- | | | |
|----------|----------|---------|
| ① 대폭 증가함 | ② 조금 증가함 | ③ 변화없음 |
| ④ 조금 감소함 | ⑤ 대폭 감소함 | ⑥ 이용 안함 |

6) 친지

- | | | |
|----------|----------|---------|
| ① 대폭 증가함 | ② 조금 증가함 | ③ 변화없음 |
| ④ 조금 감소함 | ⑤ 대폭 감소함 | ⑥ 이용 안함 |

E.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 변화

1. 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담액에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 문 2로 | └─> 문 4로 |

2. 그러면 귀하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부담액은 9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얼마나 변하였습니까?

('92년 대비 '93년 실적) _____% (증가, 감소)

3. 다음 중에서 귀하의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담변화의 주요인 중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1,2,3,4) 매겨 주십시오.

- 1) 경기변화에 따른 매출변화 ()
 2) 실명제로 인한 무자료거래, 매출누락, 기밀비 등의 세원노출 ()
 3) 세무행정 강화 ()
 4) 과특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

4. 실명제 실시 이후 귀사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변화되었습니까?('93년 1기 대비 '93년 2기 확정 실적)

① 예

② 아니오

└─> 문 5로

└─> 문 7로

5. 그러면 귀하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93년 1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얼마나 변하였습니까?

('93년 1기 대비 '93년 2기 확정실적) _____% (증가, 감소)

6. 부가가치세 부담변화의 주요인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1, 2, 3) 매겨 주십시오.

- 1) 경기변화에 따른 매출변화 ()
 2) 실명제로 인한 무자료거래, 매출누락, 기밀비 등의 세원노출 ()
 3) 세무행정 강화 ()
 4) 과특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

2. 一般貯蓄者用 調査 設問紙

A. 귀하에 대한 기초적인 설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 |
|-----------|-----------|
| ① 20세~30세 | ② 31세~40세 |
| ③ 41세~50세 | ④ 51세 이상 |

2.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금융자산의 총액(은행예금, 주식, 투자신탁 수익증권, 보험증서 등)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
|------------|------------|
| ① 5백만원 미만 | ② 5백만~1천만원 |
| ③ 1천만~5천만원 | ④ 5천만~1억원 |
| ⑤ 1억원 이상 | |

3. 귀하의 월 소득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
|------------|------------|
| ① 1백만원 미만 | ② 1백만~2백만원 |
| ③ 2백만~3백만원 | ④ 3백만~5백만원 |
| ⑤ 5백만원 이상 | |

4. 주식투자를 하십니까?

- | | |
|------|-------|
| ① 한다 | ② 안한다 |
|------|-------|

B.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관한 설문

1.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금융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찬성했고 현재도 찬성한다.
 - ②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찬성하였지만 현재는 찬성하지 않는다.
 - ③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반대하였지만 현재는 찬성한다.
 - ④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반대하였고 현재도 반대한다.

2. 이번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르겠다

3. 문 2에서 금융실명제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실명거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 ②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크므로
 - ③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 ④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4. 현재 진행중인 금융실명제가 다음의 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도움이 됨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됨
 - ⑤ 전혀 도움이 안됨

4)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된다.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6.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장래 우리나라의 전반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1) 실명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② 약간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약간 부정적이다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2) 실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② 약간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약간 부정적이다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3) 실명제가 우리나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② 약간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약간 부정적이다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7.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

- ③ 그다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⑤ 모르겠다
8. 귀하께서는 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후속보완조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① 적절했다
 - ② 더 보완해야 한다
 - ③ 부적절했다
 - ④ 모르겠다
9.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대기업 경영인
 - ② 중소기업인
 - ③ 정치인
 - ④ 고위공무원
 - ⑤ 사채업자
 - ⑥ 붕급생활자
 - ⑦ 자영업자
 - ⑧ 일반서민
10. 귀하는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는 계층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대기업 경영인
 - ② 중소기업인
 - ③ 정치인
 - ④ 고위공무원
 - ⑤ 사채업자
 - ⑥ 붕급생활자
 - ⑦ 자영업자
 - ⑧ 일반서민
11.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성공적인 개혁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명제가 정착되어야 개혁 성공
 - ② 실명제의 정착없어도 개혁 성공
 - ③ 모르겠다

12.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에 대한 증여한도의 축소
- ② 자금 이동에 대한 국세청 보고한도의 인하
- ③ 현금유통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의 신용거래제도의 정착
- ④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 도입
- ⑤ 기타(_____)

13. 조세형평의 제고를 위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겠습니까?

- ① 무자료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부가세율의 인하
- ②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행
- ③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무자료 거래의 차단
- ④ 기타(_____)

14. 금융실명제의 사회부조리 제거라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의 강화
- ② 강력한 법의 제정을 포함하는 제도의 시행
- ③ 국민들의 의식전환
- ④ 기타(_____)

15.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았다
- ② 몇 번 있었다
- ③ 한두 번 있었다
- ④ 없었다

16. 불편이나 불이익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C. 금융실명제의 영향에 관한 설문

1. 금융실명제 실시후에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 실명제 실시로 자산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자산에 보다 많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현금 ② 예금 ③ 투자신탁 수익증권
- ④ 주식 ⑤ 부동산 ⑥ 외화, 해외예금
- ⑦ 해외부동산 ⑧ 사채 ⑨ 귀금속, 골동품, 그림

3. 만약 미국에 한화 1억 5천만원으로 구입가능한 적당한 부동산이 있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 ① 투자관리에만 문제가 없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
- ②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상승률이 낮아 투자매력이 없다.
- ③ 가격상승과 무관하게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는 없다.

4.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별 영향이 없었다.
 - ② 물가를 상승시켰다.
 - ③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
 - ④ 귀금속, 골동품, 그림 등에 대한 현금거래가 증가했다.
 - ⑤ 자금의 해외유출이 증가했다.
5. 예정된 종합소득과세가 시행된다면 귀하의 저축물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표의 조정으로 세금부담은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저축물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 ②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저축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 ③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저축은 더 해야 한다.
6. 증권의 양도차익과세의 실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증권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 ② 양도차익세를 내더라도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③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7. 금융거래시 자기앞 수표의 이용이 감소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표의 이서 등의 요구로 수표 이용시 불편이 증대했기 때문에
 - ②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자금의 흐름이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은행이 수표발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 ④ 수표를 이용한 입금이 불편하기 때문에

⑤ 잘 모르겠다.

13. 사정기관 등에서 금융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요구할 때, 금융기관은 귀하에 관한 금융정보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4. 만약 문 13에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
- ② 정보제공에 협조할 경우 금융기관은 미래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
- ③ 금융기관 내부의 기존의 약점 때문에
- ④ 한국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15. 귀하께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실명제 실시후 실명여부의 확인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① 고객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인정한다.
- ② 주민등록증과 기재내용을 대조한다.
- ③ 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및 본인여부도 확인한다.

16. 실명전환 의무기간을 위반한 계좌에 대해서는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 ② 과징금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 ③ 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17. 미성년자의 한도초과 보유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실적으로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자금출처 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② 사회정의 실현의 견지에서 최소한의 자금출처 조사는 필요하다.
- ③ 엄격하게 자금출처 조사를 해야 한다.

18. 금융실명제에 관한 내용중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예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
- ②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
- ③ 비실명 금융자산이나 미성년자의 한도초과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가능성
- ④ 자금이동 내용 조사의 가능성
- ⑤ 재산규모 노출문제
- ⑥ 모두 합당하다.

19. 토지종합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실시와 앞으로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 증대와 금융자산을 통한 증여 및 상속세의 회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 ② 경제의 성장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다.
- ③ 세금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분배갈등이 해소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 ④ 재산과 소득이 많다고 해서 가진 자들을 정부가 너무 들볶는 것 같다.

20.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일정액 이상의 거래자에 대해 자금흐름에 관한 정부의 조사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1. 만약 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큰 손들의 로비 때문에
② 기존 행정력으로 너무 큰 작업이므로
③ 금융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④ 모르겠다

3. 金融機關 従事者用 調査 設問紙

A. 귀하의 근무지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 ① 은행
- ② 단자, 종금
- ③ 보험
- ④ 증권
- ⑤ 투자신탁

2. 귀하께서 금융계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년~10년
- ③ 10년~15년
- ④ 15년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 ② 대졸
- ② 석사 이상

B.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관한 설문

1.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금융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찬성했고 현재도 찬성한다.
- ②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찬성하였지만 현재는 찬성하지 않는다.

- ③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반대하였지만 현재는 찬성한다.
- ④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반대하였고 현재도 반대한다.

2. 이번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르겠다

3. 문 2에서 금융실명제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실명거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 ②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크므로
- ③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 ④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4. 현재 진행중인 금융실명제가 다음의 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도움이 됨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됨
- ⑤ 전혀 도움이 안됨

2) 금융자산 종합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도움이 됨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됨
- ⑤ 전혀 도움이 안됨

3)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제거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도움이 됨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됨
- ⑤ 전혀 도움이 안됨

5.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비실명거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2)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크다.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3) 실명제를 실시해도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4) 금융기관 및 고객의 불편이 가중된다.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6. 귀하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장래 우리나라의 전반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1) 실명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② 약간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약간 부정적이다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2) 실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② 약간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약간 부정적이다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3) 실명제가 우리나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상당히 긍정적이다 ② 약간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약간 부정적이다
- ⑤ 상당히 부정적이다

7.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
- ③ 그다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⑤ 모르겠다.

12.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에 대한 증여한도의 축소
 - ② 자금 이동에 대한 국세청 보고한도의 인하
 - ③ 현금유통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의 신용거래제도의 정착
 - ④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 도입
 - ⑤ 기타(_____)
13. 조세형평의 제고를 위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겠습니까?
- ① 무자료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부가세율의 인하
 - ②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행
 - ③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무자료 거래의 차단
 - ④ 기타(_____)
14. 금융실명제의 사회부조리 제거라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의 강화
 - ② 강력한 법의 제정을 포함하는 제도의 시행
 - ③ 국민들의 의식전환
 - ④ 기타(_____)
15.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고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앞으로 시행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 ② 재산규모의 노출
 - ③ 증여나 상속에의 과세회피의 어려움
 - ④ 자금출처 조사의 가능성

C. 금융실명제의 영향에 관한 설문

1.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앞으로 시중자금의 흐름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이미 충격이 충분히 흡수되어 현저한 자금이동 현상은 없을 것이다.
 - ②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 ③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 ④ 금, 골동품, 회화 등 현물시장에 몰릴 것이다.
 - ⑤ 해외로 자금융출이 현저할 것이다.

2. 실명제 실시후 개별 고객의 상시사용 계좌(활동성 계좌) 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감소하였다 ② 증가하였다 ③ 불변이다

3.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가계의 저축률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축률에는 별영향이 없다.
 - ② 저축률이 약간 낮아졌다.
 - ③ 저축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 ④ 저축률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4. 실명제 실시후 현금수요는 어떤 변화를 보였습니까?
 - ① 실명제 실시 직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 ② 실명제 실시 직후 증가하였으나, 점차 회복하여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 ③ 불변이다.

5. 실명제 실시후 자기앞 수표의 회전속도(은행 회수 기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감소하는 추세다.
- ② 증가하는 추세다.
- ③ 실명제 직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다.
- ④ 실명제 직후 증가하다 최근 감소하고 있다.
- ⑤ 불변이다.

6. 실명제 실시후 입금이나 출금시 자기앞 수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표의 이서 등의 절차로 수표의 이용시 불편이 증대했기 때문에
- ②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자금의 흐름이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은행이 수표발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 ④ 수표를 이용한 입금이 불편하기 때문에

7. 긴급명령 이전에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 ① 실명의 21.5%와 동일
- ② 실명의 2배인 45%
- ③ 실명의 3배인 64.5%
- ④ 실명의 4배인 85%
- ⑤ 잘 모르겠다.

8.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 중에 고객의 요구에 의한 것과 금융기관의 권유에 의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객의 요구
- ② 금융기관의 판촉활동
- ③ 양자의 이해의 일치

9. 작년의 실명전환 의무기간 동안,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중 제일 많은 계좌의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명 ② 차명 ③ 도명

단, 가명 : 납세번호가 없는 가공명의의 계좌

차명 : 납세번호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계좌

도명 : 납세번호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빌린 계좌

10.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비실명인 차명이나 도명 계좌의 개설 가능성에 대해 고객이 문의할 경우, 직원들은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불가능함을 알린다.
 ② 상사에게 문의한다.
 ③ 회사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봐준다.

11. 만약 직장의 상사가 비실명의 차명이나 도명거래를 지시할 경우 직원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거부한다 ② 따른다

12. 문 11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② 직장상사의 지시이므로 할 수 없이
 ③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④ 기타(_____)

